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3-01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박 영 도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A Study of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Effective Operation of Sunset System of
Administrative Rules

연구자 : 박영도(선임연구위원)
Park, Young-Do

2013. 10.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행정규칙 일몰제는 현재 시행 중인 행정규칙들을 현실화하고 입법 분량의 축소와 간소화(Simplifying and reducing the volume of legislation)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기능
- 행정규칙 일몰제는 “더 적고 선진화된 규제(Less and Better Regulations)”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양적인 규제완화(Deregulierung)를 위한 발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또 다른 추진동력으로 기능
- 행정규칙 일몰제와 유사한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 관료주의 철폐(cutting red tape) 및 선진 입법(better law-making)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서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호주나 독일 등의 몇 개의 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화하여 현재 시행
- 이 연구에서는 행정규칙 일몰제의 이론적 기초와 선진국가의 일몰제 경험을 분석하여 우리의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에 따른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해 검토
- 특히, 2009년 4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각 부처별 행정규칙 일몰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규칙 일몰제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II. 주요 내용

- 국제적으로 행정규칙 일몰제 등 각종 일몰제의 제도화를 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est Practice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다수 연구자들의 경험상 도출된 결론
- 다만, 행정규칙 일몰제는 범규범의 양적인 규제완화를 달성하고, 법령의 간소화와 내용적인 조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범규범의 질적인 규제완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설명책임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
- 행정규칙 일몰제를 좀 더 확대·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절차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적절한 일몰시점과 일몰시간표(TIMETABLE)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방안을 고려
- 일몰제를 적용한 행정규칙이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의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도록 평가(EVALUATION) 내지 심사(REVIEW)를 위한 제도화된 절차와 기준의 정립이 필요
- 행정규칙 일몰제와 같은 생소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제도도입 초기부터 체계화된 제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입법론적 또는 입법기술적으로 체계화된 입법형식을 갖추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

Ⅲ. 기대효과

- 향후 행정규칙 일몰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입법론적 정보,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행정규칙 일몰제의 합리적인 운용기법과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 행정규칙 일몰제의 운용경과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제도를 이행하고 적용하는데 요구되는 보완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일몰제의 내실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

▶▶ 주제어 : 행정규칙, 일몰제, 규제일몰제, 선진 규제, 규제개혁, 입법평가, 규제영향분석, 영향분석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The sunset system of administrative rules functions as a system contributing to rationalizing the administrative rules currently in force as well as to simplifying and reducing the volume of legislation.
- The sunset system of administrative rules means the development for quantitative deregulation (deregulierung) aiming at “Less and Better Regulations”, and serves as another propulsion engine for qualitative deregulation.
- Whether or not to introduce a system similar to the sunset system of administrative rules has been discussed as part of a policy for red-tape cutting and better law-making in some countries, and some states of Australia, Germany, etc. have long since instituted such system and implement it at presen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ssues that are likely to arise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sunset system of administrative rules as well as improvements therein, by analyzing the theoretical basis for such sunset system and advanced countries’ experience thereon.
-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s in the sunset system of administrative rules for its effective establishment as a

legal system by examining how each Ministry or administrative agency has actually operated such sunset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April 2009, and by presenting matters to be supplemented for its effective operation.

II. Major Content


- Many researchers' experience has shown that it is almost impracticable to find the Best Practice that can be presented as an international model for institutionalizing various sunset systems, including the sunset system of administrative rules.
- Nevertheless, there is a consensus that the sunset system of administrative rules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predictabi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responsibility for explanation to the general public by achieving quantitative deregulation in legal norms and promoting the simplification of statutes and the harmonization of provisions thereof to facilitate qualitative deregulation in such norms.
- The clear description of the areas to which the sunset system of administrative rules shall not apply and the announcement of a reasonable and appropriate sunset date and timetabl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extending and promoting such sunset system and ensuring more effective application thereof and for reducing the burden on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rocedural expenses, respectively.
- It shall be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ized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evaluation and review to prevent the perfunctory and automatic extension of the expiration date of administrative rules

subject to a sunset system without verification of effectiveness or efficiency of such administrative rules.

- In introducing a new system, such as the sunset system of administrative rules, a legislative form organized in terms of legislation theories and techniques shall be taken fully into account so that it can be launched as an organized system from the outset of such introduction.

III. Expected Effects

-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able establishment of the sunset system of administrative rules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legislation theorie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such sunset system in the future and by presenting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for the reasonable operation thereof.
- This study is also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data for rationalizing the sunset system of administrative rules and enhancing its effectiveness by examining matters to be supplemented for the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such sunset system on the basis of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operation thereof.

 **Key Words** : administrative rules, sunset system, sunseting regulation, better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evaluation of legislatio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mpact assessmen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21
제 2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의의와 특징	25
제 1 절 일몰제의 특징적 요소와 기본유형	25
I. 일몰제의 특징	25
II. 일몰제의 유형	27
III. 행정규칙 일몰제의 의의와 특징	39
제 2 절 주요 국가의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현황	43
I. 독 일	44
II. 호 주	72
III. 일 본	94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111
제 1 절 행정규칙 정비추진 경과	111
I. 관련법제의 정비	111
II.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	116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122
I. 분석기준	122
II. 주요 부처별 운용실태 분석	128
III. 총 합	602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631
제 1 절 개 설	631
I. 행정규칙의 문제상황과 개선의 방향성	631
II. 행정규칙 일몰제 추진성과 분석	637
제 2 절 개선방안	646
I. 도입단계의 과제와 개선방안	646
II. 검토단계의 과제와 개선방안	665
III. 행정규칙 일몰제 관련 입법형식의 개선방안	704
IV. 사후관리의 제도화	724
참 고 문 헌	733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 1 절 연구의 목적

최근 선진 국가에서는 규제정책의 목표를 “선진 규제(Better Regulation)”라는 전략하에 기업과 시민이 불필요한 행정부담으로부터 해방되도록 과도한 규제를 회피하고, 주요한 문제영역에서 규제를 선택하는 절차가 효율성과 효과성에 관한 광범한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지도록 규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선진 규제”라는 의미에는 종전의 규제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너무 많은 관료주의적 규제, 규제조치에 관한 지식의 결여, 규제절차에서의 특별한 이익의 지배 등을 극복하기 위한 구상이 담겨져 있다.¹⁾ 전통적 규제정책은 순수하게 국내적인 문제로 취급되었으며,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의 규제로서 정부의 과제 우선순위에 따라 규제를 추진한 결과, 예측가능성과 높은 준수도를 가져왔다. 반면, 이 규제정책은 형식주의에 따른 과중한 행정부담과 부패를 낳았으며, 규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기술혁신과 경제적인 경쟁심화에 따라 각국의 협력관계의 다양화 등 세계적인 변혁이 진행되고, 새로운 환경문제와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보다 적은 노력으로 효과적인 규제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각국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진 규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① 규제를 좀 더 효과적이고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s)이 경감되도록 추진, ② 규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Simplification)하여 규제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Access to Regulation)을 확보, ③ 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불확실한 효과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는 한편 규제 입안에 있어

1) Marian Döler/Wegrich Kai, **Regulierung als Konzept und Instrument moderner Staatstätigkeit**, dms - der moderne staat 3(2010), S.31ff.

서는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영향평가제도(Impact assessment)의 도입, ④ 규제에 책임있는 기관이 그 적용가능성에 관하여 책임성(Accountability)의 담보, ⑤ 규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효과적인 체계정비(Organisational structures for better Regulation) 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²⁾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입법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³⁾,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⁴⁾ 등 일련의 다양한 수단과 절차를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가운데 최근 일몰제(Sunset system)라는 제도가 주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몰제는 일정기간 경과 후 과도하거나 적어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프로그램 등에 대해 존속기한 또는 평가조항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검토를 받거나 부정적인 효과에 의해서 수정 또는 폐지되어진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⁵⁾ 따라서 일몰제는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실효성·효율성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가 정기적으로 심사(평가)를 행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 의미에서 일몰제는 “어떤 정책·프로그램 등의 가치가 그 폐지보다도 존속을 정당화하는지, 해당 정책·프로그램 등이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당초 목적이 달성된 정책·프로그램 등의 실적과 효과가 명시적으로 의도된 상태의 형식으로 명확히 되어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⁶⁾

2) OECD, **Cutting Red Tape : National Strategies**, Policy Brief 2007.1. p.1. ; Rick Haythornthwaite, **Better Regulation in Europe**, in : Stephen Weatherill(Hrsg.), **Better Regulation**, Worcester Place 2007, p.21.

3) 자세한 것은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참조.

4) 자세한 것은 박영도,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행정부담 측정사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참조.

5) 일몰제 전반에 관한 내용은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참조.

6) Keith E. Hamm/Roby D. Robertson, **Factor Influencing the Adoption of New Method of Legislarive Oversight in the U.S. State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6(1981), p.133, 139.

우리의 경우 일몰제는 1997년 8월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일몰제를 제도화한 이래 현재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몰제가 도입되고 있다.

[일몰제 도입유형]

유 형	개 요
규제 일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의무화(제1항) •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제2항)
기금 일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제1항) •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며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부담금 일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에서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제1항) •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제2항)
위원회 일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유 형	개 요
	<p>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존속기한은 자문위원회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제2항)
<p>시책 일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에 대해 시책일몰제를 규정 • 「광명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등

그러나 최근 일몰제를 관료주의 철폐와 규제완화에 이바지하고 법령의 “간소화(Vereinfachung)”를 위한 절차로서 법규범의 효과적인 통제를 보장하는 광범위한 접근방식으로 파악하여, 선진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디에 또한 어떻게 일몰제를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⁷⁾ 이는 의회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정기적 심사에 중점을 둔 미국식 일몰제와는 달리, 법령 등에 일몰조항(Befristungsklauseln, Verfallsdatum)을 두고, 이들 법령에 대해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정기적인 관점에서 사전 또는 사후 평가를 지향하는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다.

7) Kai Wegrich, **Better Regulation? Grundmerkmale moderner Regulierungspolitik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Zukunft Regieren**, Beiträge für eine gestaltungsfähige Politik 1/2009, S.7f.

따라서 여기서의 일몰제나 일몰심사는 행정기관 및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특별한 규제조치나 법령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설정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일몰제는 특별한 차원에서 법령통제의 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령에서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당 법령에 대한 재검토를 평가와 관련시키는 것을 보장하여, 효과통제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법령개정 또는 폐지를 함으로써 법령의 숫자를 감축하여 직접적으로 규제의 행정적 부담이나 내용적 부담의 감소에 기여한다는 가정이 표현되어 있다.⁸⁾

한편 우리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2009년 1월 29일 행정환경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주기적으로 정부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존속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⁹⁾ 특히, 여기서의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규제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제도의 실효성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실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내부규정(훈령·예규 등)에 일몰제 적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¹⁰⁾ 2009년 당시 훈령·예규 등 행정기관 내부 업무기준인 행정규칙은 약 8,000여개로서, 이 가운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규제 성격의 것은 약 1,000개로 추정되었다.¹¹⁾ 이들 행정규칙은 법령과 달리 관계 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각 부처 자체적으로 제정·운영된 결과, 발령 후 오래도록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도 많아 행정부담이나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¹²⁾

8) Werner Jann/Kai Wegrich/Miriam Shergold/Christian Van Stolk, **Wirksamkeit von Sunset-Legislation und Evaluationsklauseln**, Berlin 2005, S.17f.

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자료, **선진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 2009.1.29.

1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자료 참조.

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자료 참조.

12) 자세한 내용은 이세정, **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안**, 한국법제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현실적합성 유지를 위해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그 기준으로서 2003년 12월 이전 훈령·예규 등은 폐지(1,300여개)하는 한편 필요시 새로 시달하고, 5년 미만인 것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존속기한 설정, 신규로 제정되는 훈령·예규 등은 모두 3년 이하의 존속기한 설정을 하도록 하였다.¹³⁾ 정부의 방침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2009년 4월 23일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 주기적으로 존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을 발령했다.

이 훈령에서는 ①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지 않고 행정적 부담이나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2009년 8월까지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재발령하도록 하였다. ② 제·개정된 지 5년 미만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3년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해당 훈령·예규 등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③ 그동안 임의적으로 발령되던 행정규칙에 대한 발령 기준과 형식을 제시하였다. 우선, 훈령·예규 등에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적법성),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며(적절성),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명확성) 등 5가지의 입안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행정규칙의 발령 형식이 다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온 점을 고려하여 공문서의 형식을 정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 외의 방식으로는 발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④ 상위 법령에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 해당 훈령·예규 등을 3년 이상

연구원 2011 참조.

1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자료 참조.

계속하여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협의하여 5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의 지나친 행정 부담을 감안하여 비공개 대상 행정규칙과 인사관리·위원회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은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훈령·예규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일몰제 적용을 위해 3년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의 설정대상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해당 훈령·예규 등에 기한을 명시하여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법제처에서는 발령된 훈령·예규 등에 일몰제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외적으로 5년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거나 일몰제 적용의 제외를 받으려면, 발령 1개월 전에 미리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일몰제가 통일적이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규칙 일몰제의 정착을 위해 법제처는 행정규칙 일몰제 및 입안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와 협의하여 존속기한 등의 설정 대상을 확정하였고, 소관 훈령·예규 등에 대한 정비를 부처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2년 12월 현재까지 존속기한 설정대상 총 3,716건의 행정규칙 중 총 3,710건에 대해 일몰기한 설정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2013.2 현재).¹⁴⁾

행정규칙 일몰제는 입법 분량의 축소와 간소화(Simplifying and reducing the volume of legislation)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행정규칙들을 현실화하고 입법의 범위를 축소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저하게 간소화하는데 기여한다.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행정규칙 일몰제는 “더 적고 선진화된 규제(Less and Better Regulations)”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양적인 규제완화(Deregulierung)를 위한 발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또 다른 추진동력이 될 수 있다.¹⁵⁾

14)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백서**, 2012.12., 65면.

15) Bernd-Christian Funk, **Deregulierung aus rechts und verwaltungswissenschaftlicher Sicht**, in :

행정규칙 일몰제는 양적(quantitativ)인 의미에서 개선되어야 할 규범 총량의 확인하여, 특히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포기할 수 있는 법규범의 폐지를 통해 그 숫자를 감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행정의 내·외부에서 불충분하고, 계량화할 수 없고, 융통성 없이 규범을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질적(qualitativ)인 의미에서도 규범 문장을 간소하게 하고, 규정들 간의 내용적 조화를 통하여 규범내용의 합리화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심층적으로 변경(법제도의 간소화 또는 해당 법제도의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규칙 일몰제는 “재편조치(Umschichtungsmassnahme)”를 의미할 수도 있다. 즉, 합법성 원칙의 범주내에서 규범적 내용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비국가적 법령 즉, 민간의 규범 등에 “이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정부에서 마련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 방안” 이후 규제의 필요성·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를 위해 2009년부터 약 1,600건의 기존 규제에 일몰을 설정하였는 바, 2012년 636건, 2013년 875건 등이 일몰 도래 예정에 있다. 아울러 행정규칙 일몰제도 도입이후 행정규칙 중 일몰기한 설정이 완료된 총 3,710건 가운데 대부분이 2012년 8월부터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되어 해당 행정규칙의 연장이나 폐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의 경험적인 자료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일몰제를 규정한 대부분의 정책이나 법령은 일몰기한의 도래와 함께 더 이상 효력을 지속하지 않기 보다는 변경되지 않거나, 일부 수정되어 다시 도입되는 경우가 많은 등 이른바 ‘효과없는 자동연장’을 가져오는 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¹⁶⁾ 예컨대, 일몰기간 도래에 즈음한 사후 평가

Peter Oberndorfer(Hrsg), Deregulierung(Forschungsprojekte der Rudolf-Trauner-Stiftung 1), Linz 1992, 27f.

16) Werner Jann/Kai Wegrich/Miriam Shergold/Christian Van Stolk, a.a.O., S.19f.

라는 것이 일정한 조치를 실시할 뜻이 없다는 점을 은폐할 수도 있으며, 시간을 끌기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일정기간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일정한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단지 그 증명으로써 재평가할 따름인 의미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사후 평가가 유용할지라도 이러한 사후 평가를 가장한 법령이 증가하는 것은 일몰제의 취지에 손상을 가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경우 규제일몰제나 행정규칙 일몰제가 행정의 설명책임과 무의미한 규제나 법령의 억제에 위한 유효한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제도 도입이 본격화된 시점이 얼마되지 않아 과연 일몰제의 검토결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신중하고 심층적인 검토 없이 일몰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과 타당성의 면에서 많은 약점이 노출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정규칙 일몰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그 폭넓은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고, 일몰제를 유효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법제처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이후 각 부처별로 행정규칙 일몰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규칙 일몰제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2012년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2009년 1월부터 정부가 규제 일몰제도 활성화를 추진하였음에도 여전히 규제일몰제도 적용비율이

낮고 규제가 증가하는 등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¹⁷⁾ 특히, 기존 규제 및 의원입법에 의한 신설규제에 대한 일몰제도의 적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일몰도래 이후에도 규제가 재연장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2009년 말 11,050건에서 2010년 말 12,120건, 2011년 말 현재 13,147건으로 증가).

또한 재검토행 일몰제 추가 등 규제일몰제도 유형 다변화도 시도했지만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었고, 효력상 실행 일몰제도가 법적 안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행 일몰제도가 추가되었지만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만 인정되고 있고, 재검토행 일몰제도의 근거가 되는 「규제개혁추진지침」은 정부가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므로, 지침으로 인정되는 재검토행 일몰제도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일몰이 도래한 규제의 일몰 심사 과정에서 일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시된다고 하고, 2009년 개선방안 발표 후 일괄 설정한 재검토행 일몰이 2012년과 2013년 집중 도달함에 따라 시간부족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현재의 규제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위와 같은 지적은 향후 우리의 규제일몰제의 내실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많은 참고가 되는 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일몰제나 규제일몰제 전반에 관해 검토하려는 것이 아니라, 2009년 4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행정규칙 일몰제의 운용경과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그것을 이행하고 적용하는데 요구되는 보완사항을 점검하는 등 행정규칙 일몰제를 평가(Evaluation)하는데 중점을 둔다.

17)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일몰제도(Sunset Law) 실효성 제고방안**, 규제개혁시리즈 12-04 (2012.9), 2면 이하 참조.

행정규칙 일몰제와 유사한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 관료주의 철폐 및 선진 입법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서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호주나 독일 등의 몇 개의 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화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 행정규칙 일몰제 등 각종 일몰제의 설계를 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est Practice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다수 연구자들의 경험상 도출된 결론이다.¹⁸⁾ 이는 우선 일몰제가 각국에서 여전히 광범하고 보편적인 제도로서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국제적인 정책학습을 위한 경험적 근거가 매우 적다는 점에 기인한다. 다른 한편 미국 등과 같이 일몰제를 조기에 도입한 국가로부터의 경험에서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각국의 정치적·행정적 시스템에서의 본질적인 차이에 때문에 쉽사리 벤치마킹할 성격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행정규칙 일몰제의 이념이 우리에게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행정규칙 일몰제를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적인 토대를 획득하고자 행정규칙 일몰제에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현황과 운용실태, 그 밖에 제도 도입과 관련한 자료나 문헌 등을 통해 행정규칙 일몰제 활동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특히, 이들 국가의 일몰제 분석에 있어서는 평가와 관련한 매카니즘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식 및 기준 등에 중점을 두어 연구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행정규칙 일몰제의 이론적 기초와 선진국가의 일몰제 경험을 분석하여 우리의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에 따른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해 검토한다. 정부에서는 행정규칙 일몰제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히고 이를 훈령을 통해 제도화하였지만, 이 제

18) Jan Funke, *Bürokratieabbau mit Hilfe zeitlich befristeter Gesetz. Zu den Erfolgsbedingungen der Sunset-Gesetzgebung*, München 2011, S.86f.

도는 운용 여하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나아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법적 불확실성의 문제를 의식하면서 “법공백(Rechtsvakuum)”이나 “규율공백(Regelungslücken)을 무조건 예방해야 하려는 인식을 가지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행정규칙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행정규칙 일몰제를 충실하게 운용한다면 전문지식과 평가문화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경쟁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평가가 결과측면을 지향한다면, 행정규칙 일몰제는 입법의 선진화와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등 이른바 관행적인 입법문화의 체질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단순히 일몰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해당 법규정의 일반적인 중요성이나 효과에 관한 내용만을 언급하는 “스크린 제안(Screening Initiative)”으로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비중을 두어 우리의 행정규칙 일몰제를 추진한 경과와 해당 부처의 운용실적 등을 실제적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는 한편 그 성과에 대해 해당 부처관계자와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그 이행과 적용에 따른 과제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려 한다.

제 2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의의와 특징

제 1 절 일몰제의 특징적 요소와 기본유형

I. 일몰제의 특징

일반적으로 일몰제 내지 일몰입법의 관념은 특정한 정책 내지 사업에 관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의회의 의결 등으로 존속에 관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일몰제 발상은 미국에서 비롯되었으며, 정책·사업 등에 일몰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행·재정의 경직화에 수반한 효율성의 저하, 행·재정의 비대화에 대한 유효수단의 결여, 행정기관의 설명책임의 철저와 주민·의회의 감시체제의 강화에 대한 요청이었다.

일몰제의 특색은 의회가 재의결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가 결정되는 자동폐지규정이 설정되는 점에 있다. 가령 행정기관측이 정책·사업의 존속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인 설명책임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되는데 특색이 있다. 일시적인 재검토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검토를 의무화하여 작위적 존속만을 허용하는 제도이다.¹⁹⁾

일몰제는 정책이나 규제의 효율성·생산성 및 가치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전략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일몰제는 정책이나 규제의 결과와 효과를 검증할 수 있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정책이나 규제를 교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한다.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나 규제, 오류가 있는 정책이나 규제는 집행과정

19) 일몰제의 의의와 특징적 요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29면 이하 참조.

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미의 불확실성 및 그로 인한 집행의 지연이나 소송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큰 비용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혹은 일부의 정책이나 규제를 평가하고 확립된 절차에 따라 보고한 후, 규율하고자 하는 현실에 가깝도록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정책이나 규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장치를 고안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수법이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고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정책이나 규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일몰제라는 도구는 확실히 정책이나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²⁰⁾ 일몰제는 입법자로 하여금 반드시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정책이나 규제를 확인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법령이나 규제를 검토하여 오용되거나 불필요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입법의 합리화를 증대시키는데에도 유용하다. 일몰제는 불필요한 비용을 수반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국가적인 연례청소작업과 같은 것이다.

일몰제를 성숙화시키기 위해서는 입법평가기능의 확충, 평가비용의 사정, 시민참가, 평가수법의 개발, 평가능력의 향상, 설명책임의 철저가 요구된다. 일몰제방식에 의한 정책평가 구체화의 수법은 시장원리와 민주주의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원리에 의한 평가가 민주주의에 의해 여하히 구체화할 수 있는지가 일몰제평가의 최종적인 과제가 된다. 유의해야 할 것은 시장원리도 민주주의도 상호 충분한 정보공개에 의거한 설명에 의해 투명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예외없이 일몰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의 명확화와 이유 설명을 철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20) Kai Wegrich, **Das Leitbild Better Regulation. Ziele, Instrumente, Wirkungsweise**, Berlin 2011, S.49f.

II. 일몰제의 유형

1. 포괄적 방식

일몰제는 그 적용대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규제사항이나 비규제사항을 불문하는 포괄적 방식이 있다. 원래 미국에서 비롯된 일몰제는 개별 규제사항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행정기관이나 정책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의 일몰제는 어떤 행정기관이나 정책프로그램의 실효성·효율성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기적으로 심사(평가)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정책프로그램의 내적 효율성과 업무수행이 검토(Review)의 중심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에의 사무위임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프로그램이 추구되는 목적에 비추어 실효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검토한다.²¹⁾

21) 미국의 일몰제는 주차원에서 규제사항, 비규제사항을 불문하는 포괄적 평가방식(다만, 고등교육기관 등 일부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책 등의 존속기간을 7년-12년 정도로 인정, 매년 몇 개 기관을 대상으로 순차 평가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① Arizona주에서는 의회에 설치된 일몰평가기관이 존속기한의 17개월 전에 정책 등에 대해 평가업무를 개시하고, 업무감사보고서를 약 11개월 전까지 완성한다. 그 후에 완성된 보고서를 평가대상이 된 정책담당기관에 제시하고, 해당 기관에게 반론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의회의 평가기관은 상하양원에서 선출된 5명의 위원으로 조직되며 업무감사보고서와 대상기관의 반론, 그리고 공청회를 통한 시민의 의견에 따라 폐지, 존속, 통합 등의 결론을 제시하는 최종 일몰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정책담당기관의 폐지, 존속 등의 평가와 유사기관의 유무, 해당 유사기관의 평가와 통합여부 등의 평가도 포함된다. 이 최종일몰보고서에 의거,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통상 법안작성과 같은 절차 가운데 폐지이외의 경우 존속 또는 통합을 위한 법안을 작성할 것인지 판단한다. ② Texas주에서는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과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사업무 등은 전문요원이 조사한다. 절차로서는 평가대상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자기평가, 자문위원회의 자기평가, 공청회 실시, 폐지 또는 존속의 평가와 법안작성, 의회평가, 지사서명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실적을 보면 Arizona주에서는 다수의 정책담당기관이 폐지되었으며 폐지된 기관의 다수가 인허가와 관계 없는 기관이었다. 일몰제의 최대목적의 하나인 규제의 폐지에는 반드시 충분하게는 결부되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규제와 관련한 정책이나 기관이 폐지되지 않은 이유로서는 ① 업무감사보고서가 문제의 지적에 그치고, 평가단계에 이르지 않고

물론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에 관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부방식도 있고, 직업면허기관(license profession or occupation)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부분방식²²⁾도 있다.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는 특정한 조직체를 대상으로 한 부분평가가 주체가 되었으나, 제도의 정착과 함께 전체평가로 확대되어가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전체평가의 경우라도 교육분야, 교정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많다.²³⁾

있는 점, ② 의회에 설치된 평가기관의 인원이나 능력 등의 제약에서 정책담당기관의 조직체감사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핵심에까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③ 정치적 압력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다액의 평가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정치적 압력에 약한 제도라면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실태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Texas주에서는 재검토대상이 소규모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규제기관의 폐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더하여 정치적 압력에 의한 영향이 적고 거꾸로 의회와 행정, 자문기관의 협조를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2 개주의 사례의 차이는 Texas주의 평가기관의 독립성이 강하고, Arizona주에 비해 획일적, 강제적인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점에 의존한다. Ry Ellison, **Sunsetting Big Government : How amendments to the Texas Sunset Act can reduce the size of government and serve as a model for the nation**, Texas Tech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13/1(2012.6), p.2 이하.

<<http://administrativelawjournal.org/wp-content/uploads/2012/06/Ellison-Final.pdf>>

22) Illinois주 “규제일몰법(Regulatory Sunset Act)”에서는 제정목적으로서 자격, 직업, 기업, 산업 또는 무역부문에서의 주의 규제권한의 행사는 공중보건, 안전 또는 복리에 현저하고 명확한 피해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주의 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b항제1호). 또한 자격, 직업, 기업, 산업 또는 무역에 대한 규제는 경쟁시장에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제2조b항2호), 면허 프로그램이나 기능 또는 자격, 직업, 기업, 산업 또는 무역의 초기 진입의 규제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와 폐지, 변경 또는 존속 등 해당 프로그램이나 기능의 필요성에 관한 체계적인 입법심사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공중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제2조c항3호). 그리고 규제일몰법에서 의미하는 “규제기관(Regulatory Agency) 또는 기관(Agency)”이란 면허(licenses), 감독(supervises), 관리권 행사 또는 그와 관련한 규칙제정을 통해 무역, 직업, 기업, 산업 또는 자격을 규제하는 주정부의 기관(arm, branch, department, board, committee or commission)을 말한다고 하고, “프로그램(Program)”이란 직업, 자격, 사업, 산업 또는 무역의 정기적인 재검토와 폐지, 변경 또는 존속을 위해 면허체계 또는 직업, 자격, 기업, 산업, 무역의 신규진입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http://www.ilga.gov/legislation/ilcs/ilcs3.asp?ActID=81&ChapterID=2>>

23)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주에서는 퇴직연금기관, 교육기관, 교도소, 도서관

이러한 일몰제는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해 폐지에의 위협을 전제로 일정한 심사 내지 평가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증대시킨다. 행정기관은 그들이 소관하는 정책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불확실한 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게 되고, 그 적용가능성에 관해 고려하게 된다. 또한 이해당사자나 수범자의 관점을 고려하여 그들과의 협의에 의한 참여를 도모하게 된다. 일몰평가에서는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공개성 등을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자발적으로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 방식의 일몰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색된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일몰제는 단순히 행정통제수단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과정의 분업화를 도모하며, 그 자료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명확히 한다. 일몰제의 정치적 의의는 특히,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 개방되고 있으므로 타협의 가능성을 낳는 점과 정치질서에 유연한 적합성을 가능케 한다. 일몰제는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 기회를 통하여 다원적 결정과정의 특색을 고려한 체계적 학습이 용이하게 된다.²⁴⁾ 일몰제는 입법부·행정부

그 밖에 주헌법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Texas주 “일몰법(Sunset Act)”에서는 고등교육기관(대학)과 법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면위원회(Board of Pardons and Paroles)와 교원연금관리위원회(Board of Trustees of the Teacher Retirement System of Texas) 등 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일부는 적용 대상이 되나 폐지하지는 않는다.

- 24) “sunset란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입법부문과 집행부문간의 협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유용하고 신중한 프로그램평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적인 협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야말로 설명책임의 향상이라는 목적에 중심이 되는 것이다”. Bruce Adams and Betsy Sherman, **Sunset Implementation : A Positive Partnership to Make Government Work**,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8(1978), p.78, 81. 다만, 이러한 sunset의 위치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필요성과 규제가 부당하게 과다한지를 평가의 중심에 둘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Dan R. Price, **Sunset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Baylor Law Review 30(1978), pp.386-387.

그리고 시민간의 새로운 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이 하는 일이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시민에게 이 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 포괄적 방식의 일몰제는 비효과적인 사업이나 불필요한 조직 등을 정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그들이 무기한 존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통제하고 국민의 세금을 책임성 있게 지출하도록 한다는 기반이 깔려있다. 정부의 방대한 사업이나 조직이 일단 성립 되면 관례와 관료적인 타성에 의해 명확한 목적달성을 위한 존속이라 기보다 사업이나 조직 그 자체 때문에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료적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모든 사업이나 조직에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효율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일몰제의 원칙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이나 조직에 대한 평가결과 그 존속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한 사업이나 조직은 자동적으로 폐지되고, 그에 따른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

포괄적 방식의 일몰제는 사업이나 조직의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법을 포함한 다른 효과적인 집행방법을 검토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이나 조직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일몰제는 계속 사업뿐 아니라 연간단위의 사업에 대해서도 도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부작용·통폐합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우선순위설정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폐지 등을 도모할 수 있다.²⁵⁾ 특히, 각종 보조금, 특별회계, 기금 등을 활용하는 예산사업의 경우에 포괄적 방식의 일몰제를 적용하는 경우,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5) Robert J. Dworak, **Zero-base budgeting and sunset laws: Do they go together?**, National Civic Review 67/3(1978), p.118-129.

2. 규제사항에 한정하는 방식

규제는 사회질서의 유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안전확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 행정목적의 달성을 달성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국민의 권리·활동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에게 제약을 하거나 부담을 가져오게 하는 측면이 있다. 다양한 규제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국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에도 과부담으로 작용하고 특히, 기업의 관점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1980년대 이후부터 각국에서는 작은 정부를 구축하고 행정비용을 감축하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규제완화·개혁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공적 규제의 완화에 그치지 않고 국제경쟁력 강화, 자기책임원칙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경제사회의 구축, 기술혁신의 촉진, 국민부담 경감과 행정사무 간소화 등의 관점에서 경제적 규제에 관해서는 원칙자유·예외규제, 사회적 규제에 관해서는 본래의 정책목적에 부합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규제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있다.²⁶⁾

이제 규제완화 내지 규제개혁정책은 국제적으로 당연하고 직접적인 요청으로 제기되고 있다.²⁷⁾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사고²⁸⁾

26)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Stephan Korinek, **Staatsrechtliche Ansätze für eine Deregulierung im Wirtschaftsrecht**, JBl 1991, S.409f ; Peter Oberndorfer, **Deregulierung - Einführung in das Thema**, in : Ders.(Hrsg.), Deregulierung, Linz 1992, S.12 ; Maria Kaun/Reinhold Mitterlehner, **Deregulierung und Entbürokratisierung - Die Position der Wirtschaft**, in : P.Oberndorfer(Hrsg.), Deregulierung, aaO., S.70f.

27) Ulrich Karpen, **Weniger Quantität**, in : Werner Jann(Hrsg.), Politik und Verwaltung auf dem Weg in die transindustrielle Gesellschaft(Festschrift für Carl Böhrer), Baden-Baden 1998, S.438.

28) New Public Management(NPM)라 함은 행정학 연구자에 따라 의미가 약간 다르나, 중심이 되는 요소를 정리하면 “민영화, 민간위탁, 바우처제도,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감량 및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공부문 가운데에서

는 국가의 지나친 규제 및 지나치게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경제나 사회 및 행정의 활동가능성과 결정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아울러 이들 요청은 현실 정치나 경제부문에 대한 과제비판의 요구도 그 자체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각국에서는 규제 비용의 효율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관료적이고 번잡한 각종 행정규제를 경감하고, 그 진척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규제영향평가제도(Regulatory Impact Assessment)라고 할 수 있다.

규제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새로운 규제를 설정하는 때에 그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비교·검토하는 한편 규제가 도입된 후에도 그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 부작용이 존재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관해 조사한 후 규제방식을 재검토하고, 시대변화나 기술진보에 상응하여 기존 규제가 현재에도 타당하고 필요한지 또한 규제의 정도는 현재에도 양호한지를 재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규제영향평가제도는 규제안이나 기존의 규제제도가 그 규제목적에 부합한 달성수단인지를 확인하므로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 규제영향평가제도는 비교적 투명성이 있는 모습으로 정부에 의한 합리적인 정책선택을 촉구하게 되어 규제의 확산을 억제하는 기능을 거두고 있다.²⁹⁾

행정서비스제공의 집행과 관련되는 권한을 실제의 관리자에게 이양하고(let Managers manage), 관리자에게 경제적,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관리를 행하도록 하며(make Managers manage), 그 업적을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해하기 쉬운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한편, 측정결과를 널리 공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서비스제공과 관련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반영하여 적은 예산으로 충실한 행정서비스공급을 확보하려는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NPM의 주요원리는 성과지향, 고객지향, 시장원리의 활용 및 분권화이며, NPM의 핵심은 "목표관리형시스템"의 도입에 있으며 목표관리란 "비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Philippe Mastronardi/Kuno Schedler, *New Public Management in Staat und Recht*, Bern 1998, S.47ff.

29) 자세한 것은 최유진, *입법과정상의 영향평가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

그러나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일찍부터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선진 외국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제영향평가제도가 정책형성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 분석내용의 질이 미흡하고 불충분하다는 점 및 분석결과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량 분석 중심, 정책형성과정에서의 규제영향평가서의 작성, 분석의 질 확보를 위한 경제학자 등의 참여활성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³⁰⁾

물론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모델은 없으며 각국의 정치나 법제구조, 각국정부의 목적과 우선과제에 따라 규제영향 분석의 요소나 방법도 달라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규제영향평가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문제의 특정과 그 정량적인 파악이며,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정책결정과 결부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규제영향평가제도를 가지고 사전에 규제의 직접적 효과나 간접적 효과를 완전히 조사하여 파악할 수는 없다. 또한 가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서, 각종 규제에 대해 강력한 행위강제 매카니즘으로서 규

연구원, 2011, 12면 이하 참조.

30) 영국에서도 1998년 8월 모든 규제도입에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채용하였으나, 이 제도는 ① 정책입안을 위한 엄격한 분석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인식이 불충분한 점, ② 규제영향평가는 대부분의 경우 규제를 도입하기 전의 최후의 장해로서 보고 있으며, 조기분석에 적절하게 편입되지 못한 점, ③ 대부분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의 명확한 진술이 없는 점, ④ 대안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은 점, ⑤ 비용편익에 관한 데이터 등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발견되지 않은 점, ⑥ 논거 및 증거에 접근할 수 없는 점, ⑦ 규제영향평가가 다른 문서작성과 중복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이 과제로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정부에서는 정책입안의 중심에 영향평가를 편입하고, 정책입안을 실증하는 경제적 및 기타 분석의 질을 개선하며 분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규제영향평가를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영향평가제도(Impact Assessment)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외,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 제도(Ⅳ) -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Ⅵ) -영국의 영향평가제도(개정판)**, 한국법제연구원 2007 등 참조.

제일몰제를 채용하게 되었다. 일몰제는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그에 대해 조기에 종료시킨다는 의미에서의 폐지에의 위협(threat of termination)을 강력하게 지향하는 제도인 만큼 규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은 매우 극단적인 규제개혁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극단성이 종전의 어떠한 규제완화수단보다도 규제개혁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규제일몰제는 국가의 규제를 양적으로 축소할 뿐 아니라, 유연성과 효용성이 상실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에 대해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이를 철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나 사회 및 행정의 활동가능성과 결정가능성을 높인다. 각각의 신설 규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을 확보하는데 일몰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규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기업이나 시민사회조직에 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에 일몰제는 그것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일몰제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갱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기존 절차를 강화하고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규제에 대한 일몰조항은 규제가 비용이 소요되고, 까다로우며 비효율적인 경우에 조기에 행동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의회에 의한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기회의 확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과 시민사회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규제의 접근방식에 대한 문화의 변모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다.³¹⁾

31) Bastian Jantz/Sylvia Veit, **Bessere Rechtsetzung durch Befristungs und Evaluationsklauseln. Empfehlungen zur Befristung von Bundesgesetzen in Deutschland auf Basis einer empirischen Auswertung internationaler Erfahrungen**, Gütersloh 2019, S.9ff.

3. 법령에 대하여 적용하는 방식

규제완화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다의적인 개념으로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을 달리한다. 즉, 규제완화의 의미를 시장에 대한 국가적 영향의 감소, 자유화, 민영화, 분권화, 자기책임의 재편 및 행정간소화 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를 법규범 총량의 감축, 법규범의 간소화, 법문장의 이해가능성의 제고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³²⁾ 이와 같이 규제완화라는 개념을 법규범 총량의 감소 내지 법규범의 간소화(Simplification)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합법성원칙의 한계내에서 규범적 내용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비국가적 법령 즉, 민간의 규범에 이전시킬 가능성(자율규제)도 포함한다. 이는 법규범의 수의 감축은 직접적으로 규제의 행정적 부담이나 내용적 부담의 감소에 기여한다는 가정이 표현되어 있다.

각국에서 법규범의 과잉화(Normenflut), 법화(Verrechtlichung), 법률의 인플레이(Gesetzesinflation) 현상이 특히 거론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이었다. 그 배경에는 당시 노동법, 회사법, 경제법, 사회법 등 사회개혁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의 결과 형성된 법화사회의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³³⁾ 법치국가에 있어서 공권력의 발동은 원칙으로 법의 형식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임무의 증대에 따라 법규범의 양도 증대함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국가임무가 증대하고 그에 따라 개인의 생활영역 중 법규범에 의해 규율받는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영역은 그만큼 축소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³⁴⁾

32) 예를 들면, Martin Attlmayr,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der Deregulierung**, in : Christoph Kleiser/Karl Lengheimer(Hrsg.), **Deregulierung - Die Herausforderung einer verständlichen und überschaubaren. Rechtsordnung**, St. Pölten 2002, S.106ff. ; Christoph Kleiser, **Deregulierung und Gemeinschaftsrecht**, in : C.Kleiser/K.Lengheimer(Hrsg.), **Deregulierung**, aaO., S.10ff.

33)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 71면 이하.

34) 박세진, **법규범의 과잉현상과 규제개혁의 필요성(법제시론)**, 법제 2008.3 참조.

또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입법을 하였으나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전문가조차 어떠한 법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며, 나아가 그들 법 가운데에는 졸속으로 입법된 것들도 없지 않아,³⁵⁾ 법규범의 과잉이 법치주의 그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염려가 있었다. 또한 법규범의 과잉화 경향은 의회유보라는 제도적 원인에 있기도 하지만³⁶⁾, 문제는 이들 법규범의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법규범으로 인하여 행정의 투명성 흠결, 법규범의 효과비용에 관한 의식의 결여, 제도적 통제장치의 흠결, 부처의 조직이기주의 및 다양한 이익단체의 활동 등과 같은 부작용들이 유발된다는 점이었다.³⁷⁾

이와 같이 국가에 의한 법규범의 확대 경향에 직면하여 각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과도한 법화에 따른 국가 내지 정치의 기능마비 내지 통치무능력현상을 비판하고, 법소재에 따른 규범정리, 규범증대의 억지, 입법적 부담의 경감을 지적하는 한편 나아가 법률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진단과 해명을 시도하고 있다.³⁸⁾ 특히, 현재와 장래의 법규범을 개선하고 법규범을 의미있게 구성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보다 더 잘 개관할 수 있고, 보다 더 이해가능하며 이용자에게 보다 더 친화적으로 될 수 있는 법규범을 구성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이를 통하여 경제와 사회 분야에 보다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며, 국가의 행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조건들을 개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범의 축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질적이고 종합적인 측

35) Joachim Jacob, **Das Unbehagen des Bürgers an seinen Gesetzen**, in : 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Hrsg.), Praxis der Gesetzgebung, Regensburg 1984, S.40f.

36) 이 문제에 관한 것은 박영도, **의회유보·행정유보의 의미와 입법적 시사점**, 월간 법제 2010.12., 83면 이하 참조.

37) Carl Dominik Frick, **Bürokratieabbau in Deutschland - Versinkt unsere Zukunft im Regelsumpf?**, Stiftung Marktwirtschaft - Frankfurt Institut, Nr.91, Berlin 2005, S.3.

38) 자세한 것은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 2002.3 참조.

면에서 보다 개선된 법규범을 지향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90년대부터 유럽연합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제시한 선진 규제(Better Regulation), 선진 입법(Better Lawmaking)이라는 슬로건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민이 불필요한 행정 비용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으나,³⁹⁾ 이를 위한 전제조건과 기반은 명확하고 단순하며 효율적인 규범정립에 대한 목표라고 부를 수 있다.⁴⁰⁾ 이를 위해 각국에서는 법규범의 실효성·효율성을 심사하고 실효적이 아닌 법률은 개폐하며 비효율인 법률은 효율화시키도록 많은 제도적 개선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에서의 선진규제 내지 선진입법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크게 법규범에 대한 “평가(Evaluierung)”라는 도구와 법규범의 간소화를 구체적으로 이행(konkrete Umsetzung)하는 도구로 구분된다. 법규범에 대한 평가도구로서는 예컨대, 소관 기관의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하거나 법률의 유효기간의 한시적 설정 또는 특정한 기준을 활용한 규범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 등과 같은 자동화(automatische)된 심사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법규범의 간소화를 위한 도구로는 재공시(수차례 개정된 법문장의 통합), 특별한 규제완화법의 제정, 한시법의 의도적 투입이나 의도한 문제제기에 기초한 법규범의 심사 등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식 일몰제를 관료주의 철폐와 규제완화에 이바지하고 법개선과 법간소화를 위한 절차로서 법규범의 효과적인 통제를

39) 선진 입법 내지 선진규제는 반드시 보다 적은 입법이나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 있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재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규제나 법규범을 만든다는 것이다. 신뢰성은 갖추더라도 복잡하지 않고 차별이 배제되는 규제와 법규범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0) Bertelsmann Stiftung(Hrsg.), **Better Regulation? Grundmerkmale moderner Regulierungspolitik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Zukunft Regieren Beiträge für eine gestaltungsfähige Politik, 1/2009, S.36f.

보장하는 광범위한 접근방식으로 파악하여, 선진규제 내지 선진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몰제를 어디에 또한 어떻게 이를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로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의회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정기적 심사에 중점을 둔 미국과는 달리, 법률과 법규명령 등에 일몰조항을 설정하고, 이들 법령에 대해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정기적인 관점에서 사후평가를 지향하는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일몰제나 일몰심사는 행정기관 및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특별한 법규범이나 법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설정된다.⁴¹⁾

원래 법률은 원칙적으로 그 유효기간에 관한 한정이 없고 이른바 항구적으로 타당한 특징적 속성을 가진다. 법률이 그러한 타당성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적용되는 동안 수범자에게 해당 법률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그러한 상황이 창출될 수 있는 때에만 원칙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이 법률을 제정하는 때에는 종래 해당 법률이 상정하지 않았던 상황의 출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기존법률이 개폐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종래의 법상황이 변화하는 때에 이루어진다. 입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상황의 변화는 수범자의 신뢰성에 커다란 영향을 부여하므로 신중하여야 하며 그 필요성이 충분히 심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러한 법상황의 변화가 초래하는 영향도 심사대상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법규범에 대한 일몰조항 내지 일몰제의 설정은 과도한 규율을 제거하고 자원의 명확화와 손실을 제거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향상되고 간소하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⁴²⁾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고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법규범이나 법규정을

41) Carl Böhrer/Werner Hugger, **Der Praxistest von Gesetzestwürfen**, Baden-Baden 1980, S.131f.

42)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34면 이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확실히 효과적인 입법관리를 위한 좋은 방안의 하나에 속한다.

Ⅲ. 행정규칙 일몰제의 의의와 특징

행정규칙 일몰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령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법령에 대한 일몰제는 현존하는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나 입법자로 하여금 반드시 폐지 또는 수정되어야 할 법령이나 법규정을 확인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이나 법규정들을 검토하여 남용되거나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법령집의 견실성을 증가시키는데 유용한 수단의 하나이다. 그런데 법령에 대한 일몰제 적용방식은 ① 헌법을 제외한 법률,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등 법규범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 ② 법률 및 법규명령에 적용하는 방식, ③ 법률의 하위규범인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에 적용하는 방식, ④ 행정규칙에만 적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첫째, 법규범 전체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법규범 전체의 숫자를 줄이고 그와 관련된 규제상의 부담을 축소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이는 법규범과 관련된 비용 대신에 법규범의 숫자(양적 측면)을 지향함으로써 다양한 법규범의 폐지나 결함을 위한 법통합작업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 사용되는 도구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법규범이나 법규정을 형식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는 법개선 법률이 있다.⁴³⁾ 이것은 장래의

43) 대표적 사례로서 오스트리아의 경우가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1996년 3월 제20차 입법기 동안 연방정부의 업무프로그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경제적 전망의 유인을 확보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법규정의 실효성, 필요성, 수범자 친화성 및 이해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위한 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수상청 헌법국은 그에 부응할 수 있는 구상을 작업하였다. 연방수상청 헌법국의 이 작업은 1996년 7월 연방정부에 의하여 채택되었고, 1999년 7월 “제1차 연방법개선법률(Erste Bundesrechtsbereinigungsgesetz)”이 마련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1946년 1월 1일 이전에 공포이후 부터 제1차 연방법개선법률이 통과된 시점에 발효

중단기의 양적이고 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또 다른 추진동력이 될 수 있다. 법개선을 통한 규제완화는 규범재고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동시에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⁴⁴⁾ 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법규범의 개별적인 영역을 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키며 편찬하는 것이다. 중복적인 규정들을 제거하는 한편 각종 모순이나 저촉되는 규정들을 개선하여 법령을 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성하고 법재고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⁴⁵⁾

중에 있던 연방의 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연방수상청 헌법국은 관련되는 규범자료들을 조사하여 당해 법령을 관할하는 연방 각 부처에 대하여 송부하면서, 개별적으로 어떠한 규정들이 그 집행을 위하여 불가결하고 따라서 여전히 발효되어야 하는지를 심사하여 헌법국에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회신에 기초하여 1946년 1월 1일 이전에 공포된 모든 연방법규범들이 1999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다만, 1946년 1월 1일 이전에 공포된 연방법규범이라 하더라도 제1차 연방법개선법률의 부록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법령은 폐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추진된 법개선의 방법론적 방식은 제21차 입법기 동안에도 지속되었다. 입법자는 “2001년 규제완화법(Deregulierungsgesetz 2001)”에서 법령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이 “아직도 필요하고 시의 적절한 것인지” 또는 다른 규율대안을 활용할 수 없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것을 명시적으로 명하였다. 그 이후 입법자는 2006년 규제완화법을 통하여 제1차 연방법개선법률을 다시금 원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1개 연방헌법률(Bundesverfassungsgesetz) 내지 헌법규정(Verfassungsbestimmung), 56개 연방법률 내지 당해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들, 140개 법규명령다음과 같은 법령에 대하여 폐지나 문장간소화의 방식으로 규제완화조치가 단행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50개의 행정내부 규정(Verwaltungsinteren Regelung)들도 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Waltraud Kotschy, *Lean Legislation. Das neue Konzept des Bundeskanzleramtes zur Rechtsbereinigung als Beitrag zur Verwirklichung einer schlankeren Rechtsordnung*, ZfV 1995, S.784ff 참조.

44) Helmut Hörtenhuber/Wolfgang Steiner, *Normsetzung und qualitative Deregulierung - Das oberösterreichische Modell zur Qualitätssicherung*, JRP 2002, S.7ff.

45) Nordrhein-Westfalen주 직무규칙(Gemeinsame Geschäftsordnung für die Ministerien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1991.5.16 제정, 2005.4.27 최종개정)에서는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고(제111조제1항), 여기에는 일몰제의 개념을 기간제한조항(Verfallsdatum) 또는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Berichtspflicht gegenüber dem Landtag)로 규정하고 있다(제111조제3항). 아울러 2011년말까지 일몰제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 의무가 존속하는 한 적절한 시기에 평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제111조제6항). 한편 Nordrhein-Westfalen주에서는 2004년과 2005년 동안 전체 주법을 개관하여 일몰조항 또는 행정의 주의회나 내각에 대한 보고의무를 정한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5개의 일몰법률을 제정하여 1,700개의 법률 및

둘째, 법규범 전체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하위규범인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또는 행정규칙에만 적용하는 방식은 그 기본취지는 앞서 살펴본 법규범 전체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⁴⁶⁾ 다만, 이 방식은 양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법규범 총량의 개선이라는 목표보다는 전통적인 규제수단인 명령과 규칙의 활용이 법규범의 복잡성을 불필요하게 증대시키거나,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절차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한 탈관료주의화 내지 관료주의철폐(Bürokratieabbau)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⁴⁷⁾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규범홍수 내지 법규범의 인플레이션상은 법규범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여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특히, 이 현상은 위임입법의 증대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사회·경제적 국가임무의 증대와 그에 대처하여야 할 전문·기술적이며 신속탄력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로의 위임은 현

법규명령 가운데 250개를 폐지하였다(15%). 그리고 810개의 법률 및 법규명령에 일몰조항이나 보고의무를 규정하였다(48%). 나머지 640개 법규범은 국가조약 및 자치법규(조합 및 단체)로서 일몰제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최근 법률에서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Klaus Schönenbroicher/Hoang Thi Thang Thuy, **Zum Stand der Gesetzgebungspraxis in Nordrhein-Westfalen und Vietnam. Übersicht und Zwischenbericht**, NWVBl. 2009/8, S.285 - 292. 또한 Andrea Becker, **Die Befristungsgesetzgebung in Nordrhein-Westfalen**,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Extra 17(2010.8), S.1-9 참조.

46) Schleswig-Holstein주에서는 법규명령에 대한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주 행정조직법(Landesverwaltungsgesetz) 제62조에서는 ‘법규명령에는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그것은 5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법규명령의 연장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후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제1항),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법규명령으로서 ‘유럽연합의 법령의 이행 또는 적용, 연방법령의 이행 또는 적용, 행정기관의 관할을 설정하거나 행정기관의 설립을 위한 것’을 열거하고 있다(제2항). 또한 ‘2004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2009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7) Michael Schorn/ Michael Richter, **Eine Definition des Bürokratiekostenbegriffs für Politik und Forschung**, 2. Auflage, Schriften zur Wirtschafts- und Politikforschung(Institut für Wirtschafts- und Politikforschung Richter & Schorn) Nr.1, Köln 2006 참조.

실기능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것은 법형식의 성격에도 적합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증대는 행정권에 의한 공적 개입과 관료주의적 결정권한의 확대를 야기하는 등 규제행정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공정한 행정운영과 효율적인 행정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 주목하여,⁴⁸⁾ 위임입법에 대한 일몰제를 통해 입법절차와 구조를 선진화하는 한편 위임입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행정규칙 일몰제는 “더 적고 선진화된 규제(Less and Better Regulations)”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양적인 규제완화(Deregulierung)를 위한 발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또 다른 추진동력이 될 수 있다. 행정규칙 일몰제는 양적인 의미에서 개선되어야 할 규범총량의 확인하여, 특히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포기할 수 있는 법규범의 폐지를 통해 그 숫자를 감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행정의 내·외부에서 불충분하고, 계량화할 수 없고, 융통성 없이 규범을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질적인 의미에서도 규범문장을 간소하게 하고, 규정들 간의 내용적 조화를 통하여 규범내용의 합리화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심층적으로 변경(법제도의 간소화 또는 당해 법제도의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규칙 일몰제는 합법성 원칙의 한계내에서 규범적 내용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비국가적 법령 즉, 민간의 규범 등에 “이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배경에서 행정규칙 일몰제는 선진 규제 내지 선진 입법의 조직적인 토대와 계속적 발전을 위한 관료주의 철폐의 핵심적 도구에 속한다.

48) 이 점과 관련한 상세한 것은 박영도,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참조.

제 2 절 주요 국가의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현황

행정기관이나 정책프로그램 또는 규제를 주된 대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일부 국가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으나, 법령에 대한 일몰제를 채용하고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법령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는 국가 가운데서는 대체로 법률뿐만 아니라 하위 법령인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국가의 법령 이외에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특히, 행정규칙에 한정하여 일몰제를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물론 규제=법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면 규제일몰제는 법령일몰제와 같은 의미와 목표를 가질 수 있고, 법령일몰제는 법적 차원에서의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포기할 수 있는 법의 폐지 및 법재고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법규범의 양적인 규제완화를 달성하고, 법령의 간소화와 내용적인 조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법규범의 질적인 규제완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설명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최근에는 광범위한 일몰제 대신에 개별 법령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한시조항의 설정이나 특정 법령이나 법령의 일부 조항에 대해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이후에 평가 내지 재검토를 하도록 평가조항을 도입하여 법령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제도를 많이 도입하는 경향에 있다.⁴⁹⁾

49) 이 연구에서는 일몰제 전반에 관한 검토가 아니라 행정규칙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독일, 호주, 일본의 사례와 최근동향을 언급하였다. 주요 국가의 일몰제 도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이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독일, 호주, 일본의 일몰제 도입경향은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85면 이하 참조.

I. 독일

1. 개요

독일은 주요한 법률영역에 대한 연방의 권한과 연방의회에 의한 공동규제에 의해 일몰제(sunset legislation)라는 제도는 연방차원에서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으나, 주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었다. 다수의 주에서는 지난 10년간 주의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일반적인 일몰제를 도입하였으나, 연방정부에서는 일몰제를 일시적으로 한정된 법률에만 활용하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 연방정부에서도 선진규제와 관료주의철폐 전략의 일환으로 일몰제를 진지하게 도입하기로 하고, 연방의 입법절차에 일몰제의 체계적 활용을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경우 2007년도에 연방차원에서는 총 1,813개의 법률과 2,771개의 법규명령이 존재하고 있었다. 게다가 주차원에서도 연방차원에 버금가는 법률과 법규명령이 존재하고 있었다.⁵⁰⁾

이러한 법화(Verrechtlichung) 경향은 연방주의 및 의회유보라는 제도적 원인에 있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들 법규정의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법규정으로 인하여 행정의 투명성 흠결, 법규정의 효과비용에 관한 의식의 결여, 제도적 통제장치의 흠결, 부처의 조직이기주의 및 다양한 이익단체의 활동 등과 같은 부작용들이 유발된다는 점이었다.⁵¹⁾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법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 및 주차원에서는 독일식 일몰조항으로서 한시조항(Befristungsklauseln)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⁵²⁾ 종전에는 한시조항제도는 단편적이고 부

50) Frank Frick/Tobias Ernst, **Argumente für Bürokratieabbau**, Bertelsmann-Stiftung, Gütersloh, 2005, S.1. 한편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독일의 입법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료주의철폐 전략에서 본질적인 목표대상은 법률과 법규명령이었으므로 일몰제에 관한 논의도 여기에 집중되었다.

51) Carl Dominik Frick, **Bürokratieabbau in Deutschland - Versinkt unsere Zukunft im Regelsumpf?**, Stiftung Marktwirtschaft - Frankfurt Institut, Nr.91(2005), Berlin S.3.

52) Werner Jann/Kai Wegrich/Sylvia Veit, **Verfahren und Instrumente erfolgreicher Deregulierung**, in : Stefan Empter/Frank Frick/Robert Vehrkamp(Hrsg.), Auf dem Weg zu

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실제의 효과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는 점 때문에 의회에서 이들 제도에 대한 시각이 그다지 호의적 입장이 아니었고,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보다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는데 그치면서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였다.⁵³⁾ 그러나 근래 이 제도는 법의 최적화를 위한 도구로서 범규범의 양적 완화를 해소시켜 주는데 기여하고, 보다 더 나은 그리고 더욱 이해하기 쉬운 규율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써 범규범의 준수가능성과 집행력을 장려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의 일몰제는 영미식의 규제일몰제와는 달리 법령(법률, 범규명령, 행정규칙)을 중심으로 법령 전체 또는 일부 법령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가지는 일반적 한시조항을 두고, 그 기간 경과후 재검토 내지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자동적으로 실효(Verfallsautomatik)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법령의 일부 조항에 대해 한시규정을 두어, 일정기간 경과후 재검토를 거쳐 유효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일부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식 일몰제는 연방차원보다는 주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이를 제도화하여 운용하고 있다.⁵⁴⁾

2. 도입현황

독일기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입법권한을 가지는 연방의 각 주들도 자신들의 주 입법의 질적 향상과 규제개혁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률 및 하위 규범에 대한 일반적 한시규정(Befristungsregelungen)

moderner Regulierung, Gütersloh 2005, S.47f.

53) Alexander Tot, **Befristung von Gesetzen**, Speyer Seminararbeit 2005.12. 학계에서도 한시조항이라는 예외규정의 설정은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54) Bastian Jantz/Sylvia Veit, **Bessere Rechtsetzung durch Befristungs- und Evaluationsklauseln. Empfehlungen zur Befristung von Bundesgesetzen in Deutschland auf Basis einer empirischen Auswertung internationaler Erfahrungen**, Bertelsmann Stiftung 2010.5., S.35ff. 또한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217면 이하 참조.

을 두는 일몰제 도입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일몰제라는 도구는 다양한 정치적 목적(법개선, 관료주의철폐 등)을 달성하는데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⁵⁵⁾

1990년대 말에 이르러 각주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존하는 법령에 대해 일반적인 일몰제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당시 얼마나 많은 행정규칙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로 행정규칙의 개념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에 있어서 통일적인 입장이 없었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en)이란 “행정기관 내부에서 상급 행정기관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행정활동(법집행, 행정절차, 재량권행사)에 즈음하여 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을 위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으로서 행정내부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⁵⁶⁾ 독일에서 행정규칙의 용어는 통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복무규정(Dienstanweisung), 고시(Erlasse, Rundschreiben), 회람(Schnellbrief),

55) Jörg Steinhaus, **Gesetze mit Verfallsdatum. Ein Instrument des Bürokratieabbaus**, Münster 2008, S.76f. 일부 주의 법규범에 대한 일몰제는 당초에는 법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설정되었으며, 정치적 동기로 설정된 것은 아니었다. 최근에는 일몰제가 정치적 제안으로 제기되면서 그 활용이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Bayern주는 2008년 CSU/FDP의 연립협정(Koalitionsvereinbarung 2008 bis 2013 zwischen CSU und FDP für die 16. Wahlperiode des Bayerischen Landtags)에서 법규범에 적절한 일몰조항의 도입을 검토하되, 장기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투자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표명한 바 있다. 또한 Schleswig-Holstein주에서도 2009년 CDU/FDP의 연립협정(Koalitionsvertrag zwischen der Christlich Demokratischen Union und der Freien Demokratischen Partei in Schleswig-Holstein für die 17. Legislaturperiode des Schleswig-Holsteinischen Landtags)에서도 현존하거나 새로운 규제에 대해 일몰제의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안이 있었다.

56) Niedersächsisches Vorschrifteninformationssystem(VORIS), Gem. RdErl. d. StK u. d. ür. Min. v.15.11.2005, Ziffer 2: 행정규칙이란 “행정내부의 다양한 사안을 규율하기 위한 추상적인 규율로서, 주행정기관 및 하급기관 또는 주공무원이나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를 보조하는 공공행정의 담당자의 결정(법집행, 재량권행사, 관할권 또는 행정절차)에 구속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내부조직, 개별 기관 또는 하부기관의 업무수행(업무분장, 관리계획, 업무수행규칙) 및 임금협정, 인가, 행정협정 기타 합의 등에 관한 규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분장계획(Geschäftsverteilungsplan), 조직령(Organisationsordnung), 공고(Rundverfügungen Merkblatt, Verlautbarung) 또는 그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⁵⁷⁾

비록 행정규칙이 행정내부적인 규율이기 하나, 조성규칙(Förderrichtlinien)과 같이 외부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일몰대상인 행정규칙의 파악은 단지 위의 개념적인 정의에서 뿐 아니라 다수의 주에서는 최근까지 행정규칙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기도 하였다.⁵⁸⁾ 그러나 다수의 주에서 일반적인 일몰의무제를 통해 법개선활동에 현저한 성과를 가져왔다. 아래의 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현재 독일의 각 주 가운데 6개주가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해 일반적인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를 채용하고 있는 주는 10개 주이다. 이들 주에서는 행정규칙에 대한 자동폐지 일몰제(Verfallsautomatismen)를 우선 도입하고, 그 후에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예컨대, Nordrhein-Westfalen주에서는 1961년부터 행정규칙 일몰제를 도입하였으며,⁵⁹⁾ Rheinland-Pfalz주는 1979년에,⁶⁰⁾ Baden-Württemberg주는 1981년에 도입하였다.⁶¹⁾ 기타 대부분의 주는 19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초기에 도입하였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57) Bundesministerium des Innen(Hrsg.), **Handbuch zur Vorbereitung von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2 Aufl., Bundesanzeiger 2012, S.145f.

58) 연방차원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2006년도에 개시되어 2007년 11월부터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연방의 모든 행정규칙을 망라한 것도 아니며, 조세행정규칙 데이터베이스(VV-Steuer), 사회법 및 노동법 행정규칙 데이터베이스(VV Sozial und Arbeitsrecht) 등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어서 이들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자료들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9) Verwaltungsverordnung vom 29.8.1961.

60) Verwaltungsanordnung zur Vereinfachung und Bereinigung der Verwaltungsvorschriften des Landes Rheinland-Pfalz vom 20.11.1979.

61) Anordnung der Landesregierung und der Ministerien über die Bereinig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des Landes vom 13.2.1979.

[각 주의 법령일몰제 도입 현황]

주 명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일반적 일몰제	행정규칙에 대한 일반적 일몰제
Baden-Württemberg	-	○
Bayern	-	-
Berlin	-	○
Brandenburg	-	(○)
Bremen	○	-
Hamburg	-	-
Hessen	○	○
Mecklenburg-Vorpommern	○	○
Niedersachsen	(○)	○
Nordrhein-Westfalen	○	○
Rheinland-Pfalz	-	○
Saarland	○	○
Sachsen	-	-
Sachsen-Anhalt	-	-
Schleswig-Holstein	(○)	○
Thüringen	○	○

(1) Baden-Württemberg주 사례

① 운용경과

Baden-Württemberg주는 1970년대부터 관료주의철폐의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의 행정개혁정책의 핵심적 부분으로 제시하였으나, 1970년대 말까지의 법간소화정책은 그 전제가 되는 법적인 기반이 결여된 상태였다. 그 후 1980년에 이르러 가시적인 법간소화법률(Rechts

bereinigungsgesetze)을 마련하면서 법률 및 법규명령의 숫자를 감축하는 작업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1979년 2월 13일 “주 행정규칙의 승인에 관한 명령(Anordnung der Landesregierung und der Ministerien über die Bereinig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des Landes)”을 마련하여, 1981년부터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 10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행정규칙 일몰제를 도입하였으며,⁶²⁾ 1997년에는 다시 7년간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그 결과 주 전체의 행정규칙 숫자를 약 3분의 1 정도 감축한 바 있다.⁶³⁾

한편 2000년부터 주정부에서는 규범숫자의 감축과 간소화가 관료주의철폐의 효과달성을 위한 본질적인 전제조건으로 인식하면서, 본격적인 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규제완화행동 2000(Deregulierungsaktion 2000)”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서는 각부처로 하여금 2000년 말까지 행정규칙의 숫자를 적어도 4분의 1 감축하도록 하고, 일정 숫자의 행정규칙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1991년 1월

62) Baden-Württemberg주에서는 1993년부터 주법 전체에 대한 법령정비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1993년 6월 29일 주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그룹을 조직하여, 광범위한 법령정비작업을 개시하였다. 이 프로젝트그룹에서는 법령정비를 위한 출발점으로써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을 제시하였다. 즉, ① 어떠한 규정들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불필요한가(규정이 법적인 효과면에서 진부하지 않은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아주 미약한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당연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② 어떤 규정들이 폐지되어야 하는가(불필요한 프로그램원칙이나 계획목표설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내용상 이중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은지, 매우 상이하고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너무 높은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지, 본질적인 내용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지, 비전형적인 사안을 예외나 제외를 통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행정절차법의 보충적인 효력 때문에 부득이하게 절차법적인 규정을 예상하고 있지 않은지, 다른 행정기관과의 과도한 협력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③ 어떤 규정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여러 행정규칙에서 통일적인 생활관계에 관한 규율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용어선택이나 문장구성 및 체제와 논리가 제대로 맞는지, 사안적으로 주제별로 관련되는 규정들에 동일한 용어가 존재하고 있는지, 각종 권한들, 행정기관표기와 소송절차가 서로 부합한지) 등을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였다. Baden-Württembergische Verwaltungspraxis 20, 1993.10. S.213ff.

63) Tobias Bräunlein, **Integration der Gesetzesfolgenabschätzung ins Politische Administrative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2004, S.142ff.

1일 현재 4.229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66% 철폐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4년 12월에는 새로이 “법령입안을 위한 명령(Anordnung der Landesregierung und der Ministerien zum Erlass von Vorschriften)”을 마련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명령은 과잉입법을 피하고 간단명료한 법규범을 마련하는 한편 주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관할 범위내 및 소속 행정관청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법규범을 제정하고, 그 규율밀도를 완화하도록 목적을 설정하였다. 특히, 행정규칙 일몰제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명령에서는 행정규칙의 의미를 “주정부, 주장관이 주행정관청이나 주의 감독을 받는 공법인, 영조물, 재단법인에 대해 발하는 기속력을 가지는 일반적·추상적 지시”로 정의하고, 행정규칙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그 명칭이나 공개여부가 아니라 규율내용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명령에서는 직무명령(innerdienstliche Anordnung)의 의미를 “내부운영, 근무과정, 감독, 근무자의 관리, 2개 이상의 주행정관청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되는 규율”로 정의하고, 어떤 규범이 직무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의문이 가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규칙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⁶⁴⁾

이 명령에서는 모든 행정규칙과 직무명령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효기간은 규율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즉, 공개되는 행정규칙이나 직무명령의 경우에는 최대 7년, 비공개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최대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비공개 행정규칙의 경우 유효기간경과 전에 4년까지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그 경우 유효기간의 최대 허용한도는 행정규칙 내지 직무명령의 일부 개정시를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부처가 파악한 공개 및 비공개 행정규칙과 직무명령의 숫자는 2000년 12월 31일 파악된 숫자를 초과할 수 없도

64)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독일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 법제처 2005.11 참조.

록 하고, 주정부는 지속적으로 행정규칙과 직무명령의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였다.

이 명령에서는 행정규칙과 직무명령에 관한 초안에는 해당 부처 내에서 일정한 심사기준과 규제영향분석(Regelungsfolgenabschätzung)에 따른 심사결과를 토대로 전문성 있는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엄격심사(Gegenprüfung)를 받도록 하였다. 이 엄격심사는 납득가능성에 근거하여 규율목적의 필요성, 규율범위와 강도, 종합적인 규율의 가능성, 규율의 효과, 규율에 대한 평가를 포기하는 이유, 유효기간 그리고 공개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에 발간하는 법령공포색인(Bekanntmachungsverzeichnis)에 수록되지 못한 행정규칙과 직무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정연도 또는 법령공포색인에서 누락된 연도의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한편 공포 후 7년 이상 경과된 행정규칙과 직무명령 및 3년 이상 경과되어도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비공개 행정규칙은 이미 이전에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각각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하는 자동실효제도(Verfallsautomatik)를 두었다.

또한 이 명령은 유효기간이 설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그 필요성(줄일 수는 없는지, 기준들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 모두 폐지할 수는 없는지), 여전히 효력이 있는지, 다른 실정법과 모순·저촉되지 않는지, 다른 규율과 종합하여 정리할 수는 없는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또한 예외적인 경우 연장하여야 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규율의 유효기간이 아주 단기간이거나 규율내용이 위와 같은 심사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의 실행은 조직적 조치에 따라 이루어지고 심사결과와 심사포기 이유에 관해서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명령의 시행으로 주정부에서는 2000년 1월 1일 현재 4,235개의 행정규칙을 2008년 12월 31일 현재 1,458개로 축소하였다.⁶⁵⁾

65) http://www.stm.baden-wuerttemberg.de/de/Meldungen/212575.html?_min=_stm&template=min_meldung_html&referer=103571

② 최근 동향

한편 2004년 12월에 마련한 “법령입안에 관한 명령”도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늦어도 2011년 12월 31일에 폐지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주정부에서는 이 명령에 대체하여 2010년 7월 27일 새로이 “규율입안에 관한 명령(Verwaltungsvorschrift der Landesregierung und der Ministerien zur Erarbeitung von Regelungen : VwV Regelungen)”을 마련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⁶⁶⁾

새로운 명령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규칙과 직무명령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행정규칙과 직무명령은 확정된 유효기간이 도래한 때에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한편 다만, 유효기간이 도래한 행정규칙이나 직무명령에 대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그 효력을 지속시키려는 경우에는 필요성·실질적 요건이나 절차를 최적화한 간소화 가능성·연관성·다른 규율과의 통합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 또는 직무명령에 대해 유효기간경과 전에 최대 7년까지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부처에서 공포한 행정규칙 및 직무명령의 숫자는 2008년 12월 31일에 확정된 숫자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로 해당 부처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행정규칙 일몰제가 적용되는 않는 경우로서는 i) 연방과 주가 통일적인 초안을 마련하거나 주 상호간에 장관수준에서 합의가 있는 경우, ii) 모든 자가 접근할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 편찬하여 계속적으로 보완되어 간행되는 경우, iii) 주기관의 설치, 조직구조 또는 관할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 하였다. 특히, 새로운 명령에서는 각 부처에서 행정규칙을 입안하는 경우, 그 초안에는 부처와의 협의

66) GABl. Nr.8, 2010, S.277.

개시 전에 표제부(Vorblatt)와 제안이유서(Begründung)에 규제영향분석 및 지속가능성심사(Nachhaltigkeitsprüfung)의 결과와 관료주의철폐·규제완화 및 과제철폐를 위한 주정부 조정관(Beauftragten der Landesregierung für Bürokratieabbau, Deregulierung und Aufgabenabbau : Landesbeauftragter für Bürokratieabbau)⁶⁷⁾의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행정규칙 초안이 관료주의철폐, 규제완화 및 과제철폐라는 관점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관료주의철폐 주정부조정관이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율입안에 관한 명령
(2010.7.27 제정, 2011.1.1 시행)

1. 내용 및 목적
이 명령은 규율의 입안에 수반되는 실제적이고 절차적인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 명령은 규율의 입안과 그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필요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의 원리를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념

2.1 규율(Regelungen)
이 명령에서 규율이란 법령, 행정규칙과 직무명령을 말한다.

2.2 법령(Rechtsvorschriften)
법령이란 법률(Gesetze) 및 법규명령(Rechtsverordnungen)을 말한다.

2.3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en)
행정규칙이란 주정부, 주장관이 주행정관청이나 주의 감독을 받는 공법인, 영조물, 재단법인에 대한 기속력 있는 일반적·추상적 지시(Weisungen)를 말한다.

2.4 직무명령(Innerdienstliche Anordnungen)

67) 이 기구는 2004년 7월에 설치된 독립된 옴부즈만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주정부에 의해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의 관료주의철폐, 규제완화 및 과제삭감에 대해 시민, 경제계, 자치단체나 일반단체 등으로부터 정책 비판과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이다. 주정부 조장관은 주, 연방 및 EU차원의 법령을 규제완화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직무명령이란 행정내부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되는 규율을 말한다.

3 적용범위

3.1 원 칙

이 명령은 주정부 및 개별 주장관들이 발하는 법률 및 행정규칙에 적용한다. 이 명령은 1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직무명령에도 적용한다.

3.2 예 외

이 명령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전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 및 조직(Behörden und Organisationen mit Sicherheitsaufgaben : BOS)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구급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규율과 긴급시의 규율
- 훈련, 학습,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

3.3 특정규정에서의 적절한 적용

이 명령의 4와 5.5는 하부 주행정기관에 준용한다. 4.3(규제영향분석 및 지속가능성심사)은 연방제안의 지침서와 주정부 직무규칙(Geschäftsordnung der Landesregierung) 제5조제1항 제2문 및 제3문에 따라 내각제안에도 준용한다.

4 기본원칙

4.1 규율의 필요성 및 규율단계(Regelungsbedarf und Regelungsstufe)

4.1.1 하나의 규율은 중대한 공익적 요청이 있거나 개인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만 제정되어야 한다. 규율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4.1.2 하나의 규율은 여러 규율단계들(법률, 명령, 행정규칙 또는 직무명령) 가운데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단계의 규율을 선택해야 한다.

4.2 규율내용 및 규율기술(Regelungsinhalt und Regelungstechnik)

4.2.1 규율은 간결하고 이해가능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부록 1의 규율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4.2.2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양적·질적 요구를 의미하는 인적·물적 제안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4.2.3 동일한 사안의 규율은 하나의 단일법(in einem einheitlichen Regelwerk)으로 종합하여야 한다. 이는 소재와 적용집단에게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규율의 집중화).

4.2.4 법률에는 현재 진행중인 사안으로서 변경이 요구되는 내용을 규율하여서는 안된다.

4.2.5 규율은 모든 가능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입안할 것이 아니라, 비정형적인 사안에 대해 적절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입안되어야 한다.

4.2.6 간소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절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2.7 절차상의 특별규정은 아주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마련되어야 한다.

4.2.8 법령에서 예외규정은 종전의 규율된 방식보다 다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도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법령에서 실험조항(Erprobungsklauseln)은 그 기한을 설정한다.

4.2.9 절차참가자를 위한 동의유보(Zustimmungsvorbehalt)는 불가피한 필요가 있지 않는 한 설정해서는 안 된다.

4.3 규제영향분석과 지속가능성심사

4.3.1 규율에 대해 특정한 대상 및 학제적 효과와 부수적 효과를 측정한다 (규제영향 분석). 여기에는 해당 제안이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조건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특히, 장기적인 영향이 제시되도록 한다(지속가능성심사)

4.3.2 규제영향분석 및 지속가능성심사는 부록 2에 제시한 규제영향분석 및 지속가능성심사 입문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여기서는 특히, 2003년 7월 9일의 내각결의에서 모든 정책 및 행정영역에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중요성을 제시한 내용을 명확히 언급한다.

4.3.3 소관 부처는 최초의 초안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입문서에 제시된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 목표영역을 보다 상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4.3.4 규제영향분석 및 지속가능성심사는 전체적으로 누가 언제 현저한 영향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예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가 언급되어야 한다.

4.3.5 규제영향분석 및 지속가능성심사의 결과는 입문서에 기초하여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는 심사의 전제가 된 가설, 추정치 및 산정방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4.4 심사, 유효기간

4.4.1 규율을 소관하는 부처에서는 적절한 시간적 간격으로 시행후 7년 이내 및 늦어도 매 7년마다 다음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 여전히 필요한지
 - 실질적 요건이나 절차를 최적화하여 간소화가 가능한지
 - 관련성이 있는지
 - 다른 규율과 통합할 수 있는지
- 심사 결과는 기록해야 한다.

4.4.2 4.3에서 언급한 규제영향분석 및 지속가능성심사가 실행된 규율에 대해서는 소관 행정부처에서는 규율로 인해 예상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한다. 검토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신뢰성있는 사정이 가능하도록 수행하고, 늦어도 효력이 발생된 후 7년 이내에 해야 한다. 검토결과는 문서로 기록한다. 목표에 도달하지 않은 규율은 이를 개선하거나 폐지한다. 해당 부처가 폐지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폐지를 제안한다.

4.4.3 모든 행정규칙과 직무명령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규칙과 직무명령은 확정된 유효기간이 도래한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4.4.1 또는 4.4.2에 따른 심사에서 행정규칙이나 직무명령에 대해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행정규칙 또는 직무명령의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의 최종일이 확정되어 공포되기전에 제2문의 기준에 의하여 유효기간경과 전에 최대 7년까지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5.2 및 5.3의 참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4.4 4.4.3은 다음의 행정규칙 및 직무명령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연방과 주가 통일적인 초안을 마련하거나 주상호간에 장관수준에서 합의가 있는 경우
- 모든 자가 접근할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 편찬하여 계속적으로 보완되어 간행되는 경우
- 주기관의 설치, 조직구조 또는 관할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4.4.5 모든 부처에서 공포한 행정규칙 및 직무명령의 숫자는 2008년 12월 31일에 확정된 숫자를 초과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로 해당 부처에서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5 절차(Verfahren), 의결(Abstimmung) [생략]

5.1 Ressortinternes Verfahren(부서내부절차) [생략]

5.2 주행정 내부의 참여(Beteiligung innerhalb der Landesverwaltung)

5.2.1 - 5.2.2 [생략]

5.2.3 법령 및 행정규칙의 초안에는 늦어도 5.2.1에 규정된 부처와의 협의개시 전에 표제부(Vorblatt)와 제안이유서(Begründung)에 규제영향 분석 및 지속가능성심사의 결과와 관료주의철폐·규제완화 및 과제 철폐를 위한 주정부 조정관(관료주의철폐 주조정관)의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행정규칙 초안이 관료주의철폐, 규제완화 및 과제철폐라는 관점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관료주의철폐 주조정관(Landesbeauftragte für Bürokratieabbau)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5.3 주행정 외부의 참여(Beteiligung außerhalb der Landesverwaltung), 공청회 (Anhörung) [생략]

5.4 내각제안(Kabinettsvorlagen), 정부안(Regierungsentwürfe) [생략]

5.5 편찬 및 색인(Veröffentlichung und Verzeichnisse) [생략]

6 경과 및 종결규정(Übergangs- und Schlussvorschriften)

6.1 2005년 1월 1일 이전에 공포된 행정규칙 및 직무명령은 4.4.3에서 제시한 최대 유효기간이 도래한 날의 연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4.4.4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2 이 명령은 2011년 1월 1일부 시행한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04년 11월 23일의 Anordnung der Landesregierung und der Ministerien zum Erlass von Vorschriften (Vorschriftenanordnung - VAO)은 폐지한다.

(2) Hessen주 사례

① 운용경과

Hessen주에는 관료주의타파와 의미있는 규범심사를 위한 도구는 기업 및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행 주법에 규정된 행정비용을 1%만 감축하더라도 주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주정부에서는 이를 위하여 모든 행정절차의 단순화 및 합리화, 자유롭고 유연하며 책임감있는 업무수행, 법령에 대한 일몰제, 불필요한 법령의 폐지,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관료주의타파를 위한 주요정책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주정부에서도 1990년 이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2배로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감축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정부에서는 법령의 숫자를 감축하여 시민 및 기업에게 이해가능성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1999년부터 규범심사위원회(Normprüfungskommission)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행정간소화 검토회(Arbeitsgruppe Verwaltungsvereinfachung : AVV)를 두었다. AVV는 각부처와 협력하여 법률,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의 존속필요성과 효과성 통제를 위한 평가작업을 수행하여, 제1차 평가단계(1999년-2000년)에서 법규명령 15%(177개), 행정규칙 39%(3,404개)를 폐지하였다.⁶⁸⁾ 또한 규제완화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2000년 11월 28일 “행정규칙 정비명령”을 마련하였다.⁶⁹⁾

여기서는 일부 행정규칙을 제외하고 1999년 7월 1일 이전에 제정된 모든 행정규칙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그 이후에 제정된 것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기간의 계산은 해당 행정규칙이 서명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중에 행정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해당 개정은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규칙으로서 연방과 주 또는 주상호간의 통일적인 규율이 합의된 경우나 그 적용범위가 합리

68) HESSISCHER LANDTAG, Drucksache 16/8288(2007.12.3), S.15ff.

69) Gemeinsame Anordnung zur Bereinigung der für die Geschäftsbereiche des Ministerpräsidenten und der Ministerinnen und Minister erlassenen Verwaltungsvorschriften vom 28. November 2000.

적이 아니어서 새로운 공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소관 부처와 법령 준비를 총괄하는 부처인 주 내무·스포츠부장관(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Sport)과의 협의로 해당 기준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행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명령의 적용을 받는 모든 행정규칙을 입안하는 경우 AVV에 그 초안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에는 특히, 법령 및 기준의 감축을 목적으로 행정규칙의 필요성·합목적성·비용효과성·이해가능성 및 적용적합성에 관해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 심사기준은 앞서 살펴본 새로운 시행일을 정하는 행정규칙에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규칙의 입안에 즈음한 유의사항으로서, 행정규칙의 개정은 그 자체로서 이해가능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의 광범한 개정 및 빈번한 개정은 피하도록 하는 한편 내용상의 변경사항은 적합한 형식 예컨대, 해당 사항에 밑줄을 긋거나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효력이 상실된 행정규칙은 해당 행정규칙의 종결규정에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1년 10월 16일 내각결의로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해 원칙적으로 5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들 법령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의 도래에 즈음하여 필수적으로 필요성·집행적합성·합목적성 및 비용효과면에서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2002년 5월 14일의 내각결의에서는 관할 부처가 확정된 모든 한시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해 주인트라넷에 게시토록 하는 집중등록제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령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유효기간 만료전에 해당 규정이 검토되고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2005년 5월 주정부에서는 그동안 내각결의로 시행되어온 사항을 제도화하여 “주정부 직무규칙(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Ministerien des Landes Hessen : GGO)”을 제정하여 규범심사를 위한 전문부서의

설치, 모든 신규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5년간의 유효기간의 설정 및 유효기간의 경과 후의 심사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중반부터는 “Vorschriften-TÜV”를 위한 제2차평가작업(2005년-2007년)을 개시하여 법률 9개, 법규명령 23개, 행정규칙 454개 등 486개의 법령을 폐지하여 2007년 12월 1일 현재 법률 345개, 법규명령 996개, 행정규칙 1,292개를 유지하였다.⁷⁰⁾

② 최근동향

정부에서는 법령에 대한 일몰제의 지속적 추진과 제도화를 위해 마련한 2005년의 “주정부 직무규칙”을 새로이 재편하여 2010년 12월 13일 “공통직무규칙(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Staatskanzlei und der Ministerien des Landes Hessen sowie der Hessischen Landesvertretung : GGO)”을 마련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몰제 관련 내용은 종전의 2005년 직무규칙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새로운 직무규칙에서도 종전의 직무규칙과 마찬가지로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다.

공통직무규칙
(2010.12.13 제정, 2011.1.1 시행)

제59조(법률의 사전심사 및 법률초안의 심사, 일몰규정의 심사 및 기한통제)
(1) 수상청에 설치된 규범심사처(Normprüfstelle)에서는 법규정 및 기준(Stan-

70) Hessen주의 결과를 보면, 동 주의 163개의 주법률 및 378개의 법규명령에 대해 2005년-2009년의 기간동안 일몰제를 적용하였으며, 법률의 4분의 1과 법규명령의 29%에 대해 일몰기간의 만료 또는 폐지하였으나, 법률의 3분의 1과 법규명령의 37%은 간략한 개정이나 개정없이 기간이 연장되었다. 나머지 법률의 42%와 법규명령의 34%는 평가 후에 개정되거나 개정없이 기간이 연장되었다. 유효기간연장법에 대한 의회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매우 드물다. 2009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지된 34개 Hessen주의 주법률에 관한 표본 조사에 의하면, 이들 법률의 대부분인 70%가 의회에서의 토론없이 연장되었으며, 다른 법안과 관련하여 7건의 의회토론이 있었으나, 이 토론은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였고, 법안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ard)의 감소라는 목표 하에 법률의 필요성, 합목적성, 비용효과성, 이해 가능성 그리고 집행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기관에는 관할 부서의 동의를 얻어 참가여부를 결정한다. 부록 4에 병행적 규정통제를 위한 심사목록(Die Prüfliste zur begleitenden Vorschriften- kontrolle)을 첨부한다. 내각에 대한 제안서에는 이러한 심사가 시행되었으며, 그 심사결과에 관해 기술되어야 한다.

(2) 규범심사처는 일몰규정(befristeter Vorschriften)에 관한 심사(사후적 입법평가)에도 관여한다. 규범심사처는 늦어도 법률의 효력기간의 만료 18개월 전에 일몰대상 법률과 법규명령의 심사를 위한 양식(서식 5)을 첨부하여야 한다. 규범심사처는 관계 장관들의 동의 하에 심사에 즈음한 심사항목과 범위를 확정한다.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부서가 내각에 직접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관할 부서는 규범심사처에 평가(Evaluation)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는 해당 규범의 조항이 삭제될 수 있는지 또는 규범의 효력이 지속되는 경우에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에 관해 언급하여야 한다. 규범심사처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추가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4문을 적용한다.

(4) 관할 부서는 법률 및 법규명령관보 제1부에 소관사항에 속하는 한시규정을 공고하고, 수상청에 설치된 정보은행은 기한의 연장 또는 중지 에 관한 적기의 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한통제를 수행한다.

제66조(입안 및 개정) 법규명령의 입안은 제31조, 제38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을 준용한다. 한시적 법규명령은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7조(법적 심사) 모든 법률 및 법률 및 법규명령 관보 제1부에 게재되는 모든 법규명령은 연방법무부에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제58조를 준용한다.

한편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는 2000년 11월 28일에 마련한 “행정규칙 정비명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침(Gemeinsamer Runderlass)을 2010년 8월 24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⁷¹⁾ 이 지침은 앞서 살펴본 공통직

무규칙(GGO) 제59조에 규정된 규범심사처의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심사요령, 한시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사후심사로서의 사후적 입법평가(Ret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요령,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요령 등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규칙에 관한 심사부분을 발췌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부 법령통제 입문(Leitfaden für das Vorschriften-Controlling)

A. 법령(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심사 [생략]

B.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

I. 병행적 법령통제(Begleitende Vorschriftenkontrolle)

수상 및 장관, 수상청이 발한 모든 공개 및 비공개 행정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즈음한 심사는 A의 1을 준용한다. 행정규칙이란 하급행정기관에 대해 발하는 모든 일반적·추상적 명령(Anordnungen)을 말한다. 이 지침은 개별 사안에 관한 규율에는 언급하지 아니한다.

II. 한시적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

1. 유효기간에 관한 원칙

a) 모든 행정규칙은 해당 행정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해에 효력을 상실한다. 유효기간의 산정은 서명한 날부터 적용한다. 행정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해당 개정은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B의 1에 따른 모든 행정규칙에 적용되는 유효기간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a) 다음 사항영역과 관련된 행정규칙

- (1) 정치적 자유권
- (2) 배상
- (3) 부담균등화
- (4) 전쟁희생자를 포함한 전쟁피해

71) Gemeinsamer Runderlass des Ministerpräsidenten und der Ministerinnen und Minister zur Einführung eines Leitfadens für das Vorschriften-Controlling, 2010.8.24.

- (5) 전쟁포로의 보상 및 지원
 - (6) 피난민 및 난민
 - (7) 기본법 제131조의 적용을 받는 자의 법률관계
 - (8) 조 세
 - (9) 헌법수호
 - (10) 기밀문서 및 기밀문서의 건명과 분류에 관한 모든 행정규칙
 - bb) 1945년 5월 8일 이전의 다음 행정규칙
 - (1) 라이히노동부장관의 교대작업규칙(RABL. III S.8)
 - (2) 1939년 10월 16일의 라이히주택에 관한 부담금(RABL. S.505)
 - cc) 기본법 제85조제2항(연방위탁행정)에 따라 일반적 행정규칙을 대체하는 행정규칙
 - c) 다음의 행정규칙
 - aa) 연방과 주 또는 주 상호간에 통일적인 규율이 합의된 경우
 - bb) 그 적용범위가 합리적이 아니어서 새로운 공포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관 부처와 주 내무·스포츠부(법령정비부서)가 협의하여 해당 기준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행일을 정할 수 있다.
 - d) 행정규칙의 개정시 공포문에는 다음 사항을 확실히 한다. c)와 aa)의 사항을 다시 점검하여 해당 부처가 편집한 공보에 발간하며, 해당 부처의 공보에는 개정조항의 주석을 게재할 수 있고, 개정문을 주석으로 대체하여 발간할 수 있다. 주석에는 개정일자와 그 출처를 기재한다.
2. 한시적 행정규칙의 심사
- a) II의 1 a)에 따른 모든 행정규칙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한시 규정심사를 위한 첨부문서(GGO 제59조제2항에 따른 부록 5)를 규범심사처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시에는 법령과 각종 기준(Standard)의 감축을 목적으로 행정규칙의 필요성, 합목적성, 비용효과성, 이해가능성 및 적용적합성을 검토한다. 이는 II의 1 c)에 따른 행정규칙의 새로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II의 1 c), aa)에 열거된 적용제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범심사처는 심사할 수 있다.
 - b) 규범심사처에서 해당 행정규칙에 대해 수행한 필요성, 합목적성, 비용효과성, 이해가능성 및 적용적합성심사와 관할 부처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는 규범심사처의 제안에 대해 내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처는 내각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III. 행정규칙의 입안 및 공포

1. 행정규칙의 입안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a) 개정은 그 자체로 이해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규칙의 광범위한 개정 및 빈번한 개정은 피하여야 한다. 내용상의 변경사항은 적합한 형식 예컨대, 해당 사항에 밑줄을 긋거나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한다.
 - b) 효력이 상실되는 행정규칙은 해당 행정규칙의 종결규정에 명확히 제시한다.
2. 법령정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규칙은 Hessen주 관보(Staatsanzeiger) 또는 별도의 Hessen주 부처관보(Amtsblatt)에 게시한다. 그 내용이 엄격한 기준을 포함하여 게재하는 것이 합목적적이 아닌 행정규칙은 제외한다.

IV. 관보게재

공포된 행정규칙은 부처의 관보로 게재한다. 관보명칭은 “Amtliches Verzeichnis hessischer Verwaltungsvorschriften(Gültigkeitsverzeichnis)”으로 하고, 연보로 발간한다.

C. Hessen주 자금조성 프로그램의 평가

새로운 법 및 행정규칙에 하나 또는 다수의 자금조성 프로그램(Förderprogramme)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4년 6월 12일의 내각결의(부록)에 따라 해당 자금조성 프로그램의 보고서를 규범심사처에 송부한다.

이것은 해당 법 또는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의 연장이나 개정에도 적용한다. 자금조성 프로그램이 사전에 평가범위내에서 검토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조성프로그램의 평가결과에 재정 및 효율성비율의 현황 및 전망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규범심사처는 실제에 있어서 해당 조성의 효과를 심사한다. 이 경우에는 특히, 자금조성 프로그램의 집중화, 합리화 및 간소화와 목표달성의 가능성을 심사한다.

여기서 자금조성 프로그램이란 주의 모든 자발적 급부 및 법정 자금조성으로서 그 관리가 행정부문의 재량에 맡겨진 것을 말한다.

다음의 자금조성조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a) 해당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이 1년에 한정된 것

- b) 조성규모가 5,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것
- c) 유럽연합이 독자적으로 조성한 것

제 2 부

2000년 11월 28일의 행정규칙 정비명령(StAnz. 2001 S. 506)은 폐지한다.

제 3 부

이 지침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Wiesbaden, 24. August 2010

(3) 기 타

① Mecklenburg-Vorpommern주

- 주정부 업무규칙⁷²⁾에서 일시적인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몰 조항을 인정하고 있고, 비한시적인 유효기간을 두는 특별히 중요한 이유(헌법 및 법적 지위에 관한 규율 또는 조직법적인 사안 및 유효기간이 없는 상위법의 이행을 위한 경우)가 없는 한 법률, 법규 명령 및 행정규칙에 일몰조항을 설정하도록 규정(제3조제6항제1호).
- 일몰조항은 관할 부처에서 적절한 시점에 해당 규율이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존속할 필요성이 더 이상 없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법률의 경우에는 업무규칙 제7조제2항제2문에 규정된 내용의 목표달성도를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심사에서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효과성(Wirksamkeit) 또는 효율성(Wirtschaftlichkeit)이 증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개정을 하도록 규정(제3조제6항제2호), 일몰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법령은 이 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늦어도 매 5년마다 관할부처에서 해당 법령의 존속 필요성에 관해 심사(제3조제6항제3호).

72)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II, 2008.12.2.

제 2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의의와 특징

- 행정규칙의 초안은 특히, 그것이 적합성과 필요성의 관점에서 법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행정기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담보하는 것인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존하는 다른 규율로서 대체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심사하도록 규정(제16조제1항제2항).
-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제16조제3항), 행정규칙은 관보에 게재되어야 하며, 규범심사처(Normprüfstelle)는 그 초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제16조제1항 및 제3조의 기준을 적용(제16조제4항).
- 특히, 다수의 부처 또는 전문가, 단체, 조직 및 기타 기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행정규칙이 주예산에 직접적인 재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관 부처에서는 독자적인 재량으로 해당 규율이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내각이 검토하는 부문을 제외하고 해당 행정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제16조제5항).

② Niedersachsen^{주73)}

- 일찍부터 지속적인 법개선을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였으나, 법규범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일몰은 추진하지 않고 새로운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제정 또는 현존 법규범의 개정시에 사안별로 일몰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몰제를 도입.
- 주정부 업무규칙이 아닌 수상훈령(Rundschreiben der Staatskanzlei, 2004.3.11)으로 내각이 제안하는 주정부 법률안 또는 법규명령안의

73) Niedersachsen주에서는 관료주의적 장벽을 철폐하는 것은 경제와 지역사회 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였다. 동 주는 2007년 독일의 경제연구소가 2,500개 기업과 유관 기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독일 16개주 가운데 가장 관료주의가 약한 주(bürokratiearmes Land)로 최고 등급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동 주에서는 규제완화와 관료주의철폐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법령의 수감축(Reduzierung des Vorschriftenbestands), 실질적 규제완화에 관한 사전절차(Vorhaben zur inhaltlichen Deregulierung)의 도입, 시범자치단체법(Modellkommunen-Gesetz)의 제정, 표준비용모델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일반적 이유서와 장관의 명령으로서 수상의 서명이 요구되는 문서인 내각제출문에는 일몰제를 도입하지 않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최장 5년의 시한을 두도록 요구.

- 법률의 경우 일몰법률의 심사는 적시에 심사가 실행되어야 하고, 관련된 규율은 시간적인 개입이 없더라도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일몰기간만료 늦어도 6개월 이전에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에서의 평가에 의거한 기간연장에 관한 논의가 보장되는 것을 지향.⁷⁴⁾
- 수상청의 소관 참사관은 소관 부처에게 매년 초에 모든 행정규칙에 관한 전자목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해당 연도말에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를 하도록 요구하여 소관 부처로 하여금 조기단계에서 개별 행정규칙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적시에 새로운 행정규칙으로 업데이트하여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예외적인 사례로서, 2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허용되나, 이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⁷⁵⁾

③ Saarland주

- 주정부 업무규칙⁷⁶⁾ 제12a조(기업에 대한 관료주의비용 및 일몰제 심사)에서 법률안 및 법규명령안의 입안에 있어서는 일정한 심사 기준(Prüffragen)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제1항), 법률 또는

74) 이 배경에는 일몰제의 의미와 양립하지 않는 것은 늦어도 연장법률(Verlängerungsgesetze)에 의해 승인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 놓여있다. 개별 전문부서에는 유효기간이 설정된 법령의 평가를 소관한다.

75) 최근 Niedersachsen주에서는 VORIS라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법개선작업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 시스템에는 법률,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의 전문에 수록되어 있고 행정규칙의 규모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부터 2010년에 걸쳐 현재의 법률을 12%, 법규명령 16%, 행정규칙 57%를 감소하였다. 한편 Niedersachsen주에서는 2010년 1월 1일을 시점으로 효력을 발하는 모든 행정규칙의 44%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2010년 3월 23일 현재). Schriftliche Auskunft Niedersächsische Staatskanzlei.

76) Geschäftsordnung der Regierung des Saarlandes(GOReg, 2005.2.15 제정, 2012.5.9 최종개정)

법규명령의 제정이나 개정작업에 있어서 해당 부처로 하여금 기업에 미치는 관료주의비용의 측정을 위해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또한 2015년 12월 31일 까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입법계획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해당 부처로 하여금 그 이유를 특별히 제시하도록 규정(제3항).

- 탈관료주의 절차의 중요한 단계로서 보다 적고, 이해가능한 행정 규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99년 1월의 내각결의로 부처 내부의 작업그룹으로서 “행정규칙 및 기준(Verwaltungsvorschriften und Standard)”을 설치하고, 행정규칙 철폐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 원칙적으로 5년간의 자동효력 상실일몰제 도입을 결의하고, 기존의 행정규칙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 도래시에 그 정당성과 필요성 심사를 하도록 요구.
- 현재 존재하는 모든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999년 현재 3,346건의 행정규칙을 발굴, 재무부, 내무부 및 법무부의 부처 책임자와 담당부서 책임자, 수상청 관계자로 구성된 작업그룹에서 해당 행정규칙에 대해 3가지의 검토관점(1980년 이전에 채택된 규정, 1990년 이전에 채택된 규정 및 1990년 이후에 채택된 규정)을 가지고 분류작업과 검토작업을 수행.⁷⁷⁾
- 2004년에 1999년 초에 존재하였던 약 3,346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조세와 통계분야의 행정규칙을 제외하고 약 1,100개로 감축하는 등 전체 행정규칙의 숫자를 약 3분의 2 정도 감축하는 한편⁷⁸⁾ 행정

77) Saarland주에서는 작업그룹 “Verwaltungsvorschriften und Standards”에서 갈등사안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갈등의 경우 전문부서는 이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 행정규칙이 효력을 발하기 전에 해당부처의 장관과 협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10년간의 경험에서도 이 사례는 한번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그 효과도 거의 없었다.

78) Staatskanzlei Geschäftsstelle Modernisierung der Landesverwaltung, Kurzbericht zur Modernisierung der saarländischen LandesverwaltungStand, 2006.3.27, S.25ff.

규칙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규칙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가적인 서비스기능을 갖춘 접근가능한 데이터베이스(Elektronisches Verwaltungsvorschriften Informationssystem Saarland : ELVIS)를 구축하여 2005년부터 일반인에게도 공개.

④ Thüringen주

- 2002년 12월 10일과 17일 그리고 2003년 11월 18일의 내각결정에서 주법무부에 소속된 “규제완화, 법개선, 법평가국(Stabsstelle Deregulierung, Rechtsvereinfachung, Rechtsfolgenabschätzung)⁷⁹⁾으로 하여금 특히, 행정규칙, 법규명령 및 법률의 존속 이외에도 새로이 공포된 모든 행정규칙 그리고 법률과 법규명령의 새로운 모든 초안들을 규제완화, 합목적성, 비용의 관점에서 심사하도록 요구.
- 2005년 1월 25일의 내각결정에서 모든 새롭게 제정되는 행정규칙 들은 공포 또는 공고전에 확인을 위하여 “규제완화, 법개선, 법평가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행정규칙의 조항에는 “자동폐지(Verfallautomatik)”와는 별개로 기한설정규정(5년)을 두도록 하는 한편 제안서에는 “규제완화, 법개선, 법평가국”에서 개발한 심사서(Prüfkriterienkatalog)를 기재하여 첨부하도록 요구.
- 2004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규제완화, 법개선, 법평가국”에서는 570개의 행정규칙, 314개의 법규명령 그리고 132개의 법률 등 전체 1,016개의 법령을 심사하여 66개의 행정규칙과 15개의 법규명령 그리고 12개의 법률에 일몰제를 적용.⁸⁰⁾
- 일몰제가 배제되는 행정규칙에는 연방통일적 또는 주로 다른 주에서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주 상호간에 적용되는 규정, 조성규정으로

79) 종전 Thüringen주 주수상청 직속으로 설치되었던 독립 본부였던 “행정간소화/탈 관료주의화 부서”는 2004년 8월 1일부터 주법무부에 소속된 “규제완화, 법개선, 법평가국(Stabsstelle Deregulierung, Rechtsvereinfachung, Rechtsfolgenabschätzung)”으로 대체되었다.

80) Bürokratieabbau in Thüringen - Teil II, Justizministerium, 2009.4.28.

연방통일적인 사항, 주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조성계획 또는 EU 조성계획하에 적용되는 규정 기타 하나의 특정행위에 한정된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규칙 등으로 규정.⁸¹⁾

3. 평 가

독일의 각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행정규칙 일몰제는 오래되거나 시대착오적인 행정규칙의 체계적인 폐지(법개선)와 개선을 위한 대안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 기존 행정규칙의 체계적인 재검토(선진 입법)라는 두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현재 행정규칙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들은 일몰제라는 도구가 법개선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철폐에 기여하고 법규범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통제를 보장하는 것으로 위치되고 있다.

복잡하고 실행이 어려운 정책목적인 간소화조치 및 관료주의철폐라는 슬로건 하에 행정규칙 일몰제에 관한 법적 기반의 구축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형식, 평가조항 또는 보고의무의 형식에 관한 매카니즘이 적절한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행정규칙에 대한 일반적 일몰의무의 점검을 위해 일몰제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행정내부적인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있다. 행정규칙 일몰제를 도입한 결과 부처의 업무수행에서 변화된 입법문화(veränderten Normsetzungskultur)를 관찰할 수 있었고, 주의 행정규칙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행정규칙 일몰제가 관료주의타과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도구인지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많다. 독일의 실무가들은 일반적인 일몰제는 그 편익과의 적절한 관계가 없어서 추가적인 관료주의 부담을

81) Schriftliche Auskunft Thüringer Justizministerium, 2010.3.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특히,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은 행정부문에서 항상 작업부담을 가져오고, 추가적인 관여가 필요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유효기간을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 도구의 광범한 활용은 단순히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연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경과 후에 폐지되는 일몰제는 보편적인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의 절차에는 가능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활동의 명확성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행정규칙 일몰제의 의도는 일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가 원칙적으로 완전하고 일관된 효과가 도출되도록 심사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행정규칙이 존속되어야 하고 폐지될 수 없다는 내용이 제안이유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제안이유서에 일몰심사항목(Prüfkriterien)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발생한 비용의 관점에서 해당 행정규칙이 기업 및 시민에 대한 효과가 현저하게 증대되었는지가 정확하게 계량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행정규칙 일몰제를 도입한 독일의 각 주에서는 대체로 일반적인 일몰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유효기간의 제한을 설정한 한시적 행정규칙을 포함한 전체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의 비중은 주마다 현저하게 다르다. 일부 주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 도입이 낮은 이유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일부 정치적인 결정절차를 통해 실행되는 행정규칙들은 특별한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특수한 전문기관과 전문정치인들이 포함된 영향력있는 전문정치적 연합체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들은 전문적으로 그 권한범위내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몰제의 전면적 도입이 쉽지 않다.

현재 행정규칙 일몰제에 대해서는 부처내부의 규범심사를 통한 입증책임 강화, 긍정적 관료주의철폐효과, 불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효력철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통해 “정치적 불신감” 현상의 증대에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⁸²⁾

II. 호 주

1. 개 요

일반적으로 호주에서의 일몰제는 미국과 달리 의회의 영역외의 행정기관이 발령한 위임입법(Subordinate Legislation, Legislative Instrument, Statutory Instrument)⁸³⁾에 대한 의회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호주에서 위임입법은 의회제정법에서 입법권한을 위임한 자 또는 기관⁸⁴⁾이 제정하며, 위임입법의 명칭은 각 주마다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주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는 ① By-laws(조직내부의 직원과 관련하여 규율하는 위임입법 또는 지방정부 영역에 적용되는 것을 지칭), ② Codes of Practice(특정 법률하에 제정된 위임입법의 일부유형), ③ Disallowable Instruments(일정 기간내에 의회의 양원에 제출이 요구되는 위임입법 유형으로서 양원에 의해 부결될 수 있음), ④ Guidelines(일부 주에서는 수권기관이 상업적 또는 민간활동의 특정 영역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⑤ Orders(법률의 시행을 개정하거나 법률의 특정

82) Vortrag Dr. Klaus Schönbroicher(Innenministerium Nordrhein-Westfalen), Workshop “sunset Legislation” der Bertelsmann Stiftung am 12. März 2010 in Berlin.

83) 영미권 국가에서의 위임입법(Delegated legislation)이란 제1차 입법(primary legislation) 즉, 국회제정법(Act of Parliament) 등 상위적 입법(supreme legislation)에 의한 입법권의 위임하에서 정립된 것으로서, 중위입법(Subordinate Legislation), 2차적 입법(Secondary Legislation)이라 한다. 위임입법에는 order, rule, regulation, scheme 등의 형태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의회제정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이 해당 제정법을 보완하는 세칙을 정하거나 그 시행과 관련한 한정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들 위임입법은 대부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우리의 경우와 다르다.

84) 위임입법 제정권자의 명칭은 주지사(Governor, Governor-General), 장관(Ministers of the Crown), 연방 및 주정부기관(Commonwealth or State Government agencies), 지방정부 및 법원규칙 제정위원회(local government bodies and Rule Committees of courts)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조항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⑥ Orders in Council(주지사 또는 내각에 의해 제정되는 것), ⑦ Regulations(관할권과 관계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위임입법으로 By-Laws와 달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 ⑧ Rules(연방 또는 주 법원의 규칙위원회에서 특정한 절차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 ⑨ Statutory Instruments(주차원에서 의회제정법의 수권하에 제정되는 법적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⑩ Statutory Rules(regulations, by-laws, rules, ordinances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 등이 있다.

또한 이들 위임입법이 일정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광범위한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위임입법은 일정한 기간내에 폐지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5년-10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폐지(automatic sunset)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위임입법을 재도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Regulation Impact Statement : RIS) 을 의무화하고, 이 의무적인 재검토 절차를 거쳐 해당 위임입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Acts of Parliament)의 경우에는 일몰제나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수의 법률에서는 재검토조항을 두고 있다.

2. 도입현황

위임입법에 대한 일몰제도입은 연방 차원 보다는 주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특히, 1984년에 빅토리아(Victoria)주에서는 공공분야에 상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위임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하는 “위임입법법(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85.7 시행)”을 제정한 이래 현재 각 주에서도 이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 주 차원에서는 현재 효력을 가지는 각종 하위법령의 숫자를 줄이고, 시대착오적인 법령과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위임입법에 대한 의회통제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주정부의 위임입법의 제정절차와 위임입법의 제정에서

의 공중참가절차, 그리고 일몰제라고 일컬어지는 위임입법의 자동폐지 (Automatic revocation) 및 기한연장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방차원에서도 의회제정법의 위임아래 행정부가 제정하는 각종 위임입법이 1980년대에서는 연간 약 800건에서 2000년대에 이르러 2배 이상인 연간 수천백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의 위임입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3년 12월 17일 “위임입법법(The Legislative Instruments Act 2003, 2005.1 시행)”을 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위임입법을 제정하는 기관의 초안수준의 고도화, 제정 이전의 관계기관과의 적절한 협의, 위임입법과 그 제정취지 설명서의 연방관보 등록의무, 연방의회에 의한 위임입법의 심사강화, 위임입법 일몰제 (sunsetting) 등을 규정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이 법의 두드러진 특색은 위임입법의 일몰제에 관한 규정으로서, 모든 위임입법은 법 제54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한 날의 4월 1일 또는 10월 1일에 실효되도록 하였다. 위임입법을 제정한 기관이 위임입법의 계속적 검토를 하는 경우에도 이 일몰제규정에 의해 시대에 뒤떨어진 위임입법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행정부에서 신중한 위임입법제정을 촉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⁸⁵⁾

[위임입법 일몰제 도입 현황]

	주 명	관련법령 및 개요
연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Legislative Instruments Act 2003 • 모든 Legislative Instruments은 법 제54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한 날의 4월 1일 또는 10월 1일에 실효

85) Moira Coombs, **Legislative Instruments Amendment(Sunsetting Measures) Bill 2012**, Bills Digest No.177(2011-12), 2012, p.3.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른 법제개선편안, 131면 이하 참조.

	주 명	관련법령 및 개요
주	Victo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 주의 모든 Statutory rule은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폐지 • 소관하는 장관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The Governor-in-Council(주지사와 일부 장관으로 구성된 내각회의)은 장관의 요청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해당 법령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은 1회에 한함
	South Austral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78 •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regulation 가운데 일부 regulation을 제외하고 모든 regulation은 제정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연도의 9월 1일자로 자동적으로 폐지 •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2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총 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New South Wa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89 • 모든 statutory rule(일부 예외있음)은 제정된 날로부터 5년 후에 자동적으로 폐지 • 소관 장관은 해당 statutory rule을 재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비용편익분석을 토대로 한 Regulatory Impact Statement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존속, 보완 또는 폐지를 결정
	Queens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utory Instruments Act 1992 • 모든 statutory instrument, statutory rule, subordinate legislation은 자동폐지에 일정한 예외를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정된 날로부터 10년 후의 9월 1일자로 자동적으로 폐지 • 자동폐지의 예외를 정한 위임입법은 예외사유가 종료된 날에 폐지, 자동폐지예외 위임입법 가운데 통일 위임입법(uniform subordinate legislation)의 경우에는

제 2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의의와 특징

	주 명	관련법령 및 개요
		5년간 존속후 폐지, 기타 자동폐지예외 위임입법은 1년간 존속후 폐지
	Tasma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2 • 1995년 3월 13일 이후 제정된 모든 subordinate legislation 은 제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폐지
	Western Australi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pretation Act 1984 • subsidiary legislation에 대한 의회제출제도가 존재
	Northern Terr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pretation Act 1978 • regulation에 대한 의회제출제도가 존재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gislation Act 2001 • disallowable instrument, subordinate law에 대한 의회 제출제도가 존재

(1) 연방의 사례

① 운용경과

1992년 연방정부에서는 “연방기관의 규칙제정(Rule Making by Commonwealth Agencies)”이라는 보고서에서 연방의 위임입법과 관련한 다수의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위임입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a) 공식적인 공중참가절차의 결여, (b) 위임입법의 입안과 관련한 질적인 담보장치의 미비, (c) 위임입법에 대한 접근불가능, (d) 위임입법에 대한 의회심사의 불규칙적인 적용, (e) 성격상 입법부 또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위임입법의 존재, (f) 위임입법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확보할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었다.⁸⁶⁾

86) Administrative Review Council, **Report to the Attorney-General. Rule Making by Commonwealth Agencies(Report No.35)**, Canberra 1992.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위임입법의 제정에 있어서 공중참가를 향상시키고, 그 질적 및 접근가능성을 개선하는 한편 효과적인 의회심사 및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상하였다. 1993년 하원의 상임위원회인 ‘법제 및 헌법문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권고를 발전시킨 보고서 “Clearer Commonwealth Law”를 발간하였다. 위원회의 제안은 위임입법의 일몰제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특히, 위임입법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간소하게 제정하고 보다 나은 협의제도를 설정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었다.⁸⁷⁾ 위임입법에 관한 최초의 법안은 1994년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1996년의 총선으로 심의되지 못하였다. 두 번째 법안이 1996년에 제출되었으나 하원에 의해 부결되었고, 1998년에 이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심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 이후 2003년 1월 26일에 수정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어 2003년 12월 17일 “위임입법법(The Legislative Instruments Act 2003 : LIA)”을 제정하였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모든 위임입법(이 법률에 의해 적용제외대상이 되는 위임입법은 예외)에서 일몰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그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임입법의 관보(Federal Register)게재시에 부가적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의회에의 심사를 위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 법률에서는 모든 기관으로 하여금 일몰제에 부합하는 법적 효과성·명확성을 증진하기 위한 높은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유효기간 만료된 규제에 대해서 이를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규제영향분석(Regulation Impact Statement : RIS)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규칙제정자들에게 위임입법의 제정전에 적절한 협의와 공중에의 접근성 향상, 위임입법에 대한 의회심사절차를 규정하였다. 한편 이

87)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Committee on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Clearer Commonwealth Law Report of the inquiry into legislative drafting by the Commonwealth**, Canberra, 1993.9.

법률의 성립과 함께 2003년 LIA를 시행하는 하위 법령이 마련되어,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The Legislative Instruments Regulations 2004). 이 법령은 LIA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내용과 연방관보에의 등록에 관한 사항, LIA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 및 LIA에 규정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는 위임입법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임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은 연방재정 및 규제완화부(Ministry of Finance and Deregulation)에 속한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OBRP)⁸⁸⁾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Best Practice Regulation Handbook”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⁸⁹⁾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요구내용은 모든 부처에 의무적이며, 하급행

88) <http://www.finance.gov.au/obpr/about/> OBRP은 각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의 검토를 포함한 선진규제정책의 총괄기관이다. 이 기관은 각부처의 규제영향분석 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차원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지원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 각 부처의 비용편익분석 작업을 지원하고 교육훈련도 수행한다. OBRP는 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서, 모든 부처는 OBRP의 지원으로 조기에 평가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OBRP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각부처의 규제 제안 및 현존 규제의 심사(규제영향분석이 요구되는지 여부 포함)에 대한 적절한 질적 통제메카니즘에 관한 조언, ② 규제영향분석이 정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및 비용편익 및 리스크분석의 적절한 질적 수준을 포함한 정확한 분석수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의사결정자에게 조언, ③ 행정기관에게 기업준수비용을 평가하는데 조언하고 규제비용측정도구인 기업비용환산식(Business Cost Calculator : BCC)을 유지하는 것을 조언, ④ 사후이행심사(Post-implementation Review) 및 연간규제계획(Annual Regulatory Plan)을 포함한 다른 규제메카니즘의 관리, ⑤ 범정부적 협의(consultation) 원칙의 개선 및 정책개발절차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이해관계자와의 최선의 협의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제공, ⑥ 규제제안의 정당화를 위한 평가 요구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지침서 제공, ⑦ 담당 공무원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및 협의절차에 관한 기술적 지원의 제공, ⑧ 규제영향분석 및 협의, 일반적인 규제개혁정책 전개에 관한 정부의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연간보고, ⑨ 모든 규제영향분석 자료의 온라인 등록 유지, ⑩ 부처간 회의 및 국가차원의 기준설정기구인 정부간회의(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에서 해당 기관이 규제를 제정할 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의 제시 및 조언, ⑪ 주 및 자치단체의 규제개혁동향의 모니터링, 호주와 관련되는 다른 국가들의 규제개혁동향 모니터링.

89) Australian Government, **Best Practice Regulation Handbook**, Canberra 2010.6. (<http://www.finance.gov.au/obpr/proposal/gov-requirements.html>)

정기관 뿐 아니라 규제 of 신설, 심사 및 개선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 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의 수행은 위임입법 뿐 아니라 일차적 입법(Primary Legislation)도 포함된다. 제안된 법률은 규제영향분석이 요구되나, 수상이 예외적인 여건(exceptional circumstances)이라고 선언하거나 추가적인 의무적 평가가 요구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의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효과 및 필요한 경우 기업에게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후이행심사(post Implementation Review)의 과정을 거쳐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RIS) 항목]

<p>1. 문제 (Problem)</p>	<p>RIS는 대책이 요구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의 규모와 크기에 관한 증거 제시 • 문제에 대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부의 모든 차원에서의 현존하는 규제에 관련된 자료 • 문제가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왜 정부가 행동하여 그것을 저감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관련되는 리스크의 설명 • 현존하는 규제 및 다른 리스크 문제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정부의 조치에 명확한 사례의 제시
<p>2. 목적 (Objectives)</p>	<p>정부의 조치의 목적, 성과, 목표와 대상을 설명한다.</p>
<p>3. 대안 (Options)</p>	<p>RIS는 비규제, 자율규제(self regulatory) 및 공동규제(co-regulatory) 등 일련의 실행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특정해야 한다. 현재의 여건을 제외하고 하나의 대안만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고려하는 경우, RIS는 단지 두 개의 대안을 고려하는 것보다 정당화되어야 한다.</p>

<p>4. 영향분석 (Impact analysis)</p>	<p>RIS는 실현가능한 대안의 비용 및 편익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안에 의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의 집단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미치는 현저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특정한다. • 수용가능한 차원의 증거, 적합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모든 대안에 대해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 • 비즈니스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각 대안에 대한 비즈니스준수비용의 효과를 정량화한다 (BCC를 사용하거나 OBPR이 승인한 것과 상응하는 것) • 제안의 심각성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현저한 비용 및 편익을 정량화한다. • 규제의 목적이 리스크를 저감하는 것이라면 각 대안에 대해 비용과 편익이 포함된 관련 리스크를 저감하는 정도를 분석한다. • 대안들의 개인 및 기업의 누적 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다. • 관련된 국제기준에 관한 자료, 제안된 규제가 관련된 국제기준과 다를 경우 그 시사점 확인 및 변동의 정당화 • 제안된 규제가 경쟁의 제한의 신설 또는 지속일 경우, 단지 경쟁제한에 의해 달성하려는 정부의 목표의 제시 • 핵심적 추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및 데이터에서 명확히 확인된 차이의 제시
<p>5. 협의 (Consult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목적의 개요를 제시 • 어떻게 협이가 행해졌는지를 서술한다(정책개발절차의 단계에서 협이가 행해진 것, 일정, 협의방법을 포함). • 실질적 불일치를 포함 협의된 관점의 표현 • 위의 관점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관한 개요 • 완전한 협이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그 합리적인 설명의 제시

6. 결론 및 권장안 (Conclusion and recommended option)	RIS는 선정된 대안에 관해 명확한 의견표명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이유도 제시되어야 한다. RIS에는 제안이 비용보다 큰 공동체에 대한 편익 및 선정된 대안이 모든 영향을 고려할 경우 공동체에 최고의 순편익에 관해 제시해야 한다.
7. 이행 및 심사 (Implementation and review)	RIS는 선정된 대안이 어떻게 실행되었고, 관찰되었으며 검토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문별로 선호된 대안과 현재의 규제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② 최근동향

2003년 LIA 제59조에서는 2008년 3월 31일까지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위임입법의 시행과 관련한 검토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기구에서 위임입법의 시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 및 법무장관이 특정하는 사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LIA 심사위원회(Legislative Instruments Act Review Committee)”가 구성되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2009년 “2003년 LIA 검토에 관한 보고서(2008 Review of the Legislative Instruments Act 2003)”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현재의 LIA에서 규정된 일몰제에 대해 “LIA에 규정된 일몰규정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법무장관은 각 부처에 대해 위임입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는 원칙의 확립, 모든 위임입법은 지속적인 심사 및 폐지에 복종하도록 할 것, 일몰조항의 지속적인 운용과 실행에 관해 시의적절한 준비의 필요성 등에 관해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위임입법이 일몰기간을 경과하여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위임입법을 실제적으로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⁹⁰⁾

90) Attorney-general’s Department, **Review of the Legislative Instruments Act 2003**, Canberra 2008.

이 보고서에는 위임입법에 관한 일몰조항의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LIA의 시행일이 2005년부터 이고 또 10년 주기의 일몰제를 규정함으로써 2015년에 이르러 최초의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주로 규제와 관련된 유관 기관, 단체 등의 정형화된 인터뷰 및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은 단지 부정확한 평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의 일몰절차의 본격적 개시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위원회에서 내부논의에서는 일부 관료들은 그들의 책임영역에서는 규제가 전혀 없어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거나, 가끔 그것이 있더라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 개진되었다. 다른 한편 담당기관에서는 일몰의 주기가 5-10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한정된 시간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자원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한편 연방정부의 경제·사회·환경정책분야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조사하여 연차보고서 및 연구보고서를 간행하고 정부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독립기관인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 PC)에서는⁹¹⁾ 2011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 “규제개혁의 확인과 평가(Identifying and Evaluating Regulation Reforms)”에서 2005년의 LIA 시행시에 일괄 등록된 그 당시 유효하였던 기존의 위임입법이 근래 실효기간을 일제히 맞이하는데 관해 규제개혁과의 관계에서 강한 우려를 제시하였다. 즉,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LIA에 의해 실효가 예상되는 위임입법은 약 6,300건에 달하며 그 대부분은 2018년 4월까지 실효가 예정되었다.⁹²⁾

LIA에 의하면 실효가 예정되는 날의 18개월 전에 실효되는 위임입법의 목록을 의회에 제출하고(제52조), 의회는 목록 가운데 효력을 존

91) <http://www.pc.gov.au/>

92) Productivity Commission, **Identifying and Evaluating Regulation Reforms (Research report)**, Canberra 2011, p.27.<<http://www.pc.gov.au/projects/study/regulation-reforms/report>>

속시켜야 할 위임입법을 그 후 6개월 이내에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3조). 따라서 실효예정인 대량의 위임입법 목록이 의회에 제출되는 기한이 2013년 중에 임박하여, 다수의 위임입법이 충분한 심사를 받지 않고 또한 규제대상인 경제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적절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실효 또는 다시 제정될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위임입법 일몰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 사전에 널리 일몰입법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할 것, ㉡ 공중이 알 수 있도록 일몰예정 입법에 대해 늦어도 18개월 이전에 일몰시간표를 작성할 것, ㉢ 일몰 이후에 입법의 검토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패키지를 가능하게 할 것, ㉣ 규제 또는 부담이 고비용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필터링 또는 심사절차를 확보할 것, ㉤ 경제계 및 단체가 참여하는 심사평가제도와 규제에서 제시된 조치를 광범하게 검토하여 일몰제를 강화할 것, ㉥ 규제자에게는 강도 높은 영향검토를 위해 규제를 재설정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규제영향분석의 기초하에 규제가 재설정되거나 개정되도록 할 것 등이다. 아울러 연방정부로 하여금 2005년 LIA의 시행시에 대량 등록된 위임입법에 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도록 그 주기를 조정하도록 하고, 일몰입법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성이 보장된 절차를 확립하도록 LIA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정부에서는 LIA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12년 5월 하월에 2012년 LIA 개정법안을 제출하였으며,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Act No.135 of 2012). 제안당시 Nicola Roxon 법무장관이 의회에서 행한 법안취지설명에 의

하면,⁹³⁾ LIA의 중점 개정사항은 크게 네가지 면으로서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일의 분산화로 한꺼번에 대량의 위임입법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종전에는 LIA의 시행 이후에 개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오래된 위임입법의 실효일의 산출이 복잡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향후에는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위임입법은 관보에 등록된 날짜에 의해 실효일이 결정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2005년 LIA 시행시에 대량 등록된 위임입법에 관해서는 1940년대 이전 제정된 것은 2015년 중에 실효되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제정된 것은 2019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실효일을 정하는 등 제정연도의 오랜 순서로 실효되는 것으로 하였다(제50조).

[2005.1.1 등록된 위임입법 실효일]

번 호	위임입법 제정연도	실효일
1	1930년 이전	2015. 4. 1.
2	1930년 1월 1일부터 10년까지	2015. 10. 1.
3	1940년 1월 1일부터 10년까지	2016. 4. 1.
4	1950년 1월 1일부터 10년까지	2016. 10. 1.
5	1960년 1월 1일부터 10년까지	2017. 4. 1.
6	1970년 1월 1일부터 10년까지	2017. 10. 1.
7	1980년 1월 1일부터 10년까지	2018. 4. 1.
8	1990, 1991, 1992, 1993, 1994	2018. 10. 1.
9	1995, 1996, 1997, 1998, 1999	2019. 4. 1.

93) Nicola Roxon(Attorney-General) Second reading speech, Legislative Instruments Amendment (Sunsetting Measures) Bill 2012, House of Representatives Debates, 23 May 2012, p.5209.

번 호	위임입법 제정연도	실효일
10	2000, 2001, 2002	2019. 10. 1.
11	2003, 2004	2020. 4. 1.

둘째, 법무장관에게 위임입법의 내용에 관련한 심사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LIA에 추가(제51A조)함으로써 관련되는 위임입법의 실효일을 동일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과 아울러 해당 위임입법의 규제대상의 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내용심사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생산성위원회 보고에서 지적된 우려에 대응하게 되었다.

셋째, 관보의 위임입법판에 등록되어 있는 현행 위임입법의 약 4할을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행정명령(개정조항만이 있는 것 등)을 개정 등이 종료된 다음 실효시키도록 하기 위한 규정의 정비이다(제48A조). 다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법시행후에 제정되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이다.

넷째, 위임입법과 동시에 제정당국이 작성하여 관보에 등록하고 의회에 제출할 의무를 지는 제정취지 설명서(Explanatory statements)의 기재요건을 종전보다 명확히 하였다(제26조제1A항부터 제1D항). 종전에는 이 제정취지 설명서가 모순되는 기재가 다수 있었으나, 그 기재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이나 업계단체가 위임입법의 이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게 되고 규제내용의 이해도가 증진되도록 하였다.

(2) Victoria주 사례

① 운용경과

Victoria는 주차원에서 최초로 1980년대부터 위임입법 일몰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후 1994년에 “위임입법법(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을 제정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광범위한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위임입법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제5조). 다만, 소관 장관은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실효되는 위임입법을 대체하려는 의도하에 제안된 위임입법을 제정하는데 시간이 불충분한 경우 또는 실효되는 위임입법을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 기간동안만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인증(extension certificate)을 발할 수 있다. 이 연장인증은 그 특수한 여건을 특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소관 장관이 연장인증을 발하기 전에 수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관 장관의 연장인증에 대해 내각(The Governor-in-Council)은 해당 위임입법에 대해 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특정하여 해당 위임입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규칙(연장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연장인증에 따라 해당 위임입법은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제5A조).

그리고 이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임입법을 제안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Statement : RIS)을 의무화하고 있으며(제7조),⁹⁴⁾ 규제영향분석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또한 비용편익분석에는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자원허용비용(resource allocation costs)을 포함한 행정 및 준수비

94) 다만, 해당 위임입법이 ① 공공부문에 현저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경우, ② 법원 또는 심판원의 절차, 지침 또는 법원이나 심판원의 비용과 관련된 규칙일 경우, ③ 기본적인 선언(fundamentally declaratory) 또는 기술적 성격인 경우, ④ 주예산과 관련하여 회계연도의 시점에서 재무부에 의해 승인된 연간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규모로 단순한 요금인상일 경우, ⑤ 연장규칙인 경우, ⑥ 국내 통일입법체계가 요구되어 그 체계하에서 비용편익분석이 수행된 때, ⑦ 2004년 공공행정법(Public Administration Act 2004)의 의미 내에서 부서 또는 지명된 기관, 2005년 의회행정법(Parliamentary Administration Act 2005)의 의미에서의 부서의 행정관리 또는 행정절차를 규정한 경우, ⑧ 위임입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가 공고된 경우 등은 소관 장관이 규제영향분석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또한 수상은 서면으로 제안된 위임입법이 규제영향분석과 부합하지 않는 공공이익의 요구사안으로서 특별한 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특정하여 규제영향분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용도 측정되도록 하는 한편 소관 장관으로 하여금 규제영향분석의 정확성 담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목 적
- 효과에 관한 설명(현재의 위임입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시행에 관한 효과가 포함)
- 현재의 위임입법상의 요금(fee)을 개정하는 경우, 현재요금과 제안된 요금과의 비교표, 각 요금의 증감에 관한 퍼센트의 기재
-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실행가능한 수단(다른 규제 및 비규제적 대안을 포함)
- 비용편익분석(assessment of the costs and benefits) 및 동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실행가능한 수단의 비용편익분석
- 다른 수단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에 의해 특정된 다른 요소
- 제안된 행정입법의 사본

Victoria주의 모든 위임입법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수상 및 내각부(Department of Premier and Cabinet)에 소속된 “The Office of the Chief Parliamentary Counsel : OCPC)”에서 주관하고 있다.⁹⁵⁾ 한편 위임입법에 관한 규제영향분석 등 주의 규제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전담부서로서 “경쟁력 및 효율성위원회(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 : VCEC)”를 설치하고 있으며,⁹⁶⁾ VCEC에서 작성한 “규제 입문서(Guide to Regulation)”⁹⁷⁾에서는 위임입법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은

95) OCPC는 주 입법에 대한 초안작성 및 정부간행물 제작과 주입법의 편찬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OCPC는 내각(Governor in Council)에 의해 승인되거나 제정된 모든 입법위임을 관리한다. OCPC는 각부처의 위임입법안을 내각에 제출하기 전에 체계, 자구 등 입법기술적인 측면 및 합법성 등에 관해 검토한다 (<http://www.ocpc.vic.gov.au/CA2572B3001B894B/pages/home>). 한편 OCPC에서는 위임입법의 작성 및 심사방법 등을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부처내부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Office of the Chief Parliamentary Counsel Victoria, **Notes for Guidance on the Preparation of Statutory Rules**, 2012.6.

96) http://www.vcec.vic.gov.au/domino/web_notes/vcec/vcecweb.nsf

97) 이 입문서는 2007년에 마련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 위임입법법의 일부개정(2011.

그 유효기간만료 이전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VCEC는 가능한 조기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VCEC로 하여금 이들 분석절차에 조기 단계부터 조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에서는 대안적 해결수단을 모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수집 가능한 자료 및 광범위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편익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동연장을 위해 시장구조의 변화, 기술발전 및 사회적 기대감 등도 심사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문서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개시와 위임입법의 제정에 최소 6개월을 권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위임입법법에 따라 적어도 28일의 공중참가(public consultation)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문서에는 각 부처는 적어도 60일의 공중참가를 권장하고 있다.

② 최근동향

Vicoria주에서는 1994년 위임입법법을 2010년 10월 대폭 개정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일부 규정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2년 9월 의회의 법제심사위원회(Scrutiny of Acts and Regulations Committee of the Parliament : SARC)에서는 “1994년 위임입법법의 문제점(Inquiry into the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Statutory rules이 아니므로 1994년 위임입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위법령(legislative instruments)의 증가를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SARC는 입법적 성격을 가지는 이들 legislative instrument를 1994년 위임입법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등 다수의 제안을 하였다. 그래서 개정된 위임입법법에서는 1994년 위임입법법에 법률(Act) 또는 위임입법(statutory rule)에 따라 제정되는 일반적으로 입법적 성격을 가지는 legislative instrument의 제정절차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7.1 시행)으로 2011년 8월에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Victorian Guide to Regulation. Edition 2.1**, Melbourne 2011.8.

아울러 statutory rule에 적용되고 있는 협의, 인증, 공포 및 심사절차 등을 legislative instrument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으며,⁹⁸⁾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1994년 위임입법법의 적용을 받는 legislative instrument는 법률(Act) 또는 statutory rule에 따라 제정된 입법적 성격(legislative character)을 가진 것만 해당된다(제3조). legislative instrument의 정의는 포괄적이지는 않으나, 순수한 행정적 성격(administrative character)을 가진 것을 포함하여 특정 유형의 것은 제외된다. 제외되는 특정유형은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⁹⁹⁾ 따라서 각 부처는 해당 법령이 1994년 위임입법법의 적용을 받는 legislative instrument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한다.

해당 legislative instrument가 1994년 위임입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입법적 성격을 판단하는데 모든 관련된 요소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결정전에 법적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규제입문서의 부록(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Guidelines)에서는 입법적 성격을 판단하는데 관련 요소를 예시하고 있다. 이번의 개정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임입법에 관해 그 시행전에 그들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98) Sunordinate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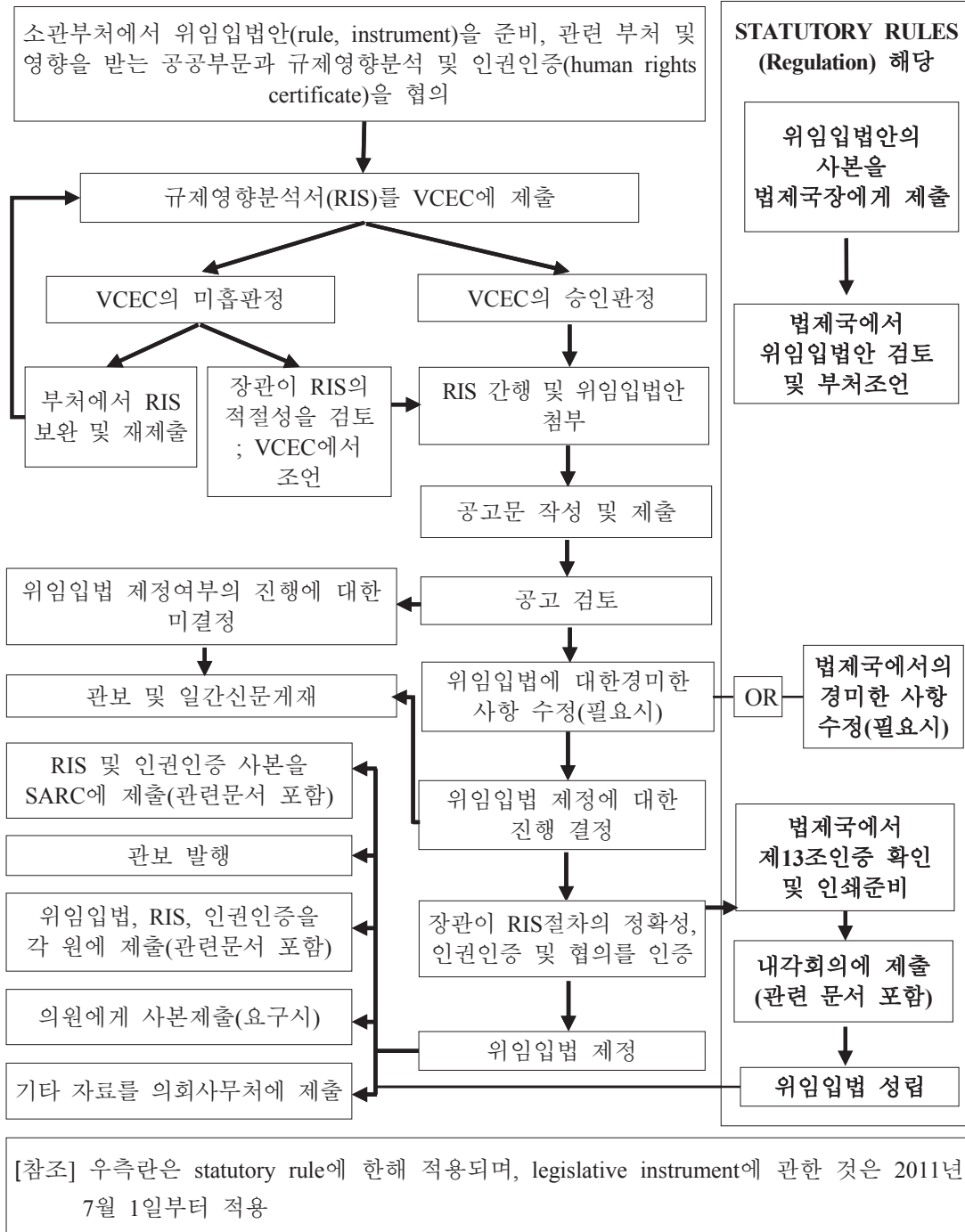
99) 신설된 제3조제2항에서는 적용제외되는 것으로서 ① 위임(delegation)된 사항을 정한 것, ② 증거 확인서(evidentiary certificate), ③ 임용 또는 임용조건이나 임용기간의 변경에 관한 것, ④ 다른 규칙(instrument)의 제정에 관한 통지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것, ⑤ 대부, 면허 또는 허가의 승인, 갱신, 변경, 전환, 중단 또는 취소나 특정 법인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하게하거나 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게 하거나 대부, 면허 또는 허가의 승인, 갱신, 변경 또는 전환을 거부하는 것, ⑥ 특정 법인에 대한 등록 또는 등록거부에 관한 것, ⑦ 특정 법인에 대해 등록의 갱신, 변경, 전환, 중단 또는 취소를 하거나 특정 법인에 대해 등록의 갱신, 변경, 전환, 중단 또는 취소를 거부하는 것, ⑧ 특정 법인에 대한 대부,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의 조건을 부과하는 것, ⑨ 법률, 위임입법 또는 다른 법률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 또는 강제행위를 주된 목적으로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Victoria주에서는 일몰제를 규제부담 감축제안(Reducing Regulatory Burden Initiative)의 하나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 제안에 의하면 주정부는 주의 규제에 의한 행정부담을 2006년 7월부터 향후 5년간 25% 감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일몰제가 규제에 의한 행정부담을 감축하는데 훌륭한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담이 높은 분야에 대해 평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VCEC와 함께 행정부담 감축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한편 VCEC는 정기적으로 일몰규제의 목록을 간행하고 있다.¹⁰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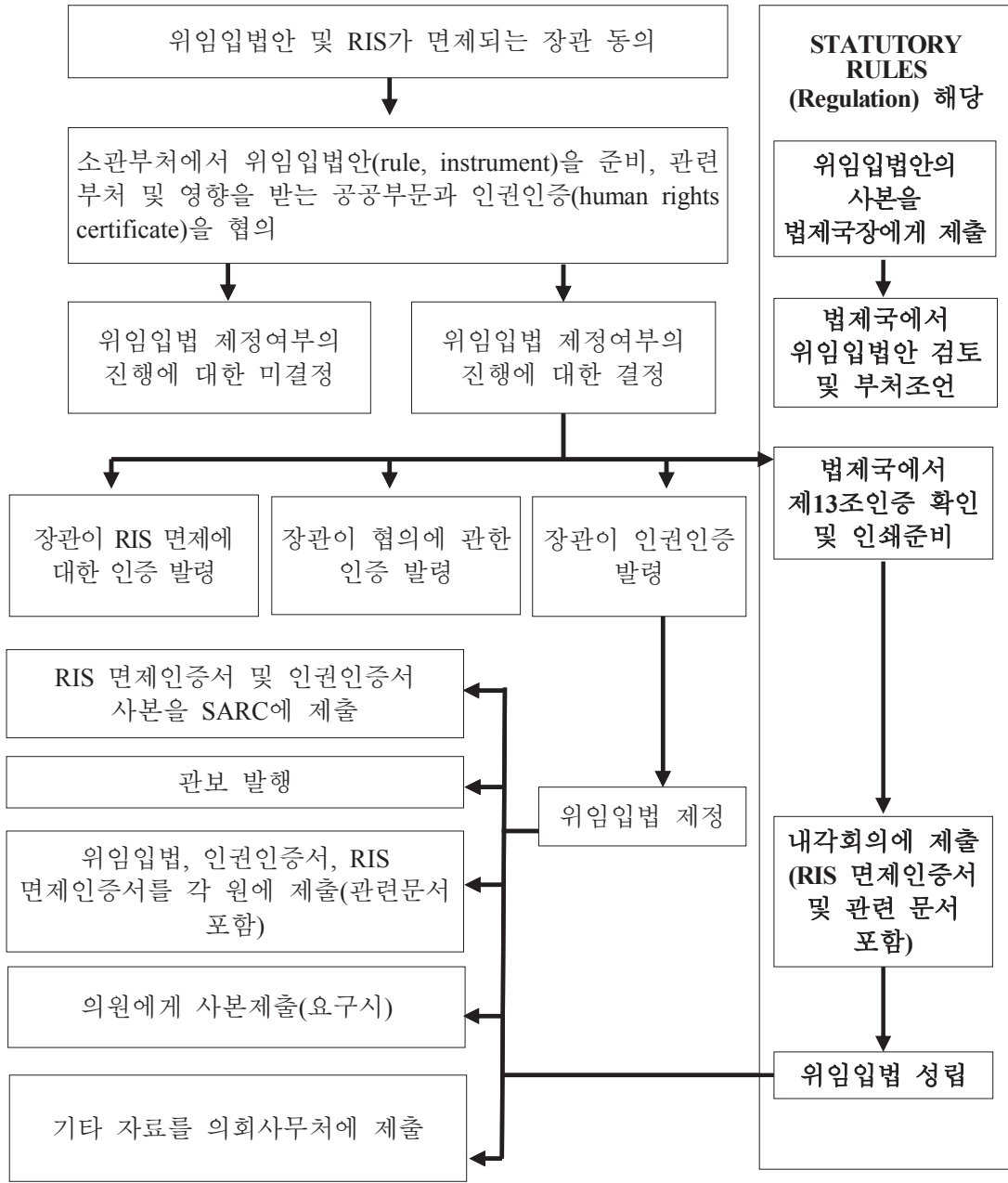
2008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규제를 개관하면, 전체 94건의 위임입법 가운데 8건(9%)이 유효기간연장이 불허되었고, 86건(91%)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위임입법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위임입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들 86건의 규제에서 규제영향평가가 계획되었거나 수행된 것은 41건이었으며,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37건이었다. 또한 8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나아가 VCEC의 연간보고서에는 실무적으로 60일의 협의구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안내자료와 독립된 감시기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주에서의 일몰규제에 대한 평가는 개선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0) The 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 Sunsetting Regulations in 2008-09 and 2009-10.

[규제영향분석이 요구되는 위임입법 제정절차]



[규제영향분석이 면제되는 위임입법 제정절차]



[참조] 우측란은 statutory rule에 한해 적용되며, legislative instrument에 관한 것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

3. 평 가

일반적으로 호주에서는 입법에 대한 사후심사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의 활용하는 사례는 많다. 이들 경우에는 경제에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광범위한 심사를 행한다. 또한 다른 국가와 달리 호주의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은 사전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에 중점을 둘 뿐 아니라 입법의 사후평가의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대안규정의 검토, 효과성의 조사 및 외부이해관계와의 추가적인 협의의 필요성 뿐 아니라 이의제기에 대한 취급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의회법(Acts of Parliament)의 경우에는 일몰제나 심사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나, 가능한 일몰제나 평가조항의 신설 등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다수의 법률에서는 재검토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재검토(평가)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일몰조항이 없는 모든 법률과 규제는 각 부처에서 매 5년마다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OBPR에서는 2012년부터 연방정부 및 하급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분야를 소관하는 법률 및 위임입법의 전체목록을 받아, 5년마다 심사대상이 되는 목록을 해당 부처에 송부할 예정으로 있다. 각 부처에서는 이들 가운데 어느 것에 대해 재심사할 것인지, 어떻게 재심사를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책임이 부여된다. 각 부처에서는 입법의 재심사 도래에 관한 사항과 각 법률의 평가전략 등이 포함된 연간규제계획(annual regulatory plan)을 공표할 것이 요구된다. 이 관점에서 심사를 생략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호주에서의 위임입법의 일몰제는 의회의 영역 외의 행정기관이 발한 규제로부터 의회통제를 향상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일차적 입법(법률)에서 일몰조항은 가끔씩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호주의 선진규제를 위한 전략의 핵심적인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몰제는 각 부처의 평가활동(사전, 사후)의 제도화와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공중참가의 향상, 규제개혁의 투명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Ⅲ. 일 본

1. 개 요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몰제를 규제분야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규제일몰제를 채용하고 있다.¹⁰¹⁾ 그러나 일본의 규제일몰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규제에 대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 상실제(automatically terminate on a date certain, self destruction clause)가 아니라, 규제사항이 포함된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에 산적한 과제나 장래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식 일몰제를 완화한 방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재검토행(post-implementation reviews) 일몰제”로서 “검토조항(見直し條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¹⁰²⁾ 이 “검토조항”을 도입한 취지는 각 성청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책의 적부에 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도입한 법령이 증가하면, 불필요한 규제가 장래 검토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검토조항제도는 일본정부가 1990년 이후에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단행하면서 규제신설에 관한 심사제도의 하나로서 도입한 것으로서,

101) 현재 일본에서는 일몰제를 규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차원에서 일정한 사업이나 정책, 보조금 등에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방식을 도입한 자치단체도 다수 있다.

102) 검토조항은 일정기간별로 검토를 의무화하는 sunset조항으로서 시간에 의한 제도의 문제점을 사정하는 의미에서 “시(時)의 악세스먼트규정”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吉田利宏, 見直し條項の意味を考える, 法學セミナ- 2008.4., 88면.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168면 이하 참조.

1980년대의 각종 입법기술 해설서에는 이 조항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¹⁰³⁾ 이 조항을 도입한 법률의 제정이 비교적 최근의 경향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¹⁰⁴⁾ 이 검토조항은 법률, 법규명령 뿐 아니라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조례전체 또는 일부 조례에 대해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평가하여 폐지·존치 또는 개정을 결정하는 검토조항을 설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2. 도입현황

검토조항제도는 2001년 3월 31일 각의결정된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에서는 규제를 신설하는 법률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2007년 개정된 “규제개혁추진 3개년계획(개정, 2007.6.22 각의결정)”에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규제의 검토기준에서 법률, 법규명령 뿐 아니라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지(通知)·통달(通達) 등”¹⁰⁵⁾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정하는 불특정다수의 사

103) 일본의 입법기술에 관한 대표적인 저술인 林修三 외, 例解立法技術(제2차 전정신판), 學陽書房 1983에서는 검토조항에 관한 언급이 없다.

104) 법령에서는 일반적으로 검토(見直し, 檢討)라는 조목 하에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년이 경과한 때 이 법률의 시행상황에 관하여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라는 형식으로 기술하는 사례가 많다. 宮澤宏幸, 見直し條項, 立法と調査 제200호(1997.7). 한편 山本庸幸, 法令の立案(13), NBL 제671호(1999.8.15), 56면에서는 검토조항에 대하여 “특히, 최근의 법률부칙 가운데 널리 발견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이른바 검토조항이 있다. 이것은 당면한 일정기간 그 법령을 운용하여 보고, 그 상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 필요하다면 그 법령의 검토를 할 것을 정부에게 의무화한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105) 「국가행정조직법」에서는 각성대신, 각 위원회 및 각청의 장관은 그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해 명령 또는 시달하기 위해 소관 제기관 및 직원에 대해 훈령 또는 통달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4조제2항). 그러나 행정권의 비대화현상 가운데 법률보다 오히려 통달이 사실상의 행정기준으로서 작용하여 통달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통달행정이 빈번한 최대의 요인으로서 공시되지 않은 부분과 높은 즉효성이라고 하면서 법률, 정령, 성령 고시는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널리 국민에게 알려지나 통달은 내부문서의 색채가 강하므로 비공개가 원칙은 아니

안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정령(政令)·내각부령(內閣府令)·성령(省令)·외국규칙(外局規則)·인사원규칙(人事院規則)·회계검사원규칙·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정하는 고시 이외의 것으로서 규제와 관련된 것을 말한다.

또한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을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의 유무에 착안하여 분류하고 있다.¹⁰⁶⁾ 즉, 기업·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각 부처(府省廳)가 발령하는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 가운데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를 가지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심사기준·처분기준¹⁰⁷⁾ 및 그 밖에 각 부처가 정하는 기준 전체를 말하며, 그 이외에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에 관해서는 각 부처가 사인에 대해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도록 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국민이 그 내용에 따르는지 여부는 임의적이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 30일 현재 그 건수에 관해 규제개혁회의가 취합한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규정하는 심사기준·처분기준이 1,009건이었고, 그 이외에 외부효과를 가지는 통지·통달 등이 947건이었다.

아울러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의 분류에 관해서는 각 부처에서 매년 12월말까지 신규 사항의 추가, 기존사항의 검토 등을 하여 갱신하고, 그 결과를 검토추진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검토추진기관은 이 과정에서 분류가 적절한지, 부처간에 횡단적인 통일이 도모되고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필요에 따라 보고된 분류결과를 심사하고, 소관 부처에 대해 필요한 재검토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외

지만 시스템으로서 공개수단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현장에 어느 정도 밀착한 입장에서 임기응변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되므로 장기간에 걸쳐 즉효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106) 현재 일본에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처분기준이 1,999건, 그 밖에 사인에 대해 외부효과를 가지는 통지·통달 등은 1,022건으로 집계하고 있다.

107) 일본 「행정절차법」에서는 심사기준을 ‘신청에 의해 요구된 인허가등을 할 것인지를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정의하고, 처분기준을 ‘불이익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불이익처분을 할 것인지에 관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8항).

부효과를 가진다고 분류된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의 명칭을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이외의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에 관해서는 외부효과를 가지지 않는다고 각 부처가 고려하는 바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의 검토에 관해서는 이 계획에서 정한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고, 각 부처는 새로이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을 제정·발령하려는 경우 이 검토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각 부처는 이 계획에 따른 검토기준으로 특단의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통달 등의 검토를 201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 이후에도 매년 연말까지 다음 연도의 검토대상이 되는 통지·통달 등에 관해 검토추진기관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부처는 2007년도 이후 매년 12월말까지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통지·통달 등의 검토결과와 기타 각 부처가 추가적으로 수행한 통지·통달 등의 검토결과 및 최신 통지·통달 등의 분류결과를 검토추진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검토추진기관은 보고된 검토결과를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소관 부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결과에 관해서는 2007년 이후 매 연도말에 확정하고 검토추진기관이 공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규제개혁회의가 검토추진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 이후의 검토추진기관에 관해서는 검토추진상황을 고려하여 2009년말까지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일정기간이 경과한 규제의 검토기준]

- ① 이 기준은 제도의 신설·개정후의 일정기간이 경과한 규제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분야횡단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기 위하여 책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기준에 의거하여 검토가 행해진 규제에 관해서는 시대에 적응하여 폐지, 완화 등의 개혁이 필요한지를 개별 규제에 관하여 종래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② 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범위는 제2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공적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답신(1988.12.1)”에서 제시된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다음의 형식으로 제도화된 것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 i) 법률(그 취지·목적 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다. 이하 ii) 내지 iv)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다)
- ii) 정령, 내각부령·성령, 외국(外局)규칙, 인사원규칙, 회계검사원규칙,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정한 고시(이 기준에서 “법규명령”이라 한다)
- iii) 통지와 통달 등 행정기관이 정하는 불특정다수의 사안에 적용되는 규칙 가운데 법규명령이외의 것(이 기준에서 “통지·통달 등”이라 한다)으로서, 사인에 대해 “외부효과”를 가지는 것
- iv) 통지·통달 등 가운데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

③ 일정기간 경과후의 규제의 검토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 의거하여 행한다. 그 경우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가 된 사회경제정세 및 식견이 기간경과중에 변화되었는지 또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충분히 조사·검토한다. 또한 예컨대, 출발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있고 실무상 운용되지 않고 있는 규제, 관련되는 법령의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실질적 효력을 상실하고 있으나 폐지절차가 미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존속하고 있는 규제 가운데 국민을 혼란시키는 등의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지절차 등을 추진한다.

- i) 경제적 규제는 원칙 폐지, 사회적 규제는 필요최소한 원칙하에 규제의 근본적 검토
- ii) 면허제에서 허가제로의 이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이행 등 보다 완화된 규제로의 이행
- iii) 검사의 민간이행 등 규제방법의 합리화
- iv) 규제내용·절차에 관한 국제적 정합성의 추진
- v) 규제내용의 명확화·간소화와 인허가 등의 심사에 있어서 심사기준의 명확화, 신청서 등의 간소화
- vi)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의 이행 등 사후절차로의 이행

vii) 인허가 등의 심사·처리를 시작으로하는 규제관련절차의 신속화

viii) 규칙제정절차의 투명화

ix) 불합리한 규제의 시정으로 사회적 공정의 확보

그리고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에 관해서는 위의 검토 시점과 병행하여 “규제개혁·민간개방 3개년계획(재개정, 2006.3.31 각의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의 유무에 착안한 분류별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추진한다.

④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규제의 검토를 행하는 뜻의 조항(이 기준에서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조항”이라 한다)을 삽입하는 때의 “기간”설정에 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i) “5년”을 표준으로 하고, 그 보다 단기간이 되도록 노력한다.

ii) 제도검토를 위한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는 규제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10년”을 상한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일정기간 경과후에 검토를 하는 때에는 차회의 검토를 행하기까지의 “기간”을 설정하고, 이후에도 이 예에 따른다.

⑤ ~ ⑥ (생략)

⑦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를 가지는 통지·통달 등에 관하여는 i) 통지·통달 그 자체에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조항이 있거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조항이 있는 경우, ii) 통지·통달 등 자체 및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조항이 없는 경우로 대별되나, 각각 이하의 기준에 따라 검토를 추진한다.

i)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가운데 통지·통달 그 자체에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조항이 있거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조항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조항에 따라 또는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조항이 있는 법률의 검토에 병행하여 검토를 한다. 그 경우 ③의 “검토시점”에 입각하여 검토를 한다.

ii)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가운데 통지·통달 자체 및 근거가 되는 법률의 어느 곳에도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조항이 없는 것에 관해서는 ④의 “일정기간의 설정”기준에 따라 근거가 되는 법률별로 설정하는 검토시기에 병행하여 검토를 한다. 그 경우 ③의 “검토시점”에 입각하여 검토를 한다.

⑧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를 가지지 않는 통지·통달 등에 관하여는 i) 통지·통달 그 자체에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조항이 있거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일정기간경과후 검토조항이 있는 경우, ii) 통지·통달 등 자체 및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조항이 없는 경우로 대별되나, 각각 이하의 기준에 따라 검토를 추진한다.

i)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가운데 통지·통달 그 자체에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조항이 있거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조항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조항에 따라 또는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조항이 있는 법률의 검토에 병행하여 검토를 하도록 노력한다. 그 경우 ③의 “검토시점”에 입각하여 검토를 하도록 노력한다.

ii)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가운데 통지·통달 자체 및 근거가 되는 법률의 어느 곳에도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조항이 없는 것에 관해서는 ④의 “일정기간의 설정”기준에 따라 근거가 되는 법률별로 설정하는 검토시기에 병행하여 검토를 하도록 노력한다. 그 경우 ③의 “검토시점”에 입각하여 검토를 하도록 노력한다.

⑨ 일정기간 경과후에 검토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및 이유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특히, 검토의 결과 그 제도·운용을 유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 근거 등을 명확히 한다.

[통지·통달 등 법령이외의 규정에 따른 규제에 관한 검토기준]

① 의 의

이 기준은 통지·통달 등 법령이외의 규정에 따른 규제에 관해 객관적이고 분야횡단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책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따라 검토가 행해진 규제에 관해 무조건으로 시인하는 것은 아니며, 폐지, 완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별 규제에 관해서는 종래대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② 검토대상

검토대상이 되는 「통지·통달 등」이란 행정기관이 정하는 불특정다수의 사안에 적용되는 규칙 가운데 정령, 내각부령, 성령, 외국규칙, 인사원규칙,

회계검사원규칙, 법률의 위임에 따라 명령을 정한 고시(이 기준에서 “법규 명령”이라 한다) 이외의 것으로서 규제와 관련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규제」란 제2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이하 “개혁추진심의회”)의 공적규제의 완화등에 관한 답신(1988년 12월 1일)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의에 따른다.

③ 통지·통달 등의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의 유무에 착안한 분류

통지·통달 등은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i) 행정절차법에 정하는 심사기준·처분기준, (ii)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가 있는 것 가운데 위의 심사기준·처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iii)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를 가지지 않는 통지·통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에 관해 검토기준을 정한다.

여기서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를 가진다」라 함은 예컨대, 상급행정기관이 소관하는 법령의 해석을 정하여 그것을 하급행정기관에게 「통달」의 형식으로 발령하는 사례에서 해당 「통달」은 하급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한편 사인을 직접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하급행정기관이 해당 「통달」에 따라 법령을 해석적용함으로써 해당 「통달」을 고려한 법률의 운용에 저촉된 사인에 대해 하급행정기관이 어떠한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정기관이 법령의 해석이나 운용의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법규명령」이외의 형식으로 사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④ 「심사기준·처분기준」으로서 취급될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검토를 추진한다.

- (1) 해당 통지·통달 등이 근거가 되는 법령의 취지·범위를 벗어나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고, 법령의 취지·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법령으로 정하거나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검토를 한다.
- (2) 심사기준·처분기준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관 부성청 또는 대신명으로 제정·발령한다(다만, 행정절차법에서 심사기준·처분기준의 제정주체인 「행정청」에 해당하는 것에 관해서는 해당 「행정청」의 명칭으로 제정·발령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3) 통지·통달 등 가운데 신청에 의해 요구된 인허가를 할 것인지, 불이익 처분을 할 것인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p>규정하는 심사기준·처분기준으로 취급한다. 이들의 제정·발령시에는 해당 통지·통달등의 명칭에 「심사기준」, 「처분기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p> <p>(4) 심사기준·처분기준으로 취급된 것은 행정절차법에 정한 의견공모절차를 수행함과 아울러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표한다.</p>
<p>⑤ 「심사기준·처분기준 이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검토를 추진한다.</p> <p>(1) 해당 통지·통달 등이 근거가 되는 법령의 취지·범위를 벗어나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고, 법령의 취지·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검토를 한다.</p> <p>(2) 사인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당 기준은 제정 발령시점에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 법령해석·운용 등의 표준임을 통지·통달 등에 명기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p> <p>(3) 심의회나 검토회 등 제3자기관에 의한 검토, 의견공모(public comment)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기준의 합리성,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p>
<p>⑥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를 가지지 않는 통지·통달등」의 검토기준</p> <p>사인에 대한 「외부효과」를 가지지 않는 통지·통달등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양한 형식이 있으나, 그 전형적인 사례로서 그 성격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p> <p>(1) 행정지도지침 : 동일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복수의 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려는 때에 이들 행정지도에 공통하여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사항</p> <p>(2) 기술적 조언·권고 :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에 관해 지방자치법 제24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기술적인 조언 또는 권고</p> <p>지방자치법 제245조의4에 정하는 기술적인 조언, 권고로서 제정 발령되는 것 가운데 전국일률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사인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하도록 검토를 한다.</p> <p>사인에 대한 외부효과를 가지지 않은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지도지침에 해당하는 것에 관해서는 「행정지도지침」, 기술적 조언 권고에</p>

<p>해당하는 것은 「기술적 조언 권고」의 표현을 명기하고 그것이 외부효과를 가지지 않은 점을 평이한 용어로 설명하도록 검토를 한다.</p>
<p>⑦ 복수의 분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통지·통달 등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사기준·처분기준」에 관한 검토기준을 적용하고, 「심사기준·처분기준」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심사기준·처분기준 이외의 기준」에 관한 검토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하나의 통지·통달등 가운데 각 요소가 상기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해당 각 요소의 모두에 명기한다.</p>

2007년 6월 22일의 규제개혁추진 3개년계획에서는 내각부로 하여금 이 계획에 정해진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그 실시상황에 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내각부에서는 계획에 열거된 사항 가운데 2007년 말까지의 조치내용을 보고하였다.¹⁰⁸⁾

각 부처는 2007년 12월말에 통지·통달 등의 제정,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의 분류표를 갱신하는 한편 2008년도 검토대상인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을 A분류(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 가운데 사인에 대해 외부효과를 가지는 것), B분류(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가운데 사인에 대해 외부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다. 그리고 2008년 3월 25일에는 각의결정으로 “규제개혁추진 3개년계획”을 개정하였으나,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의 검토와 관련한 내용은 2007년의 계획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한편 규제개혁회의에서는 2008년 12월 22일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제3차 답신-규제의 집중개혁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 답신에서는 “각 부처에서는 매년도말까지 검토 추진기관인 규제개혁회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검토대상이 되는 통지·통달 등을 선정하고

108) <http://www8.cao.go.jp/kisei-kaikaku/publication/2008/0909/index.html>

매년 12월말까지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통지·통달 등의 검토결과 등을 규제개혁회의에 보고하고, 규제개혁회의에서는 보고된 검토결과 등을 심사하여 필요에 따라 소관 부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검토결과는 2007년 이후 매 연도말까지 확정하고 규제개혁회의에 공표함과 아울러 부처의 홈페이지에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에 분류한 통지·통달 등의 건수는 각 부처 전체 5,000건이었으나, 2007년에 검토된 통지·통달 등의 건수는 108건, 2008년에는 372건 등에 그치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11년 말까지 필요한 검토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 있다. 각 부처가 다음년도 검토대상이 되는 통지·통달 등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규제개혁회의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단년도별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각 부처가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각 부처 전체의 진척상황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지적을 하였다.¹⁰⁹⁾

그리하여 답신에서는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의 검토가 규제개혁회의뿐 아니라 통지·통달 등을 소관하는 각 부처에서도 계속 2011년말까지 계획적이고 정력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각 부처는 2009년 4월말까지 2009년도에 검토하기로 한 통지·통달 등을 규제개혁회의에 보고하는 때에 아울러 2011년도까지 연도별 검토를 실시할 예정을 제시한 검토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답신에서 제시된 내용을 수용하여 2009년 3월 31일 각의결정으로 “규제개혁추진 3개년계획”을 재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의 검토와 관련한 내용은 변경이 없었고 다만, 답신에서 지적한 대로 각 부처는 2009년 4월말까지 2011년도까지 연도별 검토를 실시할 예정을 제시한 검토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109) http://www8.cao.go.jp/kisei-kaikaku/publication/2008/1222/item081222_19.pdf

2006년부터 각 부처에서는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의 일람”을 작성하여,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 부처가 소관하는 통지·통달 등 가운데 각 부처에서 규제와 관련된다고 판단한 통지·통달 등에 관해 다음 검토주기를 기재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는 이 일람에서 설정된 다음 검토연도를 토대로 2007년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검토기준에 따라 소관하는 통지·통달 등의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규제와 관련한 통지·통달 등의 일람(통계법 관련)]

번호	통지·통달 등의 명칭	제정/발령일	최종 개정일	근거법령/관련법령	분류	비고	예정연도(실시 완료연도)	관계 과실	의견
1	특정계량증명사업자의 인정기준등과 관련한 운용	14. 3.29		계량법	A-1		22년도		
2	인정신청시의 인정구분의 운용	16. 3.31			A-2		22년도		
3	지정제조사업자제도관계 사무처리요령	13. 5.23		계량법 지정제조사업자의 지정등에 관한성령	A-2		22년도		
4	계량법관계 법령의 해석운용등	13. 06	20.12	계량법, 계량법 시행령, 계량법 시행규칙	A-2		22년도		

※ 분류 A-1, A-2 :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가 있는 것

분류 A-1 : 행정절차법에 정한 심사기준·처분기준

분류 A-2 : 심사기준·처분기준 이외의 기준

분류 B : 사인에 대한 외부효과를 가지지 않는 통지·통달 등

3. 평 가

일본의 입법과정에서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각 부처는 항상 권한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정책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 때문에 규제개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규제완화정책에 따르지 않는 법안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회에의 법안 제출을 보류하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고, 규제완화는 진척되지 않는 상태가 생겨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¹¹⁰⁾ 그렇게 보면 검토조항제도는 일본의 입법과정의 구조와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운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규제의 신설억제에 어느 정도로 공헌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¹¹¹⁾

검토조항은 일본정부가 규제완화의 추진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가 사회에 유입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하고, 규제가 기득권화하는데 검토를 도모하기 위하여 착안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검토조항의 방식에 의한 규제의 신설억제제도는 OECD 국가에서도 그다지 채용되지 않는 독특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¹¹²⁾ 검토조항의 의미를 어떤

110) 윤장근, **좋은 법 만들기와 입법평가(시론)**, 입법동향과 평가 2008.가을호 참조.

111) 이에 관해 “재검토제도는 각 성청이 수용하기 쉬운 방법으로서, 각의결정되는 규제완화나 규제개혁의 방침에 따라 규제의 신설억제를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제도에 의거한 심사는 일본의 정치시스템구조에 적합한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점진적인 측면이 있지만 확실성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모든 규제에 대해 재검토조항이 편입되더라도 각 성청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규제완화나 규제개혁의 방침에 따라 재검토를 행할 것인지를 내각이 아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각 성청이 재검토하기 쉬운 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필요성이 희박한 규제의 철폐나 수정에 기여한다고 생각된다. 근래에는 재검토조항의 선택율이 높아지고 있는 성청이 증가하고 있고, 재검토까지의 기간이 전체적으로 단축되는 경향에 있다. 이는 단편적인 증거이기는 하나, 규제의 신설심사제도가 기능을 높이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石橋 章市朗, **法案作成過程における規制の新設審査の分析**, 關西大學法學論集 56권2/3호(2006.11), 478면 참조.

112) 검토조항에 관하여 어떤 입법실무가는 “특히, 작금과 같이 기술혁신이나 정치경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그 규정의 시행 후 일정기간 실시한 후에 그 규정의 시비에 관하여 검토하는 규정으로 파악하여, “만약 정책내용 특히,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귀결에 관하여 사전예측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장래에 정책이나 법률의 검토를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책이 실시될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당해 조항을 가진 법률을 전통적 항구법과는 다른 실험의 요소를 가진 것”¹¹³⁾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검토조항이 지닌 피드백기능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결국 의회심의를 통하여 법률의 집행에 문제가 있음이 예견되는 경우라도, 논의를 거쳐 일단 결정을 한 후에 문제해결행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정책이 실시되는 중에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여 정책변경이 필요한지를 음미하는 실천적 지혜가 내포된 것이 검토조항이라고 본다.¹¹⁴⁾ 아울러 검토조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다. 즉, “좀 더 냉정하게 검토조항의 조문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검토를 하는 것은 의무로 되어 있으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개정안을 제출할 의무까지는 없는 점이 분명하다. 각 성이 각의결정에 따라서 검토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며¹¹⁵⁾, 실제로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를 하도록 검토조항을 두고 있으나, 본격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¹¹⁶⁾

제정세의 변화가 급속한 가운데 어떤 법제도를 창설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되므로, 그것을 우려하여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이 규정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정부는 그 행정책임을 거두기 위하여 상시 그 법령을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내각제안으로 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의미에서 이념적으로 규정된 것이며, 훈시규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山本庸幸, 전계논문, 57면.

113) 大橋洋一, 行政法 -現代行政過程論, 有斐閣 2004, 66면.

114) 山川雄巳, 政治學概論, 有斐閣 1996, 262면.

115) 吉田利宏, 見直し條項の意味を考える, 法學セミナー- 2008.4., 88면.

116) 2008년 2월29일자 일본 시사통신뉴스에서는 참의원의원의 질문서에 대하여 “1996년 이후에 공포·시행된 법률 가운데 10년 이내의 검토조항을 삽입하고 있으나, 검토기간

어떻든 검토조항이 설정된 법령에서는 그 조항에서 설정된 기한이 경과한 일정 시점에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검토한다. 검토방법은 다양하나 법률전체에 대해 검토조항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문가단체 등과 함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조문에 검토조항이 설정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보고서작성시에는 해당 법령과 관계있는 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 그리고 검토결과서는 그 내용이 비교적 간략하나, 법률전체에 대한 것은 그 내용이 많다. 검토결과서는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에 그 결과 및 이유를 게재하고 있다.¹¹⁷⁾

일본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검토조항의 채용여부를 둘러싸고 기본적으로 여당 및 각 성청은 법률안에 당해 조항을 포함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법률안의 사전심사를 통하여 “의원의 이익과 행정기관의 이익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당의결정 후에는 오로지 법률안의 성립을 지향할 따름이다. 따라서 여당측이 국회에서 법률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기존의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내각이나 각 성청에 대하여 그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¹⁸⁾

한편 각 성청도 내부조직에서 주체적으로 과제를 추출·설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입법작업을 행하는 것이 통상이며, 법률의 검토는 필요에 응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검토조항을 구태여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검토조항은 정책의 적부와 관련한 조항이므로, 엄격한 평가까지는 요구되지 않더라도 업적측정에 가깝게 행해지고

이 경과하였음에도 법개정되지 않은 것이 33건이 있음을 정부의 각의결정 답변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답변서에 의하면 “특정가정용기구재상품화법(가전리사이클법) 등 검토기간 5년 경과하였음에도 법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법률이 16건, 3년경과 납치피해자등지원법 등 12건 기타 5건 등이 있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16건은 정성령의 개정 기타 법률의 운용 등으로 대응, 9건은 대응을 검토중이며 현시점에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117) 자세한 것은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198면 이하 참조.

118) 윤장근, **좋은 법 만들기**와 입법평가(시론) 참조.

있다. 따라서 성청은 평가나 업적측정보다는 정책입안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청이 당해 조항을 요구하는 것은 그다지 없다. 다만, 법률안의 성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 검토조항을 선택함으로써 골자를 수정하지 않고 실리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정부·여당이 해당 조항의 채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통상적으로 정부에게 광범위하고 강력한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관해서는 심의거부라는 국회전술로써 철저하게 대항한다. 그렇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법안 그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의 기대가 높고, 심의거부 등으로 법안의 성립에 지연이 발생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긴급성과 불확실성있는 문제에 대하여 야당이 국민으로부터의 기대가 높은 법안의 성립을 우선하기 위하여 정부·여당과 타협에 응한 결과 검토조항이 선택되는 사례가 많다.

현재 검토조항은 형식적으로는 성청에 의한 자기평가를 요구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또한 검토조항이 없더라도 국회는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위원회제도, 질문제도, 국정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법률의 실시상황이나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검토조항의 존재로 정부의 설명책임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실시상황이나 검토내용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엄격한 법률운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검토조항을 둘러싼 국회심의에서도 야당측에서는 검토조항이 소극적이지만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틀을 획득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입법과정에서 검토조항은 여야당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소극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정책과정에는 다양한 불확실성과 예측의 곤란성이 있으므로, 당초부터 준비된 선택안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사태가 자주

발생한다. 그 때문에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정책결정전략이 필요하게 되며 “장래에 있어서 재점검·제도수정의 여지를 충분히 남기는 정책디자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 의미에서 검토조항은 장래의 어떤 시점에서 정책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정책입안자와 집행자는 당초의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법의 안정성이라는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의 개폐를 포함한 임기응변적으로 정책의 변경을 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근래 검토조항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다루는 법안에 주로 도입되는 경향¹¹⁹⁾도 “장래에 있어서 재점검·제도수정의 여지를 충분히 남기는 정책디자인”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119) 이와 관련한 법률 중 검토조항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2000.12.6 제정)”, “홈레스자립지원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2. 8.7 제정)”, “유전자변환생물등의사용등규제에의한생물의다양성확보에관한법률(2003. 6.18 제정)”, “국가등에있어서온실효과가스등의배출삭감에배려한계약의추진에관한법률 (2007.5.23 제정)”, “생물다양성기본법(2008.6.6 제정)”등이 있다.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제 1 절 행정규칙 정비추진 경과

I. 관련법제의 정비

정부에서는 우리의 행정규칙의 문제성을 인식하여 상위법령의 위반 사항 또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위임 없이 정한 법규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행정규칙에 위임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등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예규 등 내부규정은 법령이나 현실에 맞도록 행정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다.¹²⁰⁾ 특히, 1995년에는 대통령령으로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4748호, 1995.8.10 제정)을 마련하여 행정규칙에 대한 “정기 사후심사제”를 도입하였다. 즉,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 등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도록 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회에 걸쳐 매반기에 발령한 훈령·예규 등을 당해 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제처장은 제출받은 훈령·예규 등을 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행정규칙에 대한 “정기 사후심사제”는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¹²¹⁾ 그 후 2007년에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하여

120) 자세한 내용은 정남철,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 법제 2007.4, 7면 이하 참조.

121) 매년 중앙행정기관에서 발령하는 훈령, 예규나 고시 등의 행정규칙 발령건수는 평균 2,500여건에 이르고 있고 2004년말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이 시행중인 유효한 훈령이나 예규 등의 행정규칙 건수를 합치면 약 8,0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조직, 인사 등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사항을 제외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수시 사후심사제”로 제도개선을 하였다. 즉,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 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였다. 법제처장은 등재된 훈령·예규 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할 훈령·예규 등이 상당수 누락되었고, 법제인력의 부족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정비계획대로 정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주로 정비하기로 한 행정규칙의 개선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방치하고 있거나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고, 애초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행정규칙 정비기한을 1년 이상의 중장기로 정해두고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먼저, 법제처는 2009년 9월부터 “행정규칙 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규칙 사후 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각 부처 행정규칙 담당자들이 법제처 법제지원시스템의 행정규칙 등록시스템에 새로 발령되는 행정규칙을 등록하는 경우 법제지원시스템 내 행정규칙 심사부분에 자동적으로 접수되어 사후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이를 통하여 행정규칙에 대한 사후 심사가 더욱 효율화되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규칙의 수는 약 3,500건이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사후에 심사를 하고 있는데 법제처로부터 잘못된 행정규칙으로 지적받은 행정규칙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년 100건에 육박하고 있다. 박인, **행정규칙의 위법사례 및 대책**, 법제 2006.12, 40면 이하.

행정규칙 심사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각 부처에서 발령한 행정규칙을 법제처 법제관실에서 검토하여 이를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 각 부처에 통보하였으나, 행정규칙 심사시스템의 구축으로 각 부처에서 발령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는 행정규칙 정비와 법령심사를 연계하여 신속하게 행정규칙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상위법령 심사시 정비대상 행정규칙의 내용과 정비계획을 확인하여 각 부처에서 정비일정에 맞추어 행정규칙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규칙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¹²²⁾ 한편 행정규칙의 개선 및 정비와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률명 (도입연도)	현행 조문
행정절차법 (1996.12.31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입법예고제도를 규정(제41조)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

122) 또한, 법제처에서는 2011년 2월부터 “행정규칙 클리닉”을 실시하여 행정규칙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 미정비 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정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규칙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행정규칙 클리닉”이란 행정규칙 입안시 또는 법제처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와 각 부처가 협의하여 입법형식, 입법내용 등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도우미제도로서, 글자 그대로 정비대상 행정규칙이 왜 정비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법제처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해당 부처에서 입법형식, 내용 등에 대하여 혼란이 있어 정비하지 못하거나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각 부처와 법제처가 상호 협업과정을 거쳐 신속한 정비가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행정규칙의 위임근거를 상위법령에 규정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해서 상위법령이라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어디에 규정해야 하는지, 위임근거를 둔다면 몇 조에 두어야 하는지, 해당 조문에 규정하더라도 위임의 구체화나 명확화의 정도는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진단하여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부처에서 종전보다 빠르고 쉽게 행정규칙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2011년 2월 행정규칙 클리닉이 처음 실시된 이래 정비대상 행정규칙 중 125건을 행정규칙 클리닉을 통해 정비 완료하였다.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백서**, 2012.12, 59면 이하.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법률명 (도입연도)	현행 조문
	<p>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예고하도록 규정(제46조)</p>
<p>행정규제기본법 (1997.8.22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행정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 및 공표제도(제6조) •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하려는 경우의 규제영향분석실시(제7조) •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제8조)
<p>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08.2.29 폐지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제28조)
<p>행정심판법 (2010.1.25 전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제59조).
<p>국회법 (1997.1.13,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제98조의2제1항)

법률명 (도입연도)	현행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제98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도 행정규칙의 정비와 관련하여 2008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37개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칙 11,577개 중 국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부인사, 복무규정 등을 제외한 8,064개 행정규칙을 검토분석한 바 있다.¹²³⁾ 검토기준은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불편을 주는 사항, 과도한 준수 부담을 강요하거나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사항, 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모호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였다.

검토결과 1,684건(고시 707건, 훈령 337건, 지침 21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개선과제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비현실적 규정이 524건,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 487건,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이 367건, 법령 위임범위일탈 201건, 특혜 또는 진입제한 105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치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로부터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다.

123)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 국민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행정규칙 개선사례집, 2010.6.18, 10면 이하 참조.

II.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정부에서 2009년 1월 29일 행정환경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주기적으로 정부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존속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여기서는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규제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제도의 실효성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인 행정규칙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등 숨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¹²⁴⁾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2009년 4월 23일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를 도입, 주기적으로 존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훈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령했다.

행정규칙 일몰제의 정착을 위해 법제처는 행정규칙 일몰제 및 입안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와 협의하여 존속기한 등의 설정 대상을 확정하였고, 소관 훈령 등에 대한 준비를 부처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제처에서 마련한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¹²⁵⁾

[훈령·예규 등에 대한 일몰제 기준]

<p>일몰제 적용대상</p>	<p>• 일몰제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제처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개 대상 훈령·예규 등과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¹²⁶⁾ 다만,</p>
----------------------------	---

12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자료 참조.

125)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2012.12., 736면 이하 참조.

126) ‘행정기관 내부운영’이란 공무원의 보직관리, 공무원 제안 등 공무원 복무에 관한

	<p>각 중앙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몰제 대상이 아닌 훈령·예규 등에 대하여도 일몰제를 준용하는 것은 가능하다.</p>
<p>존속기한과 재검토 기한 설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제 적용 대상 훈령·예규 등에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의 존속기한(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되고 필요 시 다시 발령하는 것을 의미)을 설정하되, 법령에 해당 훈령·예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나 훈령·예규 등의 폐지 후 재발령이 곤란한 경우로서 법제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3년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존속 필요성 여부를 검토 후 계속 존속이 필요 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을 설정한다. • 또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상위 법령이나 해당 훈령·예규 등에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 설정된 조항이 있거나 성질상 3년 이상 적용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¹²⁷⁾ •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은 해당 훈령·예규 등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발령한 날부터 진행하며,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훈령·예규 등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나(형식적으로는 존속), 재검토기한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훈령·예규 등이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다.

[훈령·예규 등에 대한 일몰조항 규정 방법]

<p>1) 존속기한형 일몰제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속기한의 설정 방법 <p>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본칙’의 제일 마지막 부분(조문형식으로 된 경우) 또는 ‘행정사항’으로 규정된 목차의 앞 부분(시행문 형식으로 된 경우)에</p>
--

사항이나 위원회 조직·운영 등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며, 국민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제외한다.
 12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존속기한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새로 제정된 대통령훈령에 따른 존속기한은 해당 훈령·예규 등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규정하되, 시행문 형식으로 된 것 중 ‘행정사항’목차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유효기간’을 규정할 새로운 목차를 신설한다.

◦ 조문형식으로 된 경우

제○조(유효기간)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종전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의 폐지 방법

존속기한이 도래한 훈령·예규 등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의 이해관계나 행정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훈령·예규 등을 발령하면서, 새로운 훈령·예규 등의 부칙에서 종전의 훈령·예규 등을 폐지하되(제7조제3항제1호), 폐지되는 훈령·예규 등의 부칙 중 새로 제정된 훈령·예규 등을 시행한 후에도 이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 제정되는 훈령·예규 등의 부칙에 규정하도록 한다. 공동훈령의 경우에는 관계 부처가 같은 일몰기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과 발령일자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종전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의 폐지) 종전의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는 폐지한다.

존속기한이 도래한 훈령·예규 등 중 그 규정 필요성이 사라져 폐지할 훈령·예규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일괄폐지 방식으로 소관 훈령·예규 등을 폐지할 수 있다(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이 필요하면 부칙에 일괄하여 규정).

일괄폐지를 할 때에는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의 형식별로 일괄 폐지해야 하고, 형식이 다른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을 하나의 폐지 훈령 등으로 일괄폐지할 수 없다.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 등 폐지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

제 1 조(목적)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부/청 소관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부 소관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를 일괄하여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은 이를 폐지한다.

1. -----
2. -----

부 칙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행 일몰제의 경우

- 재검토행기한의 설정 방법

재검토행기한은 원칙적으로 ‘본칙’의 제일 마지막 부분(조문형식으로 된 경우) 또는 ‘행정사항’으로 규정된 목차의 앞 부분(시행문 형식으로 된 경우)에 규정하되, 시행문 형식으로 된 것 중 ‘행정사항’목차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재검토행기한’을 규정할 새로운 목차를 신설한다.

조문형식으로 된 경우

제 ○ 조(재검토행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시행문형식으로 된 경우

VI.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2. 재검토행기한

<p>「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함.</p> <p><이하 생략></p>
<p>• 재검토기한의 개정 방법</p> <p>재검토기한이 도래한 훈령·예규 등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과 재검토기한을 개정하고, 개정할 사항이 없으면 재검토기한을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이 경우,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훈령·예규 등 중 그 규정 필요성이 사라져, 폐지할 훈령·예규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일괄폐지방식으로 소관 훈령·예규 등을 폐지할 수 있다.</p>
<p>○○○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 일부개정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p> <p>제○○조 중 ‘○○○○년 ○○월 ○○일’을 ‘○○○○년 ○○월 ○○일’로 한다.</p> <p>부 칙</p> <p>제 1 조(시행일)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훈령·예규 등에 대한 일몰조항 설정 절차]

<p>① 각 부처 입안 → ② 부처협의, 행정예고 등(필요 시) → ③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필요 시) → ④ 존속기한과 재검토기한 등 법제처 협의(필요 시) → ⑤ 각 부처 발령 → ⑥ 법제처 시스템에 등재</p>

<p>부처협의 및 행정예고 (필요 시)</p>	<p>• 공동훈령 등 다른 부처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처 협의 후 발령하되,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p>
----------------------------------	---

	<p>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포함된 훈령·예규 등은 가능하다면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실시한다.</p>
<p>규개위 심사 (필요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 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규개위 심사를 받도록 한다.
<p>존속기한 등에 대한 법제처 협의 (제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정하려는 경우로서 법제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 등을 발령하기 1개월 전까지(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령 후 지체 없이)까지 별첨 1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 협의요청서와 해당 훈령·예규 등의 원문을 법제처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훈령·예규·고시·공고 중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것(의무적 규제심사 대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법제처 협의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산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훈령·예규 등에 대하여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않으려는 경우 ◦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훈령·예규 등을 폐지·제정하기 곤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경우 ◦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3년 이상으로 정하려는 경우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기존 훈령·예규 등에 대해서는 1개월)에 협의 내용을 통보한다.
<p>법제처 시스템에 등록 등 사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예규 등을 발령할 때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훈령·예규 등의 대장에 기록하며(제9조제1항), 발령한 훈령·예규 등을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처 시스템에 등록하고(제9조제2항), 그 내용을 근거

	법령과 연계·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조제2항).
--	--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I. 분석기준

현행 행정규칙의 전체 숫자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행정규칙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지만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행정규칙도 공개되지 않거나 현행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도 많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행정규칙도 각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공하지 않는 행정규칙도 상당수 존재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현행 행정규칙의 숫자는 11,577개로 나타났으며, 법제처가 2010년 4월 기준으로 각 부처로부터 회신받아 파악한 행정규칙의 숫자는 7,132개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에서 파악한 행정규칙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법제처가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일부 부처에서는 훈령·예규·고시만 정리하여 회신하고 지침이나 공고 등은 회신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조사시점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일부 행정규칙은 폐지되었거나, 새로이 제정된 행정규칙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제처에서 회신받은 9개 부처의 행정규칙(363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소관 부처	행정규칙 수	
	권익위 조사 (2009.12 현재)	법제처 조사 (2010.4 현재)
고용노동부	367	297
교육과학기술부	371	170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	657	국방부 222 방사청 155 병무청 82
국토해양부 (행복청, 해경청)	1868	국토해양부 796 행복청 63 해경청 180
기획재정부 (조달청, 통계청)	435	기재부 121 조달청 131 통계청 56
농림수산식품부	965	688
문화체육관광부	205	93
법무부	462	166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704	복지부 252 식약청 193
여성가족부	42	66
외교통상부	140	114
지식경제부 (중기청, 특허청)	1,351	지경부 292 중기청 123 특허청 122
통일부	162	81
행정안전부	213	101
환경부 (기상청)	822	환경부 421 기상청 97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소관 부처	행정규칙 수	
	권익위 조사 (2009.12 현재)	법제처 조사 (2010.4 현재)
국가보훈처	132	82
법제처	-	43
검찰청	181	185
경찰청	253	194
관세청	484	230
국세청	295	200
농촌진흥청	164	103
문화재청	156	96
산림청	206	127
소방방재청	437	111
공정거래위원회	170	122
국가인권위원회	-	42
국민권익위원회	-	40
금융위원회	79	82
방송통신위원회	256	155
국가정보원	-	4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	25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	-	14
감사원	-	119
국립중앙박물관	-	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44
총 계	11,577	7,132

한편 법제처와 각부처에서는 해당 부처 소관 행정규칙 가운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인 2009.5.24. 이전에 발령된 훈령 등으로서 각 부처가 전수 조사하여 법제처와 협의하여 폐지 후 재발령하거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정한 행정규칙 총 3,716건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부 처	대상 건수	부 처	대상 건수
기획재정부	29	금융위원회	56
교육과학기술부	173	검찰청	40
외교통상부	6	경찰청	40
통일부	28	관세청	118
법무부	48	국세청	133
국방부	109	기상청	25
행정안전부	39	농촌진흥청	38
문화체육관광부	34	문화재청	26
농림수산식품부	420	방위사업청	75
지식경제부	222	병무청	33
보건복지가족부	61	산림청	58
환경부	279	식품의약품안전청	136
노동부	164	소방방재청	151
여성부	5	조달청	95
국토해양부	654	중소기업청	66
법제처	9	통계청	5
국가보훈처	30	특허청	55
국민권익위원회	11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3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부 처	대상 건수	부 처	대상 건수
공정거래위원회	88	해양경찰청	54
방송통신위원회	90	총 계	3,716

이 연구에서는 위의 행정규칙 현황 및 법제처가 각 부처로부터 받은 행정규칙 일몰제 추진 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한다.

항 목	내 용
검토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개 기관 - 부(10), 위원회(4), 청(14), 처(1)
검토대상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92건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인 2009년 5월 24일 이후 2009년 12월 동안 각 기관에서 일몰제 도입한 행정규칙 숫자를 검토 - 각 기관에서 일몰제 적용한 건수와 폐지 후 재발령하여 일몰제를 도입한 건수의 합계(일부 비공개 행정규칙은 제외)
분석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3 현재 - 일몰제 도입 이후 2013.3 현재 재검토기한 또는 유효기간의 재설정여부를 분석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에서 재검토기한 또는 유효기간을 재설정한 일괄입법, 개별 행정규칙 개정입법을 검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및 각 기관의 홈페이지 ‘법령정보’ 사이트를 검색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에서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제출한 목록 자료 검토

[검토기관 및 검토대상 행정규칙 개요]

번호	부 처	일몰 도입 대상 건수	검토대상		
			검토 건수	비 고	
				일몰적용 건수	폐지후 재발령 건수 (일몰도입건수)
1	공정거래위원회	88	88	63	25(25)
2	금융위원회	56	52	52	-
3	방송통신위원회	90	92	92	-
4	국민권익위원회	11	11	11	-
5	경찰청	40	40	39	15(1)
6	관세청	118	112	96	16(16)
7	국세청	133	132	99	33(33)
8	기상청	25	25	25	-
9	문화재청	26	27	27	-
10	병무청	33	32	32	1(0)
11	산림청	58	57	57	2(0)
12	소방방재청	151	151	151	-
13	식약청	136	131	131	-
14	조달청	95	95	95	-
15	중소기업청	66	66	63	4(3)
16	특허청	55	60	59	1(1)
17	해양경찰청	54	39	37	3(2)
18	행복도시건설청	13	13	13	-
19	국가보훈처	30	31	30	4(1)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부 처	일몰 도입 대상 건수	검토대상		
			검토 건수	비 고	
				일몰적용 건수	폐지후 재발령 건수 (일몰도입건수)
20	고용노동부	164	163	127	52(36)
21	국방부	109	85	84	7(1)
22	국토해양부	654	615	615	-
23	문화체육관광부	34	35	34	2(1)
24	법무부	48	48	47	6(1)
25	보건복지가족부	61	53	53	-
26	지식경제부	222	218	202	20(16)
27	통일부	28	27	27	-
28	환경부	279	257	257	-
29	행정안전부	39	37	37	-
총 계		2,888	2,792	2,655	191(137)

II. 주요 부처별 운용실태 분석

1. 공정거래위원회

(1) 도입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20일 소관 행정규칙(134건) 중 인사·조직·정보화 등 행정기관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을 제외하고, 2004년 이후 제·개정 실적이 있는 63개 행정규칙에 대해 3년 또는 5년의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31)	29	1	1	
훈령(4)	2		2	
예규(13)	5	1	7	
지침(15)	6		9	
계(63)	42	2	19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관련 자문 보수규정	훈 령 (4)	유효기간 (3년)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3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 공개지침		재검토 (3년)
4	민원사무처리규정		
5	공정거래위원회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규정	예 규 (13)	유효기간 (3년)
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포에 관한 운영지침		
7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9	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10	채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1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재검토 (5년)
12	지주회사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13	공동행위 심사기준		
14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15	소비자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17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18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운영지침	지 침 (15)	유효기간 (3년)
19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공정거래협약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		
20	방문판매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지침		
21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22	약관심사지침		
23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24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25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 관련자료 미제출행 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6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명령 지침		
27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		
28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 결 가이드라인		재검토 (3년)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9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		
30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31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가이드라인		
32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3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등에 관한 규정	고 시 (31)	유효기간 (3년)
34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재검토 (5년)
35	가맹사업거래사자격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재검토 (3년)
36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37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에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38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39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40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41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에 관한 고시		
42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43	기업결합심사기준		
44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45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46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47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49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50	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51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5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3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54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55	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56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5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58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고시		
59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60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일고시		
61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6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63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일고시		

한편 2004년 이후 개정실적이 없는 25개 행정규칙은 일단 폐지하고 재발령했다.

[폐지 후 재발령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예 규 (4)
2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3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4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5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지 칩 (8)
6	하도급분쟁조정지원을 위한 보조금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7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8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9	은행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0	주택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1	통신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2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3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고 시 (13)
14	국제계약 심사요청 요령	
15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16	기업결합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17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18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 규정	
20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21	사업자단체활동지침	
22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23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심사기준	
24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25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그리고 관련 제도와 규정이 폐지·변경되거나 상당기간 동안 집행 실적 등이 없어 존치 필요성이 약해진 10개 행정규칙(모법 상의 근거 규정이 없어진 규정 2건, 상당기간 집행실적이 없어 존치 필요성이 약해진 규정 3건, 관련 제도 및 규정이 폐지·변경된 경우 등 5건)을 폐지하였다.¹²⁸⁾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폐지사유	종 별
1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	장기간 적용되지 않고,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가능	고 시 (3)

128) ① 「국제계약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 등 3개 고시의 일괄 폐지」(고시 제2009-15호, 2009.8.20.), ② 「공정거래위원회 국외파견 공무원 복무규정 등 5개 훈령의 일괄 폐지훈령」(훈령 제152호, 2009.8.12.), ③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에 관한 운영지침」(예규 제58호, 2009.8.12.), ④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지침 제248호, 2009.8.12)

번호	행정규칙명	폐지사유	종 별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공정정거래법 시행령으로 상향됨에(09.5) 따라 실효성이 적음	
3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고시	출총제폐지에 따라 실효성이 없음	
4	공정거래위원회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임용규칙 등 행안부 소관 상위규정으로 규율가능	
5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자체제안제도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참여마당신문고로 대체됨에 따라 자체 운영 불필요	훈 령 (5)
6	과징금 체납처분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실제 국세청으로의 업무위탁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7	지방소비자 행정협의회 운영 규정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회 운영규정으로 포괄가능	
8	하도급자문위원회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하도급법 개정(09.4)에 따라 동 자문위원회 기폐지	
9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에 관한 운영지침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실효성이 적음	예 규 (1)
10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장기간 적용되지 않고,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가능	지 침 (1)

(2) 추진경과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63개 행정규칙은 거의 대부분 2012년 8월 20일에 기한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행정규칙을 재검토한 결과, 5개 행

정규칙을 폐지하고 4개는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을 삭제하였으며,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이 도래하였으나 검토를 하지 않은 행정규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3 현재기준).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키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키결과	비 고
1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관련 자문 보수규정	기간 재설정 (2015.8.20)	훈령 제178호 [폐지제정, 2012.8.20]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수입변화사 보수규정	3년 연장 (2015.3.1)	훈령 제159호
3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 공개지침	3년 연장 (2015.8.20)	훈령 제176호
4	민원사무처리규정	기한 재설정 (2015.8.20)	훈령 제179호 [폐지제정, 2012.8.20]
5	공정거래위원회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직접소송 수행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 삭제	예규 제78호 [제정, 2010.2.3]
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포에 관한 운영지침	기간 재설정 (2015.8.20)	예규 제141호 [폐지제정, 2012.8.20]
7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기간 재설정 (2015.8.20)	예규 제143호 [폐지제정, 2012.8.20]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기간 재설정 (2015.8.20)	예규 제140호 [폐지제정, 2012.8.21]
9	의결서 정보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기간 재설정 (2015.8.20)	예규 제142호 [폐지제정, 2012.8.20]
10	채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기한 재설정 (2015.8.20)	예규 제138호 [폐지제정, 2012.8.20]
11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기간 재설정 (2015.8.20)	예규 제147호 [폐지제정, 2012.8.20]
12	지주회사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8.20)
13	공동행위 심사기준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165호
14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3년 연장 (2015.4.25)	예규 제134호
15	소비자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150호
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139호
17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145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8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운영지침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133호
19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대·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 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유효기간 삭제	예규 제128호 (2012.1.1)
20	방문판매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지침	폐 지	예규 제235호 (2012.5.1)
21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감 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3년 연장 (2014.6.29)	예규 제114호
22	약관심사지침	기간 재설정 (2015.8.20)	예규 제158호 [폐지제정, 2012.8.20]
23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기간 재설정 (2015.8.20)	예규 제144호 [폐지제정, 2012.8.20]
24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기간 재설정 (2015.8.20)	예규 제161호 [폐지제정, 2012.8.20]
25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 관련자 료 미제출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 과기준	폐 지	예규 제163호 (2012.8.20)
26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명령 지침	폐 지	예규 제136호 (2012.5.1)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7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기한 재설정 (2014.6.30)	고시 제2011-3호 [제정, 2011.6.22]
28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159호
29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	3년 연장 (2014.6.30)	예규 제110호
30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157호
31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영가이드라인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174호
32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160호
3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등에 관한 규정	기간 재설정 (2015.8.20)	고시 제2012-21호 [폐지제정, 2012.8.20]
34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8.20)
35	가맹사업거래사자격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4호
36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70호
37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에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32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8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20호
39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63호
40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25호
41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50호
42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22호
43	기업결합심사기준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1-12호
44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3년 연장 (2015.6.21)	고시 제2012-59호
45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33호
46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3.20)	고시 제2012-5호
47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29호
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27호
49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3년 연장 (2015.4.30)	고시 제2012-10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0	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3년 연장 (2014.7.20)	고시 제2011-6호
51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42호
5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1호
53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41호
54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39호
55	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5호
56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9호
5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33호
58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38호
59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3년 연장 (2015.1.3)	고시 제2012-1호
60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일고시	폐 지	고시 제2012-60호 (2012.10.12)
61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31호
6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43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63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일고시	폐 지	고시 제2012-61호 (2012.10.12)

한편 폐지후 재발령한 25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1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3년 재검토기한을 연장조치하였다.

[폐지 후 재발령 행정규칙 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예규 제153호]
2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예규 제149호]
3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8월 연장(2013.4.6) [예규 제80호]
4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예규 제155호]
5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예규 제146호]
6	하도급분쟁조정지원을 위한 보 조금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예규 제162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7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예규 제148호]
8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예규 제154호]
9	은행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예규 제151호]
10	주택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예규 제152호]
11	통신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폐지(2012.8.20) [예규 제156호]
12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기한 미도래 (2013.12.31)
13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재검토기한 설정 (2014.8.20)	기한 미도래 (2014.8.20)
14	국제계약 심사요청 요령	재검토기한 설정 (2014.8.20)	기한 미도래 (2014.8.20)
15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고시 제2012-44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6	기업결합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고시 제2012-23호]
17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고시 제2012-67호]
18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고시 제2012-30호]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 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고시 제2012-56호]
20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고시 제2012-17호]
21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고시 제2012-28호]
22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고시 제2012-36호]
23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심사 기준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고시 제2012-52호]
24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고시 제2012-18호]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25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을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0)	3년 연장(2015.8.20) [고시 제2012-40호]

(3) 종합

일몰제 적용 (63)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4
	행정규칙 폐지		5
	일몰기한 경과		-
	일몰검토 완료		52
	소 계		61
	일몰기한 미도래		2
	계		63
폐지후 재발령 (25)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미도입		-
	일몰규정 도입 (25)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1
		일몰기한 경과	-
		일몰검토 완료	21
		소 계	22
		일몰기한 미도래	3
계		25	
총 계	88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당초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한 행정규칙과 폐지후 재발령하여 일몰제를 도입한 88개 행정규칙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검토키한이나 유효기간이 도래하였으나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없는 등 일몰대상 행정규칙의 사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몰설정 대상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의 연장 등과 관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나 재검토키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그 연장 등과 관련한 필요성 등을 제시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관 행정규칙을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훈령·예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2011.2.28 제정, 2011.11.28 일부개정)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훈령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절차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하고,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안·개정안 또는 폐지안,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려는 행정규칙의 내용, 홈페이지에 행정규칙을 게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제정·개정에 필요한 참고사항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제1항).

아울러 행정규칙에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도록 명시하고(제4조제2항), 행정규칙에 신설·강화 규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4조제3항). 그리고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결재 이전에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가능성, 훈령 등 준수의 용이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9조).

2. 금융위원회

(1) 도입현황

금융위원회는 2009년 8월 24일 소관 행정규칙 중 52개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¹²⁹⁾ 그 가운데 유효기간을 설정한 2개 행정규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3년형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키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1년형	3년형
고시(48)	47		1	
훈령(4)	3			1
계(52)	50		1	1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고 시 (48)	재검토 (3년)
2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129)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고시 제2009-50호)에서 43개 고시를 일괄개정하였고,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고시 제2009-47호),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고시 제2009-48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고시 제2009-49호),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 업무 운영준칙」(훈령 제14호),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고시 제2009-46호)은 각각 제정하여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등 금융위원회 소관 4개 훈령 일괄개정」(훈령 제21호)으로 훈령 4개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3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4	금융위원회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5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6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7	행정지도 운영규칙			
8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9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유효기간 (1년)
10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 (3년)
1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2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13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14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15	은행업감독규정			
16	은행업인가지침			
17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18	전자금융 감독규정			
19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20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21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22	보험업감독규정			
2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5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위임한서식관련규정		
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3항제2호에따른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에관한규정		
28	상호금융업감독규정		
29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30	금융투자업규정		
31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3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33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34	퇴직연금 감독규정		
3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36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규정		
3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38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39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40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41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42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4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4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46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47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48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49	금융위원회행정정보공개지침	훈 령 (4)	재검토 (3년)
50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 업무 운영준칙		
5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52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유효기간 (3년)

그리고 종전의 재정경제부고시로 발령되었던 4개 행정규칙을 일괄 폐지하였다.¹³⁰⁾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별
1	결제성예금의범위에관한고시	고 시 (4)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범위	
3	운용 및 자산설계 전문인력의 시험 및 교육 인정에 관한 기준	
4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130) 「결제성예금의범위에관한고시 등 4건 폐지를 위한 고시」(고시 제2009-51호).

(2) 추진경과

금융위원회에서는 일몰제를 도입한 52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 또는 유효기간의 도래에 즈음하여 39개 고시 일괄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공고하였다(공고 제2012-95호, 2012.5.3). 그 후 5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3개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규정을 삭제하였다.¹³¹⁾ 3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재검토기한 (2012.6.30)
2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3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 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4	금융위원회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 고 운영규칙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5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6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7	행정지도 운영규칙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131) 39개 고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고시 제2012-12호, 2012.6.26)를 마련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였다.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8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9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17호 [제정, 2011.9.8]
10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1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0호
12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 기준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13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14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15	은행업감독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31호
16	은행업인가지침	폐 지	고시 제2010-40호 (2010.11.16)
17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폐 지	고시 제2010-40호 (2010.11.16)
18	전자금융 감독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26호
19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0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21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22	보험업감독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2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2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25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시행령에서위임한서식관련 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3항제2호에따 른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에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28	상호금융업감독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29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30	금융투자업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31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33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34	퇴직연금 감독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19호
3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36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3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38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39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폐 지	고시 제2011-1호 (2011.11.4)
40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41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폐 지	고시 제2011-1호 (2011.11.4)
42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폐 지	고시 제2011-1호 (2011.11.4)
4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4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46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47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 준칙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48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49	금융위원회행정정보공개지침		재검토기한 (2012.6.30)
50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 업무 운영 준칙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2호
5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6.30)
52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유효기간 삭제	훈령 제33호

(3) 종 합

일몰제 적용 (52)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3
	행정규칙 폐지	5
	일몰기한 경과	3
	일몰검토 완료	41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소 계	52
	일몰기한 미도래	-
	계	52
총 계	52개	

금융위원회는 재검토키한(2012.6.30)이 경과한 3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또한 폐지한 5개 행정규칙 가운데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및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증권선물위원회고시 제2011-1호, 2011.11.4 제정)으로 흡수되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1년에 「금융위원회 법령사무처리규정」(훈령 제37호, 2011.10.12 제정)을 마련하여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도록 하고(제5조제2항), 또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제1항). 특히, 금융위원회는 2007년부터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2007.7.26 제정, 2012.12.26 개정)을 마련하여 규정·지침·기준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금융관련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그 규정안에 대해 사전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과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한 행정규칙의 재검토키한 또는 유효기간의 도래에 즈음하여 일괄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의견수렴절차를 공고하였다. 그러나 이 의견수렴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유효기간의 재설정이나 재검토키한의 연장에 관한 구체적 의견 및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에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부서장은 사전예고 후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안건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3. 방송통신위원회

(1) 도입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 소관 행정규칙 중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일회성 행정규칙이나, 인사·복무 및 위원회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운영규정 등 59건의 행정규칙을 제외한 92개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이 가운데 90건은 3년형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으며, 1건은 5년형 재검토기한을 나머지 1건은 5년형 유효기간을 설정하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75)	73	1	-	1
훈령(11)	11	-	-	-
예규(1)	1	-	-	-
공고(5)	5	-	-	-
계(92)	90	1		1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예 규 (1)	재검토 (3년)
2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공 고 (5)	재검토 (3년)
3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4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5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6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7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8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		
9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10	방송시간 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1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1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주요 정보통신시설 보호 지침		
13	방송통신위원회 재정규정		
14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1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16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17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용자사업 관리요령		
18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고 시 (75)	
19	검정시험 면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0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1	경미한 공사의 범위		
22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23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2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25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26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27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28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29	무선국 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30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31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		
32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33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 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34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고시		
35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36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 등록에 관한 고시		
37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38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39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40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41	신규영어 FM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42	신호점번호 관리기준		
43	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 심사기준별 평가방법		
4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45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46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47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48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49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50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절차 및 기준		
51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52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53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54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55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56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57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58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5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60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61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62	전자파 장해 방지기준		
63	전자파 보호기준		
64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65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66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67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68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69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요강		
70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71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72	조사·시험 및 조치기준·방법		
7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74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요건		
75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76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징수율		
77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78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79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80	통신망 종합관리지침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81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82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83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84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		
85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86	상품소개와판매에 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한방송발전기금징수율		재검토 (5년)
87	시내전화,인터넷전화및080착신과금서비스번호이동성시행 등에 관한 기준		
88	위성방송사업자에대한방송발전기금징수율		
89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90	무선설비규칙		
9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92	지상파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		

(2) 추진경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설정한 3년형 재검토키한은 전부 2012.10.31까지 재검토키한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행정규칙 가운데 39건(고시 33건, 규칙 1건, 훈령 5건)의 폐지, 개정 등과 관련하여 재검토키한을 다시 3년으로 연장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수렴절차를 하였다(공고 제2012-91호, 2012.8.7).

이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재검토기한의 연장하거나 일부 행정규칙에 대한 폐지조치를 하였다.

검토대상 92개 행정규칙 가운데 유효기간 및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2개 행정규칙을 제외하고, 11개 행정규칙을 폐지하였다. 그 가운데 순수하게 폐지된 것은 4개이며, 나머지는 기존의 행정규칙에 대체되는 새로운 행정규칙을 제정하였거나 기존의 유사한 행정규칙에 흡수된 것이다.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기한 연장과 관련한 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4건으로 나타났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2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폐 지	고시 제2011-14호 (2011.1.31)
3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폐 지	고시 제2011-22호 (2011.3.29)
4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3년 연장 (2015.10.31)	규칙 제30호
5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2년 연장 (2014.11.30)	규칙 제23호
6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3년 연장 (2015.2.28)	규칙 제24호
7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3년 연장 (2015.10.31)	훈령 제127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8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재검토 기한 삭제	훈령 제99호 [전부개정, 2011.8.16]
9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124호
10	방송시간 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폐 지	훈령 제140호 (2013.1.14)
11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3년 연장 (2015.1.31)	고시 제2012-5호
1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주요 정보통신 시설 보호지침	3년 연장 (2015.10.31)	훈령 제130호
13	방송통신위원회 재정규정	3년 연장 (2015.10.31)	훈령 제128호
14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2년 연장 (2014.10.31)	훈령 제114호
1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폐 지	훈령 제96호 (2011.4.29)
16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10.31)	훈령 제126호
17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3년 연장 (2015.10.31)	훈령 제129호
18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72호
19	검정시험 면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기한 재설정 (2014.1.30)	고시 제2011-8호 [전부개정, 2011.1.26]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0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97호
21	경미한 공사의 범위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58호
22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71호
23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승인 기준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70호
2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98호
25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102-83호
26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39호
27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100호
28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3년 연장 (2014.12.31)	중앙전파 관리소 고시 제2011-6호 [제정, 2011.1.24]
29	무선국 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2년 연장 (2014.1.30)	고시 제2011-9호
30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2년 연장 (2014.12.31)	중앙전파 관리소 고시 제2011-1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제정, 2011.1.24]
31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	2년 연장 (2014.12.31)	중앙전파 관리소 고시 제2011-5호 [제정, 2011.1.24]
32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78호
33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 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59호
34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고시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60호
35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폐 지	고시 제2011-12호 (2011.1.26)
36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 등록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폐 지	고시 제2011-12호 (2011.1.26)
37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88호
38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7.17)	고시 제2012-45호
39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36호
40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67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1	신규영어 FM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폐 지	고시 제2011-22호 (2011.3.29)
42	신호점번호 관리기준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74호
43	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 심사기준별 평가방법	2년 연장 (2014.12.31)	고시 제2012-40호
44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2년 연장 (2014.12.31)	고시 제2012-18호
45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96호
46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56호
47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2년 연장 (2014.10.31)	고시 제2012-108호
48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61호
49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62호
50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절차 및 기준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87호
51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79호
52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81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3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94호
54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89호
55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68호
56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2년 연장 (2014.10.31)	고시 제2012-109호
57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103호
58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69호
5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기한 재설정 (2013.12.29)	고시 제2010-55호, [전부개정, 2010.12.30]
60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 를 주지 아니 하도록 그 운용을 금 지하는 주파수대역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63호
61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2년 연장 (2014.12.31)	고시 제2012-2호
62	전자파 장해 방지기준	3년 연장 (2015.7.1)	중앙전파 관리소 고시 제2011-5호 [제정, 2011.1.25]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63	전자파 보호기준	3년 연장 (2015.7.1)	국립전파 연구원 고시 제2012-14호 [일부개정, 2012.6.28]
64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4.12.31)	중앙전파 관리소 고시 제2011-2호 [제정, 2011.1.24]
65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2년 연장 (2014.1.30)	고시 제2012-27호
66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10.31)	국립전파 연구원 고시 제2011-7호 [제정, 2011.1.25]
67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6.2.17)	고시 제2013-4호 [전부개정, 2013.1.17]
68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 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1.31)	고시 제2012-24호
69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요강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85호
70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 통신위원회규정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3-7호
71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77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72	조사·시험 및 조치기준·방법	2년 연장 (2013.12.31)	중앙전파 관리소 고시 제2011-7호 [제정, 2011.1.24]
7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폐 지	고시 제2011-22호 (2011.3.29)
74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요건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재2012-65호
75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64호
76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징수율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폐 지	고시 제2011-22호 (2011.3.29)
77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3년 연장 (2015.1.31)	고시 제2012-29호
78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재검토기한 (2012.10.31)
79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86호
80	통신망 종합관리지침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73호
81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82호
82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10.15)	고시 제2012-57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83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규정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66호
84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		재검토기한 (2012.10.31)
85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3년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80호
86	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한방송발전기금징수율	폐 지	고시 제2011-22호
87	시내전화,인터넷전화및080착신과금서비스번호이동성시행 등에 관한 기준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7.9)	고시 제2012-42호
88	위성방송사업자에대한방송발전기금징수율	폐 지	고시 제2011-22호
89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재검토기한 (2012.8.6)
90	무선설비규칙	3년 연장 (2015.9.10)	고시 제2012-101호
9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10.31)
92	지상파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	기간 미도래	유효기간 (2013.12.31)

(3) 종합

	항 목	검토결과
일몰제 적용	일몰규정 삭제	1
	행정규칙 폐지	11
	일몰기한 경과	4
	일몰검토 완료	74
	소 계	90
	일몰기한 미도래	2
	계	92
총 계	92개	

폐지된 11개 행정규칙 가운데 4개 행정규칙은 완전 폐지하였으며, 나머지 5개 행정규칙은 신규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대체한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훈령 제131호, 2012.10.30 제정)을 마련하여, 훈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의 부패영향평가(제6조)와 신설·강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자체 규제심사(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훈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그 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안·개정안 또는 폐지안,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 홈페이지에 훈령 등을 게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타 참고사항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또한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훈령 등이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한편 행정규칙의 폐지·개정 등과 관련하여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기 위한 의견수렴절차는 제도화되어 있고, 홈페이지상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의견수렴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유효기간의 재설정이나 재검토기한의 연장에 관한 구체적 의견 및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4. 국민권익위원회

(1) 도입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 행정규칙 중 11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행 또는 유효기간 설정형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그 가운데 유효기간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2개, 재검토행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9개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행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훈령(3)	2	-	1	-
예규(8)	7	-	1	-
계(11)	9	-	2	-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훈 령 (3)	유효기간 (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3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 운용규정		재검토 (3년)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예 규 (8)	유효기간 (3년)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재검토 (3년)
6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7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등에 관한 운영지침		
8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요강		
9	부패행위신고사무 운영지침		
10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11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2) 추진경과

권익위원회에서는 13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 또는 유효기간의 도래에 즈음하여 2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1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기간재설정 (2015.8.24)	훈령 제77호 [2012.8.14, 폐지제정]
2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기한재설정 (2015.10.24)	훈령 제80호 [2012.10.25, 전부개정]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 운용규정		재검토기한 (2012.8.24)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3년연장 (2015.8.24)	예규 제53호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3년 연장 (2015.8.24)	예규 제51호
6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3년 연장 (2015.8.24)	예규 제51호
7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폐 지	예규 제33호 (2010.3.22)
8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요강	폐 지	예규 제33호 (2010.3.22)
9	부패행위신고사무 운영지침	3년연장 (2015.8.24)	예규 제51호
10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3년연장 (2015.8.24)	예규 제56호
11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3년연장 (2015.8.24)	예규 제57호

(3) 종 합

일몰제 적용 (11)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2
	일몰기한 경과	1
	일몰검토 완료	8
소 계		11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일몰기한 미도래	-
	계	11
총 계	11개(일몰제 도입 건수)	

5. 경찰청

(1) 도입현황

경찰청은 2009년 8월 25일 소관 행정규칙 중 39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3년형 일몰제를 도입하였다.¹³²⁾ 그 가운데 유효기간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28개, 재검토키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11개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키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1)	1	-	-	-
훈령(19)	5	-	14	-
예규(19)	5	-	14	-
계(39)	11	-	28	-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	경찰방문및방법진단규칙	훈 령 (19)	유효기간 (3년)
2	일시보호자에대한급식규칙		

132) 「규칙 일몰제 관련 경찰방문 및 방법진단 규칙 등 일제 정비규칙」(훈령 제563호, 2009. 8.25), 「규칙 일몰제 관련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등 일제 정비규칙」(예규 제403호, 2009.8.25) 등을 통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3	범죄수사규칙				
4	내사사건처리규칙				
5	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				
6	범죄피해자보호규칙				
7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8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9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10	용감한 시민장 발급규칙				
11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				
12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3	통합방위대비태세 검열 규칙				
14	범죄현장 사진·비디오물의 작성 및 기록 관리 규칙				
15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재검토 (3년)	
16	교통안전시설등설치·관리에관한규칙				
17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18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19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20	경찰청 산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칙			예 규 (19)	유효기간 (3년)
21	실종아동등·가출인업무처리규칙				
22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23	수사이의사건처리규칙				
24	행정검시규칙				
25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26	지명수배규칙			
27	거짓말탐지기운영규칙			
28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9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30	경찰작전부호 표시 규칙			
31	작전지도 관리 규칙			
32	예비군 무기·탄약 관리 규칙			
33	야간 통행증 및 운행증 발급 규칙			
34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재검토 (3년)
35	소년업무처리규칙			
36	경찰민원봉사실운영규칙			
37	경찰의식규칙			
38	경찰순찰정 관리운영규칙			
39	경비지도사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책정고시			고 시 (1)

아울러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16개 행정규칙(고시 2개, 훈령 5개, 예규 9개)을 폐지하였다.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특수직무경찰관복제규칙	훈 령 (5)
2	경찰서축탁의위촉규칙	
3	경찰청 시민감사위원회 운영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4	사무관리규정시행세부규칙	예 규 (9)	
5	경찰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칙		
6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운영규칙		
7	경찰공무원체력관리규칙		
8	경찰검사업무규칙		
9	경찰청 여성·아동·청소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10	소년범죄수사활동비취급규칙		
11	위조통화취급규칙		
12	통역인등비용지급규칙		
13	경찰수배규칙		
14	경찰혁신기획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칙		
15	건설교통부와경찰청과의수사업무한계협정		고 시 (2)
16	경찰청장의사무중지방경찰청장에게위임하는사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고시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고시 14개를 폐지하고 같은 내용을 대체하는 고시를 재발령하였다.¹³³⁾

133) 한편 경찰청에서는 2013.9.15 「경찰청규칙정비를위한폐지규칙」(훈령 제408호)에서 15개 훈령 등을 폐지하였다. 폐지된 훈령 등은 ① 행정정보공개지도관운영규칙, ② 경비수당지급규칙, ③ 경찰예절규칙, ④ 경찰공무원사무인계규칙, ⑤ 종합발간실운영규칙, ⑥ 경찰교육기관교재편찬위원회운영규칙, ⑦ 외근경찰관근무규칙, ⑧ 특수범죄진압규칙, ⑨ 경찰행정선등운영규칙, ⑩ 전경구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 ⑪ 경찰청외사자료실운영규칙, ⑫ 수사및감식장비관리규칙, ⑬ 경찰직제의영어명칭에관한규칙, ⑭ 112순찰차운영규칙, ⑮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금지급규칙 등이다.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경찰대학학비등상환에 관한규칙	훈 령 (7)
2	경찰교육발전위원회운영규칙	
3	경찰감찰규칙	
4	경찰청내부공익센터운영및신고자보호에 관한규칙	
5	관용심사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규칙	
6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제14조제2항시행에 관한규칙	
7	경찰무도연구지도관관리규칙	
8	경찰위로·복지기금운영에 관한규칙	예 규 (7)
9	경찰병원원무감독규칙	
10	경찰청의무실운영규칙	
11	112신고센터운영규칙	
12	낙도초소근무규칙	
13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14	감찰계고및장려제도실시규칙	

(2) 추진경과

경찰청에서는 39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 또는 유효기간의 도래에 즈음하여 행정규칙 37건에 대해서 유효기간의 재설정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조치를 하였으며, 2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2012.8.31)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경찰방문및방범진단규칙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676호
2	일시보호자에대한급식규칙		유효기간 (2012.8.31)
3	범죄수사규칙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669호
4	경찰 내사처리규칙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677호
5	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672호
6	범죄피해자보호규칙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673호
7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674호
8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670호
9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3년 연장 (2015.7.31)	훈령 제675호
10	용감한 시민장 발급규칙	3년 연장 (2015.7.31)	훈령 제660호
11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	3년 연장 (2015.7.31)	훈령 제659호
12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3년 연장 (2015.7.31)	훈령 제657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3	통합방위대비태세 검열 규칙	3년 연장 (2015.7.31)	훈령 제656호
14	범죄현장 사진·비디오물의 작성 및 기록 관리 규칙	3년 연장 (2015.7.31)	훈령 제658호
15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2년 연장 (2014.8.31)	훈령 제648호
16	교통안전시설등설치·관리에관한규칙	2년 연장 (2014.7.31)	훈령 제635호
17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661호
18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3년 연장 (2015.12.31)	훈령 제664호
19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3년 연장 (2015.6.30)	훈령 제662호
20	경찰청 산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칙	3년 연장 (2015.8.31)	예규 제467호
21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3년 연장 (2015.2.4)	예규 제450호
22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3년 연장 (2015.8.31)	예규 제460호
23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3년 연장 (2015.8.31)	예규 제461호
24	행정검시규칙	3년 연장 (2015.8.31)	예규 제463호
25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	3년 연장 (2015.8.31)	예규 제470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6	지명수배규칙	3년 연장 (2015.4.30)	훈령 제655호
27	거짓말탐지기운영규칙 [거짓말탐지기 검사운영규칙]	3년 연장 (2015.8.31)	예규 제469호
28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지원 및 관 리에 관한 규칙	3년 연장 (2015.8.31)	예규 제459호
29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 한 규칙	3년 연장 (2015.7.31)	예규 제456호
30	경찰작전부호 표시 규칙	3년 연장 (2015.7.31)	예규 제455호
31	작전지도 관리 규칙	3년 연장 (2015.7.31)	예규 제454호
32	예비군 무기·탄약 관리 규칙	3년 연장 (2015.7.31)	예규 제453호
33	야간 통행증 및 운행증 발급 규칙	3년 연장 (2015.7.31)	예규 제452호
34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3년 연장 (2015.8.31)	예규 제468호
35	소년업무처리규칙		재검토기한 (2012.8.31)
36	경찰민원봉사실운영규칙	3년 연장 (2015.8.31)	예규 제471호
37	경찰의식규칙	3년 연장 (2015.7.31)	예규 제451호
38	경찰순찰정 관리운영규칙	3년 연장 (2015.7.31)	예규 제457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9	경비지도사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	3년 연장 (2015.8.31)	고시 제2012-5호

한편 폐지후 재발령한 14개 행정규칙에 대해서 1개에 대해서만 유효기간(3년)을 설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일몰제규정을 두지 않았다.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	경찰대학학비등상환에관한규칙	유효기간 설정 (2012.8.31)	기간재설정 (2015.8.31) [훈령 제680호]
2	경찰교육발전위원회운영규칙	일몰제규정 없음	훈령 제565호 [폐지제정, 2009.8.26]
3	경찰감찰규칙	일몰제규정 없음	훈령 제568호 [폐지제정, 2009.8.26]
4	경찰청내부공익센터운영및신고 자보호에관한규칙	일몰제규정 없음	훈령 제569호 [폐지제정, 2009.8.26]
5	관용심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 한규칙	일몰제규정 없음	훈령 제570호 [폐지제정, 2009.8.26]
6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 칙제14조제2항시행에관한규칙	일몰제규정 없음	훈령 제566호 [폐지제정, 2009.8.26]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7	경찰무도연구지도관관리규칙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몰제규정 없음	훈령 제566호 [제정, 2009.8.26]
8	경찰위로·복지기금운영에 관한 규칙	일몰제규정 없음	예규 제406호 [폐지제정, 2009.8.26]
9	경찰병원원무감독규칙	일몰제규정 없음	예규 제405호 [폐지제정, 2009.8.26]
11	경찰청의무실운영규칙	일몰제규정 없음	예규 제407호 [폐지제정, 2009.8.26]
11	112신고센터운영규칙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일몰제규정 없음	예규 제408호 [폐지제정, 2009.8.26]
12	낙도초소근무규칙	일몰제규정 없음	예규 제409호 [폐지제정, 2009.8.26]
13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일몰제규정 없음	예규 제410호 [폐지제정, 2009.8.26]
14	감찰계고및장려제도실시규칙	일몰제규정 없음	예규 제411호 [폐지제정, 2009.8.26]

(3) 종합

		항 목	검토결과
일몰제 적용 (39)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
	일몰기한 경과		2
	일몰검토 완료		37
	소 계		39
	일몰기한 미도래		-
	계		39
		항 목	검토결과
폐지후 재발령 (15)	일몰규정 미도입		14
	일몰규정 도입 (1)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
		일몰기한 경과	-
		일몰검토 완료	1
		소 계	1
		일몰기한 미도래	-
	계		15
총 계	40개(일몰제 도입 건수)		

경찰청에서는 「경찰법제사무 처리규칙」(2010.7.1 제정, 2012.1.3 개정)을 마련하여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행정규칙 일몰제와 관련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규칙의 정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칙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조제2항).

한편 행정규칙 정비안에 대한 내부의견수렴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제12조), 외부의견수렴제도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법령안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및 통계영향평가(제17조), 입법예고(제19조), 규제심사(제20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행정규칙의 개정문과 전문을 경찰청의 지식관리 시스템·사이버경찰청 등 법령자료 관리시스템 및 법제처의 국가종합 법령센터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제3항).

6. 관세청

(1) 도입현황

관세청은 소관 행정규칙 중 96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¹³⁴⁾ 대부분 행정규칙은 3년 재검토행 일몰제를 도입하였고, 4개 행정규칙은 3년형 유효기간을 설정하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키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67)	67	-	-	-

134) 관세청은 2009.8.7. ①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등 63개 고시 일괄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② 「관세행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의 일괄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를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77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이들 일괄개정 입안예고를 전후하여 4개 고시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으며, 관세청이 법제처에 제출한 자료(2009.4)를 조사결과 15개 훈령(비공개제외)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전체 96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훈령(29)	25	-	4	-
계(96)	92	-	4	-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고 시 (67)	재검토 (3년)
2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에 관한 고시		
3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4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5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6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7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8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9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10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1	수출입 신고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		
1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3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4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15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6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17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18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19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21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2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23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24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25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6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27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28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8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30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1	일시 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32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3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34	COB화물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5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36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8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9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0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41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42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3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고시		
44	당좌수표에 의한 관세수납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5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46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47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48	수입물품에 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49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5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		
51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고시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52	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				
53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54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55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56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57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항지정 기준에 관한 고시				
58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59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60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61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 등에 관한 고시				
62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63	전자문서 증계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64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5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66	원산지제도에관한고시				
67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				
68	관세행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훈 령 (29)	재검토 (3년)
69	관세행정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시행세칙				
70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71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유효기간 (3년)
72	고객관계관리(CRM)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73	관세행정 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74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75	종합심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		
76	원산지국민감시단운영에관한시행세칙		
77	물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재검토 (3년)
78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79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80	징수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81	품목분류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82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8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84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85	관세청및세관관서출입증관리에관한시행세칙		
86	주한미군잉여재산불하물품통관에관한시행세칙		
87	납세심사대상선별및운영에관한시행세칙		
88	체납정리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		
89	기획심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		
90	관세법칙등에대한통고처분및고발에관한시행세칙		
91	밀수및탈세신고처리에관한시행세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92	밀수신고자의포상에관한시행세칙		
93	세관공무원의범칙조사에관한시행세칙		
94	압수물품보관관리에관한시행세칙		
95	참고인등비용지급에관한시행세칙		
96	마약류정보업무수행에관한시행세칙		

아울러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3개 행정규칙(고시 3개)을 폐지하였다.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등에 관한 고시	고 시 (3)
2	원유 등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등에 관한 고시	
3	원유등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등에 관한 고시	

2003.12.31. 제정된 고시로서 2004.1.1.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고시 16개를 폐지하고 같은 내용을 대체하는 고시를 재발령하였다.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관세감면물품수입신고전심사제운영에관한고시	고 시 (16)
2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3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4	국고귀속물품의국고귀속이전보관료지급에관한고시	
5	보세건설장관리에관한고시	
6	보세전시장운영에관한고시	
7	컨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	
8	관세법시행령제2조및제125조의시행에관한고시	
9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10	농림축산물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11	농산물의혼합물에대한품목분류기준에대한품목분류고시	
12	도라지,더덕및염장쇠고기에대한품목분류고시 [염장쇠고기 기에 대한 품목분류 고시]	
13	돼지뼈및소뼈의품목분류에관한고시	
14	세관수수료징수사무처리에관한고시	
15	세관환급금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16	납세자권리헌장	

(2) 추진경과

관세청에서는 96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 또는 유효기간의 도래에 즈음하여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6개 행정규칙과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하지 않은 5개 행정규칙을 제외하고 전부 연장조치하는 한편 1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1개는 폐지하였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1)	고시 제2012-32호
2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41호
3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3년 연장 (2015.1.1)	고시 제2011-53호
4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43호
5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6.15)	고시 제2010-122호
6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8.31)	고시 제2010-112호
7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45호
8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10.7)	고시 제2010-120호
9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1.31)	고시 제2010-1호
10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12.17)	고시 제2012-41호 [전부개정, 2012.12.24]
11	수출입 신고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12.17)	고시 제2012-39호
1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6.2.11)	고시 제2013-4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3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1-32호
14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16호
15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1-55호
16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1.31)	고시 제2012-1호
17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10.17)	고시 제2012-36호
18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6.8.31)	고시 제2011-36호
19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1-48호
20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60호
21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42호
2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2년 연장 (2014.6.30)	고시 제2011-29호
23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63호
24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5.15)	고시 제2012-15호
25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년 연장 (2014.3.31)	고시 제2011-15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6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2년 연장 (2014.10.24)	고시 제2011-43호
27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68호
28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년 연장 (2014.10.3)	고시 제2011-40호
28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2년 연장 (2014.10.4)	고시 제2011-38호
30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73호
31	일시 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4.11)	고시 제2012-8호
32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09-27호 [폐지제정, 2009.7.27]
33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77호
34	COB화물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78호
35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79호
36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80호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2-21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8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2012.8.19)
39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14호
40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16)	고시 제2012-25호
41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2년 연장 (2014.12.27)	고시 제2011-49호
42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2년 연장 (2014.12.31)	고시 제2011-54호
43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7.31)	고시 제2010-109호
44	당좌수표에 의한 관세수납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16)	고시 제2012-28호
45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2년 연장 (2014.10.31)	고시 제2012-46호
46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87호
47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2년 연장 (2014.3.29)	고시 제2012-19호
48	수입물품에 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2년 연장 (2014.2.9)	고시 제2011-2호
49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90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		재검토기한 (2012.8.19)
51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93호
52	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94호
53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6.30)	고시 제2012-14호
54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31)	고시 제2012-35호
55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2년 연장 (2014.12.23)	고시 제2012-4호
56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6.1.31)	고시 제2013-3호 [제정, 2013.1.31]
57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항지정 기준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16)	고시 제2012-29호
58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97호
59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43호
60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16)	고시 제2012-30호
61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 등에 관한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기한 재설정 (2017.3.31)	고시 제2012-6호 [전부개정, 2012.3.27]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62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 절차에 관한 고시	1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100호
63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2012.8.19)
64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4.2.23)	고시 제2011-6호
65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 관한고시	3년 연장 (2013.5.31)	고시 제2010-75호
66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3년 연장 (2016.3.20)	고시 제2013-6호
67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5.31)
68	관세행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1년 연장 (2013.5.31)	훈령 제1331호
69	관세행정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시행세칙	2년 연장 (2014.4.20)	훈령 제1427호
70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3년 연장 (2015.8.16)	훈령 제1491호
71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재검토기한 (2012.8.19)
72	고객관계관리(CRM)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년 연장 (2013.5.31)	훈령 제1333호
73	관세행정 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3년 연장 (2015.8.16)	훈령 제1488호
74	관세법등에 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시행세칙	3년 연장 (2014.12.31)	훈령 제1460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75	종합심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	기간 미도래	유효기간 (2013.5.31)
76	원산지국민감시단운영에관한시행세칙	폐 지	훈령 제1498호
77	물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 한 시행세칙	1년 연장 (2013.5.31)	훈령 제1336호
78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3년 연장 (2015.12.9)	훈령 제1500호
79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3년 연장 (2016.1.4)	훈령 제1507호
80	징수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1년 연장 (2013.5.31)	훈령 제1339호
81	품목분류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1년 연장 (2013.5.31)	훈령 제1471호
82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3년 연장 (2016.1.14)	훈령 제1510호
8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3년 연장 (2016.1.14)	훈령 제1509호
84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년 연장 (2013.4.30)	훈령 제1322호
85	관세청및세관관서출입증관리에관한 시행세칙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5.31)
86	주한미군잉여재산불하물품통관에관 한시행세칙	3년 연장 (2016.1.14)	훈령 제1511호
87	납세심사대상선별및운영에관한시행 세칙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기한 재설정 (2015.6.30)	훈령 제1485호 [전부개정, 2012.7.6]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88	체납정리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	3년 연장 (2015.7.4)	훈령 제1484호
89	기획심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		재검토기한 (2012.7.9)
90	관세범칙등에대한통고처분및고발에 관한시행세칙 [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범칙 등 통고처 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	3년 연장 (2014.7.31)	훈령 제1443호 훈령 제1442호
91	밀수및탈세신고처리에관한시행세칙	3년 연장 (2013.0.0일)	훈령 제1329호
92	밀수신고자의포상에관한시행세칙	3년 연장 (2015.8.16)	훈령 제1489호
93	세관공무원의범칙조사에관한시행세칙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5.31)
94	압수물품보관관리에관한시행세칙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5.17)
95	참고인등비용지급에관한시행세칙	3년 연장 (2014.5.11)	훈령 제1436호
96	마약류정보업무수행에관한시행세칙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5.31)

한편 폐지후 재발령한 행정규칙 16건에 대해서는 3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나머지 13개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였다.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	관세감면물품수입신고전심사제 운영에관한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19)	3년 연장(2013.5.31) [고시 제2010-42호]
2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19)	3년 연장(2013.5.31) [고시 제2010-46호]
3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19)	3년 연장(2015.4.18) [고시 제2012-11호]
4	국고귀속물품의국고귀속이전보 관료지급에관한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19)	3년 연장(2013.5.31) [고시 제2010-52호]
5	보세건설장관리에관한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19)	2년 연장(2014.4.1) [고시 제2011-19호]
6	보세전시장운영에관한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19)	3년 연장(2013.5.31) [고시 제2011-117호]
7	컨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19)	3년 연장(2013.5.31) [고시 제2010-66호]
8	관세법시행령제2조및제125조의 시행에관한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19)	3년 연장(2015.8.16) [고시 제2012-24호]
9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 분류기준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19)	3년 연장(2015.8.16) [고시 제2012-27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검토결과
10	농림축산물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19)	3년 연장(2014.12.31) [고시 제2011-58호]
11	농산물의혼합물에대한품목분류기준에대한품목분류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19)	폐지(2010.10.27) [고시 제2010-129호]
12	도라지,더덕및염장쇠고기에대한품목분류고시[염장쇠고기에 대한 품목분류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19)	폐지(2010.10.27) [고시 제2010-129호]
13	돼지뼈및소뼈의품목분류에관한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19)	폐지(2010.10.27) [고시 제2010-129호]
14	세관수수료징수사무처리에관한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19)	3년 연장(2013.8.31) [고시 제2010-116호]
15	세관환급금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19)	3년 연장(2014.8.10) [고시 제2011-33호]
16	납세자권리현장	재검토기한 설정 (2012.8.19)	3년 연장(2015.8.16) [고시 제2012-24호]

(3) 종합

일몰제 적용 (96)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1
행정규칙 폐지	1	

	일몰기한 경과	5	
	일몰검토 완료	83	
	소 계	90	
	일몰기한 미도래	6	
	계	96	
폐지후 재발령 (16)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미도입	-	
	일몰규정 도입 (16)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3
		일몰기한 경과	-
		일몰검토 완료	13
		소 계	16
		일몰기한 미도래	-
계	16		
총 계	112개		

관세청에서는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훈령 제1494호, 2012. 8.21 제정)을 마련하여 행정규칙의 제·개정시 사전심사제도 및 부패영향평가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제6조). 특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행정규칙은 행정예고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제4항). 또한 제·개정하려는 행정규칙에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행정규칙의 제·개정시 행정예고는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고 다만, 제·개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제1항). 소관 부서는 행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그 처리결과와 사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제4항).

한편 위의 일몰제 도입관련 행정규칙 및 폐지 행정규칙과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에 대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제도를 실시하였다. 관세청은 2000년부터 정부기관 중에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규칙의 입안예고제’를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였다. 홈페이지 입안예고 대상은 관세청이 제·개정하는 고시, 지침 기타 관세행정 제도개선안 중 민원인 및 관련업체의 권리·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세관과 관련한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공개 장소인 홈페이지를 통해 입안 취지, 기대 효과, 주요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사전에 이해관계인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청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제·개정되는 행정규칙의 대부분이 민원인 특히 수출입업체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관세행정상 중요한 제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관련 규정의 갑작스런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는 것이 입안예고제의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 입안예고 사항에는 의견접수처·담당자·의견 제출시한·의견 제출 방법 등 행정사항을 함께 공고하며, 의견제출자에 대하여는 향후에 그 처리결과 및 처리사유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7. 국세청

(1) 도입현황

국세청은 소관 행정규칙 중 99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3년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은 63개 행정규칙, 3년 유효기간을 설정한 행정규칙이 36개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61)	60	-	1	-
훈령(38)	3	-	35	-
계(99)	63	-	36	-

[일몰제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훈 령 (38)	유효기간 (3년)
2	금품 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		
3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4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5	소송사무처리규정		
6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7	국세청 통계사무처리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8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9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10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11	인지세사무처리규정		
12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13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14	조사사무처리규정		
15	과세자료관리규정		
16	법인세사무처리규정		
17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18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19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20	국세청 기술연구소 주류분석규정		
21	세무정보자료관리규정		
22	주세사무처리규정		
23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		
24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규정		
25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26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27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28	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		
29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30	과세쟁점자문사무처리규정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31	우편물 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32	국세청 청사출입자 통제규정			
33	주류품질인증사무처리규정			
34	근로장려세제사무처리규정			
3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 제공에 관한 규정			
36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재검토 (3년)
37	국세종합민원봉사실 사무처리규정			
38	국세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39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대한 고시	고 시 (61)	유효기간 (3년)	
40	장기채권,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재검토 (3년)	
41	정기금을 받을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42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43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44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45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46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47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48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49	주류 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50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제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		
5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고시		
52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53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54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55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56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57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58	주정 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59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60	불성실주류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감량기준 고시		
61	소규모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 성실신고 기준 고시		
62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63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을 고시		
64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부속서류 제출대상과 서식 고시		
65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첨부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고시(거주자)		
66	조세피난처 지정 고시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67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고시		
68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69	다단계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70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71	외교관면세점 판매확인서 서식 고시		
72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73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74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75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76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77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지정 고시		
78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저장,이동,설비,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79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80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81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82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기록표 고시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83	관광알선 수수료 명세표 고시		
84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85	유가환급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86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87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88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89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90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 하여야하는 사업자의 기준		
91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		
92	생활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		
93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94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9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증거 자료 고시		
96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고시		
97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98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99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		

아울러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24개 행정규칙을 폐지하였다.

[폐지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공무원 교육상 기금운영 규정	훈 령 (5)
2	별정직 전산요원 관리규정	
3	복지후생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4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규정	
5	대통령 및 국무총리지시사항 처리규정	
6	주류의 수출용원자재 소요량 증명서 발급요령 고시	고 시 (19)
7	연간 도매물가 상승율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고시	
8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9	정부양곡기준가격 고시	
10	기준가격고시(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11	영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자기자본이익율 및 자기자본 회전을 고시	
12	유선방송사업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고시	
13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고시	
14	전산매체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15	아시아개발은행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과 방법 및 절차고시	
16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고시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7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특례 관련 업종별 수입금액신장을 등 고시	
18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을 등 고시	
19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	
20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의 금융기관 일괄제출에 관한 고시	
21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	
22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 제외 서류 범위 고시	
23	세인 및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24	계약상대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한 고시	

2003.12.31. 제정된 고시로서 2004.1.1. 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고시 33개를 폐지하고 같은 내용을 대체하는 고시를 재발령하였다.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훈 령 (6)
2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3	법령사무처리규정	
4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5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6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7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집행상의 경감세율 적용방법	고 시 (27)
8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시 적용할 입회조사 기준 고시	
9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10	간편장부 고시	
11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 규정	
12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지정 고시	
13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거래 고시	
14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15	납세 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	
16	밀술 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17	주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18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19	과세자료 제출대상법인 지정 고시	
20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2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22	영수증의 서식	
23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하는사업자가 지켜야 할사항고시	
24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25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시가 불인정기간 고시	
26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평가지 적용할 이자율 고시	
27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28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29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30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고시	
31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32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33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2) 추진경과

일몰제를 도입한 99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경과한 6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15개 행정규칙은 폐지하였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3년 연장 (2015.8.23)	훈령 제1953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2	금품 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	기간 미도래	유효기간 (2013.4.30)
3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6.2.6)	훈령 제1974호
4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1년 연장 (2014.5.31)	훈령 제1899호
5	소송사무처리규정	1년 연장 (2013.5.2)	훈령 제1855호
6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1년 연장 (2013.2.28)	훈령 제1826호
7	국세청 통계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9.15)	훈령 제1955호
8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3년 연장 (2015.6.30)	훈령 제1924호
9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5.31)	훈령 1939호
10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비공개
11	인지세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1.31)	훈령 제1921호
12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1.31)	훈령 제1919호
13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1.31)	훈령 제1830호
14	조사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6.30)	훈령 제1945호
15	과세자료관리규정	1년 연장 (2013.4.30)	훈령 제1861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16	법인세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3.11)	훈령 제1929호
17	국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3년 연장 (2015.8.23)	훈령 제1952호
18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12.31)	훈령 제1967호
19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기간 미도래	유효기간 (2013.3.31)
20	국세청 기술연구소 주류분석규정	1년 연장 (2013.12.31)	훈령 제1814호
21	세무정보자료관리규정		비공개
22	주세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12.31)	훈령 제1966호
23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		유효기간 (2012.9.30)
24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규정	3년 연장 (2015.9.30)	훈령 제1958호
25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1년 연장 (2013.3.31)	훈령 제1875호
26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기간재설정 (2013.3.14)	훈령 제1823호 [2010.3.15, 전부개정]
27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4.30)	훈령 제1936호
28	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	기간재설정 (2013.7.19)	훈령 제1867호 [2010.7.19, 전부개정]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 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9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6.1.20)	훈령 제1971호
30	과세쟁점자문사무처리규정 [과세사 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기간 재설정 (2013.2.28)	훈령 제1817호 [2010.3.2, 전부개정]
31	우편물 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9.23)	훈령 제1957호
32	국세청 청사출입자 통제규정		비공개
33	주류품질인증사무처리규정	폐 지	훈령 제1869호 (2010.8.25)
34	근로장려세제사무처리규정	기간 미도래	유효기간 (2013.3.31)
3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확정일 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기간 미도래	유효기간 (2013.12.6)
36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4.12.31)	훈령 제1915호
37	국세종합민원봉사실 사무처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9.15)
38	국세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3.31)
39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불 이행자의 과태료양정 및 부과·징 수 규정에 대한 고시	폐 지	고시 제2011-1호 (2011.1.10)
40	장기채권,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폐 지	고시 제2012-29호 (2012.8.1)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 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1	정기금을 받을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폐 지	고시 제2012-30호 (2012.7.31)
42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기한재설정 (2013.6.30)	고시 제2011-15호 [2011.7.1, 제정]
43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3년 연장 (2015.9.30)	고시 제2012-68호
44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기한재설정 (2015.8.23)	고시 제2012-57호 [2012.8.24, 폐지제정]
45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1년 연장 (2013.6.30)	고시 제2010-25호
46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3년 연장 (2015.6.30)	국세청고시 제2012-21호
47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3년 연장 (2015.12.31)	국세청고시 제2013-3호
48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2년 연장 (2014.12.29)	고시 제2011-27호
49	주류 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3.31)
50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	폐 지	고시 제2012-32호 (2012.7.27)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5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 조서 제출에 관한 고시	2년 연장 (2014.12.31)	고시 제2011-33호
52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기한 재설정 (2015.8.23)	고시 제2012-42호 [2012.8.24, 폐지제정]
53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 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기한 재설정 (2015.8.23)	고시 제2012-61호 [2012.8.24, 폐지제정]
54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재검토기한 (2012.9.30)
55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3년 연장 (2015.2.26)	고시 제2012-5호
56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기한재설정 (2013.5.31)	고시 제2010-31호 [2010.7.19, 전부개정]
57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3년 연장 (2015.10.7)	고시 제2012-71호
58	주정 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22호
59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3년 연장 (2015.10.11)	고시 제2012-72호
60	불성실주류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출고감량기준고시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23호
61	소규모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정기 조사 면제 성실신고 기준 고시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41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62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73호
63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	폐지	고시 제2012-17호 (2012.6.4)
64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부속서류 제출대상과 서식 고시	폐지	고시 제2010-34호 (2010.9.1)
65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첨부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고시(거주자)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8.31)
66	조세피난처 지정 고시	폐지	고시 제2010-1호 (2010.3.9)
67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고시	기한재설정 (2015.8.31)	고시 제2012-33호 [2012.9.1, 폐지제정]
68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기한재설정 (2015.8.23)	고시 제2012-55호 [2012.8.24, 폐지제정]
69	다단계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기한재설정 (2015.8.23)	고시 제2012-56호 [2012.8.24, 폐지제정]
70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기한재설정 (2015.8.23)	고시 제2012-58호 [2012.8.24, 폐지제정]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71	외교관면세점 판매확인서 서식 고시	폐지	고시 제2012-59호 (2012.8.24)
72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기한재설정 (2014.12.31)	고시 제2011-31호 [2011.12.5, 폐지제정]
73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기한재설정 (2015.8.23)	고시 제2012-60호 [2012.8.24, 폐지제정]
74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2년 연장 (2014.12.29)	고시 제2011-20호
75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2년 연장 (2014.9.30)	고시 제2011-17호
76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3-4호
77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지정 고시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24호
78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1년 연장 (2013.6.30)	고시 제2010-30호
79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2-19호
80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기한재설정 (2015.1.31)	고시 제2012-3호, [2012.2.1, 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81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 금액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폐지	고시 제2012-38호 (2012.8.21)
82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기록표 고시	폐지	고시 제2011-4호 (2011.2.16)
83	관광알선 수수료 명세표 고시	기한재설정 (2015.8.23)	고시 제2012-54호 [2012.8.24, 폐지제정]
84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11호
85	유가환급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폐지	고시 제2012-39호 (2012.8.21)
86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기한재설정 (2015.8.23)	고시 제2012-45호 [2012.8.24, 폐지제정]
87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기한재설정 (2015.8.23)	고시 제2012-46호 [2012.8.24, 폐지제정]
88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기한재설정 (2015.8.23)	고시 제2012-43호 [2012.8.24, 폐지제정]
89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3년 연장 (2016.2.27)	고시 제2013-9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90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 하여야하는 사업자의 기준		재검토기한 (2012.8.30)
91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폐지	고시 제2002-32호 (2002.12.11)
92	생활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		재검토기한 (2012.8.30)
93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기한재설정 (2015.9.30)	고시 제2012-70호 [2012.9.28, 폐지제정]
94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폐지	고시 제2011-3호 (2011.2.16)
9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증거자료 고시	3년 연장 (2015.10.11)	고시 제2012-67호
96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고시		재검토기한 (2012.10.13)
97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3년 연장 (2015.4.30)	고시 제2012-15호
98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기한재설정 (2013.4.30)	고시 제2010-19호 [2010.4.30, 제정]
99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	폐지	고시 제2010-32호 (2010.8.30)

한편 폐지후 재발령한 33개 행정규칙 가운데 3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2개 행정규칙은 재검토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 설정 (2012.8.23)	3년 연장(2015.8.23) [훈령 제1950호]
2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유효기간 설정 (2012.8.23)	3년 연장(2015.10.31) [훈령 제1963호]
3	법령사무처리규정	유효기간 설정 (2012.12.14)	3년 연장(2015.9.30) [훈령 제1960호]
4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유효기간 설정 (2013.3.31)	기간 미도래
5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국세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유효기간 설정 (2012.10.15)	3년 연장(2014.3.20) [훈령 제1888호]
6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유효기간 설정 (2013.3.31)	기간 미도래
7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집행상의 경감세율 적용방법	유효기간 설정 (2012.8.31)	폐지(2012.7.27) [고시 제2012-26호]
8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시 적용할 입회조사 기준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3)	3년 연장(2015.8.23) [고시 제2012-51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 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9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3)	3년 연장(2014.12.31) [고시 제2011-32호]
10	간편장부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1)	3년 연장(2015.7.31) [고시 제2012-35호]
11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 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3)	3년 연장(2015.5.31) [고시 제2012-16호]
12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지정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9.30)	3년 연장(2015.8.31) [고시 제2012-34호]
13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거래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9.30)	
14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3)	3년 연장(2014.5.5) [고시 제2011-13호]
15	납세 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31)	2년 연장(2014.12.29) [고시 제2011-25호]
16	밀술 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31)	3년 연장(2015.6.30) [고시 제2012-20호]
17	주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31)	1년 연장(2013.3.31) [고시 제2010-12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검토결과
18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3)	3년 연장(2015.8.23) [고시 제2012-47호]
19	과세자료 제출대상법인 지정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3)	3년 연장(2015.8.23) [고시 제2012-44호]
20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재검토기한 설정 (2012.8.30)	1년 연장(2013.5.17) [고시 제2010-21호]
2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31)	3년 연장(2015.8.31) [고시 제2012-31호]
22	영수증의 서식	재검토기한 설정 (2012.8.30)	
23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하는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3)	3년 연장(2015.8.23) [고시 제2012-49호]
24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31)	3년 연장(2015.1.31) [고시 제2012-2호]
25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시가 불인정기간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9.15)	3년 연장(2015.8.31) [고시 제2012-66호]
26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 가치평가지 적용할 이자율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7.31)	폐지 (2012.7.31) [고시 제2012-28호]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27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7.31)	폐지(2012.7.31) [고시 제2012-27호]
28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 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3)	3년 연장(2015.8.23) [고시 제2012-52호]
29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3)	3년 연장(2015.8.23) [고시 제2012-50호]
30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3)	3년 연장(2015.8.23) [고시 제2012-48호]
31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30)	3년 연장(2015.8.30) [고시 제2012-65호]
32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31)	3년연장(2015.8.31) [고시 제2012-62호]
33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8.31)	3년 연장(2015.8.31) [고시 제2012-40호]

(3) 종합

일몰제 적용 (99)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행정규칙 폐지		15
	일몰기한 경과		6
	일몰검토 완료		71
	소 계		92
	일몰기한 미도래		7
	계		99
폐지후 재발령 (33)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미도입		-
	일몰규정 도입 (33)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3
		일몰기한 경과	2
		일몰검토 완료	26
		소 계	31
		일몰기한 미도래	2
계		33	
총 계	132개		

국세청에서는 훈령으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2009.12.15 제정, 2012.10.1 일부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제6조에서는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훈령 등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 내용이 포함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기상청

(1) 도입현황

기상청은 소관 행정규칙 중 25개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대부분 행정규칙은 3년 재검토행 일몰제를 도입하였고, 4개 행정규칙은 3년형 유효기간을 설정하였다.¹³⁵⁾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키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10)	9	1	-	-
훈령(15)	11	-	4	-
계(25)	20	1	4	-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훈 령 (15)	유효기간 (3년)
2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3	기상관측표준화 업무규정		재검토 (3년)
4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5	기후업무규정		

135) 기상청은 ‘일몰제 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을 통해 일괄개정 형식으로 일몰제를 도입하였고, 2개 행정규칙(기후업무규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은 일부개정을 통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1개 행정규칙(기상청 해외명예연구관 운영규정)은 2009.8.5 폐지하였다.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6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7	기상청 행정정보공개규정				
8	기상자료 공개 등에 관한 규정				
9	산업 및 생활기상정보 공개규정				
10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통계업무규정				
11	예보업무규정				
12	지진업무규정				
13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14	관측업무규정				
15	기상측기검정규정				
16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고 시 (10)	재검토 (3년)
17	자동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18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19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20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21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사이의 통신 송·수신방법				
22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23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24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25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재검토 (5년)			

(2) 추진경과

일몰제를 도입한 25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1개 행정규칙을 제외하고 재검토기한이 경과한 1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1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736호
2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736호
3	기상관측표준화 업무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734호
4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734호
5	기후업무규정	기한재설정 (2014.8.31)	훈령 제708호 [2011.8.31, 전부개정]
6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8.21)
7	기상청 행정정보공개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737호
8	기상자료 공개 등에 관한 규정 [기상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1년 연장 (2013.12.31)	훈령 제736호
9	산업 및 생활기상정보 공개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736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0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통계업무규정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 규정]	3년 연장 (2015.5.25)	훈령 제724호 [2012.5.31, 전부개정]
11	예보업무규정	3년 연장 (2015.6.13)	훈령 제727호
12	지진업무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738호
13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12.31)	훈령 제739호
14	관측업무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735호
15	기상측기검정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734호
16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1호
17	자동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1년 연장 (2013.12.1)	고시 제2010-5호
18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1호
19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1호
20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1호
21	기상관측자료의교환을위한관측기관사이의통신송·수신방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1호
22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1호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23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1호
24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 사방법 및 공차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1호
25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8.24)

(3) 종합

일몰제 적용 (25)	항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
	일몰기한 경과	1
	일몰검토 완료	23
	소계	24
	일몰기한 미도래	1
	계	25
총계	25개	

9. 문화재청

(1) 도입현황

문화재청은 소관 행정규칙 중 27개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대부분 행정규칙은 3년형 유효기간을 도입하였고, 7개 행정규칙은 3년형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다. 한편 4개 행정규칙을 폐지하였다.

[일몰제 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1)	1	-	-	-
훈령(23)	6	-	16	1
예규(3)	-	-	3	-
계(27)	7	-	19	1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 시 (1)	재검토 (3년)
2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지침	훈 령 (23)	유효기간 (3년)
3	사찰유물전시관건립및운영·관리지침		
4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5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취업규칙		
6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7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8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관리지침		
9	화석지 보존·관리 지침		
10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11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골계 관리지침		
12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3	천연기념물 경산의 삼살개 관리지침			
14	전통 마을숲 보존관리지침			
15	조경관리규정			
16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17	유물취급규정			
1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			
19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20	외부로부터의뢰된 동산문화재보존처리규정			
21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관리 규정			재검토 (3년)
22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23	문화재청 정보공개운영에 관한규정			
24	홍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25	문화유산보호 서훈 및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사 무처리규정			예 규 (3)
26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27	문화재 수리기술 지도 운영규정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문화재청 제도·법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예 규 (4)
2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운영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3	문화재기술위원회운영규정	
4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등에관한지침	
5	문화재 지역 수목 보존, 관리지침	

(2) 추진경과

일몰제를 도입한 27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3개 행정규칙을 폐지하였고,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경과한 2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4.3.28)	고시 제2012-26호
2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지침	3년 연장 (2014.3.28)	훈령 제228
3	사찰유물전시관건립및운영·관리 지침	기간재설정 (2015.8.31)	훈령 제268호 [2012.8.28, 폐지제정]
4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 보호구역 관리지침	기간재설정 (2015.8.31)	훈령 제277호 [2012.9.7, 폐지제정]
5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취업규칙	폐 지	훈령 제287호 (2012.12.31)
6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3년 연장 (2014.3.28)	훈령 제228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7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3년 연장 (2015.6.30)	훈령 제261호
8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관리지침	폐 지	훈령 제229호 (2011.4.1)
9	화석지 보존·관리 지침	3년 연장 (2014.3.28)	훈령 제228호
10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기간재설정 (2015.8.31)	훈령 제273호 [2012.9.7, 폐지제정]
11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골계 관리지침	기간재설정 (2015.8.31)	훈령 제274호 [2012.9.7, 폐지제정]
12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기간재설정 (2015.8.31)	훈령 제275호 [2012.9.7, 폐지제정]
13	천연기념물 경산의 삼살개 관리지침	기간재설정 (2015.8.31)	훈령 제276호 [2012.9.7, 폐지제정]
14	전통 마을숲 보존관리지침		유효기간 (2012.8.31)
15	조경관리규정	기간재설정 (2015.8.31)	훈령 제271호 [2012.8.28, 폐지제정]
16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기한재설정 (2015.7.10)	훈령 제265호 [2012.8.8, 전부개정]
17	유물취급규정	3년 연장 (2014.3.28)	훈령 제228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	3년 연장 (2014.3.28)	훈령 제228호
19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 지침	3년 연장 (2014.3.28)	훈령 제228호
20	외부로부터의뢰된 동산문화재보존처리규정	폐 지	훈령 제230호 (2011.4.1)
21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8.31)
22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문화재청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기간재설정 (2015.8.31)	훈령 제282호
23	문화재청 정보공개운영에 관한규정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272호
24	홍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기간 재설정 (2014.8.24)	훈령 제228호
25	문화유산보호 서훈 및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8.31)	예규 제111호 [2012.8.28, 폐지제정]
26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4.2.28)	예규 제95호
27	문화재 수리기술 지도 운영규정	3년 연장 (2014.3.28)	예규 제95호

(3) 종 합

일몰제 적용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3
	일몰기한 경과	2
	일몰검토 완료	22
	소 계	27
	일몰기한 미도래	-
	계	27
총 계	27개	

10. 병무청

(1) 도입현황

병무청은 소관 행정규칙 중 32개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대부분 행정규칙은 3년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하였고, 1개 행정규칙은 3년형 유효기간을 설정하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훈령(31)	30	-	1	-
예규(1)	1	-	-	-
계(32)	31	-	1	-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	채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준칙	훈 령 (31)	유효기간 (3년)
2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		재검토 (3년)
3	병무청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4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5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6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7	병무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규정		
8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 규정		
9	민원실 운영규정		
10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11	행정관서요원의 소양직무교육 등 운영규정		
12	공익근무요원 복제 규정		
13	공익수의사 편입규정		
14	공중보건지사 편입규정		
15	병무청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16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17	재학생 입영연기 관리규정		
18	병역의무자여비지급규정		
19	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0	징병검사 규정		
21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22	육군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23	해군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24	공군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25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26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27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28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29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 규정		
3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31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32	제도개선요구 민원처리 규정	예 규 (1)	재검토 (3년)

한편 2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1개는 폐지후 재발령하였으나 일몰제는 도입하지 않았다.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병무행정서비스 시민평가기획단 운영규정	훈 령 (1)
2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예규	예 규 (1)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방호원복제규정	훈 령 (1)

(2) 추진경과

일몰제를 도입한 32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1개 행정규칙을 폐지하였고, 재검토기한이 경과한 3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준칙	기간재설정 (2015.8.8)	훈령 제1030호 [2012.8.9, 폐지제정]
2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7.18)	훈령 제1008호
3	병무청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 제근로자 관리규정	3년 연장 (2015.8.6)	훈령 제1027호
4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3년 연장 (2015.8.2)	훈령 제1012호
5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3년 연장 (2015.8.2)	훈령 제1013호
6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 관리 규정	3년 연장 (2015.8.2)	훈령 제1014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7	병무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 규정	3년 연장 (2015.6.26)	훈령 제1002호 [2012.6.27, 전부개정]
8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	훈령 제1015호
9	민원실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8)	훈령 제1028호 [2012.8.9, 전부개정]
10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3년 연장 (2015.8.2)	훈령 제1021호
11	행정관서요원의 소양직무교육 등 운영규정 [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	훈령 제1022호
12	공익근무요원 복제 규정	3년 연장 (2015.8.2)	훈령 제1023호
13	공익수의사 편입규정		재검토기한 (2012.8.11)
14	공중보건수의사 편입규정		재검토기한 (2012.8.11)
15	병무청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	훈령 제1011호
16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	훈령 제1024호
17	재학생 입영연기 관리규정 [입영연기 관리규정]	3년 연장 (2015.7.29)	훈령 제1009호
18	병역의무자여비지급규정	3년 연장 (2015.8.2)	훈령 제1016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9	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	3년 연장 (2015.8.2)	훈령 제1017호
20	징병검사 규정	3년 연장 (2015.7.4)	훈령 제1006호
21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3년 연장 (2015.8.2)	훈령 제1020호
22	육군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3년 연장 (2014.12.31)	훈령 제975호
23	해군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3년 연장 (2014.12.31)	훈령 제976호
24	공군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3년 연장 (2014.12.31)	훈령 제977호
25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3년 연장 (2014.12.31)	훈령 제978호
26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 집점검 규정	3년 연장 (2014.12.31)	훈령 제979호
27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3년 연장 (2015.8.2)	훈령 제1018호
28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재검토기한 (2012.8.11)
29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 규정	3년 연장 (2015.8.2)	훈령 제1025호,
3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3년 연장 (2015.8.2)	훈령 제1026호
31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3년 연장 (2015.8.8)	훈령 제1029호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2	제도개선요구 민원처리 규정	폐 지	예규 제4-47호 (2012.10.29)

(3) 종 합

일몰제 적용 (32)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1
	일몰기한 경과		3
	일몰검토 완료		28
	소 계		32
	일몰기한 미도래		-
	계		32
폐지후 재발령 (1)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미도입		1
	일몰규정 도입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
		일몰기한 경과	-
		일몰검토 완료	-
		소 계	-
		일몰기한 미도래	-
계		1	
총 계	32개(일몰제 도입 건수)		

11. 산림청

(1) 도입현황

산림청은 소관 행정규칙 중 57개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3년 재검토행 일몰제를 도입한 행정규칙은 22개, 3년형 유효기간을 설정한 행정규칙이 35개이었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키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12)	12	-	-	-
훈령(18)	12	-	6	-
예규(13)	-	9	4	-
지침(14)	2	-	12	-
계(57)	26	9	22	-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 령 (18)	유효기간 (3년)
2	임업후계자 선발·독립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3	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4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규정		
5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규정		
6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7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재검토 (3년)		
8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9	산림청 국민제안제도 운영규정				
10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1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12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13	산림유전자원 관리규정				
14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15	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에 관한 지침				
16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17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8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19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			예 규 (13)	유효기간 (3년)
20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및 운영요령				
21	보안림관리요령				
22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요령				재검토 (3년)
23	임업진흥권역관리요령				
24	종묘사업실시요령				
25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26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27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28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29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30	수목굴취 요령	고 시 (12)	
31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32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증권의 범위 개정고시		
33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고시		
3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고시		
35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지방서 작성기준 고시		
36	산지전용허가기준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37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38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고시		
39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규정		
40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 세부기준 고시		
41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규정 고시		
42	숲사랑 지도원 등의 위촉 운영등에 관한 규정	지 칩 (14)	유효기간 (3년)
43	산림유전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		
44	산지전용등에따른경관영향검토및운영지침		
45	산림서비스팀 운영·관리지침		
46	사건사고 산림조합에 대한 산림사업 제한지침		
47	수액 채취 관리 지침		
48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따른 임산물 양여지침		
49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50	국유임도유지관리의민간위탁업무처리지침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51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방제 실무매뉴얼		
52	재선충병 발생 대응 매뉴얼		
53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		
54	재선충병 방제 설계감리 및 사업실행 지침		
55	솔잎혹파리 예찰 방제 실무매뉴얼		
56	산림경영대행 시행지침		
57	공동산림사업 운영지침		재검토 (3년)

한편 4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2개는 폐지후 재발령하였으나 일몰제는 도입하지 않았다.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예산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 령 (3)
2	산림청 업무혁신 운영규정	
3	산림청 사무관리 준칙	
4	산림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예 규 (1)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 령 (2)
2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2) 추진경과

일몰제를 도입한 57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9개 행정규칙을 폐지하였고,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경과한 14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폐 지	훈령 제1136호 (2012.8.28)
2	임업후계자 선발·독립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7)	훈령 제1137호
3	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3년 연장 (2015.8.27)	훈령 제1138호 [2012.8.28, 폐지제정]
4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7)	훈령 제1139호
5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규정		유효기간 (2012.9.14)
6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1132호 [2012.8.20, 폐지제정]
7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산림청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1155호 [2013.2.7, 제정]
8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1123호
9	산림청 국민제안제도 운영규정	폐 지	훈령 제1125호 (2012.7.17)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0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폐 지	훈령 제1124호 (2012.7.6)
1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3년 연장 (2015.8.20)	훈령 제1134호
12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3년 연장 (2015.8.20)	훈령 제1135호
13	산림유전자원 관리규정 [산림생명 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0)	훈령 제1133호 [2012.8.20, 전부개정]
14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1년 연장 (2013.7.31)	훈령 제1121호
15	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9.16)	훈령 제1143호
16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9.13)	훈령 제1144호
17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년 연장 (2014.12.20)	훈령 제1115호
18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3년 연장 (2015.9.9)	훈령 제1141호
19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		유효기간 (2012.9.14)
20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및 운영요령	폐 지	예규 제589호 (2010.11.5)
21	보안림관리요령 [산림보호구역 관리 요령]	3년 연장 (2014.4.29)	예규 제595호
22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요령	1년 연장 (2013.10.30)	예규 제602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3	임업진흥권역관리요령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605호
24	종묘사업실시요령	3년 연장 (2015.10.11)	예규 제611호
25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3년 연장 (2015.8.27)	예규 제606호
26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3년 연장 (2015.9.21)	예규 제610호
27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 료 징수요령	2년 연장 (2014.4.20)	예규 제604호
28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재검토기한 (2012.9.14)
29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3년 연장 (2015.8.27)	예규 제608호
30	수목굴취 요령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3년 연장 (2015.8.27)	예규 제607호
31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9.3)	예규 제609호
32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 증권의 범위 개정고시	기한재설정 (2014.2.24)	고시 제2011-18호 [2011.2.25, 폐지제정]
33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고시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49호 [2010.4.27, 폐지제정]
3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고시		재검토기한 (2012.8.27)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5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위한 지방서 작성기준 고시		재검토기한 (2012.8.23)
36	산지전용허가기준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12.28)
37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2년 연장 (2014.4.20)	예규 제604호
38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고시		재검토기한 (2012.9.14)
39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규정		재검토기한 (2012.8.20)
40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 세부기준 고시	3년 연장 (2013.11.28)	고시 제2010-102호
41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규정 고시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기한재설정 (2015.9.9)	고시 제2012-69호 [2012.9.9, 전부개정]
42	숲사랑 지도원 등의 위촉 운영등에 관한 규정	기한재설정 (2015.11.1)	예규 제612호 [2012.12.4, 폐지제정]
43	산림유전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 승인 세부기준	폐 지	산림청고시 제2012-68호 [2012.8.27, 타법폐지]
44	산지전용등에따른경관영향검토및운영지침	기간재설정 (2015.6.28)	지침 제3446호 [2012.6.28, 폐지제정]
45	산림서비스팀 운영·관리지침		유효기간 (2012.10.12)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6	사건사고 산림조합에 대한 산림사업 제한지침	폐 지	지침 제2521호 (2011.6.13)
47	수액 채취 관리 지침	기간재설정 (2015.8.27)	지침 [2012.8.27, 폐지제정]
48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따른 임산물 양여지침	3년 연장 (2015.8.29)	지 침
49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유효기간 (2012.1.31)
50	국유임도 유지관리의 민간위탁업무 처리지침		유효기간 (2012.8.23)
51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방제 실무매뉴얼		유효기간 (2012.9.9)
52	재선충병 발생 대응 매뉴얼		유효기간 (2012.9.9)
53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	유효기간 삭제	지침 제4031호
54	재선충병 방제 설계감리 및 사업실행 지침	폐 지	지침 제4010호 (2011.12.29)
55	솔잎혹파리 예찰 방제 실무매뉴얼		유효기간 (2012.9.9)
56	산림경영대행 시행지침	폐 지	지침 제373호 (2011.1.31)
57	공동산림사업 운영지침	폐 지	지침 제373호 (2011.1.31)

(3) 종합

		항 목	검토결과
일몰제 적용 (57)	일몰규정 삭제		4
	행정규칙 폐지		9
	일몰기한 경과		14
	일몰검토 완료		30
	소 계		57
	일몰기한 미도래		-
	계		57
		항 목	검토결과
폐지후 재발령 (2)	일몰규정 미도입(2)		2
	일몰규정 도입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
		일몰기한 경과	-
		일몰검토 완료	-
		소 계	-
		일몰기한 미도래	-
	계		2
총 계	57개(일몰제 도입 건수)		

12. 소방방재청

(1) 도입현황

소방방재청은 2009년 8월 24일 소관 행정규칙 중 151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¹³⁶⁾ 유효기간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8개로서, 전부 3년형을 설정하였다. 한편 나머지 143개 행정규칙은 3년형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122)	122	-	-	-
훈령(22)	18	-	4	-
예규(7)	3	-	4	-
계(151)	143	-	8	-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예 규 (7)	재검토 (3년)
2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3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136) 「소방방재청 고시 개정」(고시 제2009-31호, 2009.8.24, 일괄개정),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훈령 제186호, 2009.8.24, 일괄개정), 「소방방재청 예규 개정예규」(예규 제55호, 2009.8.24, 일괄개정)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4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요강		유효기간 (3년)	
5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6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7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8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규정	훈 령 (22)	유효기간 (3년)	
9	중앙긴급안전점검 운영규정			
10	중앙안전점검단 설치·운영규정			
11	자연재난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12	소방방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재검토 (3년)
13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4	민방위대검열규정			
15	민방위복제 운용규정			
16	특정관리대상시설보고등에관한규정			
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합동조사단 운영규정			
18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19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20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21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2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23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24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기준			
25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6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27	복권기금관리·운용규정		
28	의연금품관리·운용규정		
29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30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고 시 (122)	재검토 (3년)
31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3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한 기준		
3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34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 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35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36	방화관리자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37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3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0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2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3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4	이산화탄소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5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7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48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9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0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3	누전경보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55	인명구조 기구의 화재안전기준		
5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57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58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9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60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6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6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6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6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6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6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67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68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69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 술기준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70	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술기준		
71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72	표시등의 성능시험기술기준		
73	소화전함의 성능시험기술기준		
74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75	내화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76	내열전선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77	탐지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78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79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80	비화재보방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81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		
82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83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84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85	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86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87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88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89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90	물분무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91	분말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92	포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93	방수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		
94	살수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95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96	소방용흡수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97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98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99	시각정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100	자동차압·과압 조절형댐퍼의 성능시험기술기준		
101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102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03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04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05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06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07	수동펌프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08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09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10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11	소방펌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12	소방펌프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13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14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15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16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17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18	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19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20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21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22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23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24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25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26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27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28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29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30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31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32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33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34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35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36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37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38	방염성능의 기준		
139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세부시험시설기준		
140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기준		
141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 표시 등에 관한 기준		
142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기준		
143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144	소방시설공사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145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46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검토항목 및 협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		
147	재해지도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148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149	풍수해보험손해평가요령		
150	자연재해 저감 신기술 평가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한 규정		
151	방재안전대책 수립업무대행비용의 산정 기준		

그리고 8개 행정규칙(훈령 5개, 예규 3개)을 2009년 8월 24일자로 폐지하였다.¹³⁷⁾

137) 「소방방재청 훈령 폐지훈령」(훈령 제187호, 2009.8.24, 일괄폐지), 「소방방재청 예규 폐지예규」(예규 제56호, 2009.8.24, 일괄폐지)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소방방재청표창규정	훈 령 (5)
2	소방방재청 고문변호사 운용규정	
3	민방위 업무용 차량의 표시 및 장치규정	
4	중앙소방장비기술심의회 운영규정	
5	중앙소방학교 사무분장규정	
6	재해영향성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예 규 (3)
7	재해영향평가 대행자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8	방재교육전문가선발 및 양성지침	

(2) 추진경과

소방방재청에서는 151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 또는 유효기간의 도래에 즈음하여 10개 행정규칙을 폐지하였으며, 2개 행정규칙은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였다. 3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2012.8.23)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3년 연장 (2014.3.29)	예규 제69호
2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3년 연장 (2015.7.10)	예규 제88호
3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3년 연장 (2013.6.21)	예규 제62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요강	3년 연장 (2015.8.22)	예규 제89호
5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폐 지	예규 제72호 (2011.7.15)
6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폐 지	예규 제72호 (2011.7.15)
7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2)	예규 제85호 [폐지제정, 2012.7.6]
8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 규정	3년 연장 (2015.2.19)	훈령 제269호 [폐지제정, 2012.2.20]
9	중앙긴급안전점검 운영규정	폐 지	훈령 제284호 (2012.7.6)
10	중앙안전점검단 설치·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2)	훈령 제292호 [폐지제정, 2012.7.6]
11	자연재난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2)	훈령 제300호 [폐지제정, 2012.8.23]
12	소방방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8)	훈령 제297호
13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년 연장 (2015.10.9)	훈령 제312호
14	민방위대검열규정	3년 연장 (2015.8.22)	훈령 제305호
15	민방위복제 운용규정	3년 연장 (2015.5.17)	훈령 제274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6	특정관리대상시설보고등에 관한규정	3년 연장 (2015.8.22)	훈령 제304호
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합동조사단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2)	훈령 제290호
18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19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2.14)	훈령 제267호
20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3년 연장 (2015.2.4)	훈령 제264호
21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6.2.27)	훈령 제321호
22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23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2)	훈령 제303호
24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기준		재검토기한 (2012.8.23)
25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4.12.5)	훈령 제228호
26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 규정	3년 연장 (2015.8.22)	훈령 제306호
27	복권기금관리·운용규정	3년 연장 (2015.8.22)	훈령 제291호
28	의연금품관리·운용규정	3년 연장 (2014.7.21)	훈령 제245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9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3년 연장 (2014.11.21)	훈령 제256호
30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3년 연장 (2015.8.22)	고시 제2012-141호
31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3년 연장 (2015.8.22)	고시 제2012-115호
3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1.29)	고시 제2012-118호
3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2.4)	고시 제2012-7호
34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1.29)	고시 제2012-4호
35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22)	고시 제2012-144호
36	방화관리자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3년 연장 (2015.2.4)	고시 제2012-10호
37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6.10)	고시 제2012-103호
3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2.14)	고시 제2012-88호
3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2.14)	고시 제2012-89호
40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4.11.23)	고시 제2011-28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4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19호
42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20호
43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21호
44	이산화탄소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22호
45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23호
4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24호
47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25호
48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26호
49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27호
50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2.14)	고시 제2012-90호
5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2.14)	고시 제2012-91호
5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2.2)	고시 제2012-5호
53	누전경보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28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4.11.23)	고시 제2011-30호
55	인명구조 기구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29호
5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30호
57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31호
58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32호
59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33호
60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34호
6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3.12.26)	고시 제2010-41호
6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2.14)	고시 제2012-92호
6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35호
6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36호
6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2.2.)	고시 제2012-6호
6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37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67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38호
68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139호
69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축광표지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77호
70	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예비 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66호
71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40호
72	표시등의 성능시험기술기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83호
73	소화전함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소화 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59호
74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62호
75	내화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내화 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28호
76	내열전선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기준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27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77	탐지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79호
78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76호
79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34호
80	비화재보방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41호
81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21호
82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18호
83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소방용 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48호
84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45호
85	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소방용 릴리프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44호
86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46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87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53호
88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38호
89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72호
90	물분무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31호
91	분말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분말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37호
92	포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포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82호
93	방수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33호
94	살수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살수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42호
95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55호
96	소방용흡수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47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97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36호
98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81호
99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64호
100	자동차압·과압 조절형댐퍼의 성능 시험기술기준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70호
101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71호
102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56호
103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74호
104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12.30)	고시 제2012-162호
105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65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06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80호
107	수동펌프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폐 지	고시 제2012-95호 (2012.2.16)
108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57호
109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폐 지	고시 제2012-96호 (2012.2.16)
110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34호
111	소방펌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폐 지	고시 제2012-93호 (2012.2.16)
112	소방펌프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폐 지	고시 제2012-94호 (2012.2.16)
113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54호
114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폐 지	고시 제2012-98호 (2012.2.16)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115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58호
116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24호
117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69호
118	일체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폐지	고시 제2012-97호 (2012.2.16)
119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26호
120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63호
121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12호
122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60호
123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84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24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11.1)	고시 제2012-150호
125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25호
126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6.26)	고시 제2012-107호
127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폐 지	고시 제2012-107호, (2012.6.27)
128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17호
129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32호
130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6.26)	고시 제2012-105호 [폐지제정, 2012.6.27]
131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간이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16호
132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75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133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19호
134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13호
135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68호
136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39호
137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29호
138	방염성능의 기준	3년 연장 (2015.8.22)	고시 제2012-114호
139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기준]	3년 연장 (2015.10.30)	고시 제2012-151호
140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기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154호
141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기준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153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42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기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43호
143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51호
144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1.29)	고시 제2012-1호
145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1.29)	고시 제2012-2호
146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검토 항목 및 협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3년 연장 (2015.2.8)	고시 제2012-47호
147	재해지도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6.3.3)	고시 제2013-5호
148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3년 연장 (2015.10.17)	고시 제2012-147호
149	풍수해보험손해평가요령		재검토기한 (2012.8.23)
150	자연재해 저감 신기술 평가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36호
151	방재안전대책 수립업무대행비용의 산정 기준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45호

(3) 종합

	항 목	검토결과
일몰제 적용	일몰규정 삭제	2
	행정규칙 폐지	10
	일몰기한 경과	3
	일몰검토 완료	136
	소 계	151
	일몰기한 미도래	-
	계	151
총 계	151개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방재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예규 제84호, 2012. 7.6 일부개정)에서 행정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에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제19조의1제1항)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시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규제심사 대상여부와 중요규제 여부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고시안에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할 때 규제영향 분석서도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제2항). 한편 소방방재청의 홈페이지상의 ‘법령종합검색’은 행정규칙의 제개정 등 현황을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바로 접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 식품의약품안전청

(1) 도입현황

식약청은 2009년 8월 24일 소관 행정규칙 중 인사·복무 등 내부규정에 관한 행정규칙을 제외하고 88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

입하였고,¹³⁸⁾ 그 밖에 행정규칙에 대해 개별적으로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전체 131개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기타
고시(114)	110	-	2	2
훈령(9)	6	-	3	-
예규(8)	3		5	
계(131)	119	-	10	2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	검사능력관리규정	고 시 (114)	재검토 (3년)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3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사항 등에 대한 기준		
4	식품등의 표시기준		
5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6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기준		
7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8) 식약청은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검사능력관리규정 등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09-74호)에서 77개의 고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고, 또한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 실태조사 지침 등 일부개정훈령」(훈령 제212호)에서 6개의 훈령에 유효기한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복합·조합품목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예규」(예규 제198호)에서 5개의 예규에 유효기간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다.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8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		
9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10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등에 관한 규정		
11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 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12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13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14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15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16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18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기준		
19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20	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검사 세부처리 규정		
21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22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 기준		
23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기준		
24	공정서 및 의약품집 범위지정		
25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26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		
27	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8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29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30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31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		
32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등에 관한 규정		
33	원료의약품 신고 지침		
34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35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 과 기준 및 시험방법		
36	의약품 낱알식별표시등에 관한 규정		
37	의약품동등성 시험관리규정		
38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39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40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41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42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43	의약품등의 안정성 시험기준		
44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45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46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47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		
48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49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50	제조용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51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		
52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53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54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55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		
56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57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58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59	의료기기 기술문서등 심사에 관한 규정		
60	의료기기 기준규격		
61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62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에 관한 규정		
63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		
64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지침		
65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66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준		
67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68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69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70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7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72	회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73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74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75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		
76	조직은행 허가등 세부운영규정		
77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78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79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지침		
80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81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8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8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84	식품의유통기한설정기준		
85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86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87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등에 관한 규정		
88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89	대한약전		
90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91	의약품등에어로졸제제기준등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92	의약품등의일반약리시험지침		
93	의약품등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94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		
95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96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97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98	수입화장품품질검사면제에관한규정		
99	신약등의재심사기준		
100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101	생물학적제제등의품목허가심사규정		
102	생물학적제제등품목허가신청전단위별심사에관한규정		
103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104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		
105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		
106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		
107	의료기기의생물학적안전에관한공통기준규격		
108	의료기기전자파안전에관한공통기준규격		
109	화장품품질검사위탁기관지정에관한규정		
110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111	식품등중기준규격미설정물질의시험방법		유효기간 (3년)
112	국외검사기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3	의약품광고심의업무민간위탁지정		유효기간 (1년)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14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유효기간 (2년)
115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 실태조사 지침	훈 령 (9)	유효기간 (3년)
116	수출식품 영문증명에 관한 규정		
117	의약품제제의제조방법기재요령		
118	마약류감시업무지침		재검토 (3년)
119	몰수마약류관리지침		
120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 규정		
121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사무처리지침		
122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123	청문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124	복합·조합품목 처리규정	예 규 (8)	유효기간 (3년)
125	시험검정 관리규정		
126	실험동물 사용 및 사육 관리규정		
127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128	시험검정결과판정에관한규정		
129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증지교부 및 보 관품 관리규정		재검토 (3년)
130	식품의약품안전청 표준품 관리규정		
131	검정잔여검체처리규정		

아울러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5개 행정규칙(훈령 2개, 예규 3개)을 폐지하였다.¹³⁹⁾

139)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계약이행의 검사에 관한 규정 등 폐지훈령」(훈령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계약이행의 검사에 관한 규정	훈 령 (2)
2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규정	
3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	예 규 (3)
4	식의약정보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5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 운영규칙	

(2) 추진경과

식약청에서는 131개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7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였고, 5개는 폐지하였다. 또한 8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 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검사능력관리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1년 연장 (2013.11.17)	고시 제2010-84호
3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사항 등에 대한 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제219호)에서 2개 훈령을 폐지하였다.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 등을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표준지침 등 폐지예규」(예규 제204호)에서 3개 예규를 폐지하였다.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	식품등의 표시기준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140호
5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3년 연장 (2015.9.13)	고시 제2012-102호
6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기준 [식품 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	3년 연장 (2015.7.10)	고시 제2012-46호
7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기준]	1년 연장 (2013.12.24)	고시 제2010-92호
8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9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10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94호
11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 제조·가공 시설 이용 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12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13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14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1년 연장 (2013.6.30)	고시 제2010-53호
15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16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2년 연장 (2014.8.7)	고시 제2011-34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폐 지	고시 제2011-3호 (2011.1.28)
18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기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3년 연장 (2013.12.22)	고시 제2010-92호 [폐지제정, 2010.12.23]
19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20	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검사 세부처리 규정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	1년 연장 (2013.10.21)	고시 제2010-72호
21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재검토기한 (2012.8.24)
22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설 이용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23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기준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	1년 연장 (2013.5.4)	고시 제2010-29호
24	공정서 및 의약품집 범위지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25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1년 연장 (2013.11.17)	고시 제2010-85호
26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 [대한민국 약전외 의약품 기준]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142호 [전부개정, 2012.12.31]
27	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8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29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30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폐 지	고시 제2012-135호 (2012.12.28)
31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	폐 지	고시 제2011-4호 (2011.12.1)
32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등에 관한 규정	2년 연장 (2014.10.10)	고시 제2011-61호
33	원료의약품 신고 지침	2년 연장 (2014.2.9)	고시 제2011-7호
34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1년 연장 (2013.6.21)	고시 제2010-49호 [전부개정, 2010.6.24]
35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 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3년 연장 (2014.9.9)	고시 제2011-47호
36	의약품 낱알식별표시등에 관한 규정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1년 연장 (2013.12.20)	고시 제2010-90호
37	의약품동등성 시험관리규정	1년 연장 (2013.6.9)	고시 제2010-44호
38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9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40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2년 연장 (2014.1.24)	고시 제2011-1호
41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42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43	의약품등의 안정성 시험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44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1년 연장 (2013.4.15)	고시 제2010-23호
45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1년 연장 (2013.3.31)	고시 제2010-14호
46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1년 연장 (2013.6.30)	고시 제2011-66호 [전부개정, 2009.11.30]
47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2년 연장 (2014.1.31)	고시 제2011-4호 [전부개정, 2011.2.1]
48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3년 연장 (2014.7.18)	고시 제2011-36호 [전부개정, 2011.7.19]
49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8.24)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0	제조용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51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	폐 지	고시 제2010-101호 (2010.12.31)
52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1년 연장 (2013.9.17)	고시 제2010-67호
53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54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55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1년 연장 (2013.10.26)	고시 제2010-73호
56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57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6.1.16)	고시 제2013-2호 [전부개정, 2013.1.16]
58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0호
59	의료기기 기술문서등 심사에 관한 규정	1년 연장 (2013.6.3)	고시 제2010-42호
60	의료기기 기준규격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96호
61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62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63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64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지침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65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1년 연장 (2013.3.31)	고시 제2010-15호
66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준		재검토기한 (2012.8.24)
67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68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69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2년 연장 (2013.7.27)	고시 제2011-70호 [전부개정, 2011.11.25]
70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2년 연장 (2014.2.21)	고시 제2011-8호
7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3호
72	최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73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3년 연장 (2016.1.22)	고시 제2013-1호 [전부개정, 2013.1.22]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74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75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76	조직은행 허가등 세부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77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54호
78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3년 연장 (2014.1.28)	고시 제2011-3호
79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지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3년 연장 (2013.5.25)	고시 제2010-34호
80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3년 연장 (2015.7.3)	고시 제2012-42호
81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3년 연장 (2013.11.8)	고시 제2010-80호
8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3년 연장 (2014.5.10)	고시 제2011-19호
8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3년 연장 (2013.6.15)	고시 제2010-45호
84	식품의유통기한설정기준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3년 연장 (2013.10.29)	고시 제2010-79호
85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3년 연장 (2013.9.15)	고시 제2010-66호
86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3.10.27)	고시 제2010-76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87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3.4.12)	고시 제2010-16호
88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3년 연장 (2013.5.17)	고시 제2010-33호
89	대한약전 [대한민국 약전]	3년 연장 (2015.12.27)	고시 제2012-129호 [전부개정, 2012.12.27]
90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기준]	3년 연장 (2013.12.3)	고시 제2010-89호
91	의약품등에어로졸제제기준등	폐 지	고시 제2010-95호
92	의약품등의일반약리시험지침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87호
93	의약품등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3년 연장 (2013.10.12)	고시 제2010-71호
94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	3년 연장 (2014.1.26)	고시 제2011-2호
95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3년 연장 (2013.12.29)	고시 제2010-105호
96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3년 연장 (2013.12.31)	고시 제2010-96호
97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3년 연장 (2014.3.21)	고시 제2011-12호
98	수입화장품품질검사면제에관한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99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99	신약등의재심사기준	3년 연장 (2013.12.23)	고시 제2010-94호
100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3년연장 (2015.7.3)	고시 제2012-40호
101	생물학적제제등의품목허가심사규정	3년 연장 (2015.9.6)	고시 제2013-2호
102	생물학적제제등품목허가신청전단위 별심사에관한규정		재검토기한 (2012.6.25)
103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3년 연장 (2014.3.24)	고시 제2011-14호
104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	3년 연장 (2013.6.1)	고시 제2010-99호
105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	3년 연장 (2014.6.30)	고시 제2010-91호
106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	3년 연장 (2013.5.5)	고시 제2010-30호
107	의료기기의생물학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3년 연장 (2014.10.6)	고시 제2011-58호
108	의료기기전자파안전에관한공통기준 규격	3년 연장 (2015.7.3)	고시 제2012-41호
109	화장품품질검사위탁기관지정에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8.24)
110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3년 연장 (2013.8.24)	고시 제2010-63호
111	식품등중기준규격미설정물질의시험 방법		유효기간 (2012.7.29)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12	국외검사기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4.5.16)	고시 제2011-21호
113	의약품광고심의회업무민간위탁지정	매년 재발령	고시 제2012-130호
114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유효기간 (2011.4.12)
115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 실태조사 지침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 실태조사 규정]		재검토기한 (2012.8.24)
116	수출식품 영문증명에 관한 규정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5.1)	고시 제2012-21호 [폐지제정, 2012.5.18]
117	의약품제제의제조방법기재요령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286호 [폐지제정, 2012.8.24]
118	마약류감시업무지침 [마약류 및 원료 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6)	훈령 제287호
119	몰수마약류관리지침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6)	훈령 제288호
120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272호
121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사무처리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1년 연장 (2013.7.14)	훈령 제251호
122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285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23	청문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271호
124	복합·조합품목 처리규정	유효기간 삭제	예규 제235호
125	시험검정 관리규정	유효기간 삭제	예규 제234호
126	실험동물 사용 및 사육 관리규정	유효기간 삭제	예규 제236호
127	의약품등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 삭제	훈령 제271호
128	시험검정결과판정에 관한 규정	3년연장 (2015.8.24)	예규 제251호 [폐지제정, 2012.8.24]
129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증 지교부 및 보관품 관리규정	3년 연장 (2015.8.24)	예규 제250호
130	식품의약품안전청 표준품 관리규정	3년 연장 (2015.8.24)	예규 제249호
131	검정잔여검체처리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271호

(3) 종 합

일몰제 적용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7
	행정규칙 폐지	5

	일몰기한 경과	8
	일몰검토 완료	111
	소 계	131
	일몰기한 미도래	-
	계	131
총 계	131개	

식약청에서는 제정, 개정되는 행정규칙에 대해 행정예고제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예고시에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첨부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규칙 전문에 대한 현행성 유지관리도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다. 식약청은 행정규칙 입안 및 심사의 주요원칙과 세부처리지침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등 제·개정 실무 길라잡이”(2010.1)에서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부패영향평가작성과 홈페이지 등의 등록요령에 관해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또한 훈령·예규의 경우에는 규제심사와 행정예고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시와 동일하게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14. 조달청

(1) 도입현황

조달청은 2009년 8월 24일 소관 행정규칙 중 95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3년형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은 60개의 행정규칙이었고, 나머지 35개 행정규칙은 3년형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다. 한편 3개 행정규칙은 폐지하였다.

[일몰제 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19)	19	-	-	-
훈령(32)	5	-	27	-
지침(33)	-	-	33	-
공고(11)	11	-	-	-
계(95)	35	-	60	-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	부조리신고사무 및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훈 령 (32)	재검토 (3년)
2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3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4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5	조달청 전자민원창구 운영세부지침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유효기간 (3년)
7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8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의 개정		
9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10	조달물자대금 연체료부과 시행세칙		
11	채권양도 승인규정		
12	본선사고 처리규정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3	조달물자 물류관리 지침				
14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15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16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17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18	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				
19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20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				
2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22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23	조달청 기술용역계약업무 처리규정				
24	감가규정				
25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업무 처리규정				
26	다수공급자 계약업체의 계약이행능력 평가 및 등급화 운영규정				
27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28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29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30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업무 규정				
31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32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심사자료 관리지침				
33	외자구매 기술(제안서) 평가규정			지 침	유효기간 (3년)
34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33)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35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36	전통공예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37	청렴계약 특수조건		
38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39	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		
40	시설대여(리스) 일반조건		
41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42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43	기술(제안서)평가업무 처리규정		
44	다수공급자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45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46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47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공사감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48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 조건		
49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50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51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5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3	공사입찰특별유의서		
54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55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56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57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58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59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60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61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62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63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위한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64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65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				
66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 고 (11)	재검토 (3년)
67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68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69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70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71	다수공급자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7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74	조달물품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75	품질경영 모범업체 선정기준		
76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77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7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8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 요령		
8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82	나라장터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83	나라장터 정보이용료 부과 지침		
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8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고 시 (19)	재검토 (3년)
87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88	신기술제품 가격산정업무 처리규정		
89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90	시설사업 맞춤형서비스 조달수수료 요율표 정정 고시		
91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조달수수료 할인을 고시		
92	조달업무 협력약정 체결기관에 대한 조달수수료 할인을 고시		
93	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요율변경 고시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94	물품대금 수요기관 직불시 소액조달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 고시		
95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조달청 방위협의회 규정	훈 령 (3)
2	조달청 해외자문위원 운영규정	
3	조달청 저장품관리 업무처리규정	

(2) 추진경과

조달청에서는 95개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7개 행정규칙은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16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부조리신고사무 및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83호
2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82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74호
4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76호 [폐지제정, 2012.8.23]
5	조달청 전자민원창구 운영세부지침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75호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67호
7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기출제도 운용 지침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64호
8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의 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65호
9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 규정	유효기간 삭제	훈령 제1476호 (2009.11.26)
10	조달물자대금 연체료부과 시행세칙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66호
11	채권양도 승인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63호
12	본선사고 처리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62호
13	조달물자 물류관리 지침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61호
14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3년 연장 (2014.10.24)	훈령 제1525호 [전부개정, 2011.10.24]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5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60호
16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50호
17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51호
18	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52호
19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56호
20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53호
2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57호
22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58호
23	조달청 기술용역계약업무 처리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69호
24	감가규정		유효기간 (2012.8.24)
25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업무 처리규정		유효기간 (2012.8.24)
26	다수공급자 계약업체의 계약이행능력 평가 및 등급화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59호
27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71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8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 업무 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68호
29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70호
30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업무 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77호
31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3년 연장 (2014.11.28)	훈령 제1529호
32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심사자료 관리 지침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1572호
33	외자구매 기술(제안서) 평가규정		유효기간 (2012.8.24)
34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3년 연장 (2014.11.30)	지침 제3440호
35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3년 연장 (2014.11.30)	지침 제3440호
36	전통공예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유효기간 (2012.8.24)
37	청렴계약 특수조건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38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39	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40	시설대여(리스) 일반조건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1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42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43	기술(제안서)평가업무 처리규정	유효기간 삭제	지침 제8381호
44	다수공급자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 조건		유효기간 (2012.8.24)
45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46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47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유효기간 (2012.8.24)
48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 계약 특수조건		유효기간 (2012.8.24)
49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공사감리 및 건 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유효기간 (2012.8.24)
50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유효기간 (2012.8.24)
51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 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5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53	공사입찰특별유의서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4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55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56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57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58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 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3년 연장 (2015.10.1)	지침 제2937호
59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 유 평가기준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2718호 [폐지제정, 2012.8.29]
60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 기준	유효기간 삭제	지침 제4644호 (2011.5.30)
61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집행기준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62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유효기간 삭제	지침 제9338호 (2010.10.19)
63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위한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조물품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64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65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66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년 연장 (2015.7.31)	공고 제2012-48호 [폐지제정, 2012.8.8]
67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3년 연장 (2015.12.31)	지침 제9432호 [폐지제정, 2012.12.3]
68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69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년 연장 (2015.8.24)	지침 제4253호
70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35호
71	다수공급자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재검토기한 삭제	공고 제2010-42호
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36호
7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재검토기한 삭제	지침 제6197호 [폐지제정, 2011.7.19]
74	조달물품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규정	3년 연장 (2015.8.24)	공고 제2012-58호
75	품질경영 모범업체 선정기준		재검토기한 (2012.8.24)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76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3년 연장 (2015.12.31)	공고 제2012-85호
77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31호
7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26호
7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27호
8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29호
8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28호
82	나라장터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30호
83	나라장터 정보이용료 부과 지침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32호
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39호 [폐지제정, 2012.8.24]
8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	3년 연장 (2013.2.22)	고시 제2010-6호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34호
87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14호 [전부개정, 2011.10.27]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88	신기술제품 가격산정업무 처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8.24)
89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3년 연장 (2013.8.2)	고시 제2010-22호
90	시설사업 맞춤형서비스 조달수수료 요율표 정정 고시		재검토기한 (2012.8.24)
91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조달수 수수료 할인을 고시		재검토기한 (2012.8.24)
92	조달업무 협력약정 체결기관에 대한 조달수수료 할인을 고시		재검토기한 (2012.8.24)
93	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요율변경 고시		재검토기한 (2012.12.31)
94	물품대금 수요기관 직불시 소액조달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고시		재검토기한 (2012.8.24)
95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40호

(3) 종 합

일몰제 적용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7
	행정규칙 폐지	-
	일몰기한 경과	16
	일몰검토 완료	72
소 계		95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일몰기한 미도래	-
	계	95
총 계	95개	

15. 중소기업청

(1) 도입현황

중소기업청은 소관 행정규칙 중 63개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¹⁴⁰⁾ 그 가운데 유효기간을 설정한 9개 행정규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3년형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키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52)	52	-	-	-
훈령(11)	2	-	9	-
계(63)	54	-	9	-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훈 령 (11)	재검토 (3년)

140) 중소기업청은 「공동 연구·개발업무 처리지침 등 일괄개정 훈령」(훈령 제264호)에서 훈령 11개,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지침 등 일괄개정 고시」(고시 제2009-31호)에서 고시 47개 등 행정규칙 58개를 일괄개정하여 재검토키한 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였다. 그 밖에 개별 개정을 통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유효기간 (3년)
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4	공동 연구·개발업무 처리지침		
5	시험·분석·감정업무 처리규정		
6	시험·검사기기 유지관리규정		
7	공업기술의시험연구개발업무처리지침		
8	중소기업기술자훈련규정		
9	실습학생관리규정		
10	공업기술연구생연수규정		
11	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업무 처리규정		
12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지침		
13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규정		
14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		
15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16	싱글(Single) PPM 품질인증요령		
17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18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19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20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		
21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2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3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운영요령		
24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 운영요령		
25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지침		
26	벤처기업 확인요령		
2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2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지침		
29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3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		
31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32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기관 기준 및 투자관리전문기관 관리규정		
33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34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35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36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7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38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39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40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 요령		
41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운영요령		
4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43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4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45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46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		
47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4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49	개별기업의 R&D기획 지원사업 운영요령		
50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 운영요령		
5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52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53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시행세칙		
54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55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사업 운영요령		
56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		
57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운영요령		
58	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59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관례		
6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		
61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 배분기준		
62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6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그리고 4개 행정규칙을 폐지후 재발령하였다.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중소기업청 자체감사규정	훈 령 (2)
2	중소기업청 청사출입규정	
3	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	고 시 (2)
4	중소기업제품홍보 및 전시판매행사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2) 추진경과

중소기업청에서는 63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 또는 유효기간의 도래에 즈음하여 7개 행정규칙을 폐지하였다. 또한 29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였고, 22개 행정규칙은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의 재설정이나 재검토기한의 연장을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285호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298호
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유효기간 (2012.8.23)
4	공동 연구·개발업무 처리지침	폐 지	훈령 제310호 (2012.8.24)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	시험·분석·감정업무 처리규정	폐 지	훈령 제310호 (2012.8.24)
6	시험·검사기기 유지관리규정	폐 지	훈령 제310호 (2012.8.24)
7	공업기술의시험연구개발업무처리지침	폐 지	훈령 제310호 (2012.8.24)
8	중소기업기술자훈련규정	폐 지	훈령 제310호 (2012.8.24)
9	실습학생관리규정	폐 지	훈령 제310호 (2012.8.24)
10	공업기술연구생연수규정	폐 지	훈령 제310호 (2012.8.24)
11	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업무 처리 규정	3년 연장 (2015.8.23)	훈령 제310호
12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지침		재검토기한 (2012.8.23)
13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09-49호
14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		재검토기한 (2012.8.23)
15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 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16	싱글(Single) PPM 품질인증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20호
17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8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8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44호
19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2호
20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		재검토기한 (2012.8.23)
21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12호
2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09-41호
23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7호
24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2012.8.23)
25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재검토기한 (2012.8.23)
26	벤처기업 확인요령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3-1호
2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12호
2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11호
29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재검토기한 (2012.8.23)
3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1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32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기관 기준 및 투자관리전문기관 관리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34호
33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09-59호
34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35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1호
36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37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2-23호
38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39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3년 연장 (2015.4.30)	고시 제2012-12호
40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 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16호 [제정, 2010.4.5]
41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2012.8.23)
4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20호
43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14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제정, 2010.3.25]
4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09-58호
45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		재검토기한 (2012.11.21)
46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09-52호
47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09-53호
4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2-13호 [폐지제정, 2012.5.31]
49	개별기업의 R&D기획 지원사업 운영 요령		재검토기한 (2012.8.23)
50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2012.8.23)
5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 리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8호
52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7호
53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시행세칙		재검토기한 (2012.8.23)
54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재검토기한 (2012.8.23)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5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사업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2012.8.23)
56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2012.8.23)
57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5호
58	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21호
59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관례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09-47호
6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	3년 연장 (2014.1.19)	고시 제2011-2호
61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 배분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및 출연 종료일]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32호 [2010.9.17, 제정]
62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재검토기한 (2012.9.22)
6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2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3-5호, [폐지제정, 2013.3.13,]

그리고 폐지후 재발령한 4개 행정규칙에 대해 1개 행정규칙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	중소기업청 자체감사규정	일몰제 없음	
2	중소기업청 청사출입규정	유효기간 설정 (2012.8.23)	
3	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3)	
4	중소기업제품홍보 및 전시판 매행사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3)	3월연장 (2012.11.21) [고시 제2009-55호]

(3) 종합

일몰제 적용 (63)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29
	행정규칙 폐지	7
	일몰기한 경과	22
	일몰검토 완료	5
	소 계	63
	일몰기한 미도래	-
	계	63
폐지후 재발령 (4)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미도입	1

	일몰규정 도입 (3)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
		일몰기한 경과	3
		일몰검토 완료	-
		소 계	3
		일몰기한 미도래	-
계		4	
총 계	66개(일몰제 도입건수)		

16. 특허청

(1) 도입현황

특허청은 소관 행정규칙 중 인사·복무 등 내부규정에 관한 행정규칙을 제외한 59개 행정규칙에 대해 3년형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27)	18	-	9	
훈령(29)	15	-	14	-
예규(3)	2		1	
계(59)	35	-	24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훈 령 (29)	유효기간 (3년)
2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3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운영규정		
4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5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6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규정		
7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8	정책연구관리규정		
9	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취급규정		
10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		
11	특허청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규정		
12	특허청 업무협약관리지침		
13	해외 IP-DESK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4	해외산업재산권보호를위한심판및소송비용등의지원에관한규정		
15	정보공개 운영규정		재검토 (3년)
16	특허청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17	PCT국제조사및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18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 요령		
19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0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21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		
22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23	등록사무취급규정		
24	변리사실무수습규정		
25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26	심판사무취급규정		
27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28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29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30	디자인심사기준	예 규 (3)	유효기간 (3년)
31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재검토 (3년)
32	상표심사기준		
33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 발생시 기한연장에 관한 고시	고 시 (27)	유효기간 (3년)
34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35	반도체 배치설계기술 진흥사업 운영요령		
36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세칙		
37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38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38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40	국제출원비용용자사업 운용요령		재검토 (3년)
41	심판또는재심에관한비용액결정에관한규정		
42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43	미생물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		
44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 요령		
45	배치설계등록표시등의방법		
46	국제특허분류(IPC)부여전문기관지정에관한운영요령		
47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48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49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50	국유특허권 무상실시요령		
51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52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 문서		
53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54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		
55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56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57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58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중 보정료 납부요령		
59	과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과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		

한편 9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1개 행정규칙은 폐지후 재발령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였다.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상표등록추첨절차에 관한 운영규정	훈 령 (5)
2	중점연구분야 특허맵 지원사업 운영 규정	
3	지식재산정책상황실운영규정	
4	특허청 지식재산정책위원회 규정	
5	포대 용어 변경을 위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등 일부 개정령	
6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지침	예 규 (3)
7	중요 심사사건에 관한 보고지침	
8	특허청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	
9	지정상품수의 계산방법	고 시 (1)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운용요령	훈 령 (1)

(2) 추진경과

특허청에서는 59개 행정규칙 가운데 30개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각 소관 부서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3년형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행정규칙 15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재검토기한을 3년간 다시 재연장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효력상실이 예정된 행정규칙 15개에 대해서도 전부 폐지후 재발령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그대로 수용되었다.

[효력상실형 행정규칙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수렴 현황]

번호	행정규칙 명칭	준속시 사유	비 고
1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동규정은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므로 준속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2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우리청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계속 준속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3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운영규정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제기획, 선정 및 평가 등의 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특허청 내부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4	올해의 발명왕 추대 제도 시행요령	발명인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 확산 및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반드시 필요함	일괄 폐지 후 재발령

번호	행정규칙 명칭	존속시 사유	비 고
5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상담센터의 업무범위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 제고에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6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규정	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민원행정제도 및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청내외 전문가 심의, 의결기구로서, 고객서비스 관련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그에 따른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협의회로서 동 협의회 규정의 존속은 반드시 필요함	일괄 폐지 후 재발령
7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고안 또는 디자인 (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8	정책연구관리규정	특허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9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 발생시 기한 연장에 관한 고시	해당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 9조의 4(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 3항을 준용하는 규정으로, 전자문서의 제출기간이 연장되는 대상 및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존속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 명칭	존속시 사유	비 고
10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에 운용에 관한 규정	동 고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심사 및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함.	일괄 폐지 후 재발령
11	반도체 배치설계기술 진흥사업 운영요령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사업의 운영 근거로 존속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1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센터 운영세칙	동규정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므로 존속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13	발명진흥사업 운영 요령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함	일괄 폐지 후 재발령
14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고안 또는 디자인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의 사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일괄 폐지 후 재발령
15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 지어 및 운영근거로 존속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한편 59개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검토한 결과, 폐지한 행정규칙은 3개, 유효기간을 삭제한 행정규칙은 2개로 나타났으며, 6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연장 또는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¹⁴¹⁾

141) 「특허청 정보공개운영규정」은 2009.8.24 일부개정(특허청훈령 제620호)으로 재검토 기한이 2012.8.24까지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2.8.22 일부개정(특허청훈령 제729호)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2)	훈령 제721호
2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3년 연장 (2015.8.22)	훈령 제722호
3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2)	훈령 제724호
4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3년 연장 (2015.8.22)	훈령 제725호
5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2)	훈령 제723호
6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규정	3년 연장 (2015.8.22)	훈령 제726호
7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3년 연장 (2015.8.22)	훈령 제727호
8	정책연구관리규정	3년 연장 (2015.8.22)	훈령 제728호
9	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취급규정	기한 미도래	고시 제2011-19호 [폐지제정, 2011.9.30] 재검토기한 (2014.9.30)

에서는 재검토기한이 2012.8.21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개정시 2015.8.21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조문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0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	폐 지	고시 제2011-1호 (2011.1.14)
11	특허청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규정	유효기간 삭제	훈령 제640호 (2009.10.30)
12	특허청 업무협약관리지침	폐 지	훈령 제714호 (2012.6.1)
13	해외 IP-DESK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 삭제	훈령 제642호 (2009.11.3)
14	해외산업재산권보호를위한심판및소송 비용등의지원에관한규정		유효기간 (2012.8.24)
15	정보공개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1)	훈령 제729호
16	특허청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3년 연장 (2015.8.21)	훈령 제730호
17	PCT국제조사및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 규정	3년 연장 (2015.8.21)	훈령 제731호
18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 요령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23호
19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 출원 사무취급규정	3년 연장 (2015.8.21)	훈령 제732호
20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3년 연장 (2015.8.21)	훈령 제733호
21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	3년 연장 (2015.7.25)	훈령 제719호
22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3년 연장 (2015.1.1)	훈령 제708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3	등록사무취급규정	3년 연장 (2014.1.1)	훈령 제706호
24	변리사실무수습규정	폐 지	훈령 제696호 (2011.6.29)
25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3년 연장 (2015.1.1)	훈령 제707호
26	심판사무취급규정	3년연장 (2016.1.31)	훈령 제738호
27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3년 연장 (2015.6.4)	훈령 제717호
28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3년 연장 (2015.7.25)	훈령 제718호
29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재검토기한 (2012.8.24)
30	디자인심사기준	3년 연장 (2015.8.21)	예규 제67호
31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3년 연장 (2016.1.1)	예규 제70호
32	상표심사기준	3년 연장 (2015.3.15)	예규 제66호
33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 발생시 기한연장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22)	고시 제2012-16호
34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2)	고시 제2012-17호
35	반도체 배치설계기술 진흥사업 운영요령	3년 연장 (2015.8.22)	고시 제2012-18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6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세칙	3년 연장 (2015.8.22)	고시 제2012-19호
37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3년 연장 (2015.8.22)	고시 제2012-20호
38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22)	고시 제2012-21호
39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3년 연장 (2015.8.22)	고시 제2012-22호
40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운용요령		유효기간 (2012.10.30)
41	심판또는재심에관한비용액결정에관한 규정		유효기간 (2012.8.24)
42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24호
43	미생물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25호
44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 요령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26호
45	배치설계등록표시등의방법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27호
46	국제특허분류(IPC)부여전문기관지정 에관한운영요령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28호
47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29호
48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30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9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31호
50	국유특허권 무상실시요령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14호
51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3년 연장 (2015.7.25)	고시 제2012-13호
52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재검토기한 (2012.8.24)
53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4.1)	고시 제2012-3호
54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1.1)	고시 제2011-28호 [폐지제정, 2011.12.22]
55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7.25)	고시 제2012-12호
56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7.1)	고시 제2012-9호
57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6.26)	고시 제2012-10호
58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중 보정료 납부요령	3년 연장 (2015.6.26)	고시 제2012-11호
59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2012.8.24)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운용요령	유효기간 설정 (2012.10.30)	

(3) 종합

일몰제 적용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2
	행정규칙 폐지		3
	일몰기한 경과		6
	일몰검토 완료		47
	소 계		58
	일몰기한 미도래		1
	계		59
폐지후 재발령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미도입		-
	일몰규정 도입 (1)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
		일몰기한 경과	1
		일몰검토 완료	-
		소 계	-
		일몰기한 미도래	-
계		1	
총 계	60개(일몰제 도입 건수)		

특허청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란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¹⁴²⁾에서는 최신 행정규칙의 내용을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바로 링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항상 현행성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17. 해양경찰청

(1) 도입현황

해양경찰청은 소관 행정규칙 중 37개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16개 행정규칙은 3년 재검토행 일몰제를 도입하였고, 21개 행정규칙은 3년형 유효기간을 설정하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키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6)	6	-	-	-
훈령(20)	5	-	15	-
예규(11)	5	-	6	-
계(37)	16	-	21	-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	유선 및 도선의 출입항절차 등에 관한지침	고 시 (6)	재검토 (3년)
2	여객선안전관리지침		
3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142)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34&catmenu=m02_02_04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4	해양오염방지자재·약재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5	방제선및방제장비의성능인정방법에관한규정			
6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7	해양경찰 행정정보 공개규칙			
8	용감한 시민증 발급규칙			
9	해양경찰청 비정규직 관리규칙			
10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규칙	훈 령 (20)	재검토 (3년)	
11	행정정보 공개지도관 운영규칙			
12	불법어업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13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규칙			
14	조종면허 갱신업무에 관한 규칙			
15	해양경찰서 축탁의 위촉규칙			유효 기간 (3년)
16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17	지문 및 수사 자료표 등에 관한규칙			
18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19	범죄수사규칙			
20	해양환경감시원운영규칙			
21	불명해양오염조사처리규칙			
22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무처리 규칙			
23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 규칙			
24	수난구호법 시행세칙			
25	122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6	구조조정본부 등에 대한 감독·운영에 관한 규칙		
27	전경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	예 규 (11)	재검토 (3년)
28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29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직렬별 자격증 지정규칙		
30	방제비용부과·징수규칙		
31	현장감식 실시규칙		
32	경찰수배규칙		
33	수난구조수당지급규칙		유효 기간 (3년)
34	지명수배취급규칙		
35	행정검시규칙		
36	거짓말탐지기운영규칙		
37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한편 2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3개는 폐지후 재발령하였다.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작전지도관리규칙	훈 령 (2)
2	외국간행물단속규칙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해양경찰공무원 기장수여규칙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2	동원급식비 지급규칙	훈 령 (3)
3	정보예산운용규칙	

(2) 추진경과

일몰제를 도입한 37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2개 행정규칙을 폐지하였고,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경과한 7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유선 및 도선의 출입항절차 등에 관한지침	3년 연장 (2014.7.20)	고시 제2011-9호
2	여객선안전관리지침	3년 연장 (2014.9.25)	고시 제2011-10호
3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6호
4	해양오염방지자재·약제의 성능시험 기준 및 검정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3-3호
5	방제선및방제장비의성능인정방법에 관한규정	3년 연장 (2014.6.3)	고시 제2011-8호
6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기한재설정 (2015.8.24)	고시 제2012-5호 [2012.8.22, 전부개정]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7	해양경찰 행정정보 공개규칙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 규칙]	기한재설정 (2015.10.31)	훈령 제949호 [2012.11.28, 전부개정]
8	용감한 시민증 발급규칙		재검토기한 (2012.8.24)
9	해양경찰청 비정규직 관리규칙	1년 연장 (2013.9.30)	훈령 제813호
10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규칙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930호
11	행정정보 공개지도관 운영규칙		재검토기한 (2012.8.24)
12	불법어업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2년 연장 (2014.9.29)	훈령 제883호
13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규칙	2년 연장 (2014.9.29)	훈령 제882호
14	조종면허 갱신업무에 관한 규칙		유효기간 (2012.8.24)
15	해양경찰서 축탁의 위촉규칙	폐지	훈령 제932호 (2012.8.14)
16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2년 연장 (2014.8.24)	훈령 제879호
17	지문 및 수사 자료표 등에 관한규칙	2년 연장 2014.9.30	훈령 제944호
18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931호
19	범죄수사규칙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928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20	해양환경감시원운영규칙	2년 연장 (2014.6.20)	훈령 제849호
21	불명해양오염조사처리규칙 해양오염 조사 규칙	3년 연장 (2015.8.20)	훈령 제934호
22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무 처리 규칙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935호
23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 규칙 [해양 오염 지도점검 규칙]	2년 연장 (2014.6.20)	훈령 제848호
24	수난구호법 시행세칙		유효기간 (2012.8.24)
25	122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기한재설정 (2015.6.20)	훈령 제916호 [2012.6.19, 전부개정]
26	구조조정본부 등에 대한 감독·운영 에 관한 규칙		유효기간 (2012.8.24)
27	전경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		재검토기한 (2012.8.24)
28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3년 연장 (2015.10.31)	예규 제491호
29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직렬 별 자격증 지정규칙		재검토기한 (2012.8.24)
30	방제비용부과·징수규칙	2년 연장 (2014.5.31)	예규 제435호
31	현장감식 실시규칙 [현장감식 관리 규칙]	2년 연장 (2014.9.30)	예규 제469호
32	경찰수배규칙	폐지	예규 제483호 (2012.8.14)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33	수난구조수당지급규칙	2년 연장 (2014.6.30)	예규 제451호
34	지명수배취급규칙	기한재설정 (3015.5.30)	훈령 제917호 [2012.6.19, 전부개정]
35	행정검시규칙	3년 연장 (2015.8.24)	예규 제484호
36	거짓말탐지기운영규칙	기간재설정 (2015.8.31)	예규 제488호 [2012.10.10, 전부개정]
37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기한재설정 (2015.8.24)	예규 제485호

한편 폐지후 재발령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2개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설정하였다.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	해양경찰공무원 기장수여규칙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4)	
2	동원급식비 지급규칙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4)	3년연장(2015.8.24) [훈령 제936호]
3	정보예산운용규칙	일몰규정 없음	

(3) 종합

		항 목	검토결과
일몰제 적용 (37)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2
	일몰기한 경과		7
	일몰검토 완료		28
	소 계		37
	일몰기한 미도래		-
	계		37
		항 목	검토결과
폐지후 재발령 (3)	일몰규정 미도입		1
	일몰규정 도입 (2)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
		일몰기한 경과	1
		일몰검토 완료	1
		소 계	2
	일몰기한 미도래		-
계		3	
총 계	39개(일몰제 도입 건수)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도입현황

행복도시건설청은 소관 행정규칙 중 13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형 또는 유효기간 설정형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그 가운데 유효기간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3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10개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5)	-	5	-	-
훈령(6)	2	1	3	-
예규(2)	-	2	-	-
계(13)	2	8	3	-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	도시계획 기준	고 시 (5)	재검토 (5년)
2	건축고시		
3	문화재 보호고시		
4	하천점용 등 고시		
5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고시		
6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운영에 관한 규정	훈 령 (6)	유효 기간 (3년)
7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8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9	정보공개규정		재검토 (3년)
10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1	토지공급지침		
12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예 규 (2)	재검토 (5년)
13	문화재 보호고시 운영규정		

(2) 추진경과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13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 또는 유효기간의 도래에 즈음하여 1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5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1	도시계획 기준	기한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8.20)
2	건축고시	기한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8.12)
3	문화재 보호고시	기한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8.6)
4	하천점용 등 고시	폐지	고시 제2012-57호 (2012.6.26)
5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2-46호
6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운영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 (2012.8.6)
7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유효기간 (2012.8.6)
8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유효기간 (2012.8.10)
9	정보공개규정		재검토기한 (2012.8.6)
10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8.6)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11	토지공급지침	기한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8.6)
12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기한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8.6)
13	문화재 보호고시 운영규정	기한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8.6)

(3) 종합

	항 목	검토결과
일몰제 적용 (13)	일몰규정 삭제	1
	행정규칙 폐지	1
	일몰기한 경과	5
	일몰검토 완료	-
	소 계	7
	일몰기한 미도래	6
	계	13
	총 계	13개(일몰제 도입 건수)

19. 국가보훈처

(1) 도입현황

국가보훈처는 소관 행정규칙 중 30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행 또는 유효기간 설정형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그 가운데 유효기간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16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14개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훈령(25)	12	-	13	-
예규(5)	2	-	3	-
계(30)	14	-	16	-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별	방식
1	보훈신문운영규정	훈령 (25)	유효 기간 (3년)
2	보훈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시행세칙		
4	국가유공자및그가족등의교육에관한업무지침		
5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규정		
6	국립호국원안장요원운영규정		
7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8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 사업규정		
9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11	보철용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지침		
12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13	신상기록카드 관리규정		
14	국가보훈처 민원사무처리 시행세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5	국가보훈처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재검토 (3년)
16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7	소송업무취급지침		
18	국가보훈처 통계관리규정		
19	국가보훈처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20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		
21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22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규정		
23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24	취업지원업무처리 지침		
25	대부업무처리지침		
26	참전유공자 등록관리에규	예 규 (5)	유효기간 (3년)
27	자력관리 예규		
28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업무처리지침		재검토 (3년)
2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따른 보훈대부금 채권 보전 및 관리지침		
30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행정규칙 1개를 폐지하고¹⁴³⁾, 3개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을 대체하는 행정규칙을 재발령하였다.

143) 폐지한 행정규칙은 「국가보훈처 기관표창규정」으로서 훈령 제891호(2009.6.29)로 폐지하였다.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국가보훈처 보통고충심사 위원회규정	훈 령 (4)
2	국가보훈처 회계직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3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4	보훈회관관리규정	

(2) 추진경과

국가보훈처에서는 30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 또는 유효기간의 도래에 즈음하여 1개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10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보훈신문운영규정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기간재설정 (2015.11.30)	훈령 제1011호 [2012.12.7, 폐지제정]
2	보훈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 (2012.8.12)
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시행세칙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기간재설정 (2013.6.30)	훈령 제992호 [2012.7.2, 전부개정]
4	국가유공자및그가족등의교육에 관한 업무지침		유효기간 (2012.9.8)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5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규정		유효기간 (2012.9.7)
6	국립호국원안장요원운영규정	3년 연장 (2015.1.1)	훈령 제974호
7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기간재설정 (2014.12.31)	훈령 제981호 [2012.6.26, 폐지제정]
8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 사업규정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유효기간 (2012.12.31)
9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3년 연장 (2015.7.31)	훈령 제1002호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1년 연장 (2013.8.31)	훈령 제1020호
11	보철용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지침	기간재설정 (2015.7.10)	훈령 제994호 [2012.7.12, 폐지제정]
12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1년 연장 (2013.11.18)	훈령 제1018호
13	신상기록카드 관리규정	유효기간 삭제	훈령 제949호 [2010.11.16, 전부개정]
14	국가보훈처 민원사무처리 시행세칙		재검토기한 (2012.8.31)
15	국가보훈처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재검토기한 (2012.8.31)
16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9.8)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17	소송업무취급지침		재검토기한 (2012.9.7)
18	국가보훈처 통계관리규정	3년 연장 (2015.8.8)	훈령 제1003호
19	국가보훈처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기한재설정 (2014.12.31)	훈령 제973호 [2012.1.2, 전부개정]
20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	3년 연장 (2015.6.30)	훈령 제1022호
21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1년 연장 (2013.7.8)	훈령 제943호
22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 지원규정	기한재설정 (2015.7.10)	훈령 제995호 [2012.7.16, 전부개정]
23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2년 연장 (2014.6.30)	훈령 제984호
24	취업지원업무처리 지침		재검토기한 (2012.6.30)
25	대부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6.30)	훈령 제986호
26	참전유공자 등록관리예규	기간재설정 (2015.7.15)	예규 제49호 [2012.8.27, 폐지제정]
27	자력관리 예규	3년 연장 (2015.6.30)	예규 제46호
28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업무처리 지침		유효기간 (2012.9.9)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2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따른 보훈대부금 채권보전 및 관리지침	3년 연장 (2015.10.31)	예규 제50호
30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기한재설정 (2013.6.30)	예규 제42호 [2010.6.30, 전부개정]

한편 폐지후 재발령한 행정규칙은 1개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하였고, 나머지는 일몰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	국가보훈처 보통고충심사 위원회규정	유효기간 설정 (2012.9.7)	
2	국가보훈처 회계직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3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몰제규정 없음	
4	보훈회관관리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3) 종합

	항 목	검토결과
일몰제 적용 (30)	일몰규정 삭제	1
	행정규칙 폐지	-
	일몰기한 경과	10
	일몰검토 완료	19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소 계		30
	일몰기한 미도래		-
	계		30
폐지후 재발령 (4)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미도입		3
	일몰규정 도입 (1)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
		일몰기한 경과	1
		일몰검토 완료	-
		소 계	1
		일몰기한 미도래	-
계		4	
총 계	31개(일몰제 도입 건수)		

국가보훈처에서는 「법제업무 처리규정」(훈령 제972호, 2011.10.7, 일부개정)에서 훈령·예규 등의 개정안 중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다(제13조제2항).

20. 고용노동부

(1) 도입현황

고용노동부는 2009년 9월 소관 행정규칙 중 127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¹⁴⁴⁾ 유효기간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없고, 전부

144)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등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고시 제2009-38호, 2009.9.25 제정),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예규 제602호, 2009.9.25 제정), ③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참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다.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고시 98개, 훈령 6개, 예규 23개 였다. 1년형 재검토는 2개, 5년형 재검토는 8개 이고, 나머지 117개는 3년형 재검토로 하였다.

[일몰제 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기 타	3년형	5년형
고시(98)	88	8	2	-	-
훈령(6)	6	-	-	-	-
예규(23)	23	-	-	-	-
계(127)	117	8	2	-	-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고 시 (98)	재검토 (1년)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재검토 (1년)
3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재검토 (3년)
4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비율		
5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6	채당금 상한액 고시		

제709호, 2009.9.25 제정) 등 3개 고시, 훈령, 예규를 제정하여 126개를 일괄개정하였다. 또한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 2009-66호)을 개정하여 재검토행 일몰제를 신설하였다.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7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고시		
8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업무의 재위탁기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9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액 고시		
10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11	보험사무대행지원금지급기준 고시		
12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13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14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15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		
16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		
1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 대부규정		
18	국가기술자격검정 시설장비구입자금 지원규정		
19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20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등에 관한 규정		
2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22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시범실시규정		
2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		
24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25	산업안전보건 교육 규정		
26	외국어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27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작업관리 지침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28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		
29	사무실공기관리지침		
30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31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32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33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3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35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		
36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기준		
37	위험기계, 기구방호장치기준		
38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규정		
39	유해위험방지계획서확인주기 연장대상 건설업체		
40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41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4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43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융자 및 보조지원사업운영규정		
44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45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46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47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48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49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50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51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		
52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53	안전검사 고시		
54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고시		
55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56	사업주 및 장애인등에 대한 용자·지원규정		
57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58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59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60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 고용부담금감면기준		
61	건설근로자고용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 금액고시		
62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운영규정		
63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금액 상한액		
64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급금액 고시		
65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급기간 고시		
66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고시		
67	교대제 전환지원금액 및 지급제외근로자 고시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68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 고시			
69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및 장려금액 고시			
70	지원금·장려금간 상호조정시 장려금액 조정비율고시			
7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고시			
72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7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시			
74	개별연장급여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75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76	구직급여 수급자 중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 고시			
77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78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 고시			
79	실업인정특례적용대상도서지역지정고시			
80	이주비 고시			
81	조기재취업수당우대지급업종지정고시			
82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83	직업능력개발훈련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재검토 (5년)
84	훈련지시대상훈련과정 및 직종고시			
85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86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87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90	통상근로계수			
91	공인노무사로부터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92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93	고령자(다수) 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을 제정고시			
94	업무위탁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			재검토 (3년)
95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고시			
96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97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제운영규정			
98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99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훈 령 (6)
100	근로감독관집무규정			
101	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02	노동부 소관 국가정보관리세부시행규칙			
103	노동부 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104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105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 규 (23)	재검토 (3년)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06	통상임금 산정지침		
107	도산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108	취업규칙 심사요령		
1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단서 해석기준		
110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111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112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면제 등에 관한 규정		
113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114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규정		
115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 비용지원사업 운영규정		
116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17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18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		
119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120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규정		
121	고용안정사업각종지원금, 장려금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122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사유인정기준		
123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규정		
124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125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26	공인노무사자격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연 수규정		
127	진폐업무처리규정		

아울러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고시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52개 행정규칙(고시 22개, 훈령 16개, 예규 14개)를 폐지하고 같은 내용을 대체하는 고시를 재발령하였다.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 시 (22)
2	철강업에있어서수증기폭발및고열물접촉위험방지기술상 지침	
3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4	가스누출감지경보기설치기술상지침	
5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6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7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8	제1차금속산업안전작업지침	
9	정전기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지침	
10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부속전기설비기술상지침	
11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	
12	벌목표준안전작업지침	
13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4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15	공작기계안전기준일반기술상지침		
16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지침		
17	신규화학물질유해위험성조사규정		
18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19	사업장건강증진운동시행지침		
20	고기압작업에관한기준		
21	노동부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		
22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		
23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실시규정		예 규 (16)
24	이라크배상금관리및지급지침		
25	퇴직의효력발생시기		
26	노동부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규정예규		
27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28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29	위촉된산업보건의가담당할사업장수및근로자수등에 관한 규정		
30	노동부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		
31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취급요령		
32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33	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		
34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규정		
35	직업적성검사 업무처리규정		
36	산업안전, 위생지도사시험위원회구성,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37	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 규정	
38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39	노동부 관리청사 방화점검세부규정	훈 령 (14)
40	노동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1	청사임대차계약에 관한규정	
42	물품관리규정	
43	노동부 공사감독근무규칙	
44	노동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45	노동부 소속기관업무편람 관리규정	
46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47	지도방문조정통제규정	
48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49	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50	국외 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51	직업지도관 운영규정	
52	직업소개등업무처리규정	

그리고 실효성이 적은 39개 행정규칙(고시 22개, 훈령 12개, 예규 5개)를 일괄 폐지하였다.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지도지침	예 규 (5)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2	고용보험적용징수업무위탁처리규정	
3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4	산업안전, 보건장안 제도운영규정	
5	한국산업안전공단직원의사업장출입 및 업무처리규정	
6	노동부부기제작및게양등에관한규정	
7	노동부청사출입증및일일방문증규정	
8	노동부방호원복제규정	
9	노동부기강확립지침	
10	청원경찰징계규정	
11	기능장학규정	
12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업무취급규정	
13	행정관리업무규정	
14	향토예비군노동부중대 운영규정	
15	민원사무처리통제 및 청원서 처리규정	
16	진폐심의위원회운영규정	
17	노동정책홍보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지침	
18	근로자직업능력개발학자금 지원규정	고 시 (22개)
19	2008.1.1.-2008.12.31.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	08적용 최저임금 고시	
21	2009.1.1.-2009.12.31. 적용최저임금안 고시	
22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23	산업안전보건 업무위탁기관 지정	
24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25	사업장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배선등의선정설치및보수등에관한기준	
26	크레인작업표준신호지침	
27	피뢰침의설치에관한기술상의지침	
28	화염방지기의설치등에관한기술상의지침	
29	콘도라구조규격에관한기술상의지침	
30	데릭구조규격에관한기술상의지침	
31	목재가공용동근톱기계의안전기준에관한기술상의지침	
3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안전작업지침	
33	연삭기의안전기준에관한기술상의지침	
34	이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관한기술상의지침	
35	외국인취업교육실시계획등보고사항에관한규정	
36	재고용장려금액 고시	
37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 고시	
38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대상 훈련과정	
39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액 고시	

(2) 추진경과

고용노동부에서는 127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12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7개 행정규칙은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였다. 12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1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용자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48호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1년 연장 (2010.4.23)	고시 제2010-45호
3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111호
4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비율	1년 연장 (2013.12.31)	고시 제2010-37호
5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 기준	1년 연장 (2013.11.30)	고시 제2010-26호
6	체당금 상한액 고시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153호
7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 직연금의 적립금 수준고시	3년 연장 (2015.7.25)	고시 제2012-56호
8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업무의 재위탁 기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폐지	고시 제2012-121호 (2012.10.24)
9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액 고시	재검토기한 (2012.9.24)	재검토기한 (2012.9.24)
10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115호
11	보험사무대행지원금지급기준 고시	3년 연장 (2015.11.15)	고시 제2012-124호
12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102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13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폐지	고시 제2010-34호 (2010.4.27)
14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2년 연장 (2014.3.30)	고시 제2011-21호
15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		재검토기한 (2012.9.24)
16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운영 규정	2년 연장 (2014.1.23)	고시 제2011-7호
1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 대부 규정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113호
18	국가기술자격검정 시설장비구입자금 지원규정	3년 연장 (2015.9.17)	고시 제2012-66호
19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9.24)
20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등에 관한 규정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29호
2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12.31)	예규 제54호
22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시범실시규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시규정, 2010. 1.5]	3년 연장 (2015.10.4)	고시 제2012-117호
2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		재검토기한 (2012.9.24)
24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3년 연장 (2016.1.13)	고시 제2013-2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25	산업안전보건 교육 규정	3년 연장 (2015.8.31)	고시 제2012-63호
26	외국어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68호
27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작업관리 지침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72호
28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2011.12.23, 전부개정]	3년 연장 (2014.12.31)	고시 제2011-54호
29	사무실공기관리지침	3년 연장 (2015.9.19)	고시 제2012-71호
30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101호
31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3년 연장 (2014.12.31)	고시 제2011-56호
32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기한 재설정 (2013.11.23)	고시 제2010-25호
33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2년 연장 (2014.3.1)	고시 제2012-31호
3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년 연장 (2014.12.31)	고시 제2012-14호
35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67호
36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기준	3년 연장 (2015.4.29)	고시 제2012-45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37	위험기계, 기구방호장치기준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3년 연장 (2015.5.24)	고시 제2012-47호 [전부개정, 2012.5.25]
38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 닌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규정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84호
39	유해위험방지계획서확인주기 연장대 상 건설업체	폐지	고시 제2012-116호 (2012.10.10)
40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1.25)	고시 제2012-11호
41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92호
4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년 연장 (2015.11.22)	고시 제2012-126호
43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융자 및 보조 지원사업운영규정	3년 연장 (2016.1.14)	고시 제2013-3호
44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1.25)	고시 제2012-10호
45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7.22)	고시 제2012-54호
46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4.5.19)	고시 제2011-26호
47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3년 연장 (2015.3.22)	고시 제2012-33호
48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3년 연장 (2013.12.23)	고시 제2010-36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49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83호
50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3년 연장 (2015.5.14)	고시 제2012-46호
51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3년 연장 (2015.12.20)	고시 제2012-129호
52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3년 연장 (2015.6.7)	고시 제2012-48호
53	안전검사 고시	3년 연장 (2016.4.17)	고시 제2013-15호
54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고시		재검토기한 (2012.9.24)
55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3년 연장 (2015.3.20)	고시 제2012-35호
56	사업주 및 장애인등에 대한 용자· 지원규정	1년 연장 (2013.10.10)	고시 제2010-48호
57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3년 연장 (2014.4.10)	고시 제2011-23호
58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재검토기한 (2012.12.6)
59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110호
60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 고용부담금 감면기준 [장애인표준사업장등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기준]	2년 연장 (2014.12.31)	고시 제2011-74호
61	건설근로자고용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 금액고시		재검토기한 (2012.9.24)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규모 및 지원금액]		
62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운영규정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107호
63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금액 상한액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105호
64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급금액 고시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106호
65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급기간 고시		재검토기한 (2012.9.24)
66	고용유지지원금(훈련)지급기준고시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2-21호 [폐지제정, 2012.2.1]
67	교대제 전환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폐지	고시 제2010-62호 (2011.11.5)
68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 고시	폐지	고시 제2010-59호 (2011.11.5)
69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및 장려금액 고시	폐지	고시 제2010-61호 (2011.11.5)
70	지원금·장려금간 상호조정시 장려금액 조정비율고시 [지원금간 상호조정시 지원금액 조정비율]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30호, [폐지제정, 2011.7.18]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 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7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고시	폐 지	고시 제2010-60호 (2011.11.5)
72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폐 지	고시 제2010-61호 (2011.11.5)
7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시	폐 지	고시 제2010-26호 (2010.3.16)
74	개별연장급여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77호
75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75호
76	구직급여 수급자 중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79호
77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73호
78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 고시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80호
79	실업인정특례적용대상도서지역지정 고시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74호
80	이주비 고시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78호
81	조기재취업수당우대지급업종지정고시	폐 지	고시 제2010-22호 (2010.2.9)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82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81호
83	직업능력개발훈련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76호
84	훈련지시대상훈련과정 및 직종고시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82호
85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 는 금품		재검토기한 (2012.9.24)
86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 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재검토기한 (2012.9.24)
87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6.11.18)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매년 제정	고시 제2010-34호, [제정, 2010.12.21]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재검토기한 (2012.9.24)
90	통상근로계수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9.24)
91	공인노무사로부터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받을수 있는 자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0-46호
92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9.24)
93	고령자(다수) 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 별 지원기준을 제정고시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9.24)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 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94	업무위탁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	2년 연장 (2014.3.17)	고시 제2011-19호
95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 요한 자의 범위 고시		재검토기한 (2011.12.31)
96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146호
97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제운영규정	3년 연장 (2015.9.22)	고시 제2012-114호
98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 업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10.15)	고시 제2012-120호
99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9.24)	훈령 제80호
100	근로감독관집무규정	2년 연장 (2014.12.23)	훈령 제77호
101	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735호 [일부개정, 2010.3.12]
102	노동부 소관 국가정보관리세부시행 규칙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3년 연장 (2015.9.24)	훈령 제82호
103	노동부 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 0 0)	훈령 제85호
104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9.24)	훈령 제79호
105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년 연장 (2014.3.1)	예규 제2011-9호
106	통상임금 산정지침	3년 연장 (2015.9.24)	예규 제47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107	도산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 규정	3년 연장 (2015.00)	예규 제36호
108	취업규칙 심사요령	3년 연장 (2015.9.24)	예규 제48호
1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해석기준	3년 연장 (2015.9.24)	예규 제2012-52호
110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예규 제31호 [전부개정, 2012.3.20]
111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09-104호 [제정, 2009.12.30]
112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 및 기능사필 기시험면제 등에 관한 규정	2년 연장 (2014.00)	예규 제19호
113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3년 연장 (2013.1.28)	고시 제2010-16호
114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규정	3년 연장 (2015.9.24)	예규 제53호
115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 비용지원사업 운영규정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9.24)
116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 제2009-99호 (2009.12.24)
117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 제2009-99호 (2009.12.24)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118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	3년 연장 (2015.9.24)	예규 제2012-37호
119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관리규정	3년 연장 (2015.9.24)	예규 제39호
120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규정	2년 연장 (2014.3.16)	예규 제18호
121	고용안정사업각종지원금, 장려금부 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 리규정]	2년 연장 (2014.7.11)	예규 제16호
122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사유인정기준	3년 연장 (2015.9.24)	예규 제43호
123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규정	3년 연장 (2015.9.24)	예규 제42호
124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9.24)	예규 제45호
125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3년 연장 (2015.9.24)	예규 제44호
126	공인노무사자격취득을 위한 노동행 정경력자연수규정	3년 연장 (2015.9.24)	예규 제50호
127	진폐업무처리규정	1년 연장 (2013.11.23)	예규 제5호

한편 폐지후 재발령한 52개 행정규칙에 대해 1개 행정규칙은 폐지하였고, 15개는 유효기간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1개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조치를 하지 않았다.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고시 제2012-93호]
2	철강업에있어서수증기폭발및고 열물접촉위험방지기술상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고시 제2012-91호]
3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고시 제2012-94호]
4	가스누출감지경보기설치기술상 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고시제2012-90호]
5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고시 제2012-95호]
6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 M공법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고시 제2012-96호]
7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고시 제2012-97호]
8	제1차금속산업안전작업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고시 제2012-87호]
9	정전기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고시 제2012-86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0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부속전기설비기술상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고시 제2012-89호]
11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19) [고시 제2012-70호]
12	별목표준안전작업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19) [고시 제2012-69호]
13	발과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고시 제2012-99호]
14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고시 제2012-100호]
15	공작기계안전기준일반기술상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고시 제2012-85호]
16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고시 제2012-88호]
17	신규화학물질유해위험성조사규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1.25) [고시 제2012-13호]
18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4.7.28) [고시 제2011-38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9	사업장건강증진운동시행지침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6.1.21) [고시 제2013-6호]
20	고기압작업에관한기준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4.7.28) [고시 제2011-36호]
21	노동부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국외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6.1.9) [고시 제2013-4호]
22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1년 연장(2013.1.9) [고시 제2010-8호]
23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실시규정	폐지	예규 제618호 (2010.2.4)
24	이라크배상금관리및지급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25	퇴직의효력발생시기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고시 제2012-51호]
26	노동부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규 정예규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 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1년 연장(2013.8.15) [예규 제2호]
27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4.5.24) [예규 제15호]
28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19) [예규 제40호]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29	위촉된산업보건의가담당할사업장수및근로자수등에관한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예규 제38호]
30	노동부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 [국내 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 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예규 제46호]
31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취급요령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24) [예규 제49호]
32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1년 연장(2013.6.21) [예규 제622호]
33	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2년 연장(2014.12.31) [예규 제23호]
34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예규 제604호
35	직업적성검사 업무처리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예규 제605호
36	산업안전, 위생지도사시험위원회 구성,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예규 제606호
37	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 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5.9.19) [예규 제41호]
38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2년 연장(2014.1.2) [예규 제6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39	노동부 관리청사 방화점검세부 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예규 제710호
40	노동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고용노동부 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몰제규정 없음	예규 제711호
41	청사임대차계약에 관한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훈령 제73호
42	물품관리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훈령 제714호
43	노동부 공사감독근무규칙	일몰제규정 없음	훈령 제11호
44	노동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 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훈령 제716호
45	노동부 소속기관업무편람 관리 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훈령 제717호
46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감사결과현지조치사항처리기준]	일몰제규정 없음	훈령 제718호
47	지도방문조정통제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훈령 제719호
48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훈령 제720호
49	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일몰제규정 없음	훈령 제721호
50	국의 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 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4.12.31) [훈령 제56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51	직업지도관 운영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훈령 제723호
52	직업소개등업무처리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2012.9.24)	3년 연장(2014.12.31) [훈령 제55호]

(3) 종 합

일몰제 적용 (127)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7
	행정규칙 폐지		12
	일몰기한 경과		12
	일몰검토 완료		91
	소 계		122
	일몰기한 미도래		5
	계		127
폐지후 재발령 (52)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미도입(폐지1건 포함)		16
	일몰규정 도입(36)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
		일몰기한 경과	1
		일몰검토 완료	35
		소 계	36
	일몰기한 미도래		-
계		52	
총 계	163개(일몰제 도입 건수)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훈령 제61호, 2012.1.16 전부 개정) 제20조에서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안을 통보받으면 해당 행정규칙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이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국방부

(1) 도입현황

국방부는 소관 행정규칙 중 110개의 행정규칙(훈령 95개, 예규 15개)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으며, 그 가운데 84개 행정규칙은 공개되어 있으며 26개 행정규칙은 비공개로 되어 있다. 110개 행정규칙 중 59개 행정규칙은 3년형 유효기간을, 51개 행정규칙은 3년형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다. 여기서는 26개 비공개 행정규칙을 제외한 84개 행정규칙에 대해 검토한다.

[일몰제도입 현황(비공개 제외)]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기 타	3년형	5년형
훈령(74)	40	-	-	34	-
예규(10)	1	-	-	9	-
계(84)	41			43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훈 령 (74)	유효기간 (3년)
2	국군포로 업무처리 등에 관한 훈령		
3	국방홍보훈령		
4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5	군인연금 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6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7	군 종교활동지원민간성직자관리 훈령		
8	군종업무에관한 훈령		
9	군사시설 가림간판의 설치 및 관리 훈령		
10	선박통제훈령		
11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12	적성물자획득·관리및기술정보업무 훈령		
13	전쟁기념사업회조정·감독 훈령		
14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15	정훈, 문화활동 훈령		
16	군사학술 용역연구사업운영 훈령		
17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훈령		
18	국방관련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훈령		
19	계약업무처리훈령		
20	군 보육시설 관리,운영 훈령		
21	군 인권교육 훈령		
22	군 문화재 보호 훈령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23	군인연금제도발전위원회 운영 훈령			
24	생물무기 금지 및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훈령			
25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26	징발업무에 관한 훈령			
27	군수품 대여업무 처리 훈령			
28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에 관한 훈령			
29	군진의학연구업무훈령			
30	참전업무처리훈령			
31	보험업무관리훈령			
32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33	회계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한 훈령			
34	국방인쇄지원훈령			
35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사실 확인 업무 훈령			재검토 (3년)
36	국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37	국방정보보호훈령			
38	국방정책연구관리훈령			
39	국방탄약시스템관리 훈령			
40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41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42	군사(軍史)업무 훈령			
43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 훈령			
44	군용 먹는물 위생관리 업무 훈령			
45	군인복지기금관리·운용 훈령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46	군 직업보도 업무에 관한 훈령		
47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48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		
49	해외정비품 국내 정비능력 개발 훈령		
50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51	군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 업무 훈령		
52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53	국방 환자관리 훈령		
54	군행형업무처리를 위한 훈령		
5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군용물자부품국산화개발훈령		
56	불용의무장비 처리 훈령		
57	군체력단련장운영통제훈령		
58	군의무기록관리훈령		
59	공무상요양비업무훈령		
60	국방간호업무훈령		
61	육아휴직등의업무대행및탄력근무에관한훈령		
62	국방, 군사시설실시계획승인등국유재산취득에관한 훈령		
63	국방, 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64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65	군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66	여성고충상담관운영훈령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67	6.25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관한훈령		
68	국선번호인 풀제 운영 훈령		
69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70	군 전염병 예방업무 훈령		
71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72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73	국방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74	학생군사교육단 평가 훈령		
75	민방위경보 발령전달규정	예 규 (10)	유효기간 (3년)
76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예규		
77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예규		
78	물품적격심사기준에관한예규		
79	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예규		
80	부양사실 인정 예규		
81	군전공의 요원, 군중견의 요원 관리 예규		
82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지원 등에 관한 예규		
83	국방 원가계산준칙 예규		
84	국방부 사무보조원 운영 예규		재검토 (3년)

아울러 실효성이 적은 184개 행정규칙(훈령 68개, 예규 116개)을 폐지하는 한편(폐지 행정규칙 목록은 생략) 9개 행정규칙을 폐지후 재발령(훈령 8개, 예규 1개)하였다. 폐지후 재발령한 행정규칙 가운데 비공개 2건(훈령 1개, 예규 1개)을 제외한 7개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다.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비공개 제외)]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병영기본기획훈령	훈 령 (7)
2	철도군사수송에 관한 훈령	
3	3군공통군수지원훈령	
4	군인·군무원관리업무수당지급 훈령	
5	국방부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6	한국국방연구원조정·감독 훈령	
7	국방부정책자문위원회 훈령	

(2) 추진경과

국방부에서는 84개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2개 행정규칙을 폐지하였고, 11개 행정규칙은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24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2년 연장 (2014.12.25)	훈령 제1497호
2	국군포로 업무처리 등에 관한 훈령		유효기간 (2012.8.3)
3	국방홍보훈령		유효기간 (2012.8.4)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유효기간 삭제	훈령 제1437호 (2012.6.28)
5	군인연금 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3년 연장 (2015.8.12)	훈령 제1459호
6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유효기간 (2012.8.19)
7	군 종교활동지원민간성직자관리 훈령	기간재설정 (2014.7.22)	훈령 제1338호 [2011.7.22, 전부개정]
8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3년 연장 (2015.6.25)	훈령 제1436호
9	군사시설 가림간판의 설치 및 관리 훈령	3년 연장 (2015.8.2)	훈령 제1455호
10	선박통제훈령(공동훈령)	1년 연장 (2013.6.10)	훈령 제1249호
11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유효기간 삭제	훈령 제1392호
12	적성물자획득·관리및기술정보업무 훈령		유효기간 (2012.07.30)
13	전쟁기념사업회조정·감독 훈령		유효기간 (2012.8.3)
14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3년 연장 (2015.7.31)	훈령 제1454호
15	정훈, 문화활동 훈령	유효기간 삭제	훈령 제1323호
16	군사학술 용역연구사업운영 훈령	3년 연장 (2015.3.12)	훈령 제1400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7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훈령	유효기간 삭제	훈령 제1464호 [2012.8.27, 전부개정]
18	국방관련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훈령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훈령]	2년 연장 (2014.12.19)	훈령 제1435호
19	계약업무처리훈령	유효기간 삭제	훈령 제1288호
20	군 보육시설 관리,운영 훈령		유효기간 (2012.8.13)
21	군 인권교육 훈령	3년 연장 (2015.2.7)	훈령 제1390호
22	군 문화재 보호 훈령	기간재설정 (2015.8.3)	훈령 제1466호 [2012.9.13, 폐지제정]
23	군인연금제도발전위원회 운영 훈령	3년 연장 (2015.8.12)	훈령 제1460호
24	생물무기 금지 및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훈령	1년 연장 (2013.4.30)	훈령 제1324호
25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3년 연장 (2016.2.19)	훈령 제1516호
26	징발업무에 관한 훈령		유효기간 (2012.8.13)
27	군수품 대여업무 처리 훈령	3년 연장 (2014.10.18)	훈령 제1353호
28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에 관한 훈령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교환에 관한 훈령]	3년 연장 (2014.2.8)	훈령 제1308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9	군진의학연구업무훈령	폐 지	훈령 제1445호 (2012.7.10)
30	참전업무처리훈령	3년 연장 (2014.3.22)	훈령 제1315호 [2011.3.22, 전부개정]
31	보험업무관리훈령		유효기간 (2012.8.13)
32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3년 연장 (2015.7.4)	훈령 제1442호
33	회계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에 관 한 훈령 [회계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105.1.12)	훈령 제1412호
34	국방인쇄지원훈령	기간재설정 (2015.6.30)	훈령 제1523호 [2013.3.14, 폐지제정]
35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사실 확인 업무 훈령		재검토기한 (2012.7.28)
36	국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기한재설정 (2013.12.6)	훈령 제1287호 [2010.12.7, 전부개정]
37	국방정보보호훈령		재검토기한 (2012.8.6)
38	국방정책연구관리훈령	3년 연장 (2015.11.7)	훈령 제1475호
39	국방탄약시스템관리 훈령		재검토기한 (2012.8.3)
40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3년 연장 (2015.2.2)	훈령 제1388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1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3년 연장 (2015.9.24)	훈령 제1469호
42	군사(軍史)업무 훈령	3년 연장 (2015.7.31)	훈령 제1457호
43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 훈령	3년 연장 (2014.7.18)	훈령 제1352호
44	군용 먹는물 위생관리 업무 훈령		재검토기한 (2012.11.19)
45	군인복지기금관리·운용 훈령 [군복지시설및복지기금관리·운용훈령]	1년 연장 (2013.8.4)	훈령 제1265호
46	군 직업보도 업무에 관한 훈령		재검토기한 (2012.6.30)
47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3년 연장 (2015.6.30)	훈령 제1439호
48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	1년 연장 (2013.11.10)	훈령 제1282호
49	해외정비품 국내 정비능력 개발 훈령	1년 연장 (2013.3.31)	훈령 제1452호
50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기한재설정 (2014.11.7)	훈령 제1357호 [2011.11.7, 전부개정]
51	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업무 훈령		재검토기한 (2012.8.16)
52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재검토기한 (2012.8.16)
53	국방 환자관리 훈령	3년 연장 (2015.6.10)	훈령 제1418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4	군행형업무처리를 위한 훈령	3년 연장 (2014.10.4)	훈령 제1347호
5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군용물 자부품국산화개발훈령	3년 연장 (2015.9.12)	훈령 제1467호
56	불용의무장비 처리 훈령	폐 지	훈령 제1413호 (2012.5.15)
57	군체력단련장운영통제훈령	3년 연장 (2016.1.10)	훈령 제1501호
58	군의무기록관리훈령	3년 연장 (2015.1.3)	훈령 제1381호
59	공무상요양비업무훈령	3년 연장 (2015.8.8)	훈령 제1458호
60	국방간호업무훈령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1297호 [2010.12.29, 전부개정]
61	육아휴직등의업무대행및탄력근무에 관한훈령 [국방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	1년 연장 (2013.10.28)	훈령 제1397호
62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승인등국유재 산취득에관한훈령		재검토기한 (2012.8.19)
63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1년 연장 (2013.1.4)	훈령 제1220호
64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1310호 [2011.2.17, 전부개정]
65	군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재검토기한 (2012.8.16)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66	여성고충상담관운영훈령	기한재설정 (2013.12.1)	훈령 제1286호 [2010.12.1, 전부개정]
67	6.25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관한훈령	기한재설정 (2014.3.28)	훈령 제1317호 [2011.3.28, 전부개정]
68	국선번호인 풀제 운영 훈령		재검토기한 (2012.8.6)
69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기한재설정 (시행일로 부터 3년)	훈령 제1246호 [2010.5.28, 전부개정]
70	군 전염병 예방업무 훈령		재검토기한 (2012.8.16)
71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3년 연장 (2015.8.6)	훈령 제1443호
72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3년 연장 (2016.1.29)	훈령 제1510호
73	국방사이버기장 통합관리 훈령		재검토기한 (2012.9.30)
74	학생군사교육단 평가 훈령		재검토기한 (2012.10.4)
75	민방위경보 발령전달규정	3년 연장 (2015.7.10)	예규 제516호
76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예규	유효기간 삭제	예규 제488호
77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예규	유효기간 삭제	예규 제489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78	물품적격심사기준에관한예규	유효기간 삭제	예규 제487호
79	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예규		유효기간 (2012.8.5)
80	부양사실 인정 예규	3년 연장 (2015.8.12)	예규 제520호
81	군전공의 요원, 군중견의 요원 관리 예규		유효기간 (2012.8.13)
82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지원 등에 관한 예규	3년 연장 (2015.6.19)	예규 제514호
83	국방 원가계산준칙 예규		유효기간 (2012.8.5)
84	국방부 사무보조원 운영 예규	재검토기한 삭제	예규 제485호 [2010.12.24, 폐지제정]

폐지후 재발령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1개 행정규칙에만 유효기간을 설정하였고 나머지는 일몰규정을 두지 않았다.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	병영기본기획훈령	일몰규정 없음	
2	철도군사수송에 관한 훈령	일몰규정 없음	
3	3군공통군수지원훈령	일몰규정 없음	
4	군인·군무원관리업무수당지급 훈령	일몰규정 없음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5	국방부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일몰규정 없음	
6	한국국방연구원조정·감독 훈령	일몰규정 없음	
7	국방부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유효기간 설정 (2012.11.11)	2년연장(2014.3.28) [훈령 제1500호]

(3) 종합

일몰제 적용 (84)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11
	행정규칙 폐지		2
	일몰기한 경과		24
	일몰검토 완료		47
	소 계		84
	일몰기한 미도래		-
	계		84
폐지후 재발령 (7)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미도입		6
	일몰규정 도입(1)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
		일몰기한 경과	-
		일몰검토 완료	1
		소 계	1
	일몰기한 미도래		-
계		7	
총 계	85개(일몰제 도입건수, 비공개 제외)		

22. 국토해양부

(1) 도입현황

국토해양부는 소관 행정규칙 중 615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246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369개 행정규칙은 3년형 또는 5년형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였다. 재검토키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고시 252개, 훈령 87개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키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1년형	3년형	5년형
고시(328)	252	-	1	74	1
훈령(197)	86	1	-	107	3
예규(84)	26		-	58	-
지침(2)	-	-	-	-	2
공고(4)	4	-	-	-	-
계(615)	368	1	1	239	6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 시 (328)	유효기간 (1년)
2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유효기간 (3년)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3	항공화물보안기준		
4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		
5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6	운항기술기준		
7	항공안전장애보고제도 운영 요령		
8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9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		
10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 매뉴얼 작성기준		
11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		
12	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절차규정		
13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14	감항성 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 규정		
15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16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17	전문검사기관 지정		
18	부품 등 제작자증명 절차 규정		
19	항공기 기술기준		
20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기호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1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		
22	항공교통관제절차		
23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24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25	공역관리규정		
26	항공로공역설정기준		
27	비행절차업무규정		
28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		
29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규정		
30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31	항공교통업무기준		
32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3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34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35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36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		
37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		
38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39	항공등화설치및기술기준		
40	조류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41	레이저광선 운영기준		
42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43	공항안전운영기준		
44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45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제2부 해상구조물헬기장)		
46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47	항공학적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48	비행장 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49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50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51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52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53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54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55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56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57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58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부호 배정기준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59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기준		
60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		
6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 기준		
62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63	항공기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 규정		
64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 지침		
65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		
66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67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세부 시행 지침		
68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69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70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71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72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73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방법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74	고속선기준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75	평형수(平衡水)관리시스템의 형식 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유효기간 (5년)
76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 (3년)
77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재검토기한 (3년)
78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79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80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8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82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83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84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85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		
86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87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88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89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90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91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92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93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94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95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96	사이버건분주택 운용기준		
9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98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		
9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 별 건설비율		
100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101	재건축관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102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103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104	총괄계획가업무지침		
105	총괄사업관리자업무지침		
106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가격의 산정기준		
107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108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0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110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111	존치부담금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112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113	측량기술자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14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15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116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117	공제조합 공제감독기준		
118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1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적용기준		
120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제출대상 하도급금액		
12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2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23	타워크레인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24	특수건설기계 지정		
125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126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127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		
128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적용		
129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고시		
130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 기관 지정		
131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132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133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134	설계공모 운영지침		
135	설계감리 대가기준		
136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137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38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13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140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41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142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143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44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145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146	검측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147	시공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148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149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150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151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		
152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153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154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155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156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57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158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159	레미콘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60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61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기준		
162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16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164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16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166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규정		
16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168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169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170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171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172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173	기업도시 계획기준		
174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175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176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77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업무처리지침		
178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 지침		
179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		
180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		
18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182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8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84	건축구조 설계기준		
18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186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187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		
188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189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190	오피스텔 건축기준		
191	공공문분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192	경관계획수립지침		
193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194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195	교통조사지침		
196	대규모개발사업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97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8	자동차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199	자동차 자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200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201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20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20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기준		
204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관한 고시		
205	자동차검사및점검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		
206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등에 관한 고시		
207	교통안전진단지침		
208	교통안전관리규정심사지침		
209	자동차운행기록 관리지침		
210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211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 제도 시행요령		
212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관리지침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13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214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215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216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217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Ⅱ		
218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Ⅳ		
219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 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		
220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221	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		
222	삭도·궤도건설에 관한 세부기준		
223	삭도·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224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		
225	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		
226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		
227	선로배분지침		
228	철도간이역설치기준		
229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230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231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32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233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234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235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236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237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238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침		
239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240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241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242	철도종합시험은행 시행지침		
243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244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245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246	입체교차화 시설구조기준		
247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		
248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		
249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		
250	종합물류기업인증요령		
251	기업물류비산정지침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52	물류단지개발지침		
253	물류단지관리지침		
254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255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256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257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258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259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260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261	산적액체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262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263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264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265	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266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267	기타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지정 고시		
268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69	선원임금채권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270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271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272	지정 교육기관 기준		
273	해기 품질 기준		
274	상선해기사승선실습프로그램		
275	어선해기사승선실습프로그램		
276	해기사시험 과목내용별 출제비율		
277	국립해양계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 상환 규정		
278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 처리요령		
279	항만시설장비검사 기준		
280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281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 규정		
282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283	알루미늄선의 구조 기준		
284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준용요령		
285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286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기준		
287	우수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 물건 등에 관한 기준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88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299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290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291	상태평가검사 등에 관한 기준		
292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293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294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295	위험물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기준		
296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297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298	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299	선박전기설비기준		
300	선박소방설비기준		
301	선박구명설비기준		
302	선박기관기준		
303	강선의 구조기준		
304	목선의 구조기준		
305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306	선박구획기준		
307	선박방화구조기준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308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309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310	잠수선 기준		
311	선박만재흡수선기준		
312	선박복원성기준		
313	원자력선기준		
314	선체보호도장 기준		
315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316	선박설비 기준		
317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318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관한규정		
319	항로표지장비및용품의개발절차규정		
320	항로표지사용료에관한규정		
321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322	수로기술자의 학력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23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324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325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기준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326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327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328	폐기물 해양배출사업계획서의작성에관한지침		
329	항공기운항시각(Slot) 조정업무에 관한 지침	훈 령 (197)	유효기간 (3년)
330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331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332	경량항공기등 안전관리 기본지침		
333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		
334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지침		
335	행정처분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336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337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338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승인요령		
339	항공기고장보고 처리지침		
340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341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342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 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343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344	수출감항승인요령		
345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346	항공기 특별비행 등의 허가지침		
347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348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349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 규정		
350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351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지침		
352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353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354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55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356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357	부품등제작자증명지침		
358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359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360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		
361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362	대통령항공기 항공교통업무절차		
363	항공정보 품질매뉴얼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364	국제항행분야 미비점(Deficiency) 처리지침		
365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		
366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367	직무분류 운영지침		
368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369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 기관 지정요령		
370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371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372	항공등화시설및공항전력시설점검 지침		
373	항공등화시설등의관리및운영지침		
374	항공기체, 방빙장 환경관리지침		
375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 관리운영지침		
376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		
377	공항탑승교시설 관리운영지침		
378	공항환경관리지침		
379	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 감독 지침		
380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381	공항안전감독업무 통합관리지침		
382	공항안전검사관 업무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383	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 지침		
384	항공통신사 교육훈련 지침		
385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		
386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387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388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		
389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390	항공기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		
391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392	국민주택기금여유자금운영지침		
393	신혼부부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394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 지침		
395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지침		
39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397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398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검사규정		
399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400	부동산투자자자문회사감독규정		
401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		
402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 지침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403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404	지가현황도면의작성 및 활용지침		
405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406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407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408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 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409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410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411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412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413	청렴도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 검사 행동요령		
414	공동구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 한 지침		
415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416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17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418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		
419	한국철도대학운영규정		
420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421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422	철도범죄 수법자료 관리규칙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423	외국선박 불개항장 기항허가등의 요령			
424	해상교통관제센터 복무규정			
425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시설관리규정			
426	위성항법보정시스템운영규정			
427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			
428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			
429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 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 무 처리지침			
430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지침			유효기간 (5년)
431	선박법 사무처리요령			
432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지침			
433	혁신도시 계획기준			
434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유효기간 (5년)	
435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유효기간 (5년)	
436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 지침		유효기간 (3년)	
437	부패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규정			
438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439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재검토 (3년)	
440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441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442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44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444	단독주택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445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446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 규정		
447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448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449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450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451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45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453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행지침		
454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455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456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 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457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458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459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460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461	유역조사지침		
462	수도시설관리규정		
463	한강수계 댐통합운영규정		
464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465	수문관측업무규정		
466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467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468	신발전지역의 종합발전구역지정 및 관련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469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470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471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47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473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474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지침		
475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476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477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478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479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480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481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수립 지침		
482	도시개발업무지침		
48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 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484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485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486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487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 리규정		
488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		
489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490	특별교통대책본부 구성 및 운용규정		
491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 평가지침		
492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에 관한 지침		
493	대중교통현황조사요령		
494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495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496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497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49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 등 조정요령		
499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500	택시 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501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		
502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503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		
504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운영에관한규정		
505	교통안전점검 평가지침		
506	국도유지·보수운영규정		
507	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정		
508	ITS 업무요령		
509	철도운임산정기준		재검토기한 (5년)
510	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		
511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512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513	개항질서법 제5조단서 규정에 의한 선박입출항 허가에 관한 요령		재검토기한 (3년)
514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515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516	선원업무처리지침		
517	해양안전 및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518	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 운영규정		
519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		
520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521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522	보증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523	신혼부부 보증자리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524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 지침		
525	국립해양박물관건립을 위한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526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 지침		
527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528	국가 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529	비행장외의 이·착륙 허가 및 최저 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530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531	조종사·관제사 데이터통신 운용 지침		
532	정밀지역항법(P-RNAV) 운용지침		
533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		
534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535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536	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537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538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539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		
540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		
541	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		
542	항공지도 도식표준		
543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		
544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54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546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547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548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지침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549	항공기소음 측정업무매뉴얼		
550	공항기계시설 관리 운영 매뉴얼		
551	공항시설 유지보수 업무매뉴얼		
552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매뉴얼		
553	공항비상계획 업무매뉴얼		
554	항행안전시설 보호 업무매뉴얼		
555	공항안전 자체점검 업무매뉴얼		
556	공항내 위험물 취급 업무매뉴얼		
557	야생동물관리 업무매뉴얼		
558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		
559	포장설계 매뉴얼		
560	공항안전관리체계 매뉴얼		
561	비행장(활주로)설계매뉴얼		
562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설계 매뉴얼		
563	공항포장 과하중 운영매뉴얼		
564	공항포장 강도결정 보고매뉴얼		
565	공항종합계획매뉴얼		
566	공항토지이용 및 환경계획 매뉴얼		
567	포장면상태관리업무 매뉴얼		
568	장애물 관리 업무매뉴얼		
569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 매뉴얼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570	기동불능항공기처리 업무매뉴얼		
571	공항운영 업무매뉴얼		
572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573	미등록 도서 조사 및 지적공부등록 지침		
574	지적불부합지 정리지침		
575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576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관리지침		
577	건설업관리지침		
578	종합 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		
579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 요령		
580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81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582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 점검규정		
583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 영기준		재검토기한 (3년)
584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585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586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587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 한 규정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588	지적사무 전산처리 규정		
589	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		
590	지적사무처리 규정		
591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59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규정		
593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등에 관 한 업무처리 지침		
594	이륜자동차관리요령		
595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 에관한규정		
5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 규정		
597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598	도로명 안내체계 표지 제작·설치 지침		
599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600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601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602	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		
603	항만배후도로 건설 지원지침		
604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 지침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605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 항해검사 지침		
606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		
607	공사용 항로표지관리·운영지침		
608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609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규정		
610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지 칩 (2)	유효기간 (5년)
611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지침		
612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공 고 (4)	재검토키한 (3년)
613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614	순환골재 품질기준		
615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2) 추진경과

국토해양부에서는 615개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9개 행정규칙을 폐지하였고, 16개 행정규칙은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92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키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기간 재설정 (매년설정)	고시 제2013-6호
2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3	항공화물보안기준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4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기준		유효기간 (2012.5.31)
5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기간 재설정 (2014.3.31)	고시 제2011-137호 [2011.4.8, 전부개정]
6	운항기술기준	3년 연장 (2016.6.30)	고시 제2012-868호
7	항공안전장애보고제도 운영 요령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8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9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10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 매뉴얼 작성기준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11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2	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절차규정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13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14	감항성 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 규정	기간 재설정 (2013.7.31)	고시 제2010-565호 [2010.8.20, 전부개정]
15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3년 연장 (2015.1.31)	고시 제2012-87호
16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17	전문검사기관 지정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18	부품 등 제작자증명 절차 규정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19	항공기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653호
20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기호 지정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21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	3년 연장 (2016.4.14)	고시 제2013-101호
22	항공교통관제절차	3년 연장 (2016.4.14)	고시 제2013-100호
23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5년 연장 (2016.12.31)	고시 제2011-820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4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기간 재설정 (2013.10.31)	고시 제2010-897호 [2010.12.7, 폐지제정]
25	공역관리규정	3년 연장 (2015.12.28)	고시 제2012-958호
26	항공로공역설정기준	기간 재설정 (2013.4.16)	고시 제2010-219호 [2010.4.16, 폐지제정]
27	비행절차업무규정		유효기간 (2012.12.28)
28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	3년 연장 (2015.12.29)	고시 제2012-958호
29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규정		유효기간 (2012.12.28)
30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기간 재설정 (2017.10.4)	고시 제2012-660호 [2012.10.4, 폐지제정]
31	항공교통업무기준	기간 재설정 (2015.12.31)	고시 제2013-205호 [2013.5.3, 폐지제정]
32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기간 재설정 (2015.9.4)	고시 제2012-565호 [2012.9.4, 폐지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34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35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유효기간 (2012.5.31)
36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37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38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39	항공동화설치및기술기준	기간 재설정 (2013.8.31)	고시 제2011-492호 [2011.9.8, 전부개정]
40	조류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기간 재설정 (2015.5.31)	고시 제2012-733호 [2012.10.24, 폐지제정]
41	레이저광선 운영기준	1년 연장 (2013.7.31)	고시 제2013-128호
42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 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3년 연장 (2014.11.10)	고시 제2011-687호
43	공항안전운영기준	3년 연장 (2014.5.31)	고시 제2012-720호
44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3년 연장 (2014.8.31)	고시 제2011-472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5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제2부 해상 구조물 헬기장)	폐 지	고시 제2011-861호 (2011.12.27)
46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47	항공학적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48	비행장 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49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3년 연장 (2014.4.24)	고시 제2011-162호
50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1년 연장 (2014.3.31)	고시 제2013-127호
51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52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53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 기준	1년 연장 (2013.12.31)	고시 제2013-59호
54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55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56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57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1년 연장 (2013.7.20)	고시 제2013-57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8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 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부호 배정기준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59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기준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60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6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62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87호
63	항공기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3년 연장 (2016.4.29)	고시 제2013-179호
64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 지침	기간 재설정 (2015.8.10)	고시 제2012-518호, [2012.8.10, 폐지제정]
65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		유효기간 (2012.8.20)
66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기간 재설정 (2015.8.19)	고시 제2012-534호 [2012.8.20, 폐지제정]
67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세부 시행지침		유효기간 (2012.8.20)
68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유효기간 (2012.8.31)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69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1년 연장 (2014.12.28)	고시 제2013-148호
70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9.7)	고시 제2012-646호
71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3년 연장 (2015.10.8)	고시 제2012-699호
72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기간 재설정 (2015.10.30)	고시 제2012-743호 [2012.10.30, 폐지제정]
73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방법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 (2012.8.20)
74	고속선기준	3년 연장 (2015.5.29)	고시 제2012-418호
75	평형수(平衡水)관리시스템의 형식 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기간 미도래	유효기간 (2014.8.9)
76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	기간 재설정 (2015.7.10)	부고시 제2012-417호 [2012.7.11, 폐지제정]
77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224호
78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1년 연장 (2013.6.30)	고시 제2013-81호
79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2년 연장 (2014.12.31)	고시 제2013-84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80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8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82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83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84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85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86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재검토기한 (2012.10.19)
87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521호
88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89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90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재검토기한 (2012.10.31)
91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92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93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7호
94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511호
95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96	사이버건본주택 운용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9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98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결정지침]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455호
9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년 연장 (2015.8.13)	고시 제2012-461호
100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3년 연장 (2015.8.13)	고시 제2012-458호
101	재건축관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3년 연장 (2015.8.13)	고시 제2012-460호
102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3년 연장 (2015.8.13)	고시 제2012-457호
103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49호
104	총괄계획사업무지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51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05	총괄사업관리자업무지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50호
106	재정비축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가격의 산정기준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107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552호
108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552호
10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553호
110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 정평가업자 선정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111	존치부담금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 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재검토기한 (2012.8.19)
112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 영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9.30)
113	측량기술자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114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9.30)
115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398호
116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3년 연장 (2014.9.30)	고시 제2012-557호
117	공제조합 공제감독기준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362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18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재검토기한 (2012.8.23)
11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기한 재설정 (2013.12.19)	고시 제2010-956호 [2010.12.20, 제정]
120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제출대상 하도급금액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367호
12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기한 재설정 (2014.6.9)	고시 제2011-271호 [2011.6.10, 폐지제정]
122	건설기계종사의 경력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123	타워크레인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124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3년 연장 (2015.4.30)	고시 제2012-225호
125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3년 연장 (2015.12.4)	고시 제2012-848호
126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3년 연장 (2014.12.28)	고시 제2013-149호
127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	3년 연장 (2015.8.26)	고시 제2012-406호
128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적용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29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고시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556호
130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 기관 지정	3년 연장 (2013.12.29)	고시 제2010-1017호
131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132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401호
133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3년 연장 (2014.12.28)	고시 제2011-958호
134	설계공모 운영지침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446호
135	설계감리 대가기준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444호
136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445호
137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442호
138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3년 연장 (2015.5.31)	고시 제2012-443호
13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1년 연장 (2014.9.30)	고시 제2013-126호
140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9.28)	고시 제2012-652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41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883호
142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재검토기한 (2012.8.20)
143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년 연장 (2015.9.30)	고시 제2011-551호
144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548호
145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146	검측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147	시공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543호
148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2년 연장 (2014.10.19)	고시 제2012-542호
149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150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899호
151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		재검토기한 (2012.6.30)
152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재검토기한 (2012.8.23)
153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3년 연장 (2013.12.29)	고시 제2010-1047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54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155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3년 연장 (2015.8.26)	고시 제2012-567호
156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	3년 연장 (2015.11.1)	고시 제2013-115호
157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158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재검토기한 (2012.8.23)
159	레미콘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160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761호
161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162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3년 연장 (2015.12.20)	고시 제2012-946호
16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164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규정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16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비용산정) 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166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규정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6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168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169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799호
170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308호 (2011.6.23)
171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기한 재설정 (2015.7.10)	고시 제2012-416호 [2012.7.11, 폐지제정]
172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3.17)	고시 제2012-154호
173	기업도시 계획기준	3년 연장 (2015.8.4)	고시 제2012-456호
174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7.17)	고시 제2012-430호
175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기한 재설정 (2015.8.23)	고시 제2012-562호 [2012.8.24, 전부개정]
176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3년 연장 (2015.7.17)	고시 제2012-430호
177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업무처리 지침	3년 연장 (2015.7.17)	고시 제2012-430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78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 지침	3년 연장 (2015.7.17)	고시 제2012-430호
179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	3년 연장 (2015.7.17)	고시 제2012-430호
180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18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재검토기한 (2012.12.30)
182	건축공사표준계약서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552호
18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553호
184	건축구조 설계기준		재검토기한 (2012.8.26)
18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553호
186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552호
187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		재검토기한 (2012.9.3)
188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625호
189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553호
190	오피스텔 건축기준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553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91	공공문분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재검토기한 (2012.12.27)
192	경관계획수립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193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2012.11.1)
194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3년 연장 (2014.9.30)	고시 제2011-655호
195	교통조사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2-517호 (2012.8.10)
196	대규모개발사업의 대중교통시설 계획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197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9)	고시 제2012-473호
198	자동차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09-1327호
199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 한 규정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200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201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20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539호
20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04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205	자동차검사및점검시행요령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206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207	교통안전진단지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208	교통안전관리규정심사지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209	자동차운행기록 관리지침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기한 재설정 (2013.9.16)	고시 제2010-667호 [2010.9.28, 제정]
210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211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560호
212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관리지침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560호
213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560호
214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560호
215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560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16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3년 연장 (2013.3.18)	고시 제2010-156호
217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Ⅱ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560호
218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Ⅳ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560호
219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560호
220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553호
221	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		재검토기한 (2012.9.22)
222	삭도·궤도건설에 관한 세부기준		재검토기한 (2012.9.22)
223	삭도·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3년 연장 (2013.6.23)	고시 제2010-419호
224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		재검토기한 (2012.9.22)
225	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	1년 연장 (2013.10.7)	고시 제2013-162호
226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		재검토기한 (2012.9.22)
227	선로배분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2-639호 (2012.9.27)
228	철도간이역설치기준		재검토기한 (2012.10.22)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29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재검토기한 (2012.6.30)
230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31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 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32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 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33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34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 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35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36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6호
237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재검토기한 (2012.8.20)
238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39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40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41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42	철도종합시험은행 시행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43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44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45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46	입체교차화 시설구조기준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6호
247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6호
248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4.8.2)	고시 제2011-413호
249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	3년 연장 (2015.8.10)	고시 2012-516호
250	종합물류기업인증요령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251	기업물류비산정지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252	물류단지개발지침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331호
253	물류단지관리지침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332호
254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3년 연장 (발령한 날부터 3년)	고시 제2011-25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55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3년 연장 (2014.11.30)	고시 제2012-559호
256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257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1년 연장 (2013.12.31)	고시 제2012-269호
258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259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260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261	산적액체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폐 지	고시 (2011.9.16)
262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263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264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재검토기한 (2012.8.23)
265	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424호
266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267	기타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지정 고시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68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69	선원임금채권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903호 (2010.12.1)
270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71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72	지정교육기관기준	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292호 (2011.6.13)
273	해기품질기준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74	상선해기사승선실습프로그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75	어선해기사승선실습프로그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76	해기사시험 과목내용별 출제비율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77	국립해양계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 상환규정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278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 무처리요령		재검토기한 (2012.11.15)
279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3년 연장 (2015.7.17)	고시 제2012-430호
280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7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81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규정	3년 연장 (2015.8.21)	고시 제2012-555호
282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3년 연장 (2013.5.25)	고시 제2010-333호
283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284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준용요령	폐 지	고시 제555호 (2011.7.26)
285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286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287	우수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 물건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288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299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290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3년 연장 (2013.4.1)	고시 제2010-184호
291	상태평가검사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292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7.17)	고시 제2012-430호
293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94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3년 연장 (2015.7.17)	고시 제2012-430호
295	위험물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296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297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298	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299	선박전기설비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300	선박소방설비기준	3년 연장 (2013.6.30)	고시 제2010-449호
301	선박구명설비기준	3년 연장 (2015.7.17)	고시 제2012-430호
302	선박기관기준	3년 연장 (2015.7.17)	고시 제2012-430호
303	강선의 구조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304	목선의 구조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305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7.17)	고시 제2012-430호
306	선박구획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07	선박방화구조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308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309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310	잠수선 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311	선박만재흡수선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312	선박복원성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313	원자력선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314	선체보호도장 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663호
315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7.30)	고시 제2012-470호
316	선박설비 기준	3년 연장 (2013.8.9)	고시 제2010-551호
317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8.10)	고시 제2012-516호
318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관한규정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3호
319	항로표지장비및용품의개발절차규정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20	항로표지사용료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321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4.5.30)	고시 제269호
322	수로기술자의 학력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12.10)	고시 제2012-886호
323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기한 재설정 (2014.8.31)	고시 제2011-490호 [2011.9.6, 제정]
324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기한 재설정 (2014.8.31)	고시 제2011-490호 [2011.9.6, 제정]
325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기준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326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327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328	폐기물해양배출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재검토기한 (2012.10.6)
329	항공기운항시각(Slot) 조정업무에 관한 지침	1년 연장 (2013.6.30)	훈령 제606호
330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31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32	경량항공기등 안전관리 기본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573호
333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	기간 재설정 (2015.5.31)	훈령 제909호 [2012.10.23, 폐지제정]
334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35	행정처분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36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 (2012.11.30)
337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38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승인요령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39	항공기고장보고 처리지침		유효기간 (2012.5.31)
340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41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42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 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43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유효기간 (2012.5.31)
344	수출감항승인요령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45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46	항공기 특별비행 등의 허가지침		유효기간 (2012.5.31)
347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48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유효기간 (2012.5.31)
349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 규정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50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51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906호
352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53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 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54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55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2년 연장 (2014.11.30)	훈령 제34호
356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2년 연장 (2014.11.21)	훈령 제40호
357	부품등제작자증명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58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3년 연장 (2015.9.20)	훈령 제885호
359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18호
360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		유효기간 (2012.12.21)
361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17호
362	대통령항공기 항공교통업무절차	3년 연장 (2016.4.14)	훈령 제53호
363	항공정보 품질매뉴얼	3년 연장 (2015.12.21)	훈령 제940호
364	국제항행분야 미비점(Deficiency) 처리지침	3년 연장 (2015.12.21)	훈령 제940호
365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	3년 연장 (2015.12.21)	훈령 제940호
366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3년 연장 (2015.12.21)	훈령 제940호
367	직무분류 운영지침	기간 재설정 (2016.1.4)	훈령 제952호 [2013.1.4, 제정]
368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69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유효기간 (2012.5.31)
370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71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72	항공등화시설및공항전력시설점검 지침		유효기간 (2012.5.31)
373	항공등화시설등의관리및운영지침		유효기간 (2012.5.31)
374	항공기체·방빙장 환경관리지침		유효기간 (2012.5.31)
375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운영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6호
376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16호
377	공항탑승교시설 관리운영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7호
378	공항환경관리지침		유효기간 (2012.11.30)
379	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 감독 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80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 영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81	공항안전감독업무 통합관리지침	폐 지	훈령 제715호 (2011.7.1)
382	공항안전검사관 업무규정		유효기간 (2012.5.31)
383	공항운영증명 무처리 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84	항공통신사 교육훈련 지침	1년 연장 (2013.9.28)	훈령 제633호
385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86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87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88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89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90	항공기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	3년 연장 (2015.5.31)	훈령 제829호
391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392	국민주택기금여유자금운영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393	신혼부부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394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 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395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39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397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2년 연장 (2014.8.31)	훈령 제929호
398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검사규정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399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 규정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00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01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02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 용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03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04	지가현황도면의작성 및 활용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05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유효기간 삭제	훈령 제918호 [2012.11.5, 전부개정]
406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07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4.30)	훈령 제813호
408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 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09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2년 연장 (2014.9.22)	훈령 제129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10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3년 연장 (2014.9.22)	훈령 제747호
411	건설현장 축증기 설치지침	기간 재설정 (2015.7.31)	훈령 제847호 [2012.7.18, 폐지제정]
412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13	청렴도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14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유효기간 삭제	훈령 제863호 (2012.8.10)
415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3년 연장 (2015.8.10)	훈령 제863호
416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 준 등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8.10)	훈령 제884호
417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8.10)	훈령 제863호
418	주차장내의 방법설비설치세부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19	한국철도대학운영규정	폐 지	훈령 제794호 (2012.3.1)
420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유효기간 삭제	고시 제2011-821호 (2011.12.20)
421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3년 연장 (2015.8.10)	훈령 제900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22	철도범죄 수법자료 관리규칙	기간 재설정 (2015.8.10)	훈령 제863호 [2012.8.10, 폐지제정]
423	외국선박 불개항장 기항허가등의 요령	3년 연장 (2015.8.21)	훈령 제2012-876호
424	해상교통관제센터 복무규정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25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시설관리규정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26	위성항법보정시스템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27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28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29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 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 계업무 처리지침		유효기간 (2012.8.23)
430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지침	기간 재설정 (2015.7.10)	훈령 제845호 [2012.7.11, 폐지제정]
431	선박법 사무처리요령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32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지침	유효기간 삭제	훈령 제2013-77호
433	혁신도시 계획기준	기간 미도래	유효기간 (2013.8.20)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34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기간 미도래	유효기간 (2013.8.20)
435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기간 미도래	유효기간 (2014.8.23)
436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1호
437	부패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규정		유효기간 (2012.11.15)
438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유효기간 (2012.8.23)
439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	3년 연장 (2015.8.23)	훈령(2012.8.30)
440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3년 연장 (2015.8.10)	훈령 제2012-516호
441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재검토기한 (2012.8.23)
442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145호
44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3년 연장 (2015.8.13)	훈령 제2012-853호
444	단독주택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3년 연장 (2014.8.2)	훈령 제2012-855호
445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1년 연장 (2014.12.31)	훈령 제61호
446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 규정	3년 연장 (2015.8.20)	훈령 제864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47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0호
448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0호
449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0호
450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0호
451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0호
45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8.10)	훈령 제862호
453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행지침		재검토기한 (2012.12.31)
454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455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재검토기한 (2012.8.23)
456	글로벌인프라펀드투자대상사업 및 관리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12.15)	훈령 제957호
457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8.24)	훈령 제844호
458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3년 연장 (2015.8.10)	훈령 제863호
459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3년 연장 (2015.7.17)	훈령 제848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60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	3년 연장 (2015.12.31)	훈령 제2012-869호
461	유역조사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0호
462	수도시설관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463	한강수계 댐통합운영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464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 지침	3년 연장 (2016.2.19)	훈령 제958호
465	수문관측업무규정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기한 재설정 (2015.12.31)	훈령 제910호 [2012.10.25, 전부개정]
466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 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467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8.23)	훈령 제837호
468	신발전지역의 종합발전구역지정 및 관련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3년 연장 (2015.6.30)	훈령(2012.6.26)
469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8.12)
470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3년 연장 (2015.7.17)	훈령 제848호
471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3년 연장 (2015.7.17)	훈령 제848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7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재검토기한 (2012.8.23)
473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재검토기한 (2012.8.23)
474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지침		재검토기한 (2012.8.23)
475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년 연장 (2015.8.23)	훈령 제865호
476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602호 (2010.6.30)
477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603호 (2010.6.30)
478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폐 지	훈령 제806호 (2012.4.15)
479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폐 지	훈령 제806호 (2012.4.15)
480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년 연장 (2015.8.23)	훈령 제875호
481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3년 연장 (2015.8.23)	훈령 제866호
482	도시개발업무지침	3년 연장 (2015.8.10)	훈령 제861호
48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10.25)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84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9.10)	훈령 (2012.9.10)
485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 지침	3년 연장 (2015.9.10)	훈령 (2012.9.10)
486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3년 연장 (2015.9.7)	훈령 제2012-895호
487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8.26)
488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	3년 연장 (2015.8.10)	훈령 제862호
489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재검토기한 (2012.8.31)
490	특별교통대책본부 구성 및 운용 규정		재검토기한 (2012.8.18)
491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 평가지침	3년 연장 (2015.8.10)	훈령 제862호
492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에 관한 지침		재검토기한 (2012.12.9)
493	대중교통현황조사요령	3년 연장 (2015.8.23)	훈령 제838호
494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0호
495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579호 (2010.3.19)
496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676호 (2011.1.31)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97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		재검토기한 (2012.8.23)
49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 등 조정요령		재검토기한 (2012.8.23)
499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재검토기한 (2012.8.23)
500	택시 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0호
501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 리 요령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0호
502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0호
503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504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운 영에관한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505	교통안전점검 평가지침		재검토기한 (2012.8.21)
506	국도유지·보수운영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507	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508	ITS 업무요령		재검토기한 (2012.8.23)
509	철도운임산정기준	3년 연장 (2015.7.17)	훈령 제848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10	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		재검토기한 (2012.8.23)
511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8.24)
512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3년 연장 (2014.5.31)	훈령 제705호
513	개항질서법 제5조단서 규정에 의한 선박입출항 허가에 관한 요령	폐 지	고시 제2011-737호 (2011.9.16)
514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재검토기한 (2012.8.23)
515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3년 연장 (2015.8.10)	훈령 제862호
516	선원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8.21)	훈령(2012.10.30)
517	해양안전 및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10)	훈령 제862호
518	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 운영규정	1년 연장 (2013.8.31)	훈령 제615호
519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규정	3년 연장 (2015.8.19)	훈령 제870호
520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3년 연장 (2014.2.15)	훈령 (2011.3.14)
521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8.23)	훈령 (2012.7.4)
522	보급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7.31)	훈령 제804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23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재검토기한 (2012.8.23)
524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 지침		재검토기한 (2012.8.23)
525	국립해양박물관건립을 위한 유물 수집 및 관리에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5.12)
526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 지침	3년 연장 (2014.4.24)	예규 제220호
527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3년 연장 (2014.4.24)	예규 제1호
528	국가 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29	비행장외의 이·착륙 허가 및 최 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기간 재설정 (2015.8.31)	예규 제251호 [2012.8.29, 폐지제정]
530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31	조종사·관제사 데이터통신 운용 지침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32	정밀지역항법(P-RNAV) 운용지침		유효기간 (2012.5.31)
533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34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35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36	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37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38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39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40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41	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42	항공지도 도식표준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43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44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3년 연장 (2015.12.21)	예규 제260호
54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46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47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48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지침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49	항공기소음 측정업무매뉴얼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	기간 재설정 (2015.5.31)	예규 제299호 [2012.6.1, 전부개정]
550	공항기계시설 관리 운영 매뉴얼 [공항 기계시설 관리운영지침]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0호
551	공항시설 유지보수 업무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52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53	공항비상계획 업무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54호
554	항행안전시설 보호 업무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55	공항안전 자체점검 업무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56	공항내 위험물 취급 업무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57	야생동물관리 업무매뉴얼		유효기간 (2012.5.31)
558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 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54호
559	포장설계 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54호
560	공항안전관리체계 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61	비행장(활주로)설계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62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설 계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63	공항포장 과하중 운영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64	공항포장 강도결정 보고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65	공항종합계획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66	공항토지이용 및 환경계획 매뉴얼		유효기간 (2012.12.17)
567	포장면상태관리업무 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54호
568	장애물 관리 업무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69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 매 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70	기동불능항공기처리 업무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71	공항운영 업무매뉴얼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72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3년 연장 (2015.5.31)	예규 제231호
573	미등록 도서 조사 및 지적공부등 록 지침		유효기간 (2012.12.31)
574	지적불부합지 정리지침	3년 연장 (2015.8.10)	예규 제248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75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3년 연장 (2015.8.10)	예규 제248호
576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관리지침	3년 연장 (2015.8.10)	예규 제248호
577	건설업관리지침		유효기간 (2012.8.23)
578	종합 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	폐 지	고시 (2012.6.26)
579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 요령	기간 재설정 (2015.8.23)	예규 제240호 [2012.7.5, 폐지제정]
580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기간 재설정 (2015.8.25)	예규 [2012.6.22, 폐지제정]
581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기간 재설정 (2015.9.20)	예규 제2012-252호 [2012.9.21, 폐지제정]
582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	기간 재설정 (2015.8.19)	예규 제250호 [2012.8.20, 폐지제정]
583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	3년 연장 (2015.8.19)	예규 제250호
584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지침		재검토기한 (2012.8.24)
585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및 관리 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19)	예규 제249호
586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8.19)	예규 제249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87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2년 연장 (2013.12.31)	예규 제214호
588	지적사무 전산처리 규정		재검토기한 (2012.8.20)
589	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		재검토기한 (2012.8.20)
590	지적사무처리 규정		재검토기한 (2012.8.20)
591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사업무처리요령	기한 재설정 (2015.8.23)	예규 제2012-236호 [2012.6.26, 폐지제정]
59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규정	3년 연장 (2015.1.31)	예규 제2012-218호
593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재검토기한 (2012.8.24)
594	이륜자동차관리요령	3년 연장 (2015.8.19)	고시 제2012-535호
595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19)	예규 제2012-253호
5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 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597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기한 재설정 (2015.4.3)	예규 제223호 [2012.4.4, 전부개정]
598	도로명 안내체계 표지 제작·설치 지침		재검토기한 (2012.9.9)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99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예규 제255호
600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재검토기한 (2012.11.10)
601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재검토기한 (2012.8.23)
602	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	3년 연장 (2015.7.17)	예규 제245호
603	항만배후도로 건설 지원지침		재검토기한 (2012.8.19)
604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 정지침	3년 연장 (2015.8.10)	예규 제247호
605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 항해검사 지침		재검토기한 (2012.11.30)
606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	3년 연장 (2013.9.30)	예규 제2010-173호
607	공사용 항로표지관리·운영지침	3년 연장 (2015.4.9)	예규 제266호
608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8.23)	예규 (2012.7.4)
609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규정	3년 연장 (2015.7.10)	예규 (2012.7.10)
610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유효기간 삭제	예규 제27호 (2013.4.22)
611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지침	기간 미도래	유효기간 (2014.9.22)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612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2년 연장 (2014.10.31)	공고 제160호
613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3년 연장 (2015.8.19)	공고 제2012-1118호
614	순환골재 품질기준	3년 연장 (2015.8.10)	공고 제2012-1096호
615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3년 연장 (2015.8.20)	공고 제2013-93호

(3) 종 합

	항 목	검토결과
일몰제 적용 (615)	일몰규정 삭제	16
	행정규칙 폐지	9
	일몰기한 경과	92
	일몰검토 완료	492
	소 계	609
	일몰기한 미도래	6
	계	615
	총 계	615개

23. 문화체육관광부

(1) 도입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9월 1일 소관 행정규칙 중 34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¹⁴⁵⁾ 8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26개 행정규칙은 3년형 또는 5년형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였다. 재검토키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고시 19개, 훈령 6개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키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1년형
고시(19)	17	2	-	-	-
훈령(13)	6	-	6	-	1
예규(2)	-	-	2	-	-
계(34)	23	2	8	-	1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	카지노영업준칙	고 시 (19)	재검토 (5년)
2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		
3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 (3년)

145) 「카지노영업준칙 등 개정고시」(부고시 제2009-38호, 2009.9.1 일괄개정), 「문화예술킨흥법령의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 지침등 개정훈령」(훈령 제96호, 2009.9.1 일괄개정), 「저작권특별사법경찰운영규정 등 개정예규」(예규 제14호, 2009.9.1 일괄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4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5	연극용어 및 외래어 순화자료				
6	영화용어 및 언론외래어 순화자료				
7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 및 한국어교원자격증 발급규정				
8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고시				
9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준 고시				
10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11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12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업무지침				
13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14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령				
15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 실시 요령				
16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17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18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19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20	문화예술진흥법령의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 지침			훈 령 (13)	유효기간 (3년)
21	문화체육관광부 동상영정 심의규정				
22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23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24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25	문화체육관광부 CCTV 설치 운영규정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26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관리지침		유효기간 (1년)
27	관세감면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		재검토 (3년)
28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9	문화체육관광부 1년미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운영규정		
30	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		
31	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32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3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예 규	유효기간
34	예술경영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3년)

아울러 실효성이 적은 4개 행정규칙(훈령)을 일괄 폐지하고,¹⁴⁶⁾ 1개 행정규칙(고시)도 폐지하는 한편¹⁴⁷⁾ 2개 행정규칙을 폐지후 재발령하였다.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문화관광부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및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 령 (4)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	

146) 「문화관광부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및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폐지훈령」(훈령 제95호, 2009.9.1 일괄폐지).

147)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37호(2009.9.1, 폐지).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3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세칙	
4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보존관리규정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고 시 (1)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예 규 (1)
2	여행업보증보험·공제및영업보증금운영규정	고 시 (1)

(2) 추진경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34개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3개 행정규칙을 폐지하였고, 5개 행정규칙은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10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카지노영업준칙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2-13호 (2012.3.29)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8.31)
3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시행일부 터 3년 이내)	고시 제2010-13호 [폐지제정, 2010.3.25]
4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2012.8.31)
5	연극용어 및 외래어 순화자료		재검토기한 (2012.8.31)
6	영화용어 및 언론외래어 순화자료		재검토기한 (2012.8.31)
7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 및 한국어 교원자격증 발급규정	폐 지	고시 제2011-1호 (2011.1.24)
8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의 범위 고시	3년 연장 (2015.10.16)	고시 제2012-36호
9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기준 고시	3년 연장 (시행일부 터 3년 이내)	고시 제2011-35호
10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 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시행일부 터 3년 이내)	고시 제2010-82호,
11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3년 연장 (2015.8.31)	고시 제2012-28호
12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업무 지침		재검토기한 (2012.8.31)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3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3년 연장 (2015.3.25)	고시 제2012-10호, [폐지제정, 2012.3.26]
14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의 지정 등 에 관한 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고사 제2010-23호
15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 실시 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24호
16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재검토기한 (2012.8.31)
17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3년 연장 (2015.8.31)	고시 제2012-27호
18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3년 연장 (2015.8.31)	고시 제2012-39호
19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12호 [폐지제정, 2011.3.31]
20	문화예술진흥법령의 시행을 위한 조 례제정 지침		재검토기한 (2012.8.31)
21	문화체육관광부 동상영정 심의규정	3년 연장 (발령일부터 3년까지)	훈령 제178호
22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183호
23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177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4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유효기간 삭제	훈령 제133호 (2010.10.22)
25	문화체육관광부 CCTV 설치 운영규정		재검토기한 (2012.8.31)
26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CRC) 관리 지침	폐 지	훈령 제136호, (2010.11.9)
27	관세감면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 업무 처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8.31)
28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 및 1년 이 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문화체육 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182호
29	문화체육관광부 1년미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운영규정	폐 지	훈령 제117호 [전부개정, 2009.12.29]
30	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8.31)
31	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 한 포상 규정		재검토기한 (2012.8.31)
32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6월 연장 (발령한 해의 8월 31일까지)	훈령 제191호
33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3년 연장 (2014.3.30)	예규 제23호
34	예술경영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3년 연장 (발령일부터 3년까지)	예규 제21호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2	여행업보증보험·공제및영업보증금운영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2012.11.8)	

(3) 종합

일몰제 적용 (34)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5
	행정규칙 폐지		3
	일몰기한 경과		10
	일몰검토 완료		15
	소 계		33
	일몰기한 미도래		1
	계		34
폐지후 재발령 (2)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미도입		1
	일몰규정 도입(1)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
		일몰기한 경과	1
		일몰검토 완료	-
소 계		1	

	일몰기한 미도래	-
	계	2
총 계	35개(일몰제 도입 건수)	

24. 법무부

(1) 도입현황

법무부는 소관 행정규칙 중 47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행 또는 유효기간 설정형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그 가운데 유효기간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3개, 재검토키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44개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키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3)	3	-	-	-
훈령(21)	19	1	1	-
예규(23)	21	-	2	-
계(47)	43	1	3	-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고시	고 시 (3)	재검토 (3년)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등의신청및수령의대리에 관한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3	이중국적자 업무처리 지침		
4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전·조사처리규정	훈 령 (21)	유효기간 (3년)
5	소년선도보호지침		재검토 (3년)
6	보호관찰대상자 지명수배절차에관한규칙		
7	보호관찰소선도위탁규정		
8	피치료감호자분류및처우관리준칙		
9	치료감호소의류및침구제식규칙		
10	치료감호소주부식급여규칙		
11	소년원특성화중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12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등에 관한 규정		
13	보호소년 처우지침		
14	수용자 자비 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15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업무지침		
16	교정시설경비교도대운영지침		
17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 시행세칙		
18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19	보호외국인급식관리규정		
20	출입국사범단속과정의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21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		
22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등에관한사증발급 인정서발급및관리에관한지침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23	남북한 왕래자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24	APEC 경제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규정		재검토 (5년)
2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등 업무처리지침		유효기간 (3년)
26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27	각종 행사관련 법무부장관우등상수여및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지침		
28	교정직공무원임용시험의체력검사평가종목별측정 방법		
29	별정직공무원(직업훈련교사)임용		
30	교정관련 영화·방송드라마 제작지원 지침		
31	교도작업운영지침		
32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33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34	교정위원 운영지침		
35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등에 관한 지침		
36	가석방업무지침		
37	수용자의료관리지침		
38	수용자 청원처리 지침		
39	인권업무처리지침		
40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지침		
41	수용자급양관리지침		
42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영에 관한 지침		
		예 규 (23)	재검토 (3년)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43	영치금품관리지침		
44	법률구조법인의등록등에 관한사무취급규정		
45	명예국민증 수여에 관한 규정		
46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7	국적업무처리지침		

한편 7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6개 행정규칙을 폐지후 재발령하였다.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출입국관리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훈 령 (2)
2	법무부이민행정협의회 규정	
3	3부제근무운영지침	예 규 (4)
4	중번순찰제 운영규정	
5	수형자 개방처우지침	
6	국적업무 출장소 운영지침	고 시 (1)
7	2008 방문취업제무연고동포연간허용인원국적별세부할당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법령제정·개정 업무지침	예 규 (2)
2	법무부소속공무원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3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훈 령 (4)
4	치료감호소직원급여품규칙	
5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6	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2) 추진경과

법무부에서는 46개 행정규칙에 대해 1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2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였다. 한편 7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검토하지 않았다(비공개 1개 제외).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고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297호 [2010.4.26, 제정]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등의신청및수령의대리에관한규정	3년 연장 (2014.6.19)	고시 제2011-278호
3	이중국적자 업무처리 지침	폐 지	고시 제2010-847호 (2011.1.3)
4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전.조사처리 규정	3년 연장 (2015.12.5)	훈령 제876호
5	소년선도보호지침		유효기간 (2012.9.21)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6	보호관찰대상자 지명수배절차에 관한규칙	1년 연장 (2013.7.16)	훈령 제787호
7	보호관찰소선도위탁규정	3년 연장 (2015.12.5)	훈령 제875호
8	피치료감호자분류및처우관리준칙	2년 연장 (2014.12.8)	훈령 제844호
9	치료감호소의류및침구제식규칙	1년 연장 (2013.5.9)	훈령 제775호
10	치료감호소주부식급여규칙	1년 연장 (2013.5.9)	훈령 제776호
11	소년원특성화중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유효기간 (2012.8.31)
12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856호
13	보호소년 처우지침	1년 연장 (2013.6.20)	훈령 제782호
14	수용자 자비 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재검토기한 (2012.8.18)
15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업무지침	3년 연장 (2013.6.7)	훈령 제780호, [2010.6.8, 폐지제정]
16	교정시설경비교도대운영지침	3년 연장 (2013.6.30)	훈령 제819호
17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 시행세칙 [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834호, [2011.9.8, 전부개정]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8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865호
19	보호외국인급식관리규정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864호
20	출입국사범단속과정의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3년 연장 (2015.8.31)	훈령 제862호
21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 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	2년 연장 (2014.12.14)	훈령 제843호
22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등에관한사 증발급인정서발급및관리에관한지침	3년 연장 (2015.2.28)	훈령 제853호
23	남북한 왕래자에 대한 출입국심사 지침	3년 연장 (2015.8.23)	훈령 제863호
24	APEC 경제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규정	기한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8.23)
2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등 업무처리지침	기간재설정 (2015.9.16)	예규 제1001호 [2012.9.17, 폐지제정]
26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비공개
27	각종행사관련법무부장관우등상수여 및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지침		재검토기한 (2012.8.31)
28	교정직공무원임용시험의체력검사평 가종목별측정방법	1년 연장 (2013.6.30)	예규 제940호
29	별정직공무원(직업훈련교사)임용	3년 연장 (2015.1.31)	예규 제988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0	교정관련 영화·방송드라마 제작지원 지침		재검토기한 (2012.8.18)
31	교도작업운영지침		재검토기한 (2012.8.28)
32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3년 연장 (2015.2.28)	예규 제991호
33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3년 연장 (2015.8.31)	예규 제1006호
34	교정위원 운영지침	3년 연장 (2015.12.10)	예규 제1007호
35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등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12.31)	예규 제1014호
36	가석방업무지침	기한재설정 (2015.6.30)	예규 제994호 [2012.6.8, 폐지제정]
37	수용자의료관리지침	3년 연장 (2014.3.14)	예규 제971호
38	수용자 청원처리 지침	3년 연장 (2014.12.22)	예규 제987호
39	인권업무처리지침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3년 연장 (2015.12.31)	예규 제1000호
40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지침		재검토기한 (시행후 3년이내)
41	수용자급양관리지침	3년 연장 (2015.12.31)	예규 제1010호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2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영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12.31)	예규 제1011호
43	영치금품관리지침	3년 연장 (2015.12.31)	예규 제1013호
44	법률구조법인의등록등에관한사무취급규정	3년 연장 (2016.1.27)	예규 제1015호
45	명예국민증 수여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31)	예규 제999호
46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3년 연장 (2015.12.31)	예규 제1012호
47	국적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4.7.18)	예규 제982호

한편 폐지후 재발령한 6개 행정규칙에 대해 1개 행정규칙만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일몰제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	법령제정·개정 업무지침	일몰제규정 없음	
2	법무부소속공무원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일몰제규정 없음	
3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4	치료감호소직원급여품규칙	유효기간	1년 연장(2013.5.9)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설정 (2012.9.21)	[훈령 제777호]
5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6	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세 부시행규칙	일몰제규정 없음	

(3) 종 합

일몰제 적용 (47)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2
	행정규칙 폐지		1
	일몰기한 경과		7
	일몰검토 완료		37
	소 계		47
	일몰기한 미도래		-
	계		47
폐지후 재발령 (6)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미도입		5
	일몰규정 도입 (1)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
		일몰기한 경과	-
		일몰검토 완료	1
		소 계	1
	일몰기한 미도래		-
계		6	
총 계	48개(일몰제 도입 건수)		

25. 보건복지부

(1) 도입현황

보건복지부는 2009년 8월과 9월에 소관 행정규칙 중 53개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¹⁴⁸⁾ 유형별로는 고시 45개, 훈령 1개, 예규 5개로서 유효기간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없고, 5년형 재검토기한이 2개, 나머지는 전부 3년형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훈령 1개(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은 폐지하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기 타	3년형	5년형
고시(46)	44	2	-	-	-
훈령(1)	1		-	-	-
예규(6)	6		-	-	-
계(53)	51	2	-	-	-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1	면허·자격증명발급 규정		

148) 「금융재산 기준 등 개정 고시」(고시 제2009-150호)에서 36개의 고시를 일괄 개정하였고, 「면허·자격증명발급 규정 등 예규 개정」(예규 제21호)에서 3건의 예규를 일괄 개정하였다.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등 개정 고시」(고시 제2009-203호)에서 4개의 고시를 일괄 개정하였다. 「약국제제 지정 고시」(고시 제2009-153호) 등 5개의 고시를 제정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다.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출입증 발급 및 출입에 관한규정	예 규 (6)	재검토 (3년)
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4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5	건강기능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6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7	보건복지가족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 령 (1)	재검토 (3년)
8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고 시 (46)	재검토 (5년)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10	금융재산 기준		
11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재검토 (3년)
1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3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4	출산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15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16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17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18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19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20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21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22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		
2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2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25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6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28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29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30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31	의약외품 범가지정		
32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율에 관한 기준		
33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34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35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36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37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기준		
38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39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40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41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유형
42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43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수수료 산정방법		
44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45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46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47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48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49	약국제제 지정 고시		
50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51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52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고시		
53	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2) 추진경과

보건복지부에서는 53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일몰 도래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을 공고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하였다(공고 제2012-591호, 2012.10.19). 그 후 1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1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였다. 4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면허·자격증명발급 규정	3년 연장 (2015.8.23)	예규 제39호
2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출입증 발급 및 출입에 관한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2년 연장 (2014.12.31)	예규 제44호
4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2년 연장 (2014.11.30)	예규 제45호
5	건강기능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2년 연장 (2014.11.30)	예규 제45호
6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1년 연장 (2013.8.23)	예규 제40호
7	보건복지가족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8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8.23)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 환산율 고시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8.23)
10	금융재산 기준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93호
11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131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93호
13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93호
14	출산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03호
15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93호
16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03호
17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03호
18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9.30)	고시 제2012-118호 [전부개정, 2012.9.14]
19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3년 연장 (2013.9.30)	고시 제2010-82호 [전부개정, 2010.10.4]
20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3년 연장 (2013.11.4)	고시 제2010-96호 [일부개정, 2010.11.5]
21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03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고
22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93호
2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4.2.16)	고시 제2011-19호
2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93호
25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93호
26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03호
27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93호
28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93호
29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93호
30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3년 연장 (2014.12.31)	고시 제2011-58호 [전부개정, 2011.5.31]
31	의약외품 범위지정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03호
32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율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93호
33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93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4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93호
35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03호
36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93호
37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기준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03호
38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03호
39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03호
40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03호
41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03호
42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03호
43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수수료 산정방법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03호
44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178호
45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3년 연장 (2015.11.10)	고시 제2012-93호
46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3년 연장 (2015.11.10)	고시 제2012-93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7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재검토기한 (2012.11.10)
48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3년 연장 (2015.11.10)	고시 제2012-93호
49	약국제제 지정 고시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93호
50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 지	훈령 제29호 (2011.12.16)
51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52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고시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03호
53	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2.28)	고시 제2012-45호

(3) 종 합

일몰제 적용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1
	행정규칙 폐지	1
	일몰기한 경과	4
	일몰검토 완료	45
	소 계	51
	일몰기한 미도래	2
	계	53
총 계	53개	

26. 지식경제부

(1) 도입현황

지식경제부는 2009년 8월 24일 소관 행정규칙 중 156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일괄입법을 통해 일몰제를 도입하였고,¹⁴⁹⁾ 기존에 일몰제를 두었거나 개별 입법을 통한 일몰제를 도입한 46개 행정규칙을 포함하여 202개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유효기간을 설정한 행정규칙 9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3년형 또는 5년형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1년형	3년형	5년형	1년형
고시(167)	158	5	1	2	-	1
훈령(14)	13	1	-	-	-	-
예규(4)	2	-	-	2	-	-
지침(11)	9	-	-	2	-	-
공고(6)	4	-	-	2	-	-
계(202)	186	6	1	8	-	1

149)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고시 제2009-193호)에서 126개의 고시를 일괄개정하였고, 「지식경제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등 일괄개정 훈령」(훈령 제44호)에서 12개의 훈령 및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일괄개정 예규」(예규 제15호)에서 3개의 훈령을 각각 일괄개정하였다. 「부품소재공동주관개발사업관리지침 등 일괄개정 지침」(지침 제42호)에서 10개 지침을 일괄개정하였고,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등 일괄개정 공고」(공고 제2009-327호)에서 5개 공고를 일괄개정하였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고 시 (168)	유효기간 (3년)
2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3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재검토 (3년)
4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5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6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7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8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9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10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1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5년)		
1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5년)		
1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5년)		
14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5년)		
15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지정요령		
16	기술거래사 등록요령		
17	기술담보시범사업 운용요령		
18	2단계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운영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9	특허신타관리업 세부허가요건 및 특허신타 선별 평가기준		
20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21	공장입지기준고시		
22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23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지정요건		
24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		
25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26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27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28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29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30	지역디자인센터건립 운영요령		
31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1년)		
32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요령		
33	전기기기공인시험기준및방법에관한요령		
34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35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준 중 인력기술능력에 관한 고시		
36	전자문서 보관 등 표준업무준칙		
37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38	전자화문서 작성시설 또는 장비 인증기준 세부 사항 규정		
39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		
40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41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조성을위한수입금의징수금액 및 징수방법등에관한고시		
42	헬기기술자립화사업 운영요령		
43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		
44	방위산업용품중관세감면대상물품확인업무처리 규정		
45	항공우주산업 특정품목 및 특정사업자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46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47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48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49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50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51	수출입공고		
52	통합공고		
53	대외무역관리규정		
54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		
55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56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5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58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59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60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61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62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63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지정		
64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65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 관한규정		
6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67	에너지관리기준		
68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규정		
69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70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71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72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73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74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75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관한 규정		
76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77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78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7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 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80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81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 부과금에 관한 고시		
82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83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		
84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85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86	전기공사업 운영요령		
87	전기설비기술기준		
88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89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90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91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92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93	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94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95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96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97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98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99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100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특례기준		
101	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등에 관한 특례기준		
102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 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에 관한 고시		
103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104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105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106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107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108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5년)		
109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110	광업업무처리지침		
111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112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13	폐광지역진흥지구대체산업육성계획		
114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		
115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11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영·관리규정		
117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118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11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120	계량기 형식승인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121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 요령		
122	신제품(NEP)인증및 구매촉진등에관한 운영요령		
123	품질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요령		
124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		
125	한국인인체표준정보운영요령		
126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자료제출 운영요령		
127	종합물류기업 인증 요령		
128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129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고시		
130	재제조 대상제품		
131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		
132	전기·전자제품의재질·구조개선지침		
133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34	산업단지관리지침		
13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및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13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137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38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139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140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심사에 관한 고시		
14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142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포상금 지급 등 운영기준		
143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144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145	집단에너지사업계획서 작성기준		
146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147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148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149	태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150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51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152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153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54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		유효기간 (1년)
155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156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영요령		
157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158	물류설비인증요령		
159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160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지정		
161	신기술통합인증요령		
162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163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164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165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166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167	차단기능형등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 검사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		
168	지식경제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훈 령 (14)	재검토 (3년)
169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70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171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172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 시행규정		
173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174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운영에관한관리지침		
175	에너지원탁회의및에너지정책민관합동포럼규정		
176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77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178	전기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5년)		
179	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사업운영규정		
180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181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규정		
182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예 규 (4)	재검토 (3년)
183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		유효기간 (3년)
184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		
185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		재검토 (3년)
186	부품소재공동주관개발사업관리지침	지 침 (11)	유효기간 (3년)
187	부품소재단독주관개발사업관리지침		
188	한국형헬기 민·군겸용구성품개발사업 관리지침		재검토 (3년)
189	차세대패키징 공정·장비실용화사업 관리지침		
190	i매뉴팩처링사업 관리지침		
191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관리지침		
192	민군겸용기술사업 평가지침		
193	외국인투자위원회 운영규정		
194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195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196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 관리지침		
197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공 고 (6)	재검토 (3년)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98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유효기간 (3년)
199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200	ESCO관리규정(에너지절약 전문기업 관리규정)		
20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협약운영규정		
202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아울러 실효성이 적은 73개 행정규칙(고시 33개, 훈령 36개, 예규 4개)을 일괄 폐지하는 한편 개별 입법조치를 통해 20개 행정규칙에 대해 폐지후 재발령하여,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류
1	실적가점평정업무처리지침(산자부 예규 제5호)	예 규 (4개)
2	근무성적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산자부 예규 제20호)	
3	직무성과계약 운영지침(산자부 예규 제22호)	
4	성과관리 운영지침(산자부 예규 제24호)	
5	산업자원부공무원행동강령(산업자원부 훈령 제91호)	훈 령 (36개)
6	산업자원부및그소속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산자부 훈령 제79호)	
7	산업자원부 행정정보 공개지침(산자부 훈령 제61호)	
8	산업자원부 자료관운영에관한 규정(산자부 훈령 제85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류
9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산자부 훈령 제111호)	
10	5급공무원승진임용심사규정(산자부 훈령 제88호)	
11	산업자원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산자부 훈령 제90호)	
12	산업자원부개방형직위임용후보자선발시험위원회운영규정(산자부 훈령 제43호)	
13	산업자원부소속공무원특별승진임용심사규정(산자부 훈령 제89호)	
14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인사지침(지경부 훈령 제1호)	
15	도서자료관리규정(산자부 훈령 제32호)	
16	산업자원부 위임전결규정(산자부 훈령 제118호)	
17	산업자원부사무분장규정(산자부 훈령 제1호)	
18	산업자원부 전산업무보안관리지침(산자부 훈령 제10호)	
19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산자부 훈령 제34호)	
20	산업자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산자부 훈령 제30호)	
21	산업자원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산자부 훈령 제113호)	
22	산업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산자부 훈령 제114호)	
23	산업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산자부 훈령 제122호)	
24	산업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산자부 훈령 제80호)	
25	산업자원부정책평가위원회운영규정(산자부 훈령 제60호)	
26	산업자원부평가위원회운영규정(산자부 훈령 제46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류
27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 위원회 운영규정(산자부 훈령 제116호)	
28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요령(산자부 훈령 제68호)	
29	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요령(산자부 훈령 제109호)	
30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운영요령(산자부 훈령 제99호)	
31	화학무기금지협약 국내 이행을 위한 산업사찰 전문가위원회 운영규정(산자부 훈령 제12호)	
32	방위산업의전문화및계열화규정(산자부 훈령 제15호)	
33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설치에따른훈령(산자부 훈령 제9호)	
34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업무처리및복무지침(산자부 훈령 제 14호)	
35	제조업·무역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사업자의 이라크 진출에 관한 규정(산자부 훈령 제117호)	
36	승강기조사판정위원회 위임전결규정(산자부 훈령 제97호)	
37	승강기사고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	
38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39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운영규정	
40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조사관 직무수행 강령	
41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산자부 고시 제1999-11호)	고 시 (33개)
42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 용자대상자 선정요령(산자부 고시 제1998-49호)	
43	외화증권발행과 상업차관도입을 위한 국산시설재 및 첨단 기술산업용 시설재 확인 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29호)	
44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04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류
45	벤처기업 집적시설지정·관리등에 관한 지침(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219호)	
46	할부수수료및지연손해금등의최고이율(산자부 고시 제1998-14호)	
47	기술거래기관 및 평가전문기관 지정요령(산자부 고시 제2000-135호)	
48	기술거래사 지정을 위한 기술거래관련 실적 기준(산자부 고시 제2000-104호)	
49	정밀기술 진흥사업 지침(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63호)	
50	적법지역 이전을 추진하는 기존공장의 등록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218호)	
51	산업디자인포장전문회사 신고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67호)	
5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산자부 고시 제2000-37호)	
52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8호)	
54	중형항공기개발사업 운영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210호)	
55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운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40호)	
56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5호)	
57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22호)	
58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정(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94호)	
59	포괄수출 허가업체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49호)	

번호	행정규칙명	종 류
60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이도입하는 자본재의검토 및확인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71호)	
61	석유 이동판매소의 운영에 관한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206호)	
62	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 석유가스 배송센터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01호)	
63	자가용 천연가스시설 설치기준(통상산업부 고시 제1998-6호)	
64	액화석유가스중량판매에 관한 기준(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7-21호)	
65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25호)	
66	과류차단형액화석유가스용기용밸브의제조 및 검사기준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8-19호)	
67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충 전사업의 시설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25호)	
68	자본재 표준화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12호)	
69	표준물질 인증제도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10호)	
70	승강기 교육기관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7호)	
71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 장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81호)	
72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면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44호)	
73	승강기부품 형식승인기준(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73호)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 시 (11)	재검토 (3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3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4	주한미군잉여재산처리요령		
5	중양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		
6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7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8	전원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9	액화석유가스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10	광산보안업무처리지침		
11	광업권설정구역내의 골재채취가능 여부조사요령		
12	부품소재 통계조사 규칙	훈 령 (8)	유효기간 (3년)
1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14	산업자원부감사청구심의회운영규정		재검토 (3년)
15	산업자원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16	전기위원회 운영 규정		
17	전기위원회 재정 규정		
18	참고인에 대한 여비지급규정		
19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지침		재검토 (5년)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20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원가산정에관한기준	예 규 (1)	유효기간 (3년)

(2) 추진경과

지식경제부에서는 202개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9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6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였다. 한편 27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업무 처리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2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3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4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5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재검토기한 (2012.7.31)
6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재검토기한 (2012.7.31)
7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8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9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0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5년)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7.31)
1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5년)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7.31)
1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5년)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7.31)
14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5년)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7.31)
15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지정요령		재검토기한 (2012.7.31)
16	기술거래사 등록요령 [기술거래사 등록 관리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7	기술담보시범사업 운용요령		재검토기한 (2012.7.31)
18	2단계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운영규정	폐 지	고시 제2012-97호 (2012.5.8)
19	특허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및 특허신탁 선별평가기준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고시]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0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3년 연장 (2015.4.30)	고시 제2012-115호
21	공장입지기준고시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22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3년내 재검토	고시 제2011-99호
23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지정요건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24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	3년 연장 (2014.7.21)	고시 제2011-148호
25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26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27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 에 관한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28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29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3년 연장 (2014.12.31)	고시 제2011-262호
30	지역디자인센터건립 운영요령	폐 지	고시 제2012-68호 (2012.3.26)
31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7.31)
32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3	전기기기공인시험기준및방법에관한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34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 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35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준 중 인력 기술능력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36	전자문서 보관 등 표준업무준칙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37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 한 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38	전자화문서 작성시설 또는 장비 인증 기준 세부사항 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39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40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41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조성을위한수 입금의징수금액 및 징수방법등에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2012.7.31)
42	헬기기술자립화사업 운영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43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		재검토기한 (2012.7.31)
44	방위산업용품중관세감면대상물품확인 업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45	항공우주산업 특정품목 및 특정사업자 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6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2-151호 (2012.10.17)
47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2-250호 (2012.10.17)
48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49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50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 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1년 연장 (2013.12.31)	고시 제2012-219호
51	수출입공고		재검토기한 (2012.7.31)
52	통합공고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53	대외무역관리규정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83호
54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55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56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5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2-331호 (2012.12.28)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8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59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60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7.31)
61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62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63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지정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64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65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 관한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6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67	에너지관리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68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69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70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71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72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73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74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3-11호
75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2.23)	고시 제2012-51호
76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77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78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7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2-32호 (2012.2.17)
80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81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2012.7.31)
82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83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1-265호
84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85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86	전기공사업 운영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87	전기설비기술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88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89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90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91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92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 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77호
93	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94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95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96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97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98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92호
99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93호
100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특례기준	폐 지	고시 제2012-68호 (2012.3.26)
101	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 등에 관한 특례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02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 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03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04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05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06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07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08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5년)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09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의 용자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10	광업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11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4.8.31)	고시 제2012-215호 [폐지제정, 2012.9.14]
112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13	폐광지역진흥지구대체산업육성계획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14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 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15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방법 고시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1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영·관리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17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 료 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1년 연장 (2013.10.3)	고시 제2011-197호
118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1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재검토기한 (2012.7.31)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20	계량기 형식승인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21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 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22	신제품(NEP)인증및 구매촉진등에관한 운영요령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67호
123	품질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 요령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2012.12.31)
124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	3년 연장 (2015.7.3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351호 [폐지제정, 2012.7.31]
125	한국인인체표준정보운영요령		재검토기한 (2012.7.31)
126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자료제출 운영 요령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2012.12.31)
127	종합물류기업 인증 요령		재검토기한 (2012.8.24)
128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91호
129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고시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92호
130	재제조 대상제품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98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31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		재검토기한 (2012.8.20)
132	전기·전자제품의재질·구조개선지침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99호
133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 용지침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258호
134	산업단지관리지침	3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3-2호
13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및고용창출 촉 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폐 지	고시 제2012-1호 (2012.1.2)
13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7.31)
137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7.31)
138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3년 연장 (2016.2.26)	고시 제2013-41호
139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폐 지	고시 제2010-52호 (2010.2.26)
140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심사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2012.8.22)
14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재검토기한 (2012.10.31)
142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포상금 지급 등 운영기준	폐 지	고시 제2009-235호 (2009.10.22)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43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88호
144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197호
145	집단에너지사업계획서 작성기준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80호
146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 가격 지침		재검토기한 (2011.12.31)
147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2012.7.31)
148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매년 재설정	고시 제2010-230호 (2011.12.31)
149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1년 연장 (2013.7.0)	고시 제2010-175호
150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3년 연장 (2014.6.30)	고시 제2011-101호 [제정, 2011.7.1]
151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 육비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78호
152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 기준	3년 연장 (2015.3.31)	고시 제2012-79호
153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 기준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94호
154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12.31)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55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요령	3년 연장 (2014.7.31)	고시 제2012-20호
156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영요령	3년 연장 (2015.5.10)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316호
157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용요령	2년 연장 (2014.8.2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54호
158	물류설비인증요령		재검토기한 (2012.9.30)
159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3년 연장 (2015.7.1)	고시 제2012-206호
160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지정		재검토기한 (2012.8.25)
161	신기술통합인증요령	3년 연장 (2015.8.26)	고시 제2012-166호
162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2012.7.31)
163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57호
164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재검토기한 삭제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120호
165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2012.9.16)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66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2년 연장 (2014.8.2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300호 [폐지제정, 2011.8.22]
167	차단기능형등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		유효기간 (2009.12.31)
168	지식경제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3년 연장 (2015.3.31)	훈령 제94호
169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3년 연장 (2015.3.31)	훈령 제94호
170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3년 연장 (2015.3.31)	훈령 제94호
171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3년 연장 (2015.3.31)	훈령 제94호
172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 시행규정	3년 연장 (2015.3.31)	훈령 제94호
173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3년 연장 (2015.4.24)	훈령 제97호
174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운영에관한관리지침	3년 연장 (2015.3.31)	훈령 제94호
175	에너지원탁회의및에너지정책민관합동포럼규정	폐 지	훈령 제95호 (2012.3.26)
176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3년 연장 (2015.3.31)	훈령 제94호
177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3년 연장 (2015.3.31)	훈령 제94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78	전기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5년)	기한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7.31)
179	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사업운영규정	3년 연장 (2015.3.31)	훈령 제94호
180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7.31)	훈령 제105호
181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규정	3년 연장 (2015.7.31)	훈령 제104호
182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3년 연장 (2015.3.31)	예규 제39호
183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	폐 지	예규 제2011-102호 (2011.2.28)
184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	폐 지	예규 제2011-102호 (2011.2.28)
185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		재검토기한 (2012.8.23)
186	부품소재공동주관개발사업관리지침	3년 연장 (2015.3.31)	지침 (2012.3.26)
187	부품소재단독주관개발사업관리지침	3년 연장 (2015.3.31)	지침 (2012.3.26)
188	한국형헬기 민·군겸용구성품개발사업 관리지침	3년 연장 (2015.3.31)	지침 (2012.3.26)
189	차세대패키징 공정·장비실용화사업 관 리지침	3년 연장 (2015.3.31)	지침 (2012.3.26)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90	i매뉴팩처링사업 관리지침	3년 연장 (2015.3.31)	지침 (2012.3.26)
191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관리지침	3년 연장 (2015.3.31)	지침 (2012.3.26)
192	민군겸용기술사업 평가지침	3년 연장 (2015.3.31)	지침 (2012.3.26)
193	외국인투자위원회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3.31)	지침 (2012.3.26)
194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3년 연장 (2015.3.31)	지침 (2012.3.26)
195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3년 연장 (2015.3.31)	지침 (2012.3.26)
196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 관리지침		재검토기한 (2012.7.31)
197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3년 연장 (2015.3.31)	공고 제2012-163호
198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3년 연장 (2015.3.31)	공고 제2012-163호
199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3년 연장 (2015.3.31)	공고 제2012-163호
200	ESCO관리규정(에너지절약 전문기업 관리규정)	3년 연장 (2015.3.31)	공고 제2012-163호
20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협약운영규정	3년 연장 (2015.3.31)	공고 제2012-163호
202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 원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6.22)

[폐지후 재발령 행정규칙 재검토 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2012.7.31)	3년 연장(2015.7.31) [고시 제2012-179호]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재검토기한 설정 (2012.7.31)	3년 연장(2015.7.31) [고시 제2012-185호]
3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제도	재검토기한 설정 (2012.7.31)	3년 연장(2015.7.31) [고시 제2012-186호]
4	주한미군잉여재산처리요령	재검토기한 설정 (2012.7.31)	3년 연장(2015.7.31) [고시 제2012-184호]
5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7.31)	3년 연장(2015.6.30) [고시 제2012-164호]
6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재검토기한 설정 (2012.7.31)	3년 연장(2015.7.31) [고시 제2012-182호]
7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재검토기한 설정 (2012.7.31)	3년 연장(2015.7.31) [고시 제2012-182호]
8	전원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재검토기한 설정 (2012.7.31)	
9	액화석유가스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재검토기한 설정 (2012.7.31)	3년 연장(2015.8.20) [고시 제2012-113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10	광산보안업무처리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2.7.31)	
11	광업권설정구역내의 골재채취 가능 여부조사요령	재검토기한 설정 (2012.7.31)	3년 연장(2015.7.31) [고시 제2012-188호]
12	부품소재 통계조사 규칙	유효기간 설정 (2012.10.6)	폐지(2010.12.28) [훈령 제75호]
1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 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도 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2012.7.31)	3년 연장(2015.7.31) [훈령 제103호]
14	산업자원부감사청구심의회운영 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15	산업자원부 국가지리정보 보안 관리지침	일몰제규정 없음	
16	전기위원회 운영 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17	전기위원회 재정 규정	일몰제규정 없음	
18	참고인에 대한 여비지급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2012.8.23)	
19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지침	재검토기한 설정 (2014.8.23)	기한 미도래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발령결과	검토결과
20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원가산정에 관한기준	유효기간 설정 (2012.7.31)	폐지(2011.2.28) [공고 제2011-102호]

(3) 종 합

일몰제 적용 (202)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6
		행정규칙 폐지	9
		일몰기한 경과	27
		일몰검토 완료	151
		소 계	193
		일몰기한 미도래	9
		계	202
폐지 후 재발령 (20)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미도입	4
	일몰규정 도입 (16)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2
		일몰기한 경과	3
		일몰검토 완료	10
		소 계	15
		일몰기한 미도래	1
	계	20	
총 계	218개(일몰제 도입 건수)		

지식경제부에서는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훈령 제86호, 2011.8. 25 제정)을 마련하여 훈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시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 홈페이지 훈령·예규 사이트 게시 여부(불가시 사유)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제1항). 또한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훈령 등이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훈령 등의 발령안에 관하여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제2항). 그리고 훈령 등 안의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다(제6조). 지식경제부는 일괄개정을 통해 행정규칙에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고, 또한 일괄개정으로 해당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조치하였다.

27. 통일부

(1) 도입현황

통일부는 2009년 9월 21일 소관 행정규칙 중 27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일괄입법 또는 개별 행정규칙의 개정을 통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¹⁵⁰⁾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1년형	3년형	기 타	3년형	기 타
고시(15)	1	14	-	-	-
훈령(8)	-	7	-	1	-
예규(4)	-	4	-	-	-
계(27)	1	25	-	1	-

150) 「일몰제 적용을 위한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등 일부개정」(고시 제2009-20호), 「일몰제 적용을 위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등 일부개정령」(예규 제26호), 「일몰제 적용을 위한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등 일부개정령」(훈령 제420호) 등.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	훈 령 (8)	재검토 (3년)
2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규정		
4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		
5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6	통일부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7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8	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규정		유효기간 (3년)
9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국내반입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 규 (4)	재검토 (3년)
10	무기계약 및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노무 관리 지침		
11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12	통일부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13	교역보험 취급기준	고 시 (15)	재검토 (1년)
14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재검토 (3년)
15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16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17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 기준에 관한 고시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8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19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20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21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22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23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관한 고시		
24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25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26	반출반입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27	인도적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2) 추진경과

통일부에서는 27개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2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	3년연장 (2015.9.13)	훈령 제469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3년연장 (2015.7.26)	훈령 제465호
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규정	3년연장 (2015.9.13)	훈령 제468호
4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	3년연장 (2015.9.13)	훈령 제467호
5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3년연장 (2015.7.26)	훈령 제465호
6	통일부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재검토기한 (2012.9.15)
7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3년연장 (2016.2.10)	훈령 제482호
8	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규정	3년연장 (2015.11.4)	훈령 제473호 [2012.11.5, 제정]
9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국내반입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년연장 (2015.7.26)	예규 제38호
10	무기계약 및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노무 관리지침		재검토기한 (2012.9.15)
11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3년연장 (2015.7.26)	예규 제38호
12	통일부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3년연장 (2015.7.26)	예규 제38호
13	교역보험 취급기준	3년연장 (2015.7.26)	고시 제2012-2호
14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3년연장 (2015.7.26)	고시 제2012-2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5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3년연장 (2015.7.26)	고시 제2012-2호
16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3년연장 (2015.7.26)	고시 제2012-2호
17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 기준에 관한 고시	3년연장 (2015.7.26)	고시 제2012-2호
18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3년연장 (2015.7.26)	고시 제2012-2호
19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3년연장 (2015.7.26)	고시 제2012-3호
20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3년연장 (2015.7.26)	고시 제2012-2호
21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3년연장 (2015.7.26)	고시 제2012-2호
22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3년연장 (2015.7.26)	고시 제2012-2호
23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관한 고시	3년연장 (2015.7.26)	고시 제2012-2호
24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 방법	3년연장 (2015.7.26)	고시 제2012-2호
25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3년연장 (2015.7.26)	고시 제2012-2호
26	반출반입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3년연장 (2015.7.26)	고시 제2012-2호
27	인도적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3년연장 (2015.7.26)	고시 제2012-2호

(3) 종합

	항 목	검토결과
일몰제 적용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
	일몰기한 경과	2
	일몰검토 완료	25
	소 계	27
	일몰기한 미도래	-
	계	27
총 계	27개	

28. 환경부

(1) 도입현황

환경부는 2009년 8월 24일 소관 행정규칙 중 119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일괄입법을 통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¹⁵¹⁾ 또한 개별 행정규칙의 개정을 통해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전체 257개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151)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173호, 2009.8.24 일괄개정)에서 고시 74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등에 관한 일괄개정」(예규 제379호, 2009.8.18 일괄개정)에서 예규 9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등 개정 훈령」(훈령 제859호, 2009.8.18 일괄개정)에서 훈령 35개 등.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기 타	3년형	기 타
고시(168)	159	2	5	1	1
훈령(45)	18		-	27	-
예규(44)	11			33	-
계(257)	188	2	5	61	1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	오산화비소에 대한 관리기준	고 시 (168)	유효기간 (1년)
2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 (3년)
3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 (3년)
4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5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6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 방법 등에 관한 규정		
7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8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9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0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11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12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13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14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15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16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17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18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20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1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2006-13호)		
22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2007-30호)		
23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24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25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26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27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28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 관한 규정		
29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30	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31	유해성심사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32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33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34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35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36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37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38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39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산정방법 등		
40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41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42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43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44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45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46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47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48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49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5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		
51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5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5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54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55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56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57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58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59	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		
60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지침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61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62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63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64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65	환경개선특별회계 용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		
66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67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68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69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70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71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 시설의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72	2006년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계획에 관한 규정		
73	2008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74	2009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7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76	신기술통합인증요령		
77	환경기술지원 및 진단비용 산정기준 고시		
78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79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		
80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81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 고시		
82	2005년도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83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금 관리 중 위임사무		
84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85	유독물,관찰물지정		
86	유독물관리 교육경비		
87	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88	유독물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89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90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91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92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방법		
93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94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95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96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97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98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99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10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101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02	201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103	먹는물 수질공정시험 방법		
10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증 발급 수수료		
10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106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		
107	공공하수도(맨홀) 표준도		
108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109	2007년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		
110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111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내용		
112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의세부설치기준		
113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114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		
115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116	토양정밀조사지침		
117	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118	토양환경평가지침		
119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120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121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22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123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124	수렵동물지정		
125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조류, 포유류) 고시		
126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식물종		
127	진양호수달서식지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안에서 야생동물의보호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행위		
128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129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130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13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132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품 봉투, 쇼핑백		
133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9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134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135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13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137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방법 등에 관한 규정		
138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39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140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141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142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143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144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4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146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147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고시		
148	2008년도 전자제품별 재활용의무율		
149	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150	생활폐기물 중 폐가전제품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 자의 지정		
151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152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153	재제조 대상제품		
154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고시		
155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56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관한규정				
157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15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 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159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160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161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재검토 (2년)	
162	2007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재검토 (1년)	
163	2008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164	2009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165	2008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166	200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167	2012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			재검토 (5년)	
168	호소환경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측정을 실시할 호소				
169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훈 령 (45)	유효기간 (3년)
170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171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172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운영세칙				
173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174	먹는물 관련 영업장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175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76	샘물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177	생물자원의 기증·기탁 및 인계·인수 등에 관한 규정		
178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179	야생동·식물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		
180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에 관한 규정		
181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		
182	제작자동차 업무관리규정		
183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184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		
185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186	한국환경공단 설립위원회 운영규정(1년)		
18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188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189	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 처리규정		
190	3대강수계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191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년)		
192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193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194	비산먼지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195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96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재검토 (3년)
197	기타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198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199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200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201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202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203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 한 규정		
20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205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		
206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207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사무처리규정		
208	참고인등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209	비정규직운영규정		
210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		
211	낙동강수계 취수시설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 사 등에 관한 지침		
212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213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지침		
214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예 규 (44)	유효기간 (3년)
215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216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217	환경오염사고예방 및 수습업무처리규정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218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219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유지 인정을 위한 평가규정		
220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		
221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탈크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222	취급제한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223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에 따른 실천계획 작성 지침		
224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225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계획		
226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업무처리지침		
227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지침		
228	토양정화업 등록관리업무 처리지침		
229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230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231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31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3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34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235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236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		
237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회계관리규정		
23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239	폐기물처리업허가 업무처리지침		
240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41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41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43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244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45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4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247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248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249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50	환경부 민원사무처리지침		
2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		
252	토양오염실태 조사지침		
253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254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255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지침		
256	들고양이포획 및 관리지침		
257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아울러 실효성이 적은 50개 행정규칙(고시 33개, 훈령 10개, 예규 7개)을 일괄 폐지하였다.¹⁵²⁾

[폐지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	성과급심사위원회규정	예 규 (7)
2	장비구매심의회규정	
3	지역환경기준설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	컴퓨터통신을 통한 환경정보제공규정	
5	환경기술상운영규정	
6	신원특이자 신상관리지침	
7	공무원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8	국제환경전문가「풀」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훈 령 (10)
9	사무관리규정시행세칙	
10	오존층파괴물질측정·분석지침	
11	지도방문조정심의회 운영규정	

152)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 등 폐지」(고시 제2009-172호, 2009.8.24), 「성과급심사위원회규정 등 폐지 예규」(예규 제378호, 2009.8.18.), 「신원특이자 신상관리지침 등 폐지예규」(예규 제395호2009.10.1), 「국제환경전문가「풀」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등 폐지 훈령」(훈령 제858호, 2009.8.18.)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12	지방환경관서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	
13	지방환경관서와 국립환경연구원부속 수질검사소간의 업무 협조규정	
14	하수관거정비공사 발주방식 및 감리제도 시행지침	
15	혁신비전공유 및 혁신확산에 관한 규정	
16	환경관리청장의 소속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규정	
17	환경시설 효율성제고사업 업무처리지침	
18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	
19	감염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는 시설 중 개정	
20	경기도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21	국제폐기물분류코드(IWIC) 작성방법	
22	기타샘물개발자의 샘플 1톤당 수질개선부담금 고시	
23	기타샘물개발자의 샘플 1톤당 수질개선부담금 고시	
24	기타샘물개발자의 샘플 1톤당 수질개선부담금 고시	
25	대기환경규제제지역지정	
26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 고시	
27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지정 중 개정·고시	
28	사육두수 및 가축별 배출원단위	
29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30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31	야생조수 중 개정·고시	
32	울산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33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34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35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36	채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재활용지침	
37	제1종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	
38	제2종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	
39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40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규정	
41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인정시설	
42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 변경(폐쇄)	
43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선정업무 등의 수탁기관 지정	
44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교육기관지정	
45	환경소음측정망 측정지점 변경·고시	
46	환경표지 인증업무 수탁기관 지정	
47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	
48	2007년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	
49	2008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50	200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2) 추진경과

환경부에서는 257개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7개 행정규칙을 폐지하였고, 21개 행정규칙은 유효

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60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키하지 않고 있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키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키결과	비 고
1	오산화비소에 대한 관리기준		유효기간 (2010.7.31)
2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25호
3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 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3.6.30)	고시 제2010-76호
4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	3년 연장 (2014.7.31)	고시 제2011-150호
5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47호
6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키한 (2012.7.31)
7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12호
8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 대책		재검토키한 (2012.7.31)
9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1년 연장 (2013.9.30)	고시 제2010-148호
10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19호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1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134호
12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09-266호 (2009.11.30)
13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기한미도래	재검토기한 (2015.8.31)
14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3년 연장 (2015.9.30)	고시 제2012-228호
15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재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33호
16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7.31)
17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19호
18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6.1.24)	고시 제2013-8호
19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31호
20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47호
21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2006-13호)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37호 [제정, 2011.4.5]
22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2007-30호)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37호 [제정, 2011.4.5]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3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216호
24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3.11.30)	고시 제2010-167호
25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3년 연장 (2013.3.19)	고시 제2010-30호
26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130호
27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3.1.31)	고시 제2010-46호
28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	3년 연장 (2013.12.31)	고시 제2010-165호
29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6.5)	고시 제2012-249호
30	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36호
31	유해성심사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137호
32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138호
33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140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4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11호
35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09-250호 (2009.10.9)
36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161호
37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3.12.31)	고시 제2010-168호
38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3년 연장 (2015.7.31)	수도권대기 환경청고시 제2012-2호
39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산정방법 등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30호
40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17호
41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2년 연장 (2014.7.31)	고시 제2012-66호
42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3년 연장 (2015.12.31)	환경부고시 제2012-119호
43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폐 지	고시 제2012-177호 (2012.9.6)
44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12.31)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5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3.6.30)	고시 제2011-182호
46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1-136호
47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재검토기한 (2012.7.31)
48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7.31)
49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2-210호
5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41호
51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19호
5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130호
5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19호
54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재검토기한 (2012.12.31)
55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226호
56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2년 연장 (2014.11.30)	고시 제2012-218호
57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17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58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45호
59	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19호
60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151호
61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176호
62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재검토기한 (2012.7.31)
63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0-103호
64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81호
65	환경개선특별회계 용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	2년 연장 (2014.9.30)	고시 제2012-201호
66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3년 연장 (2015.7.26)	고시 제2012-132호
67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3년 연장 (2013.10.31)	고시 제2010-150호
68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2년 연장 (2014.12.31)	고시 제2012-180호
69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112호
70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재검토기한 (2012.12.30)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71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 시설의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30호
72	2006년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계획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42호
73	2008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2011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37호 [제정, 2011.4.5]
74	2009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2011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37호 [제정, 2011.4.5]
7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3년 연장 (2013.10.31)	고시 제2010-154호 (2010.11.12)
76	신기술통합인증요령	3년 연장 (2015.8.26)	고시 제2012-121호
77	환경기술지원 및 진단비용 산정기준 고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3년 연장 (2014.7.30)	고시 제2011-109호
78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3년 연장 (2015.9.25)	고시 제2012-114호
79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	3년 연장 (2015.8.22)	고시 제2012-170호
80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3년 연장 (2015.9.25)	고시 제2012-115호
81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 고시	2년 연장 (2015.6.30)	고시 제2013-23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82	2005년도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환경보전협회 교특수수료]	3년 연장 (2015.8.31)	고시 제2012-178호
83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금 관리 사무 중 위임사무		재검토기한 (2012.7.31)
84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2년 연장 (2013.6.30)	고시 제2011-181호
85	유독물,관찰물지정		재검토기한 (2012.9.10)
86	유독물관리 교육경비	3년 연장 (2015.9.10)	고시 제2012-135호
87	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36호
88	유독물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6.3.31)	고시 제2012-134호
89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3년 연장 (2015.9.10)	고시 제2012-139호
90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3년 연장 (2015.9.13)	고시 제2012-187호
91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재검토기한 (2012.9.10)
92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방법	3년 연장 (2015.9.13)	고시 제2012-186호
93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3년 연장 (2015.9.24)	고시 제2012-200호
94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3년 연장 (2015.8.27)	고시 제2012-130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95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재검토기한 (2012.7.31)
96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49호
97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3년 연장 (2013.8.31)	고시 제2010-138호,
98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2년 연장 (2014.12.31)	고시 제2012-65호
99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2년 연장 (2014.6.30)	고시 제2012-97호
10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50호
101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3년 연장 (2013.8.31)	고시 제2010-137호
102	201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매년 연장	고시 제2012-38호 [폐지제정]
103	먹는물 수질공정시험 방법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43호 [전부개정, 2012.7.30]
10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증 발급 수수료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82호
10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82호
106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44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07	공공하수도(맨홀) 표준도		재검토기한 (2012.7.31)
108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12.31)
109	2007년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	2년 연장 (2014.3.31)	고시 제2012-90호
110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2년 연장 (2013.12.31)	고시 제2011-4호, [전부개정, 2011.1.19]
111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내용		재검토기한 (2012.8.24)
112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의세부설치기준	3년 연장 (2015.7.7)	고시 제2012-119호
113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3.4.30)	고시 제2010-43호
114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 실태 측정 계획	2년 연장 (2014.3.31)	고시 제2012-90호
115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8.12)	고시 제2012-119호
116	토양정밀조사지침	3년 연장 (2013.7.30)	고시 제2010-104호, [전부개정, 2010.8.17]
117	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재검토기한 (2012.8.24)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18	토양환경평가지침	3년연장 (2014.10.5)	고시 제2011-138호
119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222호
120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3년 연장 (2015.10.31)	고시 제2012-148호
121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재검토기한 (2012.8.27)
122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3-11호, [폐지제정, 2013.2.2]
123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1년 연장 (2013.6.30)	고시 제2010-71호
124	수렵동물지정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3년 연장 (2015.8.31)	고시 제2012-131호
125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고시		재검토기한 (2012.8.31)
126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식물종		재검토기한 (2012.8.31)
127	진양호수달서식지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안에서야생동물의보호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행위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2-151호
128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3년 연장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	고시 제2011-98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29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223호
130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3년 연장 (2015.8.23)	고시 제2012-174호
13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45호
132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품 봉투, 쇼핑백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45호
133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9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2013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매년 연장	고시 제2012-248호
134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5.31)
135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225호, [폐지제정, 2012.11.26]
13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45호
137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방법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45호
138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59호, [폐지제정, 2012.8.16]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39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254호
140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60호
141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2015.9.28)	고시 제2012-198호
142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출억제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61호
143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62호
144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63호
14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64호
146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219호
147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고시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66호
148	2008년도 전자제품별 재활용의무율		재검토기한 (2012.8.20)
149	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17호
150	생활폐기물 중 폐가전제품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 자의 지정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17호
151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17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52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17호
153	재제조 대상제품		재검토기한 (2012.8.20)
154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58호
155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117호
156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6.20)	고시 제2012-213호
157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3년 연장 (2015.8.20)	제2012-117호 고시
15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 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147호
159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3년 연장 (2015.12.31)	고시 제2012-117호
160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 활용지침	3년 연장 (2015.8.20)	고시 제2012-209호
161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5.30)
162	2007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재검토기한 (2012.8.20)
163	2008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재검토기한 (2012.8.20)
164	2009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재검토기한 (2012.8.20)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65	2008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무율		재검토기한 (2012.8.20)
166	200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무율		재검토기한 (2012.12.31)
167	2012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	재검토기한 삭제	고시 제2011-177호
168	호소환경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 측정을 실시할 호소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8.23)
169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 한 업무처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7.31)
170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4.7.3)	훈령 제946호
171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재검토기한 (2012.7.31)
172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운영 세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추 진기획단 운영세칙]	재검토기한 삭제	국립생물 자원관예규 제52호 [제정, 2011.5.2]
173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3년 연장 (2015.7.31)	고시 제2012-119호
174	먹는물 관련 영업장등의 지도·점검 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7.31)
175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7.31)
176	샘물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 처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7.31)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77	생물자원의 기증·기탁 및 인계·인수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3.4.30)	훈령 제902호 [제정, 2010.4.21]
178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 규정		재검토기한 (2012.7.31)
179	야생동·식물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12.31)	훈령 제1017호
180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7.31)
181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평가 규정]	2년 연장 (2013.12.31)	훈령 제934호 [전부개정 2011.1.1]
182	제작자동차 업무관리규정	3년 연장 (2014.6.30)	훈령 제930호
183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7.31)
184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		재검토기한 (2012.12.31)
185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4.10.5)	훈령 제954호
186	한국환경공단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1년)		재검토기한 (2010.7.31)
18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 규정	유효기간 삭제	훈령 제2011-942호
188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3년 연장 (2015.6.30)	훈령 제1010호
189	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 처리규정		유효기간 (2012.7.31)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90	3대강수계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유효기간 (2012.7.31)
191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습지사업센터 운영규정]		유효기간 (2012.12.31)
192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3년 연장 (2015.6.30)	훈령 제998호
193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2년 연장 (2014.12.31)	훈령 제986호
194	비산먼지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9.30)	훈령 제1003호
195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	3년 연장 (2015.8.20)	훈령 제985호
196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기한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7.31)
197	기타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기한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7.31)
198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기한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7.31)
199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921호 [폐지제정, 2010.11.1]
200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12.31)
201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기한미도래	재검토기한 (2013.7.31)
202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재검토기한 (2012.7.31)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03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3년 연장 (2015.10.23)	훈령 제1008호
20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2014.11.10)	훈령 제955호
205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		재검토기한 (2012.7.31)
206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7.31)
207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사무처리 규정		재검토기한 (2012.12.31)
208	참고인등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2년 연장 (2014.12.31)	훈령 제1018호
209	비정규직운영규정	폐 지	훈령 제921호, (2010.11.1)
210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917호
211	낙동강수계 취수시설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재검토기한 (2012.7.31)
212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재검토기한 (2012.8.24)
213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3년 연장 (2016.2.19)	훈령 제1023호
214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12.31)
215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3년 연장 (2015.12.31)	예규 제458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16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3년 연장 (2016.1.31)	예규 제477호 [폐지제정, 2013.2.1]
217	환경오염사고예방 및 수습업무처리규정		재검토기한 (2012.7.31)
218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7.31)	예규 제458호
219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달성·유지 인정을 위한 평가규정	폐 지	예규 제2011-434호 (2011.6.27)
220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	폐 지	고시 제2011-162호 (2011.11.16)
221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탈크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폐 지	예규 제470호 (2012.11.1)
222	취급제한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3년 연장 (2015.8.24)	예규 제457호
223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에 따른 실천계획 작성지침		유효기간 (2012.8.24)
224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유효기간 (2012.8.24)
225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계획	폐 지	예규 제451호 (2012.1.19)
226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8.24)	예규 제2012-467호 [폐지제정, 2012.8.21]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27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지침		유효기간 (2012.8.19)
228	토양정화업 등록관리업무 처리지침	3년 연장 (2014.10.6)	예규 제440호
229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3년 연장 (2014.10.6)	예규 제439호
230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폐 지	예규 제477호 (2013.2.1)
231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유효기간 (2012.8.24)
232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12.31)	예규 제458호
23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10.28)	예규 제471호 [전부개정, 2012.10.29]
234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460호
235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461호
236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		유효기간 (2012.8.20)
237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회계관리규정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463호
23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464호
239	폐기물처리업허가 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465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40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4.12.31)	예규 제444호
241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12.31)	예규 제455호
242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12.31)	예규 제450호 [전부개정, 2012.1.11]
243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12.31)	예규 제455호
244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455호
245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유효기간 (2012.12.31)
24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 규정	3년 연장 (2015.8.20)	예규 제466호
247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2년 연장 (2014.7.31)	예규 제379호
248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 지침	3년 연장 (2016.1.18)	예규 제475호
249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재검토기한 (2012.7.31)
250	환경부 민원사무처리지침	1년 연장 (2013.12.31)	훈령 제936호
2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	3년 연장 (2015.6.27)	예규 제454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252	토양오염실태 조사지침	3년 연장 (2013.10.31)	예규 제2010-422호
253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재검토기한 삭제	예규 제2012-468호
254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8.4)
255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지침		재검토기한 (2012.8.31)
256	들고양이포획 및 관리지침		재검토기한 (2012.8.31)
257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2012.8.31)

(3) 종 합

일몰제 적용	항 목	검토결과
	일몰규정 삭제	21
	행정규칙 폐지	7
	일몰기한 경과	60
	일몰검토 완료	160
	소 계	248
	일몰기한 미도래	9
	계	257
총 계	257개	

29. 행정안전부

(1) 도입현황

행정안전부는 소관 행정규칙 중 37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행 또는 유효기간 설정형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그 가운데 유효기간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8개, 재검토키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29개였다.

[일몰제도입 현황]

일몰설정 행정규칙	재검토키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10)	10	-	-	-
훈령(6)	3	-	3	-
예규(20)	15	1	4	-
지침(1)	-	-	1	-
계(37)	28	1	8	-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1	행정안전부정책자문위원회회규정	훈 령 (6)	유효기간 (3년)
2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		
3	재난지역피해주민의생계지원에관한규정		
4	행정안전부무기계약및기간제근자등운영규정		재검토 (3년)
5	행정안전부정보공개운영규정		
6	행안부소관재난안전관련연구개발처리규정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7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예 규 (20)	유효기간 (3년)	
8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운영요령			
9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			
10	균형인사지침			
11	지방자치단체정보화사업 협의조정지침			
12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지침		재검토 (3년)	
13	지방자치단체우수정보시스템의선정및공동활용지침			
14	직무분석실시지침			
15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16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17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18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19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20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21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및예정가격작성요령			
22	어디서나민원처리제운영지침			
23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24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관리규정			
25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26	도로명주소정보체계운영규정			재검토 (5년)
27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		지 침 (1)	유효기간 (3년)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종 별	방 식
28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	고 시 (10)	재검토 (3년)
29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30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31	공인인증업무준칙작성표준		
32	공인인증기관의보호조치에관한규정		
3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34	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운영지침		
35	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기술지침		
36	전자정부사업제안요청지침		
37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지침		

(2) 추진경과

행정안전부에서는 37개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키한 또는 유효기간의 도래에 즈음하여 8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7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이 도래하였으나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일몰제 도입 행정규칙 재검토결과]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	행정안전부정책자문위원회규정	폐 지	훈령 제221호 (2012.8.24)
2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12.31)	훈령 제227호
3	재난지역피해주민의생계지원에관한규정		유효기간 (2012.8.24)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4	행정안전부무기계약및기간제근자등 운영규정	3년 연장 (2015.11.7)	훈령 제222호
5	행정안전부정보공개운영규정		재검토기한 기한(2012.8.24)
6	행안부소관재난안전관련연구개발처 리규정		재검토기한 기한(2012.8.24)
7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3년 연장 (2015.7.10)	예규 제414호
8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운 영요령	폐 지	예규 제404호
9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	폐 지	예규 제2012-282호
10	균형인사지침	3년 연장 (2014.12.31)	예규 제441호
11	지방자치단체정보화사업협의조정지침	1년 연장 (2013.6.28)	예규 제314호
12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지침	1년 연장 (2013.11.29)	예규 제389호
13	지방자치단체우수정보시스템의선정 및공동활용지침	3년 연장 (2015.6.30)	예규 제417호
14	직무분석실시지침	3년 연장 (2015.8.24)	예규 제420호
15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3년 연장 (2015.12.31)	예규 제438호
16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3년 연장 (2015.4.1)	예규 제404호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17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폐 지	예규 제404호
18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폐 지	예규 제404호
19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폐 지	예규 제404호
20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폐 지	예규 제404호
21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및예정가격작성요령	폐 지	예규 제404호
22	어디서나민원처리제운영지침	3년 연장 (2015.6.30)	예규 제434호
23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3년 연장 (2015.2.12)	예규 제398호
24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관리규정	3년 연장 (2015.11.6)	예규 제430호 [2012.11.7, 전부개정]
25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3년 연장 (2015.10.29)	예규 제428호
26	도로명주소정보체계운영규정	기한 미도래	재검토기한 (2014.8.19)
27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		유효기간 (2012.8.27)
28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		재검토기한 (2012.8.24)
29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39호
30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38호
31	공인인증업무준칙작성표준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41호

제 2 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번호	행정규칙명	재검토결과	비 고
32	공인인증기관의보호조치에 관한규정	3년 연장 (2015.8.24)	고시 제2012-40호
3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3년 연장 (2015.3.2)	고시 제2012-11호
34	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운영지침	3년 연장 (2014.12.27)	고시 제2011-59호
35	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기술지침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3년 연장 (2015.6.26)	고시 제2012-25호
36	전자정부사업제안요청지침		재검토기한 (2012.8.24)
37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지침		재검토기한 (2012.8.31)

(3) 종 합

	항 목	검토결과
일몰제 적용	일몰규정 삭제	-
	행정규칙 폐지	8
	일몰기한 경과	7
	일몰검토 완료	21
	소 계	36
	일몰기한 미도래	1
	계	37
총 계	37개	

Ⅲ. 총 합

1. 공정거래위원회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일몰 설정	고시(31)	29	1	1	-
	훈령(4)	2	-	2	-
	예규(13)	5	1	7	-
	지침(15)	6	-	9	-
	소계(63)	42	2	19	-
폐지후 재발령	고시(13)	13	-	-	-
	예규(4)	4	-	-	-
	지침(8)	8	-	-	-
	소계(25)	25	-	-	-
총계(88)		67	2	19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4	-	4
행정규칙 폐지	5	1	6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기한 경과	-	-	-
일몰검토 완료	52	21	73
일몰기한 미도래	2	3	5
계	63	25	88

2. 금융위원회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1년형	3년형
고시(48)	47		1	-
훈령(4)	3	-		1
계(52)	50		1	1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3	-	
행정규칙 폐지	5	-	
일몰기한 경과	3	-	
일몰검토 완료	41	-	
일몰기한 미도래	-	-	
계	52	-	

3. 방송통신위원회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75)	73	1	-	1
훈령(11)	11	-	-	-
예규(1)	1	-	-	-
공고(5)	5	-	-	-
계(92)	90	1	-	1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1	-	
행정규칙 폐지	11	-	
일몰기한 경과	4	-	
일몰검토 완료	74	-	
일몰기한 미도래	2	-	
계	92	-	

4. 국민권익위원회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훈령(3)	2	-	1	-
예규(8)	7	-	1	-
계(11)	9	-	2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	-	
행정규칙 폐지	2	-	
일몰기한 경과	1	-	
일몰검토 완료	8	-	
일몰기한 미도래	-	-	
계	11	-	

5. 경찰청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일몰 설정	고시(1)	1	-	-	-
	훈령(19)	5	-	14	-
	예규(19)	5	-	14	-
	소계(39)	11	-	28	-
폐지후 재발령	훈령(7)	-	-	1	-
	예규(7)	-	-	-	-
	소계(14)	-	-	1	-
총계(40)		11	-	29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	-	-
행정규칙 폐지	-	-	-
일몰기한 경과	2	-	2
일몰검토 완료	37	1	38
일몰기한 미도래	-	-	-
(일몰제 미도입)	-	(13)	(13)
계	39	1	40

6. 관세청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일몰 설정	고시(67)	67	-	-	-
	훈령(29)	25	-	4	-
	소계(96)	92	-	4	-
폐지후 재발령	고시(16)	16	-	-	-
	소계(16)	16	-	-	-
총계(112)		108	-	4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1	-	1
행정규칙 폐지	1	3	4
일몰기한 경과	5	-	5
일몰검토 완료	83	13	96
일몰기한 미도래	6	-	6
계	96	16	112

7. 국세청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일몰 설정	고시(61)	60	-	1	-
	훈령(38)	3	-	35	-
	소계(99)	63	-	36	-
폐지후 재발령	고시(27)	26	-	1	-
	훈령(6)	-	-	6	-
	소계(33)	26	-	7	-
총계(132)		89	-	43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	-	-
행정규칙 폐지	15	3	18
일몰기한 경과	6	2	8
일몰검토 완료	71	26	97
일몰기한 미도래	7	2	9
계	99	33	132

8. 기상청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10)	9	1	-	-
훈령(15)	11	-	4	-
계(25)	20	1	4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	-	
행정규칙 폐지	-	-	
일몰기한 경과	1	-	
일몰검토 완료	23	-	
일몰기한 미도래	1	-	
계	25	-	

9. 문화재청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1)	1	-	-	-
훈령(23)	6	-	16	1
예규(3)	-	-	3	-
계(27)	7	-	19	1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	-	
행정규칙 폐지	3	-	
일몰기한 경과	2	-	
일몰검토 완료	22	-	
일몰기한 미도래	-	-	
계	27	-	

10. 병무청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훈령(31)	30	-	1	-
예규(1)	1	-	-	-
계(32)	31	-	1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	-	
행정규칙 폐지	1	-	
일몰기한 경과	3	-	
일몰검토 완료	28	-	
일몰기한 미도래	-	-	
계	32	-	

11. 산림청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12)	12	-	-	-
훈령(18)	12	-	6	-
예규(13)	-	9	4	-
지침(14)	2	-	12	-
계(57)	26	9	22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4	-	
행정규칙 폐지	9	-	
일몰기한 경과	14	-	
일몰검토 완료	30	-	
일몰기한 미도래	-	-	
계	57	-	

12. 소방방재청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122)	122	-	-	-
훈령(22)	18	-	4	-
예규(7)	3		4	
계(151)	143	-	8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2	-	
행정규칙 폐지	10	-	
일몰기한 경과	3	-	
일몰검토 완료	136	-	
일몰기한 미도래	-	-	
계	151	-	

13. 식품의약품안전청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기 타
고시(114)	110	-	2	2
훈령(9)	6	-	3	-
예규(8)	3		5	
계(131)	119	-	10	2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7	-	
행정규칙 폐지	5	-	
일몰기한 경과	8	-	
일몰검토 완료	111	-	
일몰기한 미도래	-	-	
계	131	-	

14. 조달청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19)	19	-	-	-
훈령(32)	5	-	27	-
지침(33)	-	-	33	-
공고(11)	11	-	-	-
계(95)	35	-	60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7	-	
행정규칙 폐지	-	-	
일몰기한 경과	16	-	
일몰검토 완료	72	-	
일몰기한 미도래	-	-	
계	95	-	

15. 중소기업청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일몰 설정	고시(52)	52	-	0	-
	훈령(11)	2	-	9	-
	소계(63)	54	-	9	-
폐지후 재발령	고시(2)	2	-	-	-
	훈령(2)	-	-	1	-
	소계(4)	2	-	1	-
총계(67)		56	-	10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29	-	29
행정규칙 폐지	7	-	7
일몰기한 경과	22	3	25
일몰검토 완료	5	-	5
일몰기한 미도래	-	-	-
(일몰규정 미도입)	-	(1)	(1)
계	63	3	66

16. 특허청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일몰 설정	고시(27)	18	-	9	-
	훈령(29)	15	-	14	-
	예규(3)	2		1	
	소계(59)	35	-	24	-
폐지후 재발령	훈령(1)	-	-	1	-
	소계(1)	-	-	1	-
총계(60)		35	-	25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2	-	2
행정규칙 폐지	3	-	3
일몰기한 경과	6	1	7
일몰검토 완료	47	-	47
일몰기한 미도래	1	-	1
계	59	1	60

17. 해양경찰청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일몰 설정	고시(6)	6	-	-	-
	훈령(20)	5	-	15	-
	예규(11)	5		6	
	소계(37)	16	-	21	-
폐지후 재발령	훈령(3)	2	-	-	-
	소계(3)	-	-	-	-
총계(40)		18	-	21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	-	
행정규칙 폐지	2	-	2
일몰기한 경과	7	1	8
일몰검토 완료	28	1	29
일몰기한 미도래	-	-	-
(일몰규정 미도입)	-	(1)	(1)
계	37	2	39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5)	-	5	-	-
훈령(6)	2	1	3	-
예규(2)	-	2	-	-
계(13)	2	8	3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1	-	
행정규칙 폐지	1	-	
일몰기한 경과	5	-	
일몰검토 완료	-	-	
일몰기한 미도래	6	-	
계	13	1	

19. 국가보훈처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일몰 설정	고시(25)	12	-	13	-
	예규(5)	2		3	
	소계(30)	14	-	16	-
폐지후 재발령	훈령(4)	-	-	1	-
	소계(4)	-	-	-	-
총계(34)		14	-	17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1	-	1
행정규칙 폐지	-	-	-
일몰기한 경과	10	1	11
일몰검토 완료	19	-	19
일몰기한 미도래	-	-	-
(일몰규정 미도입)	-	(3)	(3)
계	30	1	31

20. 고용노동부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일몰 설정	고시(98)	88	8	2	-
	훈령(6)	6	-	-	-
	예규(23)	23	-	-	-
	소계(127)	117	8	2	-
폐지후 재발령	고시(22)	22	-	-	-
	훈령(14)	2	-	-	-
	예규(16)	12	-	-	-
	소계(52)	36	-	-	-
총계(179)		153	8	2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7	-	7
행정규칙 폐지	12	-	12
일몰기한 경과	12	1	13
일몰검토 완료	91	35	126
일몰기한 미도래	5	-	5
(일몰규정 미도입)	-	(16)	(16)
계	127	36	163

21. 국방부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일몰 설정	훈령(74)	40	-	34	-
	예규(10)	1	-	9	-
	소계(84)	41	-	43	-
폐지후 재발령	훈령(7)	-	-	1	-
	소계(7)	-	-	1	-
총계(91)		41	-	44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11	-	11
행정규칙 폐지	2	-	2
일몰기한 경과	24	-	24
일몰검토 완료	47	1	48
일몰기한 미도래	-	-	-
(일몰규정 미도입)	-	(6)	(6)
계	84	1	85

22. 국토해양부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1년형	3년형	5년형
고시(328)	252	-	1	74	1
훈령(197)	86	1	-	107	3
예규(84)	26		-	58	-
지침(2)	-	-	-	-	2
공고(4)	4	-	-	-	-
계(615)	368	1	1	239	6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16	-	
행정규칙 폐지	9	-	
일몰기한 경과	92	-	
일몰검토 완료	492	-	
일몰기한 미도래	6	-	
계	615	-	

23. 문화체육관광부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1년형
일몰 설정	고시(19)	17	2	-	-
	훈령(13)	6	-	6	1
	예규(2)	-	-	2	-
	소계(34)	23	2	8	1
폐지후 재발령	고시(1)	1	-	-	-
	예규(1)	-	-	-	-
	소계(2)	1	-	-	-
총계(36)		24	2	8	1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5	-	5
행정규칙 폐지	3	-	3
일몰기한 경과	10	1	11
일몰검토 완료	15	-	15
일몰기한 미도래	1	-	1
(일몰규정 미도입)	-	(1)	(1)
계	34	1	35

24. 법무부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일몰 설정	고시(3)	3	-	-	-
	훈령(21)	19	1	1	-
	예규(23)	21	-	2	-
	소계(47)	43	1	3	-
폐지후 재발령	훈령(4)	-	-	1	-
	예규(2)	-	-	-	-
	소계(6)	-	-	1	-
총계(53)		43	1	4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2	-	2
행정규칙 폐지	1	-	1
일몰기한 경과	7	-	7
일몰검토 완료	37	1	38
일몰기한 미도래	-	-	-
(일몰규정 미도입)	-	(5)	(5)
계	47	1	48

25. 보건복지부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46)	44	2	-	-
훈령(1)	1	-	-	-
예규(6)	6	-	-	-
계(53)	51	2	-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1	-	
행정규칙 폐지	1	-	
일몰기한 경과	4	-	
일몰검토 완료	45	-	
일몰기한 미도래	2	-	
계	53	-	

26. 지식경제부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1년형	3년형	5년형	1년형
일몰 설정	고시(167)	158	5	1	2	-	1
	훈령(14)	13	1	-	-	-	-
	예규(4)	2	-	-	2	-	-
	지침(11)	9	-	-	2	-	-
	공고(6)	4	-	-	2	-	-
	계(202)	186	6	1	8	-	1
폐지후 재발령	고시(11)	11	-	-	-	-	-
	훈령(8)	5	1	-	2	-	-
	예규(1)	-	-	-	1	-	-
	계(20)	16	1	-	3	-	-
총계(222)		202	7	1	11	0	1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6	-	6
행정규칙 폐지	9	2	11
일몰기한 경과	27	3	30
일몰검토 완료	151	10	161

제 3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기한 미도래	9	1	10
(일몰규정 미도입)	-	(4)	(4)
계	202	16	218

27. 통일부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1년형	3년형	기 타	3년형	기 타
고시(15)	1	14	-	-	-
훈령(8)	-	7	-	1	-
예규(4)	-	4	-	-	-
계(27)	1	25	-	1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	-	
행정규칙 폐지	-	-	
일몰기한 경과	2	-	
일몰검토 완료	25	-	
일몰기한 미도래	-	-	
계	27	-	

28. 환경부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기 타	3년형	기 타
고시(168)	159	2	5	1	1
훈령(45)	18		-	27	-
예규(44)	11			33	-
계(257)	188	2	5	61	1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21	-	
행정규칙 폐지	7	-	
일몰기한 경과	60	-	
일몰검토 완료	160	-	
일몰기한 미도래	9	-	
계	257	-	

29. 행정안전부

(1) 검토대상 행정규칙

검토대상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고시(10)	10	-	-	-
훈령(6)	3	-	3	-
예규(20)	15	1	4	-
지침(1)	-	-	1	-
계(37)	28	1	8	-

(2) 검토결과

검토결과 항목	일몰설정	폐지후 재발령	소 계
일몰규정 삭제	-	-	
행정규칙 폐지	8	-	
일몰기한 경과	7	-	
일몰검토 완료	21	-	
일몰기한 미도래	1	-	
계	37	-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제 1 절 개 설

I. 행정규칙의 문제상황과 개선의 방향성

전통적인 법률유보의 원칙은 20세기 후반이래 입법권,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행정권의 권한남용 즉, 행정국가현상에서 증대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등장하여 주로 법률에 의한 행정의 통제에 중점을 두었다. 그 이후 법률유보의 원칙은 의회와 집행권의 기능영역 구별의 확보, 의회의 자기결정의무, 행정에 대한 위임금지의무로서 전개되면서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라는 의미로 전개되었다.¹⁵³⁾ 의회유보에서는 국가에 있어서 본질적 사항을 의회의 독점적 권한으로 할 뿐 아니라, 본질적 결정을 의회의 의무로 한다. 또한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 한 의회자신이 법률로 결정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규율밀도의 문제), 명시적·묵시적인 것을 불문하고 그 결정을 행정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의미에서 의회에 요구되는 규율수준은 상당히 높아야 한다.¹⁵⁴⁾

그러나 오늘날 국가는 개인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생존의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때 그때의 정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상황에 부응하여 복잡·다양한 목적과 내용을 지닌 통치작용을 수행하여 사회에 발생하는 각종 모순이나 폐해를 제거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많은 전문기술적 지식이 필요하고, 나아가 입안된 정책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실시가 필요하기에 이르렀다.

153) 의회유보의 전개 및 내용에 관한 것은 박영도, **의회유보·행정유보의 의미와 입법적 시사점**, 법제(법제처) 2010.12 참조.

154) Hans-Uwe Erichsen, **Geltung und Reichweite von Gesetz und Parlamentsvorbehalt**, Verwal. Arch. 67(1976), S.93ff.

전문적이고 항상적으로 활동하는 행정 각 부문은 기술진보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상황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행정의 전문기술적 재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행정에게 광범한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며, 그 통제는 사후적 내지 절차적으로 행해도 좋다는 견해가 널리 지지를 얻고 있다. 그 결과 행정부는 법률의 위임하에서 명령제정권을 통하여 행정부에 부여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행정입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위임의 내용·목적 및 범위가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고도의 전문기술적 성질을 띤 분야 등에서는 그 위임입법의 한계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러한 분야에서는 행정부에게 독자적인 입법형성의 여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⁵⁵⁾

한편 우리의 행정현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법률상의 수권 없이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며, 상위법령이나 상급행정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

155) 헌법재판소에서도 “오늘날 국가가 소극적인 질서유지기능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질서형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규율의 대상이 복잡화되고 전문화되었다. 위와 같은 국가기능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모든 생활관계에 대하여 국회입법을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과중한 부담이 된다. 또한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 국회입법은 여전히 법적 대응을 요청하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이지 못하며 경직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기능적합적이지도 못하다. 따라서 기술 및 학문적 발전을 입법에 반영하는데 국회입법이 아닌 보다 탄력적인 규율형식을 통하여 보충될 필요가 있다. ……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동시에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외부적인 효력을 갖는 법률관계에 대한 형성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기능범위에 속하지만 행정기관이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내려진 근본적인 결정을 행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기능분립으로 이해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오히려 충실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재 2004.10.28. 99헌바91 전원재판부.

이므로,¹⁵⁶⁾ 그 수범자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행정조직내의 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다.

행정규칙은 행정내부에 있어서 통일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현장에서 법령의 해석·적용이 다양하게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난해한 경우에 국민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기능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 개괄적·추상적이고 실제로 주요한 내용은 행정부의 행정규칙에서 규율되고 있는 등 행정규칙이 법률을 압도하고 있어서 행정기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행정규칙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는 현상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행정규칙은 상위법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통제나 공포절차 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서는 법률이나 법규명령보다는 행정규칙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결국 “행정규칙으로의 도피현상”¹⁵⁷⁾

156) 헌법재판소에서도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그 성격상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는 우리 재판소가 이미 선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헌재 1990.9.3. 90헌마13), 또는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수입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였을 때,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훈령·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헌재 1992.6.26. 91헌마25)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규칙, 특히 후자와 같은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도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즉,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일 뿐 그 행정규칙 자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헌재 2004.10.28. 99헌바91 전원재판부.

157) “고시나 훈령·통첩과 같은 행정규칙들은 법규명령과는 달리 중앙 또는 지방의 행정기관들이 아무런 상위법의 수권도 받음이 없이, 제정과정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심사절차도 거침이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이 요지할 수 있는 정도의 공포절차도 없이, 손쉽게 제정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행정규칙들은 그 성립과정에 있어서 타기관의 심사·수정·통제·감시를 받지 않고 또 국민에 의한 토론·수정·견제·반대 등에 봉착함이 없이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 성립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행정기관들이 ‘통제없는 행정규칙에의 도피’의 유혹을

또는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¹⁵⁸⁾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행정규칙이 위와 같이 본래의 행정조직 내부나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사항만을 규율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실상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지 않거나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법령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넘어 규정하는 등 문제가 있는 행정규칙이 발생하고 있으며,¹⁵⁹⁾ 행정규칙에 포함된 각종 제재처분기준의 불명료성, 상위법과의 모순 및 제재처분과 관련된 처분양정의 불균형성 등 제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¹⁶⁰⁾

결국 현행 행정규칙은 양적인 측면에서 규범총량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포기할 수 있는 행정규칙의 폐지를 통해 그 숫자를 감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행정의 내·외부에서 불충분하고, 계량화할 수 없으며, 융통성없이 행정규칙을 양산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적인 의미에서도 전체적으로 규범문장을 간소하게 하고, 규정들 간의 내용적 조화를 통하여 규범내용의 합리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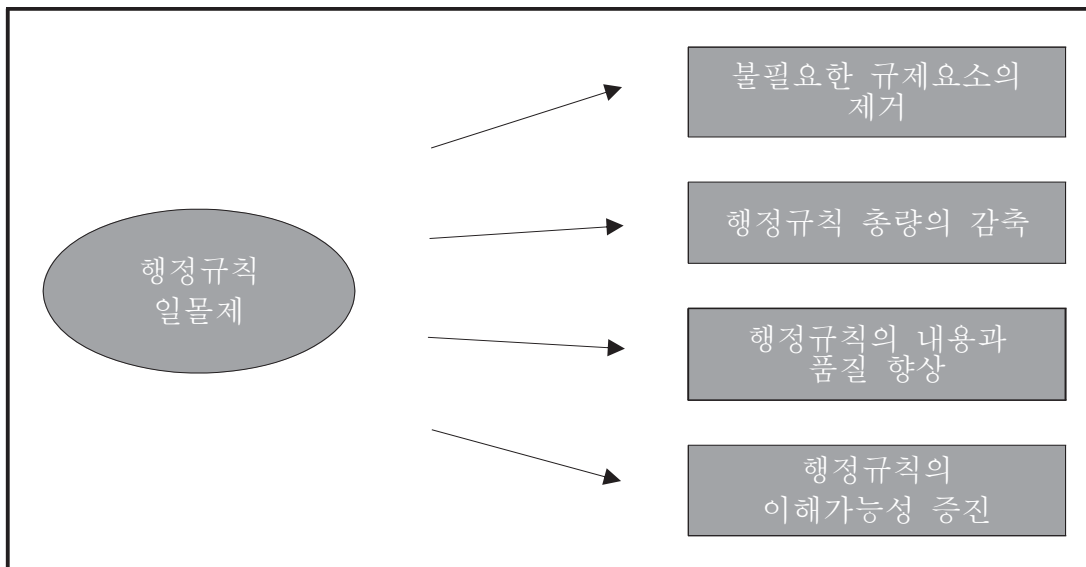
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행정권의 비대화를 촉진하며, 나아가서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2004.10.28. 99헌바91 전원재판부.

158) “과거 우리나라는 행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사회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는 민주·법치국가적인 의회로서의 역할수행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행정부에서 마련해 온 법률안을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과정을 소홀히 한 채 통과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위임입법이 양산된 것이 현정의 현실인데, 이에 대하여는 다수의 학자들이 ‘법률에 의한 행정’이라기 보다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 또는 ‘행정규칙으로의 도피’라고 많은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1998.5.28. 96헌가1 전원재판부.

159) 자세한 것은 박인, **행정규칙의 위법사례 및 대책**, 법제 2006.12, 40면 이하.

160) 정남철, **訓令·例規 등의 適法性提高를 위한 行政規則 立案審査基準의 整備方案**, 법제 2007.4., 6면 이하.

이를 위한 일련의 다양한 수단과 절차의 하나로서 근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일몰제의 도입이다.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의 도입은 현행 행정규칙을 둘러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시대에 부합하지 않고 유용하지 않는 행정규칙의 폐지와 수정을 용이하게 한다. 일몰제를 통해 행정규칙의 개선과 간소화를 도모하여 전체적으로 보다 더 잘 개관할 수 있고, 보다 더 이해가능하며 수범자에게 보다 더 친화적인 입법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높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 분야의 담당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며, 국민들이 국가가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의 도입은 행정규칙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Panacea)은 아니다. 따라서 입법절차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모든 행정규칙에 일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방법론적 및 실질적 한계를 인식하고 합리적·실용적으로 그리고 선택적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

입과 운용에 즈음하여 입법자는 항상 일몰제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특정 문제 또는 한정된 영역에 대한 안정적인 법질서가 목적이려면, 제정해야 할 행정규칙은 시간적 제약 없이 효력이 발생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기간 내에 행정규칙이 의도하는 효과가 달성되고 그 효과가 적절한 시점에 검증되어야 하는 경우, 그 경과를 지켜보면서 특정한 법적 해법들을 찾아내야 하는 경우 또는 해당 행정규칙이 나중에는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전에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몰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일몰제 선택의 합리성은 비용과 시간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용없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¹⁶¹⁾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는 “완벽한 행정규칙”을 가져올 수는 없고, 단지 상대적으로 좋은 행정규칙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합리적으로 사용되면 행정규칙 일몰제는 전문기술적 도구 이상이다. 입법조치의 효과에 대한 지식의 축적은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등과 같은 일반법적 혹은 헌법적 원칙들에 대해 새로운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입법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몰제의 내실있는 운용은 입법자의 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며, 입법의 민주적 기능을 향상시킨다. 행정규칙 일몰제를 제도화하면 행정규칙의 입안단계에서 미리 방법론적 측면과 요건들을 고려에 넣을 수 있다. 아울러 행정규칙의 시행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정적 측면과 인적·물적 자원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과정과 일몰제의 연계성을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정규칙의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조직과 유관 행정조직간의 협력과 관련 자료의 접근 및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행정규칙 일몰제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다. 법령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험이 짧고,

161) Heinz Schäffer, **Toward a more rational and responsible law making process**, in : Ulrich Karpen(ed.), *Evaluation of Legislation*, Baden-Baden 2002, S.137f.

운용을 위한 전문기술적인 방법론도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향후 행정규칙 일몰제의 운용경과와 적절한 노력을 통해 획득한 경험이나 정보, 지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토대위에서 기법들과 방법론들이 개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주요 국가의 제도 및 운용경험과 일몰제가 도입된 주요 행정기관의 행정규칙에 관한 운용실태 분석을 통해 어떤 여건하에서 행정규칙 일몰제라는 도구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여 본다.

Ⅱ. 행정규칙 일몰제 추진성과 분석

1. 총 괄

법제처에서 2013년 2월 현재 각 행정기관에서 당초 행정규칙 일몰제를 도입한 3,716개 행정규칙에 대해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6개 행정규칙을 제외한 3,710개 행정규칙이 정비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정비완료’라는 의미는 당초 각 행정기관에서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한 행정규칙에 대해 전부 일몰설정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행정규칙 일몰설정 현황(2013.2 현재)]

부 처	대 상	정 비	미정비	정비율	부 처	대 상	정 비	미정비	정비율
기획재정부	29	29	·	100	금융위원회	56	56	·	100
교육과학기술부	173	173	·	100	검찰청	40	40	·	100
외교통상부	6	6	·	100	경찰청	40	40	·	100
통일부	28	28	·	100	관세청	118	118	·	100
법무부	48	47	1	97.92	국세청	133	133	·	100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부 처	대 상	정 비	미정비	정비율	부 처	대 상	정 비	미정비	정비율
국방부	109	109	·	100	기상청	25	25	·	100
행정 안전부	39	39	·	100	농촌 진흥청	38	38	·	100
문화체육 관광부	34	34	·	100	문화재청	26	26	·	100
농림수산 식품부	420	420	·	100	방위 사업청	75	74	1	98.67
지식 경제부	222	221	1	99.55	병무청	33	33	·	100
보건복지 가족부	61	61	·	100	산림청	58	58	·	100
환경부	279	276	3	98.92	식품 의약품 안전청	136	136	·	100
노동부	164	164	·	100	소방 방재청	151	151	·	100
여성부	5	5	·	100	조달청	95	95	·	100
국토 해양부	654	654	·	100	중소 기업청	66	66	·	100
법제처	9	9	·	100	통계청	5	5	·	100
국가 보훈처	30	30	·	100	특허청	55	55	·	100
국민권익 위원회	11	11	·	100	행복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13	13	·	100
공정거래 위원회	88	88	·	100	해양 경찰청	54	54	·	100
방송통신 위원회	90	90	·	100	총 계	3,716	3,710	6	99.84

[일몰제 미정비 목록]

소관 부처	훈령 등 제명	일몰기한 설정여부	미설정시 설정계획	비 고
법무부 (1건)	법무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 로자 관리규정	미설정	추후 개정시	전부개정 (2012.6.12.) 하였으나, 일몰기한 미설정
지식 경제부 (1건)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미설정	"	통합고시
환경부 (3건)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 에 관한 규정	미설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미설정	"	통합고시
	비정규직운영규정(훈령 제459호)	.	"	국가법령정보 센터 미등재
방위 사업청 (1건)	양산품 품질 보증 업무 지침	미설정	"	

한편 이 연구에서도 일단 각 행정기관이 당초 일몰제를 설정하기로 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위의 미정비 행정규칙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몰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각 행정기관에서 일몰제를 도입한 행정규칙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단계(The Introduction Stage)에서 채용한 일몰제의 유형(type), 도입한 행정규칙의 범위(scope) 및 도입 시점(timings) 등을 분석하는 한편 도입이후 어떠한 검토단계(The Review Stage)를 거쳐 일몰조항의 제거(Removal/Expiry) 또는 갱신(Renewal)을 하였는지 등을 분석하여 행정규칙 일몰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2. 검토대상 행정규칙 분석

(1) 행정규칙 종별 일몰제 도입현황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시점에서 일몰제를 도입한 행정규칙과 도입당시 기존의 행정규칙을 폐지한 후 재발령하여 일몰제를 도입한 2,792개 행정규칙에서 고시가 1,597개로서 약 58%를 차지하였고, 훈령이 764개로서 약 27%, 예규가 321개로서 약 11%를 차지하였다.

번호	부 처	건 수	일몰설정 행정규칙 종별				
			고 시	훈 령	예 규	지 칩	공 고
1	공정거래위원회	88	44	4	17	23	-
2	금융위원회	52	48	4	-	-	-
3	방송통신위원회	92	75	11	1	-	5
4	국민권익위원회	11	-	3	8	-	-
5	경찰청	40	1	20	19	-	-
6	관세청	112	83	29	-	-	-
7	국세청	132	88	44	-	-	-
8	기상청	25	10	15	-	-	-
9	문화재청	27	1	23	3	-	-
10	병무청	32	-	31	1	-	-
11	산림청	57	12	18	13	14	-
12	소방방재청	151	122	22	7	-	-
13	식약청	131	114	9	8	-	-
14	조달청	95	19	32	-	33	11
15	중소기업청	66	54	12	-	-	-
16	특허청	60	27	30	3	-	-
17	해양경찰청	39	6	22	11	-	-

번호	부 처	건 수	일몰설정 행정규칙 종별				
			고 시	훈 령	예 규	지 침	공 고
18	행복도시건설청	13	5	6	2	-	-
19	국가보훈처	31	-	26	5	-	-
20	고용노동부	163	120	18	25	-	-
21	국방부	85	-	75	10	-	-
22	국토해양부	615	328	197	84	2	4
23	문화체육관광부	35	20	13	2	-	-
24	법무부	48	3	22	23	-	-
25	보건복지가족부	53	46	1	6	-	-
26	지식경제부	218	178	18	5	11	6
27	통일부	27	15	8	4	-	-
28	환경부	257	168	45	44	-	-
29	행정안전부	37	10	6	20	1	-
총 계		2,792	1,597	764	321	84	26

(2) 일몰유형 설정 현황

한편 일몰제를 도입한 2,792개 행정규칙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2,102개로서 전체 75%를 차지하였고, 유효기간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690개로서 25%를 차지하였다.

번호	부 처	건 수	일몰유형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1년	3년	5년	1년	3년	5년
1	공정거래위원회	88	-	67	-	-	19	2
2	금융위원회	52	-	50	-	1	1	-
3	방송통신위원회	92	-	90	1	-	-	1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번호	부 처	건 수	일몰유형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1년	3년	5년	1년	3년	5년
4	국민권익위원회	11	-	9	-	-	2	-
5	경찰청	40	-	11	-	-	29	-
6	관세청	112	-	108	-	-	4	-
7	국세청	132	-	89	-	-	43	-
8	기상청	25	-	20	1	-	4	-
9	문화재청	27	-	7	-	-	19	1
10	병무청	32	-	31	-	-	1	-
11	산림청	57	-	26	9	-	22	-
12	소방방재청	151	-	143	-	-	8	-
13	식약청	131	-	119	-	2	10	-
14	조달청	95	-	35	-	-	60	-
15	중소기업청	66	-	56	-	-	10	-
16	특허청	60	-	35	-	-	25	-
17	해양경찰청	39	-	18	-	-	21	-
18	행복도시건설청	13	-	2	8	-	3	-
19	국가보훈처	31	-	14	-	-	17	-
20	고용노동부	163	2	153	8	-	-	-
21	국방부	85	-	41	-	-	44	-
22	국토해양부	615	-	368	1	1	239	6
23	문화체육관광부	35	-	24	2	1	8	-
24	법무부	48	-	43	1	-	4	-
25	보건복지가족부	53	-	51	2	-	-	-
26	지식경제부	218	1	199	7	1	10	-
27	통일부	27	1	25	-	-	1	-
28	환경부	257	5	188	2	1	61	-

번호	부 처	건 수	일몰유형					
			재검토기한			유효기간		
			1년	3년	5년	1년	3년	5년
29	행정안전부	37	-	28	1	-	8	-
총 계		2,792	9	2,050	43	7	673	10

(3) 검토결과 행정규칙 폐지/일몰제 삭제 현황

일몰제를 도입한 2,792개 행정규칙에서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검토한 결과 폐지한 행정규칙이 141개(5%),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한 행정규칙이 131개(4.7%)로 나타났다.

번호	부 처	총건수	검토결과		
			폐 지	삭 제	계
1	공정거래위원회	88	6	4	10
2	금융위원회	52	5	3	8
3	방송통신위원회	92	11	1	12
4	국민권익위원회	11	2	-	2
5	경찰청	40	-	-	-
6	관세청	112	4	1	5
7	국세청	132	18	-	18
8	기상청	25	-	-	-
9	문화재청	27	3	-	3
10	병무청	32	1	-	1
11	산림청	57	9	4	13
12	소방방재청	151	10	2	12
13	식약청	131	5	7	12
14	조달청	95	-	7	7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번호	부 처	총건수	검토결과		
			폐 지	삭 제	계
15	중소기업청	66	7	29	36
16	특허청	60	3	2	5
17	해양경찰청	39	2	-	2
18	행복도시건설청	13	1	1	2
19	국가보훈처	31	-	1	1
20	고용노동부	163	12	7	19
21	국방부	85	2	11	13
22	국토해양부	615	9	16	25
23	문화체육관광부	35	3	5	8
24	법무부	48	1	2	3
25	보건복지가족부	53	1	1	2
26	지식경제부	218	11	6	17
27	통일부	27	-	-	-
28	환경부	257	7	21	28
29	행정안전부	37	8	-	8
총 계		2,792	141	131	272

(4) 일몰시점 경과 미검토 현황(미도래 제외)

검토대상 행정규칙 가운데 2013년 3월 현재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연장이나 해당 행정규칙을 폐지하지 않은 것은 376건(약14%)로 나타났다. 376개 행정규칙 가운데에는 재검토기한 설정형이 284개, 유효기간 설정형이 92개로 나타났으며 행정기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일하게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	부 처	총건수	미검토수	종 별	
				재검토기한형	유효기간형
1	공정거래위원회	88	-	-	-
2	금융위원회	52	3	3	-
3	방송통신위원회	92	4	4	-
4	국민권익위원회	11	1	1	-
5	경찰청	40	2	1	1
6	관세청	112	5	5	-
7	국세청	132	8	7	1
8	기상청	25	1	1	-
9	문화재청	27	2	1	1
10	병무청	32	3	3	-
11	산림청	57	14	6	8
12	소방방재청	151	3	3	-
13	식약청	131	8	7	1
14	조달청	95	16	7	9
15	중소기업청	66	25	23	2
16	특허청	60	7	3	4
17	해양경찰청	39	8	5	3
18	행복도시건설청	13	5	2	3
19	국가보훈처	31	11	5	6
20	고용노동부	163	13	13	-
21	국방부	85	24	13	11
22	국토해양부	615	92	65	27
23	문화체육관광부	35	11	11	-
24	법무부	48	7	5	2
25	보건복지가족부	53	4	4	-
26	지식경제부	218	30	29	1

번호	부 처	총건수	미검토수	종 별	
				재검토기한형	유효기간형
27	통일부	27	2	2	-
28	환경부	257	60	50	10
29	행정안전부	37	7	5	2
총 계		2,792	376	284	92

제 2 절 개선방안

I. 도입단계의 과제와 개선방안

1. 일몰제 유형의 선정

일반적으로 행정규칙 일몰제에서 사용하는 “일몰제(sunset, sunset provision)”라는 용어는 유효기간의 설정 또는 재검토기한의 설정 가운데 하나 또는 양자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원래 일몰제의 취지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령의 종기를 정하는 것이다. 그 기간 내에 정책을 재검토하고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면 그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재검토결과 폐지하도록 한다면 그대로 폐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규칙 일몰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효기간 설정형’은 특정한 기간의 경과후에 자동적으로 해당규칙이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해당 행정규칙이 효력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개정 또는 새로운 입법조치가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sunset clause). 그리고 ‘재검토기한 설정형’은 특정한 기한에 관련 행정규칙에 대해 검토를 수행할 실정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특정 기한의 도래와 함께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는 해당 행정규칙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해 향후 입법조치가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효력은 지속된다(review clause). 즉, 유효기간 및 재검토기한은 해당 행정규칙에서 유효기간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발령한 날부터 진행되며, 유효기간 설정형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행정규칙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나, 재검토기한 설정형의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이 만료되더라도 해당 행정규칙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¹⁶²⁾

일정기간 경과 후의 자동 효력상실조항(automatically terminate on a date certain, self destruction clause)을 두는 유효기간 설정형은 강력한 개혁의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광범하게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재검토기한 설정형은 재검토 내지 평가(evaluation) 기간이라는 유예기간을 설정하

162) 한시법의 경우 종기의 도래로 실효되면 법령 그 자체도 당연히 폐지되는 것인 지, 아니면 형식적인 법률 그 자체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폐지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재하는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된다. 즉, 한시법은 실효됨으로써 당연히 폐지된다는 견해는 법률의 효력을 실질적 효력과 형식적 효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폐지는 법률의 효력을 향후 부인하는 것이므로 폐지와 실효는 효력에 관한 한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폐지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폐지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한시법의 제정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고 당연히 폐지되게 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폐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한시법의 실효로 형식적인 법률 그 자체가 당연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는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는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자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비록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자에 의한 확인이 있어야 하고, 법률이 공포되면 헌법과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개폐되지 아니하는 형식적 효력과 그 규정의 내용대로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구속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게 되는데,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법률의 실질적 효력은 소멸되지만 법률의 형식적인 효력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실효된 법률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폐지법률을 제정하여 한시법을 형식적으로 폐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입법실무에서는 효력의 상실과 폐지를 반드시 구분하여야 할 실질적 이익은 없고,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도 별도의 폐지절차를 거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로써 낭비적 측면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종기가 도래한 한시법률은 별도의 폐지절차 없이 당연히 폐지된다는 견해에 따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계홍, **종기가 도래한 한시법률의 경우 별도의 폐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법제 2005.5, 134면 ; 임중호, **사문화법률의 정리방향과 한시법률의 입안기준**, 행정법연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14호, 2005. 10, 70면 이하 참조.

고, 그 기간 종료 후에 재검토 또는 평가결과에 따라 존속여부가 확정되는 시스템이다. 이 방식은 해당 행정규칙의 제정시에 산적한 과제나 장래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종의 실험적 요소를 지닌 실험입법의 성격을 가진다.

[유효기간 설정형과 재검토기한 설정형 비교]

	유효기간 설정형	재검토기한 설정형
성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법률과 유사한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법률과 유사한 성격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간 도래시 존속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발생 • 존속을 재승인하지 않는 경우 특정 일자에 자동적으로 효력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도래시 존속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발생 • 존속을 재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폐지절차가 필요
검토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성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의 숫자증가에 대한 억지효과가 높음 • 규제개혁의 단기적 달성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판단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의 거부감을 완화 • 장래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는 제도운용의 유연성 확보 가능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운용이 획일적, 경직성이 강하여 제도도입 회피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검토조항에 의한 재검토가 방치될 위험성 • 반복되는 재검토에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우리의 경우에도 그동안 일몰제라고 하면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식의 유효기간 설정형만 강조되었고, 효력상실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으로 부처에서는 유효기간 설정형 조항을 포함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지 않아 그다지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유효기간 설정형 일몰제는 제한적으로 운용하되, 해당 행정규칙의 제정시에 산적인 과제나 장래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종의 실험적 요소를 지닌 재검토기한 설정형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재검토기한 설정형은 일단 유효기간을 두면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판단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향후에도 그 활용도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2,792개 행정규칙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2,102개로서 전체 75%를 차지하였고, 유효기간을 설정한 행정규칙은 690개로서 25%를 차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유효기간 설정형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형에 상응하는 적용영역을 어떻게 적절하게 채용할 것인지이다.

아래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사안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의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설정형을 도입하거나 재검토기한 설정형을 도입한 경우도 있고, 일몰제를 처음부터 도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등 부처마다 각각 달리 채용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정보공개 관련 행정규칙 사례]

설정방식	부 처	행정규칙명	종 별
재검토기한 (3년형)을 설정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훈 령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훈 령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훈 령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지침	고 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예 규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설정방식	부 처	행정규칙명	종 별
유효기간 (3년형)을 설정한 사례	국세청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훈 령
	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	훈 령
일몰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례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훈 령
재검토기한 삭제 사례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2012.7.6)
	보건복지가족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2011.11.16)

또한 아래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일몰제 도입 당초에는 3년형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으나, 시점 도래에 즈음하여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을 통해 재검토기한 설정형으로 바꾼 행정규칙도 있다.

[일몰제 유형을 변경한 행정규칙 사례]

부 처	행정규칙명	당초 설정(3년형)	재설정(3년형)
관세청	관세행정 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유효기간)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 1249호 (2009.8.20 일부개정)	훈령 제1488호 (2012.8.1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유효기간)	제19조 (재검토기한)
		훈령 제318호 (2009.8.13 일부개정)	훈령 제766호 (2012.12.14 일부개정)
문화재청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유효기간)	제49조 (재검토기한)
		훈령 제181호 (2009.8.28 타법개정)	훈령 제265호 (2012.8.8 전부개정)

부 처	행정규칙명	당초 설정(3년형)	재설정(3년형)
해양경찰청	122해양경찰 구조대운영규칙	제25조 (유효기간)	제29조(재검토 기한)
		훈령 제754호 (2009.8.25 일부개정)	훈령 제916호 (2012.6.19 전부개정)

유효기간 설정형은 재검토기한 설정형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반드시 그렇게 설정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재검토기한 설정형을 분별없이 남용하는 경우 규범 자체가 과도적·잠정적·한시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함은 물론 사후의 재검토의 기회를 입법자에게 부여하므로 오히려 규범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행정규칙은 실험적으로 시행되는데 불과하다고 느끼므로, 조문을 애매하게 작성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일몰제 적용 대상 행정규칙에는 원칙적으로 3년 유효기간 설정형을 채용하되, ① 법령에 해당 행정규칙에 대한 직접적인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훈령·예규 등을 폐지·제정하기 곤란한 훈령·예규 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훈령·예규 등의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¹⁶³⁾

결국 비례원칙에 입각한 시점에서, 보다 덜 제한적인 수법인 재검토기한 설정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설정형이 적합하지 않으며, 획득되는 지식정보에 비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클 경우에도 비례성요건이 결여되어 유효기간 설정형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장래 오랜 기간에 걸쳐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제도의 창설이나, 유효기간 설정형의 채용으로 회복곤란한 법상태나 사실상태가 발

163)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737면.

생되지 않아야 하며, 개혁의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달성도 내지 가능성만을 중시하여 제도의 변경을 초래하여 퇴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설정형이 적합하지 않다.¹⁶⁴⁾

[적용기준별 일몰제 유형]

	유효기간 설정형	재검토키한 설정형
적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이나 각종 위원회 등 행정조직의 신설시 • 예상하지 못한 긴급시 또는 일시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에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조항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적 효력 상실시에 수용불가능한 리스크나 비용이 야기되는 경우 • 최종적이고 완결적인 정책집행을 하기전에 각종 데이

164) EU의 규제정책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한 Mandelkern 보고서에서는 일몰제 또는 검토조항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몰제 또는 검토조항은 행정부와 의회로 하여금 특별한 규제의 필요성을 새로이 조망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모든 신설 규제에 체계적으로 도입한다면 규제의 정기적인 심사를 확보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게된 조항을 제거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이다. 반면 일몰제 또는 검토조항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한 단점으로는 입법상 시간의 의미에서 매우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비록 일몰제 또는 검토조항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는 심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지만, 규제의 전체를 단순히 소멸시키고 그것을 다시 제정하는 것은 매우 비실용적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입법시간의 압력과 병행하여 일몰조항의 오용은 특히 EU차원에서 진보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특정한 여건에서 일몰조항은 불확실성을 증대하고 투자환경이나 규제로 인해 보호를 받는 개인의 신뢰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의 투자가 요구되거나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와 관련된 규제일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해당 규제의 경과를 검토한 기록이 규제의 개선과 그로인한 부담의 경감을 가져올지라도, 이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몰제 또는 검토조항의 광범한 사용이나 기본적 권리와 같은 특정영역에서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일몰제 또는 검토조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규제분야는 사례별로 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① 예방적 조치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인 관점에서 설정된 규제, ② 예방적 동기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규제로서, 사후의 과학적 검증을 거쳐 장래에 개정될 소지가 있는 규제, ③ 기술이나 시장여건에 따라 급속히 발전되는 분야에 관한 규제, ④ 입법적 실험프로젝트, ⑤ 시민이나 기업의 권리와 배치되는 규제 등은 일몰제 또는 검토조항이 적합하다”. Mandelkern Group on Better Regulation, **Final Report**, 2001. 11.13., p.18(http://www.betterregulation.ie/eng/Publications/Mandelkern_Group.pdf).

	유효기간 설정형	재검토기한 설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입법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간적 제한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거나 구체적 조건이 기한부로 될 수 있는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정보가 증대함에 따라 다른 해결수단과 결부될 수 있는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하에 만들어진 행정규칙

2. 일몰설정 대상 행정규칙의 범위 설정

일몰제를 ‘규제영역’에 적용하려는 경우는 최소한 일몰조항은 기업이나 시민사회조직에 규제적인 부담을 야기하는 영역에 적용된다. 그러나 법령에 대한 일몰제 특히,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 적용은 규제적 요소가 포함된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규제적(non-regulatory) 요소가 포함된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법령에 대한 일몰제의 도입배경이 과도한 법령의 숫자를 감축하고, 법령의 개선과 간소화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다 더 잘 개관할 수 있고, 보다 더 이해가능하며 이용자에게 보다 더 친화적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규칙 일몰제의 경우 일몰설정의 대상이 되는 행정규칙의 범위는 규제일몰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규칙 일몰제를 좀 더 확대·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몰제가 적합하지 않은 분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일몰제에 거부반응을 가지는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가급적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확히 정의된 소수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은 개방된 기준은 일몰제의 적용과 활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일몰제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명확하고 제한된 기준의 설정이 요구된다.

한편 주요 국가에서 행정규칙 가운데 어떤 특정된 영역이나 형식에 일몰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사안별로 그 국가의 운용사례 등을 통한 경험이나 그 국가의 정치체제(연방제)에서 확정된 것이므로, 이들 국가의 사례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어렵다.

[주요국가의 일몰설정 대상 제외 행정규칙의 유형]

국 별	일몰설정 대상 제외 행정규칙	비 고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와 관련되지 않은 통지·통달 등 	규제개혁추진 3개년계획 (2007.6.22 각의결정)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delegation)된 사항을 정한 것 • 증거 확인서(evidentiary certificate) • 임용 또는 임용조건이나 임용기간의 변경에 관한 것 • 다른 규칙(instrument)의 제정에 관한 통지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것 • 대부, 면허 또는 허가의 승인, 갱신, 변경, 전환, 중단 또는 취소나 특정 법인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하게하거나 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게하거나 대부, 면허 또는 허가의 승인, 갱신, 변경 또는 전환을 거부하는 것 • 특정 법인에 대한 등록 또는 등록거부에 관한 것 	Victoria,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국 별	일몰설정 대상 제외 행정규칙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법인에 대해 등록의 갱신, 변경, 전환, 중단 또는 취소를 하거나 특정 버인에 대해 등록의 갱신, 변경, 전환, 중단 또는 취소를 거부하는 것 • 특정 법인에 대한 대부,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의 조건을 부과하는 것 • 법률, 위임입법 또는 다른 법률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 또는 강제행위를 주된 목적으로하는 것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과 주가 통일적인 초안을 마련하거나 주 상호간에 장관수준에서 합의가 있는 경우 • 모든 자가 접근할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 편찬하여 계속적으로 보완되어 간행되는 경우 • 주기관의 설치, 조직구조 또는 관할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Baden- Württemberg (VwV- Regelungen, 2010.7.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자유권, 배상, 부담균등화, 전쟁희생자를 포함한 전쟁피해, 전쟁포로의 보상 및 지원, 피난민 및 난민, 기본법 제131조의 적용을 받는 자의 법률관계, 조세, 헌법수호, 기밀문서 및 기밀문서의 건명과 분류에 관한 모든 행정규칙 • 기본법 제85조제2항(연방위탁행정)에 따라 일반적 행정규칙을 대체하는 행정규칙 • 연방과 주 또는 주 상호간에 통일적인 규율이 합의된 경우 • 그 적용범위가 합리적이 아니어서 새로운 공포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관 부처와 주 내무·스포츠부(법령정비부서)가 협의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Hessen (Gemeinsamer Runderlass, 2010.8.24)</p>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국 별	일몰설정 대상 제외 행정규칙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법 및 연방법의 이행을 위한 행정규칙 • 주의 예산령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규칙 • 위기 및 재난에 관한 행정규칙 • 제3자에게 외부자금이나 주의 자금을 지원 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규칙 	<p>Schleswig-Holstein, (Kabinettsbeschluss, 2003.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의 설치 또는 임무부여나 주의 시설 설치, 관할권의 부여, 변경 및 이관에 관한 행정규칙 • 개별 법률 및 법규명령의 집행(시행 또는 실행규정)을 위해 통일적으로 공포된 행정규칙 • 주의 연방통일적인 집행을 위한 행정규칙 • 연방위탁행정의 집행을 위한 행정규칙 	<p>Niedersachsen, (Gemeinsamer Runderlass der Staatskanzlei und der übrigen Ministerien, 2005.1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행정규칙 • 통계행정규칙 • 확정된 계획절차 	<p>Saarland, (Ministerratsbeschluss, 1999.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통일적 또는 주로 다른 주에서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주상호간에 적용되는 규정 • 조성규정으로서 연방통일적인 사항, 주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조성계획 또는 EU조성계획하에 적용되는 규정 • 하나의 특정행위에 한정된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규칙 	<p>Thüringen, (Schriftliche Auskunft Thüringer Justizministerium, 2010.3)</p>

한편 우리의 경우 현행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

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재되지 아니한 훈령·예규 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정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훈령·예규 등, ② 보직·승진·기록관리·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예규 등은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이란 공무원의 보직관리, 공무원의 제안 등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이나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며, 국민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제외된다.¹⁶⁵⁾

물론 각 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일몰제 대상이 아닌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준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기관 공통사항인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아래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인데도 불구하고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당초에는 적용하였으나 후에 삭제한 사례도 있는 등 적용대상 관련 행정규칙의 기준설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 행정규칙 사례]

부 처	행정규칙명	비 고	
		일몰제도입시	현 재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재검토키한 설정 (훈령 제563호)	3년 연장 (훈령 제661호)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재검토키한 설정 (훈령 제633호)	3년 연장 (훈령 제723호)
소방 방재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몰제도입 없음	일몰제도입 없음

165) 법제처, 전게서, 736면.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부 처	행정규칙명	비 고	
		일몰제도입시	현 재
금융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몰제도입 없음	일몰제도입 없음
방송통신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훈령 제61호)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99호, 2011.8.16, 전부개정)
산림청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재검토기한 설정 (훈령 제1028호)	재검토기한 삭제 (훈령 제1155호, 2013.2.7, 제정)

[민원사무처리 관련 행정규칙 사례]

설정방식	부 처	행정규칙명	종 별
재검토기한 (3년형)을 설정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훈 령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고 시
	경찰청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예 규
	관세청	관세행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훈 령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훈 령
	병무청	민원실 운영규정	훈 령
	식약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훈 령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훈 령
	해양경찰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예 규
	국방부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훈 령
	환경부	민원사무처리지침	훈 령
	행정안전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예 규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민원처리지침	훈 령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훈 령	

설정방식	부 처	행정규칙명	종 별
일몰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례	소방방재청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 규정	훈 령
	중소기업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훈 령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훈 령

일몰제의 적용제외사유를 확대하거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사실상 일몰제의 도입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용제외 사유의 확장 및 불명확성은 행정기관에게 해당 행정규칙을 일몰제의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려는 사고를 가지게 하여 제도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높다. 반면, 해당 행정규칙의 내용이나 성격상 일몰제를 구태여 도입하지 않아도 될 사안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사안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의 검증없이 형식적으로 연장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되어, 결국 일몰제의 도입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일몰설정 시점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일몰제 적용대상이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탄력성 있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도 보는 것처럼 해당 국가의 규제개혁 내지 관료주의 철폐에 대한 의지, 일몰평가의 범위나 평가의 강도, 평가기관의 업무 부하, 의회의 입법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기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일몰제를 행정기관이나 그 부속기관 내지 각종 위원회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비교적 장기(10년)인 경우가 많고, 정책이나 사업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기(5년)가 많다. 또한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 등에 적용하는 일몰제는 7-10년의 기한을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

[주요국가의 행정규칙의 일몰설정 주기]

국 별	일몰제 주기	비 고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규제의 재검토기간은 5년을 표준으로 하고 그보다 단기간이 되도록 노력 • 제도검토를 위한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는 규제는 가능한 한 10년을 상한으로 설정 	규제개혁추진 3개년계획 (2007.6.22 각의결정)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에서는 모든 위임입법은 법 제54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정 이후 10년의 일몰주기를 설정 	The Legislative Instruments Act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원에서 모든 위임입법에 대해 5- 10년의 일몰주기를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ctoria : 10년 - South Australia : 10년 - New South Wales : 5년 - Queensland : 10년 - Tasmania : 10년 	각 주의 Subordinate Legislation Act 또는 Statutory Instruments Act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원에서 행정규칙에 대해 일반적으로 5년의 일몰주기를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den-Württemberg : 7년 - Hessen : 5년 - Mecklenburg-Vorpommern : 5년 - Niedersachsen : 5년 - Thüringen : 5년 	각주의 공통업무규칙 (GGO) 내지 지침

한편 우리의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① 상위 법령에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로서 상위법령과 다른 존속기한이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② 해당 훈령·예규등의 조항에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이 설정된 경우, ③ 그 밖에 해당 훈령·예규등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3년 이내로 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조).

유효기간형 또는 재검토키형 일몰제이든 일몰제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심도있는 사후적 심사(post-implementation review) 내지 평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평가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는 경우에 일몰제의 정책적 효용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행정규칙의 경우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적 여건이 있으므로 기한을 길게 잡을 경우에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기를 3년정도 설정하는 것은 사후 평가 내지 재검토키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와 정보의 축적 측면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일몰주기를 조기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해당 행정규칙의 내용이 매년 물가상승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율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기술기준 등과 같이 수시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여 변경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이다.

또한 해당 행정규칙이 규제 관련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직접적 영향이 수범자들에게 매우 신속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나(예컨대, 금지의 경우), 본래적인 효과는 대개 중장기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부수적 효과나 다른 규제들과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상 비교적 오랜 집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가시화 된다. 더욱이 규제의 효과나 효율성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종종 장기간에 걸친 통계자료의 비교를 통해서만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유효기간 설정형의 경우에는 기간의 도래와 함께 해당 행정규칙이 실효되므로 유효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때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재검토키한 설정형의 경우에 기한의 설정을 짧게 하는 것은 재검토에 필요한 관련 경험이나 정보자료의 축적이 미비하게 되어 효과없는 자동연장(Verlängerungsautomatismus)을 가져올 수 있고, 재검토키한을 장기적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재검토를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약점이 있다. 결국 행정규칙 일몰제에서의 일몰시점 설정은 행정기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절차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3년이라는 시점의 설정은 재검토키되어야 할 것이며, 빨라야 시행 후 5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검토키가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우리의 경우 정부에서 2009년 5월 행정규칙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시점부터 각 행정기관은 일몰적으로 3년 또는 5년형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3년형 일몰제를 적용한 대부분의 행정규칙에서는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의 도래시점이 2012년 8월부터 12월 사이로 규정되어 있고, 5년형 일몰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의 도래시점이 2014년 8월부터 12월 사이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일몰제를 도입한 이후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이나 폐지제정 등을 통해 해당 행정규칙의 시행일이 달리 정해짐으로써 당초 설정된 재검토키한이나 유효기간의 도래시점이 달라진 사례도 있다.

[일몰제 도입당시 주기설정 사례]

번호	부처	건수	3년형	5년형
1	공정거래위원회	88	86	2
2	금융위원회	52	51	-
3	방송통신위원회	92	90	2

번 호	부 처	건 수	3년형	5년형
4	국민권익위원회	11	11	-
5	경찰청	40	40	-
6	관세청	112	112	-
7	국세청	132	132	-
8	기상청	25	24	1
9	문화재청	27	26	1
10	병무청	32	32	-
11	산림청	57	48	9
12	소방방재청	151	151	-
13	식약청	131	129	-
14	조달청	95	95	-
15	중소기업청	66	66	-
16	특허청	60	60	-
17	해양경찰청	39	39	-
18	행복도시건설청	13	5	8
19	국가보훈처	31	31	-
20	고용노동부	163	153	8
21	국방부	85	85	-
22	국토해양부	615	607	-
23	문화체육관광부	35	32	2
24	법무부	48	47	1
25	보건복지가족부	53	51	2
26	지식경제부	218	209	7
27	통일부	27	26	-
28	환경부	257	249	2
29	행정안전부	37	36	1
총 계		2,792	2,737	46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살펴본 것처럼 호주에서도 2005년의 위임입법법(LIA) 시행시에 일괄 등록된 기존의 위임입법이 실효기간을 일제히 맞이하면서 일몰등록된 위임입법에 관해 유연성을 가지도록 그 주기를 조정하도록 하고, 일몰입법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성이 보장된 절차를 확립하도록 LIA를 개정한 바 있다. 즉,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LIA에 의해 실효가 예상되는 위임입법은 약 6,300건에 달하며 그 대부분은 2018년 4월까지 실효가 예정되었다. 따라서 실효예정인 대량의 위임입법이 의회에 제출되는 기한이 2013년 중에 임박하여, 다수의 위임입법이 충분한 심사를 받지 않고 또한 규제대상인 경제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적절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실효 또는 다시 제정될 위험성을 우려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제도도입의 초기단계에서는 부득이하게 일몰주기를 획일적으로 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분산화로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정규칙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부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한꺼번에 대량의 행정규칙이 적정한 검토없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즉, 호주의 경우와 같이 행정규칙의 제정연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그 내용상 동일한 사안을 규율하는 것이거나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마련되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관련되는 행정규칙의 일몰시점을 동일일로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행정규칙 일몰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에 일몰입법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일몰예정 행정규칙에 대해 도래시점의 일정 기간 이전에 일몰시간표(Timetable)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I. 검토단계의 과제와 개선방안

행정규칙 일몰제의 주된 도입목적은 행정기관이 불필요한 행정규칙을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존 행정규칙의 재고심사(stock review)의 일환이 되는 한편 행정규칙의 개선과 간소화를 통한 규범내용의 합리화를 달성함으로써 행정규칙의 변화와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일몰도래 시점에서 행정규칙의 검토가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접근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사후 심사를 포함한 일련의 절차가 짜임새있게 구축되는 경우에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검토단계(The Review Stage)는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에 따른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¹⁶⁶⁾

우선,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에 대한 검토의 방향성은 해당 행정규칙의 입법목적이 여전히 타당하고 당면한 문제와 관련된 것인지, 입법목적이 여전히 타당하고 당면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방안인지, 행정규칙의 존속이 여전히 정당화된다면 기존 내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입법목적이 변경되거나 원래의 입법목적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규칙을 실효 또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해당 행정규칙이 원래의 정책목표의 선상에서 현저한 편익적 영향이 없다면, 실효(또는 폐지)의 설정을 추정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해당 행정규칙의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나 예상된 비용보다 과다하거나 그 준수수단이 낮은 단계일 경우, 비규제적인 접근방안이 현재 원래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차선의 방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규제적인 접근방식을 유지할 경우 예컨대, 수범자에게 영

166) HM Government, **Sunsetting Regulations : Guidance**, London 2011.3, p.5.

향을 미치는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집행에 관한 접근방식을 개선하는 등 어떻게 기존규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현재 행정규칙 일몰제의 운용실태를 보는 경우 일몰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사전적 평가나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경과에 따른 사후적 평가에 관한 절차나 기준도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일몰제 =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설정으로 완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행정규칙 일몰제가 행정의 설명책임과 무의미한 행정규칙의 억제에 위한 유효한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현재 과연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행정규칙에 대해 그 도래시점에 즈음하여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일몰제를 적용한 행정규칙이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의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 자동 연장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그 가치적인 성과가 별로 없는 실정에 있다.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사전 평가 내지 심사를 규정한 사례도 있으나, 그 평가 내지 심사를 위한 제도화된 절차와 기준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특히, 유효기간이나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즈음한 사후 평가 내지 심사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어서 일몰제의 적용 그 자체를 단순히 선전효과 내지 1회성 정책으로 전략시킬 우려도 적지 않다. 일몰제의 정착을 위한 짜임새있는 매카니즘이 결여되는 경우, 정책목표의 달성과 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하고, 그 부정적 결과로 인해 일몰제가 전반적으로 무익하고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될 우려가 있다. 신중하고 심층적인 검토 없이 일몰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과 타당성의 면에서 많은 약점이 노출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1. 일몰도래시점에서의 내부검토 수행

당초 설정된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에 대한 검토작업은 소관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검토에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행정규칙을 소관하고 있는 각 행정기관의 담당 부서가 될 것이나, 정책영역의 중복으로 다른 부서와의 협조 내지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공동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행정규칙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일반적인 정책심사와 조합할 경우 해당 행정규칙에 대해 폐지 등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향후 정책개발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다. 또한 조기검토 활동기간에는 필요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보완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당 부서에서 검토된 사항은 적절한 경로로 그 내용에 관한 정보가 일몰정책의 실제적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검토절차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행정규칙의 검토에 있어서 실제로 일몰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도 않고, 행정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에 대해 일반인이 알 수도 없다.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수행한 내용의 개요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특허청의 경우에 일몰설정된 행정규칙에 대해 내부 검토사항의 개요를 찾아볼 수 있다.¹⁶⁷⁾

[효력상실형 행정규칙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수렴 사례]

번호	행정규칙 명칭	준속시 사유	비 고
1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동규정은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므로 준속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167)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 일괄 제·개정 추진, 2012.8 참조.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번호	행정규칙 명칭	존속시 사유	비고
2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우리청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계속 존속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3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운영규정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제기획, 선정 및 평가 등의 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특허청 내부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4	올해의 발명왕추대제도 시행요령	발명인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 확산 및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반드시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5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상담센터의 업무범위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 제고에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6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규정	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민원행정제도 및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청내외 전문가 심의·의결기구로서, 고객서비스 관련 지속적 의견수렴 및 그에 따른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협의회로서 동 협의회 규정의 존속은 반드시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7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고안 또는 디자인 (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8	정책연구 관리규정	특허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번호	행정규칙 명칭	존속시 사유	비고
9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 발생시 기한 연장에 관한 고시	해당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의 4(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3항을 준용하는 규정으로, 전자문서의 제출기간이 연장되는 대상 및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존속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10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동 고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의 심사 및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11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 진흥사업 운영요령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사업의 운영근거로 존속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1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세칙	동규정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므로 존속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13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14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고안 또는 디자인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의 사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일괄 폐지 후 재발령
15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 지어 및 운영근거로 존속 필요	일괄 폐지 후 재발령

각 행정기관에서는 효율적으로 일몰시점이 도래한 행정규칙의 검토 의무를 이행하고 관계 부서와의 조정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향후

“행정규칙 일몰검토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행정규칙의 관련 규제의 개정이나 제거와 관련되는 다른 부서나 부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되는 행정규칙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양되는 경우 또는 법률의 제·개정으로 행정규칙의 폐지나 개정이 되는 경우 관계 행정부서와 조기단계에서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경우에 장래의 행정규칙 검토 프로그램에서는 필요한 관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외부 의견수렴절차

오늘날 국가의 정책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시민 지향성 또는 고객 지향성이다.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국민과 당사자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참여가 요구되어 진다. 입법에 있어서도 수용가능성과 기대효과를 가능한 조기에 확인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입법절차에서의 참여의 강화를 목적하고 있다. 행정이 지식과 정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안의 경우 국민이 보다 강력하게 입법절차(특히, 법안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¹⁶⁸⁾

다만, 입법절차에 있어서 참여적 도구들은 대부분 시간집약적, 인원집약적, 비용집약적이기 때문에 입법절차의 신속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들 참여적 도구들의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용 가능한 도구들을 적절하고 차별적으로 사용하여 참여의 최적화(Optimierung)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¹⁶⁹⁾

행정규칙 검토의 수행에 있어서 각 부처는 해당 행정규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나 기타 등으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최선으로

168) Daniel Kettiger, **Kooperative Rechtssetzung -Gedanke zur Zusammenarbeit von Regierung und Parliament**, LeGes 1999/2, S.162ff.

169) 입법에서의 참여절차에 관한 상세한 것은 박영도, **국민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의한 법령입안 및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참조.

수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안별로 영향을 받는 수범자의 숫자가 적을 경우를 제외하고, 의견수렴절차는 매우 가치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각 부처는 비례성의 관점에서 해당 행정규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범자의 규모를 고려하고 이를 접근방안으로 채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법절차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협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¹⁷⁰⁾ 개별 법령상 규정된 이해관계자나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제도 외에 「국회법」, 「행정절차법」, 「법제업무운영규정」,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등에서도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사회적 협의를 위한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훈령·예규등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관하여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제1항). 또한 각 행정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설정하여 행정예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70)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입법절차에서 뿐 아니라 여러 정책분야에서도 존재한다. 특히, 사회자본의 계획책정이나 사업실시 등에서 국민 등으로부터의 컨센서스를 얻으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른바 Public Involvement, Roundtable Conference, Public Consultation, Public Inquiry 등의 절차는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1960년대부터 도입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개별 법령에서 각종 공공사업의 실시에 즈음하여 계획책정이나 사업실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능한 한 합의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 제도를 규정하는 사례도 많다. 이들 제도는 그것을 수행한다면 바로 원만한 사업진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들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찬성, 반대의견의 충돌이 발생하고 때로는 분쟁상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도 설정하기도 한다.

[행정예고를 제도화하고 있는 사례]

부 처	개 요	비 고
공정거래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 등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규정(제4조제2항) 	<p>훈령·예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p>
금융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규정안을 사전예고하도록 하고 다만, ①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규정변경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변경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③ 규정 변경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④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규정변경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생략 또는 사전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제2조제1항, 제2항) • 사전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사전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고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제2조제3항) 	<p>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p>
방송통신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훈령 등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행정예고를 규정(제5조) 	<p>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p>

부 처	개 요	비 고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이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마친 후에 해당 행정규칙을 행정예고 하도록 하고, 다만 제·개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제7조제1항) •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입안계획서, 전문 또는 개정문 및 그 밖의 참고서류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제7조제2항) • 행정예고 시에는 건별로 의견 접수처, 담당자, 의견 제출기간, 의견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도록 하고, 소관 부서는 행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그 처리결과와 사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제7조제3항 및 제4항)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훈령 등에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제6조) 	법령사무 처리규정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예고의 경우 법령안 입법예고절차에 준하도록 하고 행정예고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와 제15조를 따르도록 규정(제10조제3항) 	법무업무 운영규정

부 처	개 요	비 고
고용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규정(제20조제2항)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식 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훈령 등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훈령 등의 발령안에 관하여 행정예고를 규정(제4조제2항)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일몰제 관련 행정예고 사례]

<p>「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등 63개 고시 일괄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p> <p>1. 행정규칙명 (생략)</p> <p>2. 개정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4.23. 제정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설정을 위하여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등 63개 고시를 일괄 개정 <p>3. 주요 개정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고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에 따른 기존 행정규칙에 대한 법제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등 63개 고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 3년 또는 5년을 설정

- 「사무관리규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제4조의 서식설계 기준에 맞게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등 6개 고시의 별지 서식을 정비

4.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 예정일자

- 2009. 8. 20부터 시행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담 당 자 : 김연중 사무관(☎042-481-7695)
- 제출기한 : 2009. 8. 7. ~ 8. 19.(관세청 홈페이지 입안예고)
- 제출방법 : E-mail(yj007@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912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FAX(042-481-7999)

※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개정전문에 기재된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95호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8개 고시 일괄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8개 고시 일괄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훈령·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바,

-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에 대해서 재검토한 결과,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향후 소관 규칙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한 재검토기한을 2012년 6월 30일에서 2015년 6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38개 고시 현황> : 생략

2. 의견제출

동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여의도동))

○ 전 화 : 02-2156-9622

○ E-Mail : sds446@korea.kr

○ 팩 스 : 02-2156-961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 - 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6호, 2011.3.29.)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 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이를 해

소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6조)

3.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영양정책과 전화 043-719-2261,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우리의 경우에는 입법의 단계에서 사후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이나 입법정보의 입수 등의 절차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전적인 절차단계에서의 참여와 협의제도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 그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우리의 사전 입법절차는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그 권한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절차이며 행정기관을 위한 절차라고 인식하고, 입법절차의 목적을 행정기관에 의한 정보수집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의견이나 정보를 제출하는 개개인은 절차에서 부차적인 역할밖에 기대되지 않는다. 또한 각종 의견수렴절차 등 참여적 도구들은 대부분 시간집약적·비용 집약적이기 때문에 입법절차의 신속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입법의 사전절차에서 참여적 도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¹⁷¹⁾ 기본적으로 우리의 제도는

171) 박영도, 국민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의한 법령입안 및 정비방안, 20면 이하 참조.

이해관계시민을 입법절차에서 보다 주체적, 적극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발상이 빈약하다. 정부의 의견제출절차가 행정기관의 주도로 개시된다면 참가권이라 하더라도 그 행사는 행정기관의 절차개시의 판단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지위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가의 입법절차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정보수집에 한정되지 않고 관계자의 이익보호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에게는 절차에서 보다 주체적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¹⁷²⁾

행정규칙에서의 의견수렴절차의 장점으로는, ① 정보의 공유와 양호한 의사전달, ② 국민의 의식과 관여의 강화, ③ 행정기관과 다른 이익단체에 실제적인 견제를 제공, ④ 행정규칙제정을 위한 보다 나은 창조적인 대안의 발견을 장려, ⑤ 행정규칙에 대한 준수의 증대, ⑥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과 비용 및 업무의 절감, ⑦ 주요한 당사자간의 협력적 관계의 형성, ⑧ 모든 당사자의 참여로 인해 기술적으로 복잡한 주제에 관한 우수한 규칙의 제정, ⑨ 사후적인 분쟁과 소송의 감소 등을 가져온다.¹⁷³⁾

물론 행정내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조치에 속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절차를 적절하고 차별적으로 사용하여 참여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의견수렴절차는 ① 해당 행정규칙이 다수의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해당 주제가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경우, ③ 행정기관이 해당 주제에 대해 완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등에 적합하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해당 행정규칙안의 규모와 범위(시간 및 비용의 관점에서), 행정규칙안의 중요성, 해당 행정규칙안에 영향을 미치는

172) 박영도, 국민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의한 법령입안 및 정비방안, 73면 이하 참조

173) Curtis W. Copeland, **Negotiated Rulemaking**, CRS Report for Congress, 2006.8.28.

관계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이해관계자간 갈등유발요소가 많은 주요한 행정규칙안 및 수범자 등에 상당한 부담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정규칙안 등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¹⁷⁴⁾

한편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②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③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④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예고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동안 이를 예고하여 국민들의 행정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새로운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또한 국민들이 새로운 정책 등에 적응하게 하여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¹⁷⁵⁾

174) 협의원칙은 ① 지속성(협이는 정책개발절차에서 조기에 착수하여 지속적인 절차가 되어 한다), ② 목표(협이는 제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광범하게 포섭하는 것을 기초로 해야 한다), ③ 시기(협이는 정책목표와 대안이 확인된 경우에 개시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절차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④ 접근성(이해관계자 집단은 협의의 개시에 관한 정보, 제안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⑤ 투명성(정책기관은 협의절차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협의의 대상이 되는 규제정책의 개요 및 협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관한 피드백을 제시해야 한다), ⑥ 일관성 및 유연성(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관된 협의절차를 수행해야 하고, 제안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절차를 조정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⑦ 평가 및 검토(정책기관은 협의절차를 평가하고 이를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http://www.finance.gov.au/obpr/proposal/handbook/appendix-C-best-practice-consultation.html>

175)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행유예기간)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관련 [법제처 05-0148, 2006.2.17]

특히, 유효기간 및 재검토키한의 설정 또는 개폐는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며, 일몰제가 행정규칙의 존폐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행정예고 적용을 일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⁷⁶⁾ 그리고 각 행정기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예고를 보면 관련 법령의 간략한 개요나 신구조문대비표만 게시되어 있을 뿐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검토보고서나 관련 자료 등은 거의 게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행정예고의 결과에 대해 의견수렴된 내용의 개요 등은 찾아볼 수도 없다. 물론 행정내부적으로는 행정예고 관련 의견 조회 결과가 취합되고 상급자에게 보고될 것이다.

오늘날 행정기관의 각종 문서는 “보는 문서”에서 “이용하는 문서”로 전환되고 있고, 나아가 이를 종합하여 “활용하는 문서”로서 정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세청의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규정된 것처럼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입안계획서, 전문 또는 개정문 및 그 밖의 참고서류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소관 부서는 행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

176) “「낙동강수계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은 낙동강수계 인근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토지매수지침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매월말까지 접수된 매도신청토지를 대상으로 별표 1의 항목별 접수배정기준에 따라 지역별·용도별·접수시기의 각 항목별 배정점수를 합산하여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매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매수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낙동강수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 따라야 할 지역이나 용도 등의 항목별 접수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동 기준의 변경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국민의 재산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외사유(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법 제46조」 및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행유예기간)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관련 [법제처 05-0148, 2006.2.17]

를 결정한 뒤 그 처리결과와 사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라도 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¹⁷⁷⁾ 또한 행정예고시에는 관련 자료의 제시에는 행정내부에서 수행된 각종 평가(규제영향평가 등 사후이행검토)의 결과를 제시한 부처의 보고서(departmental memorandum)와 연계하는 것이 적합하다.

177) “『행정절차법』에서는 법령등(자치법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입법하고자 할 때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입법예고의 방법, 기간 등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와 관련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제18조제1항)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제20조제1항),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제2항).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례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처리결과 등을 첨부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제66조),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제39조) 비추어 볼 때에도, 시장이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처리결과 등을 첨부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은 조례안의 심의·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같은 법에 따른 조례안 심의·의결권을 충실하게 수행하려는 취지라고 보이고, 아울러 이것이 같은 법에 따른 시장의 조례안 발의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이나, 시장이 조례안의 심의·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처리결과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시장은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처리결과 등을 첨부하여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시장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를 입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지방자치법』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의견 11-0258].

3. 규제영향분석 등

행정규칙의 품질제고를 위한 전략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그 규제에 의하여 초래되는 부담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과 기존규제 가운데 부담이 큰 것에 관하여는 이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규제와 관련된 행정규칙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경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적 요소를 사전에 이를 조사하고 새로이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절차가 요구되며, 이는 주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안이나 기존의 규제체도가 그 규제목적에 부합한 달성수단인지를 확인하므로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비교적 투명성이 있는 모습으로 정부에 의한 합리적인 정책선택을 촉구하게 되어 규제의 확산을 억제하는 기능을 거두고 있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규제심사를 받는 “법령등”의 범위를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제2항).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행정규칙은 대부분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들 행정규칙에 대한 유효기간의 재설정 또는 재검토기한의 연장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된다.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 대상범위를 법령의 제·개정시에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립되는 위임입법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모델은 없으며 각

국의 정치나 법제구조, 각국정부의 목적과 우선과제에 따라 규제영향 분석의 요소나 방법도 다르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호주의 경우에는 위임입법이 일정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광범위한 일몰제를 도입하고, 해당 위임입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재도입하려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현저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담을 부과하는 위임입법이 아닌 경우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반드시 일몰제에 부합하는 법적 효과성·명확성을 증진하기 위한 높은 심사기준이 책정된 규제영향분석(Regulation Impact Statement : RIS)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도 행정규칙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에서는 해당 행정규칙이 일정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행정규칙의 제·개정시 규제영향분석(Regelungsfolgenabschätzung)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규칙의 제·개정시에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또한 모든 행정규칙의 제·개정시에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지 않고 고시에 한정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사례도 있다.

[규제영향분석을 규정한 사례]

부 처	내 용	비 고
공정 거래 위원회	• 훈령등에 신설·강화 규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규정(제4조제3항)	훈령·예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금융 위원회	• 규칙의 제·개정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에 상정(제6조)	법령사무 처리규정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부 처	내 용	비 고
방송 통신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신설·강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요청(제7조)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개정하려는 행정규칙에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규제심사를 요청(제7조)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지식 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은 훈령 등 안의 규제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고, 규제가 있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를 받을 것을 요구(제6조제2항)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소방 방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안에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와 고시안을 첨부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규제심사결과 개선권고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시안에 반영하도록 규정(제9조제4항) 	법제사무 처리규칙
국가 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예규 등의 개정안 중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당 법령안과 함께 국무총리실의 「규제절차 매뉴얼」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규정(제13조제2항) 	법제업무 처리규정

우리의 규제영향분석서가 외국과 같이 정책입안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인지,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의 초기단계에서 복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분석에 이용가능한

자료가 정비되어 있는지,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관계자와의 협의를 하는 등 의견수렴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등에 관해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된다.¹⁷⁸⁾ 일반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문제의 특정과 그 정량적인 파악이며,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정책결정과 결부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특히, 비용과 편익의 정량화와 금전화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요소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비용과 편익의 추계결과 얻어진 수치로 기계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정량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재료로 하고, 정책결정을 투명화·객관화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 것이다. 특히,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행정규칙이나 시점도래에 즈음하여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규칙의 제·개정시에 경제학적인 이론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일몰제 도입의 충분성을 검토하고 가능한 부분은 단순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규제영향평가의 분석요소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일의 Baden-Württemberg주에서는 해당 행정규칙이 전체적으로 누가 언제 현저한 영향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예상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규제영향분석 및 지속가능성심사(Regelungsfolgenabschätzung und Nachhaltigkeitsprüfung)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 및 지속가능성심사의 결과는 아래의 기준표에 기초하여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심사의 전제가 된 가설, 추정치 및 산정방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소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규제영향분석 및 지속가능성심사가 실행된 유효기간 설정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기간의 도래시점에 즈음하여 당초 수행한 규제영향분석 및 지속가능성심사의 결과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여

178)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269면 이하 참조.

목표에 도달하지 않은 규율은 이를 개선 또는 폐지하거나 해당 부처가 폐지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폐지를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⁷⁹⁾

[Baden-Württemberg주 규제영향분석 및 지속가능성심사 기준]

기본 질문	주요 논점
I. 인간과 사회	
1. 제안이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과 사회적 배제 • 모든 자에 대한 기회균등, 남녀간의 성별문제, 성별 고정관념의 타파 • 모든 자의 사회의 적극적 참여(장애자 포함)
2. 제안이 사회의 변동에 대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 • 가족상황 • 어린이 상황 • 이민경력이 있는자의 통합 • 정보화 사회
3. 제안이 생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안전 • 공공의 안전 • 도시 및 주택개발, 중심시가지 기능 • 농촌지역의 기능 • 문화생활, 문화유산 • 여가시설 • 장벽없는 환경 • 시민지향 및 간소한 행정
4. 기타 기대되는 다른 효과	
II. 건강과 영양	
1. 제안이 주에 있어서 인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적 및 정신적 건강과 행복

179) Verwaltungsvorschrift der Landesregierung und der Ministerien zur Erarbeitung von Regelungen(VwV Regelungen) Vom 27. Juli 2010(GABl. Nr. 8, 2010, S. 277) in Kraft getreten am 1. Januar 2011. [Anlage 2].

기본 질문	주요 논점
건강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제안이 건강한 생활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과 식품안전 • 영양과 신체활동 • 약물중독 • 건강에 대한 위협 • 건강을 저해하는 외적 환경
3. 제안이 보건상의 조직과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 • 질병예방 • 건강관리 •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기대의 고려
4. 기타 기대되는 다른 효과	
Ⅲ. 근로와 고용	
1. 제안이 주의 경제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중소기업의 관점에서의 경제주체의 경쟁력 • 경제지향적 행정절차, 관료주의 철폐 • 주의 모든 지역에서 생활과 근로기반의 확립 • 숙련근로자의 공급
2. 제안이 모든 근로자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 가정과 직업의 양립 • 남성과 여성의 기회균등 및 선택의 자유 • 근로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집단의 참가 • 작업장에서의 건강보호 • 사회보장
3. 기타 기대되는 다른 효과	
Ⅳ. 경제와 소비	
1. 제안이 제품, 생산 및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및 자원의 효율적 소비 • 재생가능한 자원의 이용 • 생필품의 고품질

기본 질문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생산 및 서비스의 환경 및 사회적합성 • 환경친화적 시굴 • 유전공학의 안전성 • 생물다양성 • 농업 및 임업
2. 제안이 소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의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소비의 의식 • 지역 생필품의 소비 • 지속가능한 제품의 식별
3. 제안이 순환경제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방지 • 폐기물의 순환 •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분
4. 기타 기대되는 다른 효과	
V. 교육과 연구	
1. 제안이 연구와 대학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개발에서의 혁신과 지식이전 • 질적인 측면에서의 대학의 경쟁력 및 생산성 • 역량 측면에서의 대학의 생산성 • 교육, 연구 및 훈련 • 남성과 여성을 위한 기회균등의 실현
2. 제안이 유치원 및 학교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인 인격함양 - 교육 총체적인 접근 방식 •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순조로운 적응 • 교육 및 훈련시스템의 질 • 생활의 모든 단계와 서로 다른 장소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 역량지향적/형성능력 • 평생학습 •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생활여건의 고려

기본 질문	주요 논점
3. 기타 기대되는 다른 효과	
VI. 자연과 환경	
1. 제안이 자연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 • 서식지 • 청정구역 및 수면보호, 문화경관
2. 제안이 환경매체의 기능적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 면 • 토 양 • 영 공
3. 제안이 환경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 수 • 소 음 • 오염지역
4. 제안이 환경적 효과의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의 이행 및 통제의 실행
5. 기타 기대되는 다른 효과	
VII. 에너지와 기후	
1. 제안이 기후보호목표의 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효과가스의 배출
2. 제안이 에너지 소비와 발전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효율성
3. 제안이 광범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에너지공급 •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배분 •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
4. 제안이 기후변화보호정책의 필요한 설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보호정책의 보다나은 발전 • 에너지연구
5. 기타 기대되는 다른 효과	
VIII. 교통과 이동수단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기본 질문	주요 논점
1. 제안이 교통체계의 안전성과 기능적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 • 교통흐름
2. 제안이 교통에 따른 환경적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의 배출 • 대기와 소음공해
3. 제안이 교통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설계 • 지속가능한 계획
4. 기타 기대되는 다른 효과	
IX. 공공재정, 사법 및 행정	
1. 제안이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채무 • 삭감 및 재배분을 통한 추기비용 보상 • 자치단체 및 그 재정 • 재정, 배분균등성 및 효과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생활여건 고려 및 책임있는 조치 • 체계적인 과제검토 • 조성철폐
2. 제안이 행정과 사법의 효율적 설계와 효율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과 사법의 투명성과 공개성 • 관료주의 삭감과 필요한 조치기준의 설정 • 행정부문의 관료주의 비용 • 국가적 이행에서 민간부문을 통한 과제 이행의 가능성 • 행정과 사법부문의 기능에 적합한 직원의 자격 •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정책
3. 제안이 행정과 사법부문의 지속가능한 재료와 에너지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4. 기타 기대되는 다른 효과	
X. 글로벌화와 국제적 책임	
1. 제안의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력 강화

기본 질문	주요 논점
구조의 발전과 발전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과 여성의 기회균등 • 글로벌 파트너십
2. 제안이 저개발국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및 Know-How의 이전 • 제품생산의 환경적, 사회적 조건
3. 기타 기대되는 다른 효과	
XI. 기 타	
위에 제시한 영향 이외에 기타 예상되는 효과를 충분히 언급하였는가	

모든 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를 고려하는 도구들은 국제적으로 다수 존재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의 심사 내지 평가수법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최근 각국에서 다수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하나의 매카니즘으로 입법평가, 규제영향평가 내지 영향평가의 절차 가운데에서 지속가능성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각국에서는 정책형성에 있어서 장기적인 환경적·경제적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입법평가나 영향평가의 틀속에서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관해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심사는 일반적인 영향평가 내지 입법평가의 확장으로 고려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입법평가나 영향평가와 지속가능성심사는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도 있으나, 양자는 다르다. 주요한 차이점은 지속가능성심사는 특히, 장기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조망하는데 대해 입법평가나 영향평가는 실제적으로 특히, 정책목표의 단기적인 효율적 성과를 지향한다. 전통적인 영향평가는 비용에 강력한 비중을 두는데 비해(경제, 행정비용) 지속가능성심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그 범

위가 광범하다. 전통적 영향평가는 우선적으로 단기적 성과에 조망하나, 지속가능성심사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목표갈등의 해소와 장기적 법률효과를 중시한다.

지속가능성심사의 중심적 목표는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제안되는 새로운 입법안에 대해 특히, 장기적으로 입법의 영향에 주목하여 이를 언급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쉬운 작업은 아니다. 특히, 현재의 입법 절차와 구소에 적합하게 이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범정부계획인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주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차원에서도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 등 지속가능발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2007년 8월 3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 녹색산업 진흥, 나아가 지속가능발전까지 하나로 통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 제정, 시행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안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통합, 법률의 제명이 「지속가능발전법」을 개편되어 일부 조항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흡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제11조제1항),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제7항). 여기서 ‘법령’에는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으나, 향후에 국제적인 동향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성심사는 행정규칙 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법령의 제

개정시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행정규칙에서 지속가능성심사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심사주체와 절차의 질적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시점과 심사단계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처간이나 각종 단체등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등에 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상의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도보완사항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규제 심사 또는 법제처 심사와는 목적·기준·방법 등이 상이하다. 또한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제거·정비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전 예방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구조적 취약분야에 중점을 두는 사후 개선시스템으로서의 개도개선과는 다르다.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개선·정비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위원회가 현행 행정규칙 평가 결과 개선 권고(또는 개선 추진 결정)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행정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입안 완료 직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 직전에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고 위원회는 평가 요청된 제·개정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법령안 평가에 준하여 통상 3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¹⁸⁰⁾

180)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부패영향평가지침, 2011.11., 24면 이하.

[부패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있는 사례]

부 처	내 용	비 고
공정 거래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부패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제4조제5항) 	훈령·예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금융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가 실시되었는지 확인(제5조) 	법령사무 처리규정
방송통신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제정 또는 전부개정의 경우는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의무화(제6조제1항)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기 전에 입안계획서 및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 심사와 부패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행정규칙은 행정예고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제6조)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지식 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야 하며,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관과(팀)장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제6조제3항)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소방 방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할 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제19조의1) 	법제사무 처리규칙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 	법무업무 운영규정

부 처	내 용	비 고
	<p>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훈령 등에 반영하고 그 조치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통보(제9조의2)</p>	
해양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담당관은 행정규칙 제·개정에 따른 심사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하도록 규정(제6조) 	법제사무 처리 규칙
안전 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예규안의 입안부서는 그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감사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 (제9조의1) 	법령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관국장에게 권고((제4조의2) 	법무업무 처리규정

위 규정이 없더라도 상위 법령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규칙의 제·개정시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¹⁸¹⁾ 그러나 유효기간

181)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9조에서는 행정규칙 자율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관부서는 모든 행정규칙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기 전에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하는 행정규칙 자율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행정규칙 자율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사담당관은 행정규칙 자율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고 행정규칙 자율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는 재검토기한의 설정시점이나 시점종료에 즈음하여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시점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결과의 반영여부가 행정내부적으로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개선하여 관세청의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규정된 것처럼 행정규칙의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거나 소관 부서의 부패영향평가서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행정규칙은 행정예고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4. 검토기준

행정규칙 일몰제는 그것이 유효기간 설정형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형이든 그 취지가 행정규칙의 폐지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폐지의 위협 하에 해당 행정규칙에 포함된 정책 또는 규제 등을 국민들의 필요성과 바람, 우선순위의 견지에서 정기적으로 또한 포괄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행정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따라서 해당 정책 또는 규제 등의 필요성이 증명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종결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필요성의 입증책임은 평가(evaluation) 내지 심사(review)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원래 유효기간이 도래하거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의 평가 내지 심사는 의도하는 정책목표의 최적 달성가능성과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것은 기존 행정규칙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 또는 다른 새로운 제안 등 대안을 심사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관점 특히,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신중한 행정규칙안이 마련되고, 현재의 사회적 수준과 조화된 내용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사회적인 수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한 평가 내지 심사를 통하여 입법자는 최선의 고품질 행정

규칙안을 입안하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평가 내지 심사단계에서 얻어진 결과는 적어도 어느 정도로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가의 여부, 해당 행정규칙의 집행에 있어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였는지, 그 비용이 비용예측과 일치되는가의 여부 그리고 새로운 규제에 대한 수요(폐지, 개정, 새로운 규제의 설정)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해명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몰제와 연계된 평가는 전문지식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규제문화 내지 입법문화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행정규칙 일몰제의 평가기준은 규제영향분석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반적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 대한 일몰제 적용에 있어서 특히 검토되어야 할 기준을 살펴본다.¹⁸²⁾

행정규칙 일몰제의 평가를 위한 기준의 확립문제는 두가지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하나는 일몰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사전적(ex ante) 심사기준의 확립과 다른 하나는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도래시점에서의 사후적(ex post) 평가기준의 확립이다. 사전적 심사기준은 사후적 평가기준과 상응하여 설정하거나, 사후적 평가기준을 토대로 하여 설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행정규칙 일몰제에 대한 충분한 경험의 결여로 인하여 어떤 기준에 따라 사전적, 사후적 평가가 실행되어야 하며 또 어떤 경우에 수집된 정보들에 대한 실용적 분석으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는 유효기간

182) 일반적으로 일몰제의 평가기준은 그 대상에 따라 다르다. 전통적인 일몰제에서는 편익기준과 비용기준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개별 법령에서의 일몰조항과 평가조항에서의 분석기준은 규제의 효용성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미국과 같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 및 목표에 관한 표명과 설립목적 및 목표에 따라 해당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해당 기관이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다른 기관과의 갈등 또는 중복되는 권한의 확인, 기관의 폐지에 따른 결과분석 등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행정규칙 등 법령일반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에서는 필요성, 실효성, 적정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규제일몰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제영향평가의 방법론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또는 재검토기한이 경과한 행정규칙을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거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하고 시대에 적합한 것인지, 의도한 효과가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될 수는 없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다른 법령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는지를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행정규칙의 집행이 행정부문에서 과도한 행정적 부담 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심사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법령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한 경우 해당 일몰시점의 도래에 즈음하여 이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필요성, 요건 및 절차의 최적화를 통한 간소화가능성, 다른 규율과의 통합가능성 등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곳도 있으며(Baden-Württemberg주), 아래와 같이 일몰 설정된 행정규칙 제개정시 해당 행정규칙의 필요성, 합목적성, 비용효과성, 이해가능성 및 적용적합성을 검토하는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여 심사하는 곳도 있다(Hessen주). 이들 기준은 법령과 각종 지침 내지 기준(Standard)의 감축을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³⁾

[Hessen주의 일몰설정 법령의 사후심사 기준]¹⁸⁴⁾

I. 일반적 보고사항

1. 법령의 명칭 및 출처(법규정을 함께 기재)
2. 해당 법령을 통하여 규율된 사례의 숫자는 얼마인가?

183) Hessen주에서는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규범심사처에서 해당 행정규칙에 대해 수행한 필요성, 합목적성, 비용효과성, 이해가능성 및 적용적합성심사와 소관 부처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는 규범심사처의 제안에 대해 내각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Gemeinsamer Runderlass des Ministerpräsidenten und der Ministerinnen und Minister zur Einführung eines Leitfadens für das Vorschriften-Controlling, 2010.8.24.

184) 이 심사기준표는 원래 일몰설정 법률 및 법규명령의 사후심사 첨부서(Begleitbogen zur Überprüfung befristeter Gesetze und Rechtsverordnungen)이나 행정규칙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3. 연방의 어떤 주들에서 유사한 법령 또는 다른 법령이 존재하는가 또는 다른 주들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가? (다른 주들의 규율 사례를 기재)
4. 종전에 해당 법령에 대해 평가절차를 수행한 적이 있는가, 최근에 작업그룹에 제출한 결과와 일자를 제시하시오. 해당 평가에서 제시한 것에 대한 변경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II. 의미 및 목적/가능한 대안

1. 해당 법령의 본질적 목표는 무엇인가?
 - a) 그것이 달성되었는가?
 - b) 부수효과 또는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결과들이 발생되었는가?
2. 추구된 목표가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
3. 이의제기나 제안이 있었는가?
 - a) 규범적용자로부터인가
 - b) 규범수범자(시민, 기업, 단체 등)로부터 인가
4. 해당 법령이 필연적으로 또는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판례들이 존재하였는가?
5. 어떤 규정들 또는 규정의 일부분들이 심도있는 평가(Folgenabschätzung)를 필요로 하는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행해져야 하는가?
6. 어떤 규정들이 장래에 폐기되어야 하는가? 개정필요성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인가?

III. 비 용

1. 그 법령을 통하여 어떠한 인적비용, 물적비용 및 절차비용이 야기되는가? 규모를 설명하고 특정하시오. 필요하다면 데이터로 제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a) 연방 행정기관에 대한 것
 - b)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 : 관련성원칙(Konnexitätsprinzip)에 영향을 주는가?
 - c) 시민, 기업 그 밖의 기타 수범자에 대한 것
2. 해당 법령으로 경제계에 어떠한 정보제공비용이 발생하는가?

- a) 부록1에 제시된 정보제공의무의 확인 및 정보제공비용을 측정을 위한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인 ‘SKM-Scan’에 따른 프로젝트의 개요를 제시하시오(예컨대, 인허가제도의 폐지, 정보제공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빈도의 감축, 대상자집단의 한정, 자료문서의 간소화, IT의 활용가능성 등).
- b) 의미가 있다면, 정보제공비용의 정확한 수치를 확정하기 위해 수행한 표준비용모델의 완전한 측정을 위한 보고서와 가능한 근거로서 예컨대, 경제계에 특별한 부담이 가는 비용규모, 비용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숫자와 종류 기타 연방 또는 유럽연합의 비용요구와의 관계 등을 제시하시오.

3. 그 법령의 비용과 효용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한편 우리의 경우 현행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훈령·예규등을 입안할 때에는 ① 필요성(법령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 ② 적법성(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 ③ 적절성(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④ 조화성(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⑤ 명확성(국민이 훈령·예규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제2조). 이들 기준은 행정규칙의 입안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행정규칙의 검토시에도 활용될 수 있다.

그 밖에 각 행정기관에서도 위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두고 있으며 특히, 법무부에서는 예규 등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

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시행 중인 행정 규칙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준수하여 제정·개정되었는지 여부 및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심사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의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항 목	주요 내용
내용의 정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규 등은 헌법이념을 구체화 하는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현실에 맞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 예규 등은 집행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개정되어야 한다.
내용의 법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규 등은 헌법이나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 예규 등은 법령에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일성 및 조화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규 등은 다른 법령 및 예규와 조화 및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규정 상호간에 중복·상충되어서는 아니된다. • 예규 등은 근거 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규 등은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제정·개정 취지가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예규 등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법제도 등의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는 해당 정책이나 법제도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조사·평가하는 것이므로 목표달성도가 조사·평가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 밖에 중요한 심사기준으로는 수용성(Akzeptanz), 실용성(Praktikabilität), 부수적 효과(Nebenfolgen)

등이다. 사후평가에 있어서는 특히, ① 해당 정책이나 법제도가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②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그 부작용은 중요한 것인지, ③ 부담가중과 부담경감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했는지, ④ 해당 정책이나 법제도가 실용적이고 준수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지, ⑤ 개정의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¹⁸⁵⁾

일몰제를 채용한 행정규칙에 대한 사후평가에서도 해당 행정규칙에서 설정한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도래시점에 즈음하여 당초 행정규칙의 기획입안단계에서 상정되었던 효과가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수범자에게 편익이 도달하였는지의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당초 예상하였던 매카니즘이 실제로 작동된 결과인지 등의 검증도 중요하다. 그 외에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수반하여 원래 당초 설정하였던 필요성·타당성, 목적·목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검토한다.¹⁸⁶⁾ 사후평가를 위한 심사기준 내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고려에 따라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비(인력·시간·비용)도 유의해야 한다.

광범위한 심사기준의 설정은 시간적·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하며(예컨대,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가 비용부담이 높은 경우 또는 사회와

185)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180면 이하 참조.

186) 사후평가와 유사한 관념으로서 모니터링이 있다. 모니터링이란 어떤 시책의 실시상황의 효율성 등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상적으로(예컨대, 매년마다) 사전단계에서 설정된 업적목표 중 시책 등의 실시와의 관계가 직접적인 것을 중심으로 달성상황을 측정한다. 또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한 요인, 문제점, 개선책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시책 등의 실시가 효과로서 발현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모니터링은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이상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색채가 강하다. 사후평가로서 행해지는 인과관계의 분석이나 유효성과 효율성에 관한 엄격한 분석은 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모니터링은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오히려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엄두에 두면 좋고 모니터링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평가의 강도 또한 평가대상이 되는 규제의 중요성에 부합하게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요성의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간단한 평가나 또는 점검목록 내지 심사설문지(Checklisten/ Prüffragen)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각각의 강도, 관할권이나 기능에 따라 종종 사회과학적 의미에서의 복잡한 평가(효과검사) 대신 간단한 형식의 효과검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복잡한 평가를 포기할 경우에는 심사목록으로서 최소한 다음의 질문이 유용하다.

[일몰설정 행정규칙 검토목록]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으로 대응하려 한 과제가 현재도 행정규칙으로써 대응하여야 하는 과제인가 • 행정규칙의 전체적 규율방식이나 규제방식이 현재의 사회정세여건하에서 필요 이상의 것이 아닌가 •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규정은 없는가 • 다른 행정기관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정규칙이 존재하는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정규칙이 존재하지 않는가 • 해당 행정규칙이 개정 또는 폐지의 당위성 내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관례 등이 존재하였는가
기본방침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의 내용이 부처의 장기적인 기본방침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있는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현시점에서도 관계 규정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 행정규칙 조문에 포함된 목적과 그 목적과 관련된 규제간에 연관성과 안정성(내부, 외부적 연관성과 안정성)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가 수용되었는지 수범자로부터 이의제기나 다른 제안이 있었는가 • 내부적, 외부적 부작용과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결과들은 감수할 만한가 • 행정규칙에 설정된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적절한가
적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의 내용이 헌법이나 상위 법령의 범위내인가 • 법령에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는가 •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과 규정 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것은 없는가 • 근거 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내용을 규정하였는가
규정의 적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세의 변화에 수반하여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 없는가 • 행정규칙의 규정이 이해하기 쉽고 정리되어 있는가

Ⅲ. 행정규칙 일몰제 관련 입법형식의 개선방안

행정규칙 일몰제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제도설정을 위한 일관성 있는 입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기술적으로 볼 때 고품질의 입법체계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질서정연하고 안정된 체계, 법적 결정을 위한 충분하고 일관성 있는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규범의 문장과 용어의 구조적 일관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체계의 비일관성은 규범의 효과성, 법적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며, 법규범이 설정한 입법목표 달성을 방해한다. 입법체계의 비일관성은 법규범의 수용성과 법규범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데 방해가 된다. 단기적으로는 입법자의 의도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에 따르지 않게 되며, 법규범의 유도적 효과성을 약화시킨다. 체계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법규범은 개별 사안에서 나타난 불합리성을 조정하기 위해 수시로 개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도 못하다.

행정규칙 일몰제와 같은 생소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제도도입 초기부터 체계화된 제도로써 출범할 수 있도록 입법론적 또는 입법기술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행정규칙은 기존의 법규범보다 개정 빈도도 빠르고 빈번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일몰제규정에 관한 체계화된 입법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비일관성이나 오류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일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1. 법령 편제상 일몰규정의 위치

한시법이나 한시규정은 법령전체에 대하여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만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법령에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며,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규정한다. 법령 전체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유효기간’이라는 제목으로 규정을 둔다. 종전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조의 제목으로 ‘적용기간’과 ‘유효기간’이 혼용된 적이 있으나, ‘적용기간’이라고 하면 적용기간이 끝난 후 법령이 실효되는지 아니면 적용만 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그 기간이 끝나면 실효된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유효기간’으로 통일하도록 하였다.¹⁸⁷⁾

법령 전체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정 법령이나 전부개정 법령의 부칙에 규정되기 때문에 법령집을 찾아볼 때 부칙에 바로 이어지는 부칙에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있으나, 특정 조항의 유효기간은 일부개정 법령에서 규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법령집을 찾아볼 때 법령 뒤에 붙어있는 수많은 부칙 중 어느 한 구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187)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528면 이하.

한시규정을 둔 곳에서 유효기간을 함께 규정해 두는 것이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본칙’에 유효기간 규정을 두기도 한다.

한편 행정규칙 일몰제도입에 따른 일몰규정을 해당 행정규칙의 “본칙”에서 규정할 것인지 “부칙”에서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바, 법령규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부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일몰조항도 규정의 시간적 효력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래 일몰제의 취지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령의 종기를 정하는 것이다. 그 기간 내에 정책을 재검토하고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면 그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재검토결과 폐지하도록 한다면 그대로 폐지되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유효기간 설정형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형 행정규칙은 전부 해당 행정규칙의 일부 조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행정규칙에 적용되어 설정된 시점의 도래에 즈음하여 이른바 검토(review) 내지 평가(evaluation) 결과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의 존속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므로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의 입법실무에서 행정규칙 일몰제가 오래전부터 정착된 제도로 확립된 것이 아니고,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의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를 부칙에서 규정할 경우 해당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경우 수많은 부칙 중 어느 한 구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서 본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유효기간 설정형, 재검토기한 설정형을 불문하고 행정규칙 일몰조항의 규정방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칙’의 제일 마지막 부분(조문 형식으로 된 경우) 또는 ‘행정사항’으로 규정된 목차의 앞부분(시행문 형식으로 된 경우)에 규정하도록 하고, 시행문 형식으로 된 것 중 ‘행정사항’ 목차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유효기간’을

규정할 새로운 목차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¹⁸⁸⁾ 다만, 일부 행정규칙에서는 통일된 입법형식에 따르지 않고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총칙에 두거나 부칙에 둔 입법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법제처에서 제시한 규정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배치형식	내 용	비 고
총칙에 규정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 1 장 총 칙 제 1 조의2(유효기간)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3호 (2012.10.24, 폐지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의2(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해양부 훈령 제829호 (2012.5.31, 타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 1 장 총 칙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92호 (2012.5.1, 일부개정)

188)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737면 이하.

배치형식	내 용	비 고
부칙에 규정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부 칙 <제812호, 2012.5.1> 제 2 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이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00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해양부 훈령 제812호 (2012.5.1,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 부 칙 <제2009-45호, 2010.1.5> 제 3 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45호, (2010.1.5,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 부 칙 <2009.8.24>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함. 	중소기업청고시 제2009-33호 (2009.8.24, 전부개정)

2. 일몰규정의 용어

행정규칙 일몰제를 도입한 현행 입법례 가운데에는 해당 조명에서 유효기간, 재검토기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존속기간’,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⁸⁹⁾ 사실상 해당

189) 법령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기일, 기한 기간 등이 있다. ‘기일’은 어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면서 그 규정이 갖는 한시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이라는 제목 대신 ‘존속기한’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그 규제를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존속기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존속기한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은 행정규칙 그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규제일몰제와 행정규칙 일몰제를 구분한 사례]

•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국토해양부훈령 제513호)

제 9 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4조에 따라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와 제5조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익성 판단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 특정일 그 자체를 말하며 시간을 가장 한정하여 표현하는 경우이다.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거나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쓰며, 시간적인 종기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기간’과 ‘기한’이 어떤 시간적인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인데 대해 ‘기일’은 특정한 구체적인 일을 의미하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기간’과 ‘기한’의 개념이 이론상의 개념과는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허가기간, 면허기간과 같이 어떠한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과 종점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기간’으로,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종점만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기한’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나 기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여 ‘기간’은 연장으로, ‘기한’은 연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행정규칙 일몰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설정형과 재검토기한 설정형
의 두가지가 존재하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해
당 행정규칙에 대해 일정 기간이 다다를 때까지 그 행정규칙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제목을 ‘유효기간’
으로 통일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일정 시점에 다다를 즈음에
그 행정규칙의 계속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유효
기간과는 다른 것이므로, ‘재검토기한’이라는 제목으로 통일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유효기간처럼 ‘... 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표현은 사용하
지 말아야 한다.

일몰제를 도입한 행정규칙의 대부분은 위의 기준에 따라 조명을 사
용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유형도 있어서 기준에 따른 규정방식의
통일이 필요하다. 해당 행정규칙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입법표현을
약간 달리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으나, 가급적 일몰제의 취지가 명확히
제시되도록 이를 통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유효기간 용어 사용례]

용 례	내 용	비 고
존속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액의 채취 및 관리 지침 제17조(존속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산림청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시설공사입찰심사자료 관리지침 	조달청 훈령 제1572호

용 례	내 용	비 고
	제11조(존속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존속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제7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1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해양부 훈령 제92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 지침 제10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 훈령 제100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제28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년 11월 12일까지 존속한다.	관세청 훈령 제1499호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용 례	내 용	비 고
존속 기한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라크배상금관리및지급지침 제12조(존속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2년 9월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노동부 예규 제593호
고시의 유효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28조(고시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7호

[재검토기한 용어 사용례]

용 례	내 용	비 고
재검토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 3 조(재검토 기간)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3조(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8일까지로 한다.	기상청 훈령 제719호

용례	내용	비고
	<p>•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p> <p>제13조(재검토 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을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p>	산림청 훈령 제1132호
재검토	<p>•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p> <p>제19조(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이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p>	보건복지부 예규 제40호
재검토 기간	<p>• 안전검사 고시</p> <p>제27조(재검토기간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6년 2월 17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p>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15호
3년	<p>•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p> <p>제23조(재검토기간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5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p>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7호
행정 규칙 일몰	<p>•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p> <p>제36조(행정규칙 일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p>	국토해양부 고시 제842호

용 례	내 용	비 고
재검토 기한	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p>•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p> 제17조(행정규칙 일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5호
일몰 규정	<p>• 전기공사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p> 제 7 조(일몰규정)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3일까지로 한다.	지식경제부 훈령 제60호

3. 일괄개정

일반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복수의 법령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도 별도로 각각 개정법령안을 작성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 해당 개정내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각각의 개정법령안을 입안하여 개정하게 되면 법령개정의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시행상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호 연관되는 법령을 일괄하여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상호 연관되는 복수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으로 개정하는 방식은 ① 개정되는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법령의 개정취지가 같고 (규범적 동가성 : normative Äquivalenz), ② 예산이나 행정체도의 개편에 따라 같거나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기존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설정이나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연장에 관한 법령개정의 처리문제는 원칙적으로 일몰제의 설정이나 개정은 기존 행정규칙의 적용을 받은 자와 일몰제 도입으로 기존 행정규칙의 적용이 면제되는 자와의 관계 등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많기 때문에 일몰제가 확정된 행정규칙은 당연히 해당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일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각 부처에서 개별 법령의 개정안을 각각 마련하는 방식과 각 부처에서 확정된 법령의 개정안을 일괄하여 일괄입법(규제일몰제의 도입에 따른 ○○○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방식이 있다.¹⁹⁰⁾

190) 입법기술적으로 일괄입법방식에 의한 법령개정은 그 국가의 헌정체제나 입법관행에 따라 다르나, 독일 등 대륙법계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식이다. 독일에서는 관련조항 일괄개정법(Artikelgesetz)이라는 입법형식이 존재하며, 이것은 어떤 범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시에 복수의 법률조문을 개정하여야 하는 때에 복수의 법률조문을 당해 법률의 개정이라는 형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정법 형식으로 행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괄입법방식이 매우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실무에서는 “첫째, 법률안에 담긴 정책이 통일적인 것으로서 그 취지, 목적이 동일하고 둘째, 그로부터 법률안의 조항이 상호 관련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일괄화하더라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한다.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이를 일괄화하는 편이 정책의 취지, 목적이 보다 명확하게 되는 것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것에 관하여는 동일한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더라도 복수의 법률개정을 일괄화하여 제안하는 것이 종래부터 자주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965년 4월 10일의 중의원 대장위원회에서의 내각법제국의 견해이다. 자세한 것은 佐藤文俊, 地方分權一括法の成立と地方自治法の改正(1), 自治研究 제75권12호(1999), 59면 참조.

우리의 경우에도 일괄입법의 방식은 종래부터 추진되어 왔으며¹⁹¹⁾, 1998년에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괄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일괄입법방식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¹⁹²⁾ 한편 정부에서 2009년 12월에 규제일몰제의 확대추진 계획에 따른 일몰제 대상 법령의 입법추진방법으로서, 법률의 경우 각 개별 법률의 부칙을 개정하되 국회 규제개혁특위에서 일괄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행령의 경우에도 하나의 시행령을 제정하여 각 부처 시행령 일괄 개정하며, 시행규칙·훈령의 경우에는 부처단위로 하나의 시행규칙·훈령으로 일괄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일

191)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에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11개 법률 일괄개정), 1981년에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27개 법률 일괄개정), 1993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에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36개 법률 일괄개정), 1997년에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248개 법률 일괄개정) 및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360개 법률 일괄개정) 등을 일괄개정입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한 선례가 있다.

192) 1998년 10월 국무회의시 “금년 중 기존규제 50% 이상 폐지”에 관한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98 기존규제 추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1월 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일괄 보고한 후 법률개정 사항은 98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규제개혁관련 정비 대상 법률 304건 중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사항을 담은 법률안 171건에 대하여는 정부내 입법절차와 국회의 심의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완료하여 규제개혁의 성과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10개 부처별로 규제폐지 등에 관한 일괄개정입법[재정경제부소관(19건), 행정자치부소관 (14건), 문화관광부소관(10건), 농림부소관(17건), 산업자원부소관(23건), 보건복지부소관(22건), 환경부소관(10건), 노동부소관(5건), 건설교통부소관(38건), 해양수산부소관(13건)]을 추진한 바 있다. 1998년 말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을 소관별로 여러 건의 법률안을 묶어서 각 소관위원회별로 하나의 일괄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이를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회의 법률안 심의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심의를 거부하였다. 정부에서는 일괄개정입법은 국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추진과 관련되는 법률의 일괄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법률별로 개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입법절차의 번잡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을 하나의 법률 본칙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서,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 개정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입법관행상 합법적 개정방식으로 통용되어 왔고, 외국에서도 일괄개정입법 형식으로 입법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정부는 일괄입법의 제출을 포기하고 개별 법률 각각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괄입법의 형식으로 다수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여 규제일몰제를 도입한 바 있다.¹⁹³⁾ 다만, 법률의 경우에는 현재 일괄입법의 방식이 아닌 해당 개별법률의 개정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과 관련하여 다수 행정기관이 일괄입법의 형식으로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거나,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연장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제처에서도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훈령·예규 등 중 그 규정 필요성이 사라져 폐지할 훈령·예규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일괄폐지 방식으로 소관 훈령·예규 등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괄폐지를 할 때에는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의 형식별로 일괄 폐지해야 하고, 형식이 다른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을 하나의 폐지 훈령 등으로 일괄 폐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¹⁹⁴⁾

[일괄입법을 통한 행정규칙 일몰규정 개정사례]

부 처	행정규칙명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2012-12호, 2012.6.26, 일괄개정] •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등 금융위원회 소관 4개 훈령 일괄개정 [훈령 제21호, 2009.8.21]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일몰제 관련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등 일제 정비규칙 [예규 제403호, 2009.8.25 일괄개정]

193) 예컨대, ①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일괄개정), ② 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140호, 2009.6.24, 일괄개정), ③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2호, 2009.7.1, 일괄개정), ④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335호, 2009.6.30, 일괄개정), ⑤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령 제93호, 2009.9.10, 일괄개정) 등이 있었다.

194)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738면.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부 처	행정규칙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일몰제 관련 경찰방문 및 방법진단 규칙 등 일제 정비규칙 [훈령 제563호, 2009.8.25 일괄개정]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 [고시 제2010-5호, 2010.2.10, 일괄개정] •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등 일괄개정 예규 [예규 2011.3.31, 일괄개정]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제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 [훈령 제 633호, 2009.8.24 일괄개정] •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령 [고시 제2012-1호, 2012.8.23, 일괄개정] •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산업 및 생활 기상정보 공개 규정 등 일부개정령 [훈령 제736호, 2012.8.24, 일괄개정]
소방방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방재청 고시 개정 [고시 제2009-31호, 2009.8.24 일괄개정] •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훈령 제186호, 2009.8.24 일괄개정] • 소방방재청 예규 개정예규 [예규 제55호, 2009.8.24 일괄개정]
식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 등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 지침 등 폐지 [예규 제204호, 2009.8.24, 일괄폐지] •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검사능력관리규정 등 일부개정 [고시 제2009-74호, 2009.8.24, 일괄개정] •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계약이행의 검사에 관한 규정 등 폐지 [훈령 제219호, 2009.8.24, 일괄폐지] •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복합·조합품목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예규 제198호, 2009.8.24, 일괄개정] •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 실태조사 지침 등 [훈령 제212호, 2009.8.24, 일괄개정]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연구·개발업무 처리지침 등 일괄개정 [훈령 제264호, 2009.8.24 일괄개정]

부 처	행정규칙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청 행정정보 공개지침 등 일괄개정 [고시 제2009-31호, 2009.8.24 일괄개정]
특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등 개정훈령 [훈령 제620호, 2009.8.24, 일괄개정] 디자인심사기준 등 개정예규 제정 [예규 제52호, 2009.8.24, 일괄개정]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운영요령 등 개정고시 제정 [고시 제2009-18호, 2009.8.24, 일괄개정] 특허청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규정 등 개정훈령 [훈령 제619호, 2009.8.24, 일괄개정]
행복도시 건설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공개 규정 등 일괄개정 훈령(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훈령 제99호, 2009.8.7, 일괄개정] 정보공개 규정 등 일괄개정 훈령(출입기자 등록 규정) [훈령 제99호, 2009.8.7, 일괄개정]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등 일부개정 [고시 제2009-38호, 2009.9.25 일괄개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예규 제602호, 2009.9.25, 제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참고인등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훈령 제709호, 2009.9.25 제정]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신체검사 증명업무규정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재발령 [고시 제2012-287호, 2012.5.31 일괄개정]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등 30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 [훈령 제829호, 2012.5.31 일괄개정]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부 처	행정규칙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등 11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2012-430호, 2012.7.18 일괄개정] •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 등 25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2012-470호, 2012.7.31 일괄개정] • 사이버건본주택 운용기준 등 23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2012-533호, 2012.8.20 일괄개정] •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등 3개 국토해양부 예규 재발령 [예규 제248호, 2012.8.10 일괄개정]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등 7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 [훈령 제863호, 2012.8.10 일괄개정]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법령의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 지침등 개정훈령 [훈령 제96호, 2009.9.1, 일괄개정] • 저작권특별사법경찰운영규정 등 개정예규 [예규 제14호, 2009.9.1, 일괄개정] • 카지노영업준칙 등 개정고시 [고시 제2009-38호, 2009.9.1, 일괄개정] • 문화관광부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및 공모직위 선발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폐지훈령 [훈령 제95호, 2009.9.1, 일괄폐지]
보건복지 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자격증명발급 규정 등 예규 개정 [예규 제21호, 2009.8.24, 일괄개정] •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2012-93호, 2012.7.20, 일괄개정] • 의료기관 조제실 체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2012-103호, 2012.8.23, 일괄개정] • 일몰 도래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 [고시 제2012-178호, 2012.12.28, 일괄개정]

부 처	행정규칙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등 개정 고시 [고시 제 2009-203호, 2009.11.11, 일괄개정]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공동주관개발사업관리지침 등 일괄개정 지침 [지침 제42호, 2009.8.21, 일괄개정] • 지식경제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등 일괄개정 훈령 [훈령 제 44호, 2009.8.21, 일괄개정] •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고시 제2009-193호, 2009.8.21, 일괄개정]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등 일괄개정 공고 [공고 제2009-327호, 2009.8.21, 일괄개정] •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지식경제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등 일괄개정 훈령 [훈령 제94호, 2012.3.26, 일괄개정] •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고시 제2012-67호, 2012.3.26, 일괄개정] •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한국형헬기 민·군검용구성품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일괄개정 지침 [지침, 2012.3.26, 일괄개정] •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등 일괄개정 공고 [공고 제2012-163호, 2012.3.26, 일괄개정] •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등 일괄개정 [고시 제2012-182호, 2012.7.31, 일괄개정]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등에 관한 일괄개정 [예규 제 379호, 2009.8.18, 일괄개정] •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등 개정 훈령 [훈령 제859호, 2009.8.18, 일괄개정]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부 처	행정규칙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제2010-5호, 2010.1.14, 일괄개정]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 [예규 제458호, 2012.7.31, 일괄개정]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등 개정 [고시 제2012-145호, 2012.7.31, 일괄개정] •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등 개정 [고시 제2012-147호, 2012.7.31, 일괄개정] •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개정 [고시 제2012-119호, 2012.7.9, 일괄개정]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등 개정 [고시 제2012-131호, 2012.7.30, 일괄개정] •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등 개정 고시 [고시 제2012-216호, 2012.11.6, 일괄개정] •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고시 제2012-117호, 2012.7.31, 일괄개정] •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 [예규 제455호, 2012.7.31, 일괄개정] •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 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등 개정 [고시 제2012-130호, 2012.7.27, 일괄개정]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이나 일몰시점의 연장 등에 따른 관계 행정규칙의 정비는 그 숫자가 매우 많고 이를 개별 개정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매우 번잡하다. 또한 일몰제라는 중요한 정책의 실시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괄입법의 방식을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성도 높다. 개정되는 행정규칙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를 일괄화하는

편이 정책의 취지·목적이 보다 명확하게 되는 것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며, 같은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더라도 복수의 행정규칙개정을 일괄화하여 제안하는 것도 유용하다.

각 부처에서는 개별 행정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특성 내지 성격, 해당 행정규칙과 이해관계있는 자의 의견수렴 내지 일몰제 도입시의 문제점과 사후대책 강구 등 여러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몰제 대상 행정규칙 전부가 일률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몰제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몰제 대상 법령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이른바 일괄입법방식은 우리의 입법실무에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바람직하지 아니할 것이다.¹⁹⁵⁾

다만, 일몰제에 따른 개별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규칙 건수가 방대한 행정기관에게는 관련 업무수행이 번잡하여 지고, 행정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해당 행정규칙안 제출의 지체 또는 내부 심의지연시 일몰제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많다. 또한 개별 개정방식을 취하게 될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몰제 도입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의 검토과정에서 용어나 문장구조가 달리 규정되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문제는 이른바 일괄입법의 형식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되나, 입법전례와 일몰제도입의 특수한 입법정책적 상황, 일괄입법에 의한 일몰제도입시의 법적 효과, 일몰제도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일괄입법의 제명이나 형식도 행정기관마다 매우 다르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일몰제도입시 및 유효

195) 기상청의 「법무업무 운영규정」(기상청훈령 제729호, 2012.7.19, 일부개정)에서는 ‘청장은 기상청의 직제변경 및 조직개편 시 훈령 등을 일괄개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제변경 및 조직개편으로 조문내용 중 부서명칭, 직위 및 위원장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 훈령 등에만 적용하고, 업무내용 및 사무분장 등의 변경이 있는 훈령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기간이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시에 일괄입법으로 하려는 경우의 입법형식도 일관성있게 규율하는 입법모델의 설정도 필요하다.

예컨대, 행정규칙 일몰제도입시에는 제명을 “일몰제적용을 위한 ○○ 등 일부개정”으로 하고,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을 위한 일괄입법의 제명은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 등 일부개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 등 일부개정” 등으로 하는 방식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¹⁹⁶⁾

부 처	행정규칙명	비 고
법제처	• 일몰제 적용을 위한 법제처 도서관 영 규정	훈령 제248호 (2009.8.11, 일괄개정)
	•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훈령 제282호 (2012.8.11, 일괄개정)
통일부	• 일몰제 적용을 위한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등 일부개정	고시 제2009-20호 (2009.9.21, 일괄개정)
	• 재검토기한 개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등	고시 제2012-2호 (2012.7.27, 일괄개정)

IV. 사후관리의 제도화

1. 행정규칙 정비에 관한 내부규정 마련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 전후에 각 행정기관에서는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과 유사한 내용을 규

196)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훈령의 정비를 위한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규정 등 폐지령」(대통령훈령 제302호, 2013.1.23, 일괄폐지), 「한시훈령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국무총리훈령 제599호, 2012.12.24, 일괄개정)으로 한 사례도 있다.

정한 행정규칙의 정비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행정규칙 일몰제를 각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으로 규율하지 않더라도 위 대통령훈령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도 있다. 다만, 행정규칙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가 실무에서 활발하게 적용 되면 될수록 제도화의 강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행정규칙 관리 등에 관해 내부규정을 마련한 사례]

부 처	행정규칙명	비 고
공정거래 위원회	훈령·예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173호 (2011.11.2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 규칙	훈령 제2012-42호 (2012.12.26, 일부개정)
방송통신 위원회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훈령 제131호 (2012.10.30, 제정)
관세청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훈령 제1494호 (2012.8.21, 일부개정)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훈령 제1960호 (2012.10.1, 일부개정)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훈령 제729호 (2012.7.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 제61호 (2012.1.16, 전부개정)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훈령 제86호 (2011.8.25, 제정)
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예규 제449호 (2012.1.3, 타법개정)
국가보훈처	법제업무 처리규정	훈령 제972호 (2011.10.7, 일부개정)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부 처	행정규칙명	비 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 제79호 (2012.10.25, 타법개정)
국방부	법제업무 훈령	훈령 제1473호 (2012.10.9, 일부개정)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예규 제1005호 (2012.11.28, 일부개정)
병무청	법제업무 세부 시행규정	훈령 제984호 (2012.1.18, 일부개정)
소방방재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예규 제84호 (2012.7.6,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법제사무처리 규칙	예규 제432호 (2011.4.13, 일부개정)
안전행정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제1호 (2013.3.25, 일부개정)
통계청	법무업무 처리규정	훈령 제241호 (2011.10.18, 일부개정)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훈령 제452호 (2011.7.21, 전부개정)
조달청	법무 및 자문업무 처리규정	훈령 제2011-1511호 (2011.4.21, 일부개정)

법령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해당 국가의 정치체계나 입법절차 등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가 제시되고 있다. 행정규칙 뿐 아니라 위임입법 전반에 관해 일몰제 등 사전적·사후적 관리를 철저화하고 있는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는 법률단계에서 이를 제도화하고 있고, 특정한 전문분야에서 법집행의 감시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각부처 행정기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일몰제를 통해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증대시키려는데 주력하고 있으므로 행정내부규정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각 행정기관 내부에서 일정한 제도화를 통해 소관 행정규칙의 관리 전반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임성(Verantwortlichkeit)을 확보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각 행정기관의 소관 부서에서 행하고 있는 행정규칙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나아가 행정규칙 일몰제의 이행과정을 점검하는데에도 유용하다. 아울러 각 부서의 행정규칙 입안자 뿐 아니라 소관 행정기관에게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검토와 행정규칙 일몰제의 준수를 촉진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¹⁹⁷⁾

2. 사후관리

각 행정기관에서는 소관 행정규칙의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이를 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소관 행정규칙을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거나, 법제처장에게 그 제명과 비공개사유를 통보하고 법제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그리고 법제처에서는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행정규칙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만료시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규칙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서도 이 절차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사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197) 식약청에서는 “고시 등 제·개정 실무 길라잡이(2010.11)”라는 내부자료를 만들어 행정규칙에 대한 입안절차,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방법, 등록 등 일련의 절차를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현재 각 행정기관에서는 소관 행정규칙을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 내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사이트에 전문을 공개하고 있고 또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이를 게재하고 있다. 다만,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자체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사이트에는 게재되어 있으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지 않거나, 현행성 유지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례도 많다. 따라서 특허청의 사례와 같이 소관 기관의 행정규칙 정보사이트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사이트가 바로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현행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규칙의 게시절차를 규정한 사례]

부 처	내 용	비 고
공정거래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 및 예규의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부 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 고시는 「관보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제6조) • 발령·공포된 훈령등을 비공개를 제외하고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제8조) 	훈령·예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령된 훈령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 훈령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발령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 등을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제10조)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개정이 확정된 행정규칙이 관계 법령상 관보 게재가 필요한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법령정보시스템의 행정예고란에 게재(제9조) • 행정규칙을 제·개정한 경우에는 제·개정문을 제·개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홈페이지 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제10조)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부 처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대장을 비치하고 행정규칙의 제·개정사항 등을 기록·관리(제11조)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훈령·고시번호를 부여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관리(제5조) •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훈령·고시는 즉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제32조) 	법령사무 처리규정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령된 훈령 등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문서로 시행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제21조) 	법무업무 운영규정
고용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을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보 게재를 의뢰 •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령 입안시스템에 등재(제2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식 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포된 훈령 등은 지식포탈시스템에 게시, 제·개정된 훈령 등을 공포한지 10일 이내에 입안시스템(www.eglaw.go.kr)에 제출(제9조)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령된 규칙의 개정문과 전문을 지식관리시스템·사이버경찰청 등 법령자료 관리시스템 및 법제처의 국가종합법령센터 시스템에 등록(제29조) • 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일 이전에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통보·하달 및 경찰공무원의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제30조) 	법제사무 처리규칙
국가 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 또는 예규 등을 발령할 때에는 법제처 법령입안시스템(www.eglaw.go.kr), 처 홈페이지 및 보훈나라시스템 게시판에 훈령 전문을 반드시 등록·게시(제14조)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 4 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부 처	내 용	비 고
국민권익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을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보 게재를 의뢰(제23조제1항) • 발령한 행정규칙에 대해 법령입안시스템에 의 등재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의 제출을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를 10일 이내에 조치(제23조제23항) 	법제업무 운영규정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이 제·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방허브(인트라넷) 및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제28조제1항) • 행정규칙이 제·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령 후 10일 이내에 발령한 행정규칙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비공개 행정규칙의 제명과 비공개사유를 통보(제28조제2항) 	법제업무 훈령
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령된 훈령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 병무청 지식뱅크(인트라넷)의 정보통신망에 게시(제21조) 	법제업무 세부 시행규정
해양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는 법령에서 관보에 고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주무과장이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 발령된 행정규칙을 법제처 법령입안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게재(제8조) 	법제사무 처리 규칙

부 처	내 용	비 고
안전 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포된 훈령·예규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훈령·예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훈령·예규의 입안 부서에서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제12조제2항) 	법령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국민권익위원회,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 국민이 더 행복해 졌습니다.

행정규칙개선 사례집, 2010.6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_____,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

_____, 규제일몰제의 확대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박 인, 행정규칙의 위법사례 및 대책, 법제 2006.12.

법제처, 훈령 등 내부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10.

_____, 법령 입안·심사기준, 2012.

_____, 국민불편법령 폐쇄백서, 2012.12.

안혁근, 규제일몰제의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5.12

이세정, 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이종한 외, 규제개념 재정립 및 규제법령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9.7.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일몰제도(Sunset Law) 실효성 제고방안, 2012.9.

정남철,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 법제 2007.4.

[국외문헌]

1. 일 본

宮澤宏幸, 見直し條項, 立法と調査, 1997.7.

吉田利宏, 見直し條項の意味を考える, 法學 세미나-, 2008.4.

大橋洋一, 行政法 -現代行政過程論, 有斐閣, 2004.

山本庸幸, 法令の立案(13), NBL, 1999.8.15.

森本美紀子, 政策評価制度確立への展望, Japan Research Review 1998.10.

森田徳, サンセット法概説, 公務職員研修協会, 1980.

石橋 章市朗, 法案作成過程における規制の新設審査の分析, 關西大學法學論集 56권2/3호, 2006.11.

畠山武道, サンセット法の成果と展望, 會計検査研究 제17호, 1998.3.

2. 영 미

Adams, Bruce/Sherman, Betsy : **Sunset Implementation : A Positive Partnership to Make Government Work**,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8(1978).

Administrative Review Council, **Report to the Attorney-General. Rule Making by Commonwealth Agencies(Report No.35)**, Canberra, 1992.

Attorney-general's Department, **Review of the Legislative Instruments Act 2003**, Canberra, 2008.

Australian Government, **Best Practice Regulation Handbook**, Canberra, 2010.

Coombs, Moira : **Legislative Instruments Amendment (Sunsetting Measures) Bill 2012**, Bills Digest No.177, 2011-12.

- Davis, Lewis Anthony : **Review Procedures and Public Accountability in Sunset Legislation. An Analysis and Proposal for Reform**,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33(1981).
-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Victorian Guide to Regulation. incorporating Guidelines made under the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which includes amendments effective from 1 January 2011 and 1 July 2011(Edition 2.1)**, Melbourne, 2011.8.
- Ellison, Ry : **Sunsetting Big Government : How Amendments to the Texas Sunset Act can reduce the size of government and serve as a model for the nation**, Texas Tech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13/1(2012).
- Hamm, Keith E./Robertson, Roby D. : **Factor Influencing the Adoption of New Method of Legislarive Oversight in the U.S. State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6(1981).
- Haythornthwaite, Rick : **Better Regulation in Europe**, in : Stephen Weatherill(Hrsg.), Better Regulation, Worcester Place, 2007.
- HM Government, **Sunsetting Regulations : Guidance**, London 2011.3.
- OECD, **Regulatory Policies in OECD Countries. From Interventionism to Regulatory Governance**, Paris 2002.
- OECD, **Cutting Red Tape : National Strategies**, Policy Brief 2007.1.
- OECD, **Bessere Rechtsetzung in Europa : Deutschland 2010**, Paris 2010.
- Office of the Chief Parliament Counsel Victoria, **Notes for Guidance on the preparation of Statutory Rules**, Melbourne, 2012.6.
- Price, Dan R. : **Sunset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Baylor Law Review 30(1978).

Productivity Commission, **Identifying and Evaluating Regulation Reforms (Research report)**, Canberra, 2011.

3. 독 일

Attlmayr, Martin :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der Deregulierung**, in ; Christoph Kleiser/Karl Lengheimer(Hrsg.), **Deregulierung - Die Herausforderung einer verständlichen und überschaubaren Rechtsordnung**, St. Pölten 2002.

Becker, Andrea : **Die Befristungsgesetzgebung in Nordrhein- Westfalen**,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Extra 17(2010.8).

Bundesministerium des Innen(Hrsg.), **Handbuch zur Vorbereitung von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2 Aufl., Bundesanzeiger 2012.

Bussmann, Werner : **Typen und Terminologie von Evaluationsklauseln**, LeGes 16/1(2005).

Döler, Marian/Kai, Wegrich : **Regulierung als Konzept und Instrument moderner Staatstätigkeit**, dms - der moderne staat 3(2010).

Empter, Stefan/Frick, Frank/Vehrkamp, Robert(Hrsg.), **Auf dem Weg zu moderner Regulierung**, Gütersloh 2005.

Funk, Bernd-Christian : **Deregulierung aus rechts und verwaltungswissenschaftlicher Sicht**, in ; Peter Oberndorfer(Hrsg), **Deregulierung (Forschungsprojekte der Rudolf-Trauner-Stiftung 1)**, Linz 1992.

Funke, Jan : **Bürokratieabbau mit Hilfe zeitliche befristeter Gesetze. Zu den Erfolgsbedingungen der Sunset Gesetzgebung**, München 2011.

Hellstern, Gerd-Michael/Wollmann, Hellmut : **Wirksamere Gesetzesevaluierung. Wo könnten praktikable Kontrollverfahren und Wirkungsanalysen**

- bei Parlament und Rechnungshof ansetze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11/4(1980).
- Jacob, Joachim : **Das Unbehagen des Bürgers an seinen Gesetzen**, in ; 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Hrsg.), Praxis der Gesetzgebung, Regensburg 1984.
- Jantz, Bastian/Veit, Sylvia : **Bessere Rechtsetzung durch Befristungs- und Evaluationsklauseln?. Empfehlungen zur Befristung von Bundesgesetzen in Deutschland auf Basis einer empirischen Auswertung internationaler Erfahrungen**, Gütersloh, 2010.5.
- Kai, Wegrich : **Better Regulation? Grundmerkmale moderner Regulierungspolitik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Zukunft Regieren**, Beiträge für eine gestaltungsfähige Politik 1(2009).
- Kai, Wegrich : **Das Leitbild Better Regulation. Ziele, Instrumente, Wirkungsweise**, Berlin 2011.
- Kai, Wegrich/Shergold, Miriam/Stolk, Christian van/Jann, Werner, **Wirksamkeit von Sunset Legislation und Evaluationsklauseln. Ein Gutachten im Auftrag der Bertelsmann Stiftung**, Gütersloh, 2005.10.
- Karpen, Ulrich : **Weniger Quantität**, in ; Werner Jann(Hrsg.), Politik und Verwaltung auf dem Weg in die transindustrielle Gesellschaft (Festschrift für Carl Böhret), Baden-Baden 1998.
- Karpen, Ulrich/Hof, Hagen(Hrsg.), **Wirkungsforschung zum Recht IV**, Baden-Baden 2003.
- Kotschy, Waltraud : **Lean Legislation. Das neue Konzept des Bundeskanzleramtes zur Rechtsbereinigung als Beitrag zur Verwirklichung einer schlankeren Rechtsordnung**, ZfV 1995.

참 고 문 헌

- Mader, Luzius : **Evaluating the Effects: A Contribution to the Quality of Legislation**, Statute Law Review 22/2(2001).
- Mastronardi, Philippe /Schedler, Kuno : **New Public Management in Staat und Recht**, Bern 1998.
- Schulze-Fielitz, Helmuth : **Zeitoffene Gesetzgebung**,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Hrsg.), Innovation und Flexibilität des Verwaltungshandelns, Baden-Baden 1994.
- Schuppert, Gunnar Folke : **Governance und Rechtsetzung. Grundfragen einer modernen Regelungswissenschaft**, Baden-Baden 2011.
- Steinhaus, Jörg : **Gesetze mit Verfallsdatum. Ein Instrument des Bürokratieabbaus**, Münster 2008.
- Tot, Alexander : **Befristung von Gesetzen**, Speyer Seminararbeit, 2005.12.
- Zimmermann, Peter: **Reform der Staatstätigkeit durch generelle Befristung von Gesetzen-Aspekte einer Problembewältigung mit verfassungswidrigen Mitteln**, DÖV 2003.